

2014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2014.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제 I 장 총괄편	1
1. 2014년도 시행계획 개요	3
2.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4
3. 2014년도 투융자 계획	11
제 II 장 부문별 시행계획편	19
1. 보건·복지 증진	21
1-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23
1-1-1-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5
1-1-2-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7
1-1-3-1.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30
1-1-3-2.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33
1-1-3-3.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36
1-1-4-1.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	39
1-1-4-2.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42
1-1-4-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45
1-1-4-5.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51
1-1-5-1.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54
1-2.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56
1-2-1-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58
1-2-1-2.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66
1-2-1-4.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69
1-2-1-5.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72
1-2-1-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75
1-2-1-7. 농어촌 보건의료기술지원	77

1-2-1-9. 분만취약지 지원	79
1-2-2-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81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87
1-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89
1-3-1-1.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92
1-3-2-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94
1-3-2-2.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97
1-3-2-3. 경영이양 직불제	99
1-3-2-4.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102
1-3-3-1.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농촌 보육여건 개선	104
1-3-3-3.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11
1-3-3-4.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16
1-3-3-5.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19
1-3-3-6.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23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25
1-3-4-1.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	126
1-3-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129
1-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32
1-3-5-1. 취약농가 인력지원	135
1-3-5-2.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138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139
1-4-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140
1-4-3-1. 농어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44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147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149
2-1-1-1.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151
2-1-2-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156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160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165
2-1-5-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167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170

2-2.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확보	172
2-2-1-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173
2-2-2-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177
2-2-3-1.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180
2-2-4-1.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183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187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189
2-3-1-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191
2-3-1-3.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194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96
2-3-2-2. 자연농수산물고교 급식비 지원	198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200
2-3-3-1.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202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203
3-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205
3-1-1-1.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	206
3-1-1-2.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211
3-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214
3-2-1-1. 신규마을조성 및 마을재개발	215
3-2-1-2.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218
3-2-2-1.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	221
3-2-3-1. 지역거점 기능 향상	224
3-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226
3-3-1-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228
3-3-1-2.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231
3-3-1-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34
3-3-1-4.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240

3-3-2-1. 농어촌 도로정비	243
3-3-2-2. 교통서비스 강화	245
3-3-2-3. 국고여객선 건조	248
3-3-2-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50
3-3-3-1. 정보화마을 조성	253
3-3-3-3.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255
3-3-3-4.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 구축	258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261
4-1. 농어촌산업 고도화	263
4-1-1-1.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	265
4-1-1-2. 향토자원 발굴 및 D/B구축	271
4-1-3-1.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276
4-1-3-2.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280
4-1-3-3.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287
4-1-3-4. 어촌활력정착지원	290
4-1-3-5.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	293
4-1-4-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298
4-2.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302
4-2-1-1.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304
4-2-1-2. 산림휴양공간 조성	313
4-2-1-3.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316
4-2-1-4. 말산업 육성 지원	319
4-2-2-1.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322
4-2-2-2.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	328
4-2-3-1.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331
4-2-3-2. 어촌관광 활성화	334
4-2-4-1.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341
4-2-4-2.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 확대	349

5. 문화 · 여가여건 개선	353
5-1.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355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56
5-1-2-1.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359
5-1-3-1.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361
5-1-4-1.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364
5-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367
5-2-1-1.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368
5-2-1-2.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371
5-2-1-3.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380
5-2-1-4. 문화나눔 사업	383
5-2-2-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386
5-2-2-2.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388
5-2-2-3.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391
5-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395
5-3-1-1.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396
6. 농어촌 환경 · 경관 개선	401
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활용	403
6-1-1-1. 경관보전직불제	404
6-1-1-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07
6-1-2-1.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410
6-1-3-1.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413
6-1-4-1.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417

6-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420
6-2-1-1.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422
6-2-1-2.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425
6-2-1-3.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428
6-2-2-1.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430
6-2-2-3.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435
6-2-2-4.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439
6-2-3-1. 해양폐기물 정화	444
6-2-3-2. 소하천정비	448
6-2-3-3.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452
6-3.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455
6-3-1-1. 목재펠릿 사용 확대	457
6-3-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461
6-3-1-3.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469
6-3-1-4. 가축분뇨처리 지원	474
6-3-1-5. 농산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478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484
6-3-2-2.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489
7. 지역역량 강화	497
7-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499
7-1-1.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500
7-1-2.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	507
7-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508
7-2-1-1. 지역개발 컨설팅기관 인증제 도입	509
7-2-2-1.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	511

7-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513
7-3-1-1.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514
7-3-2-1.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515
7-3-3-1.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516
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520
7-4-1-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521
7-4-1-2.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524
7-4-2-1.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526
7-4-2-2.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	528
<참고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533



제 I 장 총괄편

1. 2014년도 시행계획 개요

□ 수립 주체 : 11개 부처, 3개 청, 지자체(14개 시·도)

□ 수립 대상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132개 과제**

* 132개 과제 : 기본계획 133개 + 신규 24 - 통합추진 15 - 과제완료 등 10

□ 수립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6조

□ 수립 절차

○ '14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14.1월)

- 과제별 시행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13년 말까지의 추진실적, '14년도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제시
- 지방이양 사업은 관계 부처가 지자체로부터 자료 취합 후 총괄 작성
- 지자체의 자체 추진 과제는 '11년부터 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과제별 '14년
시행계획 수립·제출('14.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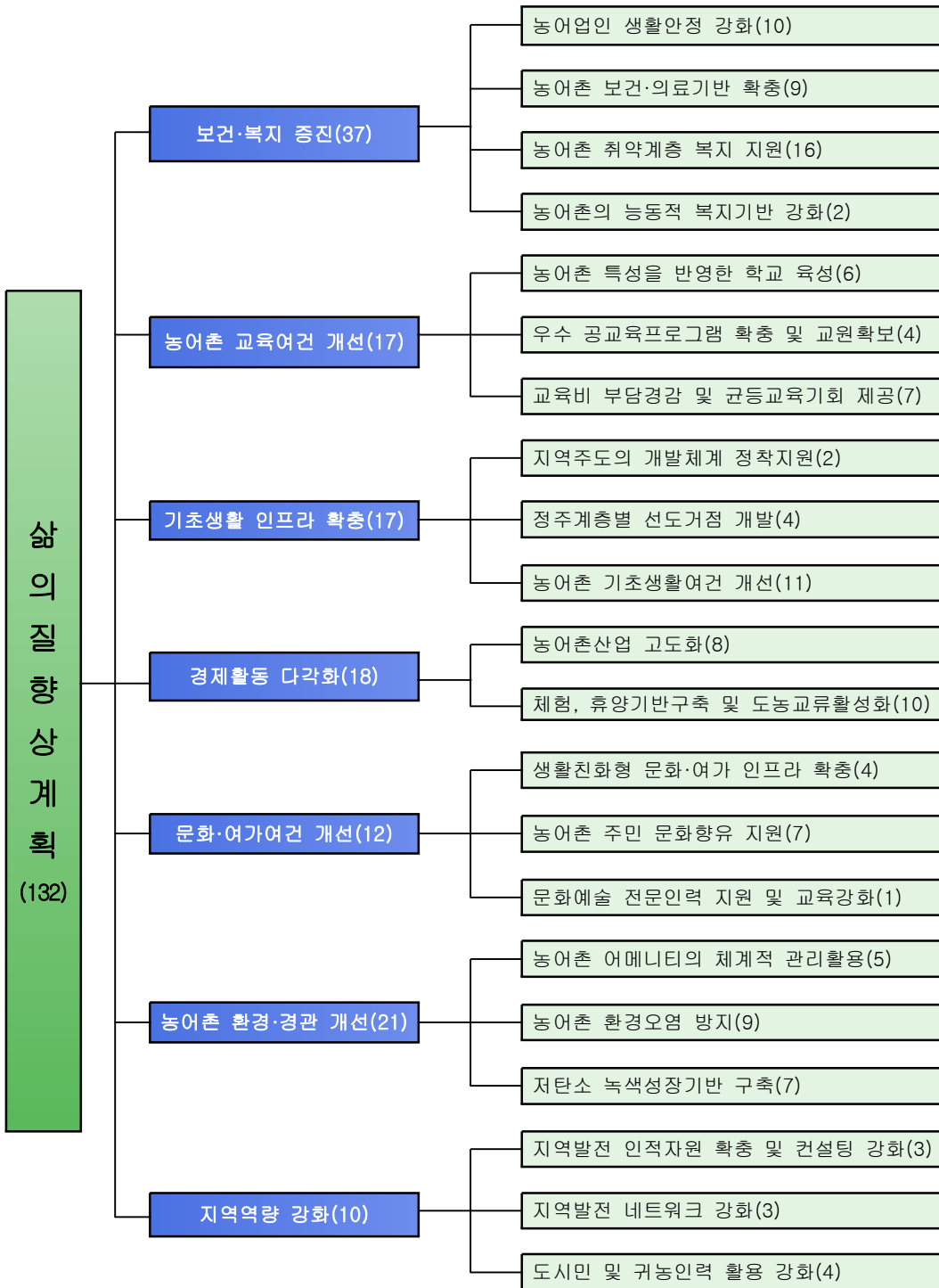
- '14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7조 7,099억원의 투융자 계획 포함
- * 국비 4조 2,766억원, 지방비 2조 6,722억원, 민자 등 기타 7,611억원

○ 사무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14년도 시행계획을 종합('14.3~4월)

□ 향후 계획 : 위원회 보고 후 국회 제출('14.6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2조에서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2.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지원 강화**, 건강보험료 및 농지연금 제도 개편, 농어업 작업 재해 보장 확대
 -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금액 인상('10년 79만원 → '14년 85만원),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현실화**(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조건 완화(부부 모두 65세 → 농지소유자 65세 이상)
 - 농업인/수산인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 ('13) 56%/40% → ('14) 60/50
 - * 농업인 재해공제 유족급여 보상금액 확대 : ('13) 90백만원 → ('14) 100

- **공공 보건의료 기반 확충, 원격건강관리 운영 지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등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개선(169개소) 및 의료장비 현대화(973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개선**(36개)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원격건강관리 지원**(14:5개 시·군)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연구를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7개소)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 순회진료 지원**(30개소)

- **고령농, 다문화가족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13: 211개소 → '14: 214)의 교육·상담 등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10개소) 및 **소규모 어린이집**(10개소) 확충
 - 노인복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50회) 및 **행복나눔센터 확충**(25개소)

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과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 농어촌 전원학교(96개교) 지원, 농어촌 학교 ICT 지원(2000개교) 및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50개교), 기숙형고교(150개교) 육성
- 방과후학교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 지원학급/지원액 : ('13) 45,998/973억원 → ('14) 46,401/975
- 노후버스 교체, 통학버스 운영비 및 통학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원거리 통학 지원(695억원)

□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우수교원 유치 및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 농어촌지역 학생에게 다양한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 원어민 교사, Talk 장학생 및 해외 현직교사 초청 영어교육 지원 ('13, 3,750개 → '14, 4,000)
- 다문화 거점학교(60개교) 지정 및 대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1:1멘토링(1,700명)으로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도, 진로상담 지원

□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에 학자금 전액 지원(534억원, 7만여 명)
-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 등에 장학금 지원(116억원, 6,500명)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208억원, 43천명)

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일반농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지역개발 추진체계 구축 유도(117개 시·군, 1조 2,449억원)
 - 지자체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내는 지역에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하여 기초인프라 구축 등 주민체감형 사업 지원(715억원)
- 농어촌 지역의 「마을 - 소생활권 - 거점 읍·면 - 중소도시」로 이어지는 **정주계층별 선도거점지 개발**
 -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경관개선 등 **마을권역 정비**(404개)
 - 공동이용시설, 복합서비스센터 등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읍·면 소재지 등 중심지 정비**(283개 지구)
 - 전원마을 등 **신규마을 조성**(18개소)을 통해 농어촌에 도시민 유입 확대 추진('11:3,174명 → '14:3,900 *누계)
- **노후주택 개량, 상수도 확충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노후불량주택 개량**(동당 한도액 조정 '13 : 50백만원 → '14 : 60백만원)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국고지원을 상향 조정 '13 : 40% → '14 : 60%)
 - * 노후불량주택개량(누계) : ('13) 478천동 → ('14) 488
 - *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지원 : ('13p) 4,667동 → ('14p) 4,350
 - **면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 ('11) 59.1% → ('14) 70.0
 -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850억원) 및 **도서민 차량의 여객선 운임 20% 신규 지원**('14.7월~) 등 농어촌 교통 지원 강화

라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지역 특화 향토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년), 6차산업 창업자금지원(300억원) 및 특수목적 펀드 조성(100억원) 등 기반 마련
 - 시설지원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 산업화 패키지 지원
 - 향토자원 신규발굴·산업화('13년 182개 → '14년 202개*, 누계), 농촌자원복합산업화(3,526억원) 추진으로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 * '14년 신규 : 장흥 표고, 창녕 마늘, 산청 홍화, 고창 고구마, 천안 배 등
 - 소규모 농업인 창업기술 지원(15개소), 공동가공시설 설치, 창업코칭 등을 통해 창업을 복합지원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10개소)

- 농어촌관광 수요 증대에 대응, 관광 인프라 조성 지속 추진
 - *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 ('11) 692만명 → ('12) 884 → ('13) 1,052
 - 농어촌 테마공원 및 체험·휴양마을 조성, 산림휴양공간 조성
 - 농어촌 관광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관광 등급제 확대시행
 - 체험마을·민박 등(300개) 체험관광 품질, 안전 및 위생 수준 평가

- 농어촌 체험·교류 확대 및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
 - 1사1촌 운동을 농수산물 직거래 등 단순교류에서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등 재능기부로 확산
 - 공공건물 및 아파트 옥상 텃밭, 초등학교 교육용 텃밭 조성 등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간접체험 지원(21억원)

마 문화·여가여건 향상

□ 농어촌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 농어촌 공공도서관 4개소 건립 지원 및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작은 도서관 14개소 조성
- 지역문화정책,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9개 시·도, 15개 과제)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도서관·박물관 프로그램 등 운영
- 소외지역에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제공(80여개 문예회관 참여)
- 예술 강사(4,735명) 파견 및 예술꽃 씨앗학교(43개교)를 통한 농어촌 학생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
-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410개)

바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도 돌담밭 등 농어업·농어촌의 고유한 농법과 이로 인해 형성된 전통유산자원의 발굴·정비 및 관리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14.4.1) :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도 돌담밭

□ 농어촌폐기물 처리 지원, 하수도 확충 등으로 쾌적한 농어촌 조성

-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12개소),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149억원)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확대 : ('11) 59.5% → ('14) 63.0

□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지원**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2천대), 농가 지열냉난방(43ha 853억원)·양식어가 히트펌프(150억원) 지원 등을 통해 농어가 난방비 부담 경감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지원(1,913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13 : 98개소 → '14 : 113개소)

사 지역발전 역량 강화

□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주민역량 강화**

- 농고·농대, 농업인 단체 등에 **역량별·전략품목 중심 교육지원**(249억원)
-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등 농어촌 관광과 도농교류를 주도할 **인적역량 강화**

□ 도시민 및 귀농인력 등 도시 우수인력을 농촌 발전에 **활용**

-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험·교육 통합형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선도농가와 멘토링 지원**

* 귀농·귀촌가구 수 : ('10) 4,067 → ('11) 10,503 → ('12) 27,008 → ('13) 32,424

- 농촌 **재능기부 범국민 캠페인** 전개 및 **재능기부자 5만명 확보**로 마을발전 및 활력 창출

* 농어촌 재능기부 신청자 50,000명, 재능요청마을 2,040개소(연계1,488)('13년 기준)

- **지자체, 언론,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연 4회) 및 **농촌현장포럼**(350개소) 개최

3. 2014년도 투융자 계획

□ 2014년도 투융자 계획은 7조 7,099억원으로 2013년도 투융자 계획 7조 6,249억원 대비 850억원 증가

○ 재원별 : 국비 4조 2,766억원(55.5%), 지방비 2조 6,722억원 (34.6%), 민자 등 기타 7,611억원(9.9%)으로 구성

○ 분야별 : 보건·복지 1조 7,140억원, 교육 5,721억원,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2조 6,334억원, 경제활동다각화 6,956억원, 문화·여가 1,911억원, 환경·경관개선 1조 8,434억원, 지역역량강화 603억원으로 구성

○ 기관별 : 미래부 191억원, 교육부 3,792억원, 안행부 91억원, 문체부 1,943억원, 농식품부 3조 8,478억원, 복지부 9,287억원, 환경부 1조 2,464억원, 고용부 10억원, 여가부 699억원, 국토부 850억원, 해수부 1,701억원, 소방청 4,179억원, 농진청 305억원, 산림청 1,333억원, 지자체 1,776억원

□ 주요 사업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

부문	사업명	소관 부처	'13년 계획	'14년 계획	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6,249	77,099	850	1.1
보건 복지 증진	소 계		15,887	17,140	1,253	7.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1,761	1,838	77	4.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1,059	1,403	344	32.5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농식품부	736	793	57	7.7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해수부	14	15	1	7.1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해수부	782	775	△7	△0.9
	농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농진청	4	4	-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안전기술 개발	농진청	8	5	△3	△37.5
	농작업안전모델시범 및 편이장비 지원	농진청	85	112	27	31.8
	농작업재해예방체험매체개발 등	농진청	6	2	△4	△66.7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식품부	15	21	6	40.0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1)	복지부	199	249	50	25.1

부문	사업명	소관 부처	'13년 계획	'14년 계획	증감	
					증감액	증감율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2)	산림청		1	1	-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복지부	-	14	14	-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복지부	891	855	△36	△4.0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복지부	1,137	1,107	△30	△2.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복지부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	복지부	6	6	-	-
	분만취약지 지원	복지부	79	98	19	24.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복지부	496	547	51	10.3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지자체	70	262	192	274.3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복지부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농식품부	237	339	102	43.0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농식품부	18	22	4	22.2
	경영이양 직불제	농식품부	624	617	△7	△1.1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농식품부		83	83	-
	①농산어촌 어린이집 확충	복지부	49	31	△18	△36.7
	②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농식품부	646	601	△45	△7.0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복지부	5,900	6,346	446	7.6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여가부	1	1	-	-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진청	84	76	△8	△9.5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고용부	11	10	△1	△9.1
	여성농어업인센터 개보수·운영지원	지자체	50	50	-	-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	농식품부	13	15	2	15.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여가부	646	606	△40	△6.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여가부	92	92	-	-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식품부	71	76	5	7.0
	농업인 복지시책 홍보강화*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식품부	28	30	2	7.1
	농어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식품부	29	37	8	27.6
	소 계		5,034	5,721	687	13.7
교육 여건 개선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육부	134	398	264	197.0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737	975	238	32.3
	기숙형고교 육성·지원	교육부	160	177	17	11.0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지자체	60	124	64	106.7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농식품부	145	143	△2	△1.4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지자체		2	2	-
	우수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195	146	△49	△25.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교육부	25	36	11	44.0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교육부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교육부	65	43	△22	△33.8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지자체	631	534	△97	△15.4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311	208	△103	△33.1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식품부	117	116	△1	△0.9

부문	사업명	소관 부처	'13년 계획	'14년 계획	증감	
					증감액	증감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육부	1,787	2,017	230	12.9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지자체	31	108	77	248.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지자체	636	695	59	9.3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교육부				
	소 계		25,398	26,334	936	3.7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사업(일반농어촌개발)**	농식품부	13,443	12,499	△944	△7.0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농식품부	375	715	340	90.7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농식품부	3	-	-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식품부	42	122	80	190.5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농식품부	5,000	6,000	1,000	20.0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환경부	480	576	96	2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환경부	4,524	4,599	75	1.7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복지부	38	34	△4	△10.5
	농어촌 도로정비	안행부	145	20	△125	△86.2
	교통서비스강화	국토부	877	850	△27	△3.1
	국고여객선건조	해수부	8	19	11	137.5
	내항여객선운임보조	해수부	180	208	28	15.6
	정보화마을 조성	안행부	75	71	△4	△5.3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1)	농식품부	81	413	332	409.9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2)	해수부		17	17	
	농어촌광대역 통합망 구축	미래부	127	191	64	50.4
		소 계		7,488	6,956	△532
경제 활동 다각화	포괄보조사업(복합산업화지원)**	농식품부	5,436	4,320	△1,116	△20.5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농진청	4	4	-	-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농식품부	23	65	42	182.6
	소규모농업인 창업활동 및 소득화 지원	농진청	106	70	△36	△34.0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농진청	5	4	△1	△20.0
	어촌활력 정착지원	해수부		30	30	-
	6차산업 창업자금지원	농식품부		420	420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식품부	295	183	△112	△38.0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해수부		165	165	-
	산림휴양공간 조성	산림청	972	669	△303	△31.2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361	293	△68	△18.8
	말산업 육성 지원	농식품부		450	450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174	167	△7	△4.2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	농식품부		21	21	-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문체부	48	35	△13	△27.1
	어촌관광 활성화	해수부		35	35	-

부문	사업명	소관 부처	'13년 계획	'14년 계획	증감	
					증감액	증감율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진청	64	25	△39	△60.9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	농식품부				
문화 여가 여건 개선	소 계		1,713	1,911	198	11.6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체부	156	49	△107	△68.6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미래부	37	-	-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문체부	38	16	△22	△57.9
	농어촌작은도서관 조성	문체부	15	18	3	20.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문체부	8	7	△1	△12.5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문체부	29	80	51	175.9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문체부	9	9	-	-
	지방문화원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41	41	-	-
	문화나눔사업	문체부	493	732	239	48.5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체부	12	12	-	-
	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체부	134	138	4	3.0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문체부·농식품부	11	7	△4	△36.3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확대	문체부	730	801	71	9.7
	환경 경관 개선	소 계		20,157	18,434	△1,723
경관보전직불제		농식품부	200	200	-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식품부	483	492	9	1.9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243	169	△74	△30.5
농어촌형 경관보전 제도적 기반 구축		농식품부	15	20	5	33.3
농촌경관조성관리기반 기술 구축		농진청	3	3	-	-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환경부	4,909	4,905	△4	△0.1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89	138	49	55.1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환경부		15	15	-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농식품부	2,530	2,513	△17	△0.7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농식품부	819	562	△257	△31.4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환경부	64	79	15	23.4
해양폐기물 정화		해수부	175	168	△7	△4.0
소하천 정비		방재청	5,166	4,179	△987	△19.1
하천·하구쓰레기 정화 사업		환경부	204	211	7	3.4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산림청	206	201	△5	△2.4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지원(1)		농식품부	1,116	602	△514	△46.1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지원(2)		해수부		251	251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환경부	2,213	1,913	△300	△13.6
가축분뇨처리 지원		농식품부	1,425	1,551	126	8.8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1)	농식품부	83	91	8	9.6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2)	해수부		8	8	-	

부문	사업명	소관 부처	'13년 계획	'14년 계획	증감	
					증감액	증감율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1)	환경부	2	28	26	1,300.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2)	산림청	25		△25	△100.0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농식품부	187	135	△52	△27.8
	소 계		572	603	31	5.4
지역 역량 강화	단계별,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농식품부	254	249	△5	△2.0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	지자체		1	1	-
	지역개발 컨설팅기관 인증제 도입*	농식품부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	농식품부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농식품부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농식품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농식품부	276	289	13	4.7
	귀어귀촌활성화지원	해수부	-	10	10	-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	농식품부	42	54	12	28.6

* : 비예산 과제

**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기존 과제 중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소생활권 및 지역거점 기능 향상을 포함

*** :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사업은 기존 과제 중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을 포함

**** : 각 사업별 투융자 금액은 국비, 지방비, 민간 등 기타금액을 합산한 총액임

※ 제2차 기본계획 관리과제(133개) 대비 변경과제 목록

분 류	기본계획	'14년 시행계획	
과 제 통 합 (1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1(농업재해모니터링시스템구축) 1-1-4-3(안전한 농촌사회 구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2-2(취약계층 작업안전기술 교육매체개발) 1-2-2-3(농업인 건강·안정 정보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1-1(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1-2-1-2(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확충) 1-2-1-3(낙도오지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3-2(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1-3-3-3(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1-1(농어촌전원학교 육성) 2-1-2-1(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3-1(기숙형고교 육성·지원) 2-3-2-3(농어촌고교생 기숙사 이용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2-1(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3-2-1-1(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3-2(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3-3-3-3(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2-1(농어촌 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중 일부 4-1-3-1(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3-2(소규모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지원) 4-1-1-3(향토음식자원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2-1(농어촌 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중 일부 4-2-2-1(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3-1(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6-1-3-2(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1-1(주민역량교육 강화) 7-1-1-2(핵심리더 육성) 7-1-1-3(역량강화교육이수자 pool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2-1(우수민간교육기관 육성) 7-1-2-2(교육쿠폰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2 	
	'11년 신규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2-4(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1-3-3-7(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6-2-3-3(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 6-3-2-2(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12년 신규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3-8(농촌여성일자리 지원사업) 3-3-3-4(농어촌광대역 통합망 구축) 5-2-1-4(문화나눔사업) 7-4-2-2(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13년 신규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1-7(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 1-2-1-8(농어촌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1-2-1-9(분만취약지 지원) 3-1-1-2(연계협력사업) 3-2-1-2(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3-3-1-4(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6-1-3-2(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14년 신규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1-2(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1-3-2-4(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4-1-3-4(어촌활력정착지원) 4-1-3-5(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 	

분 류	기본계획	'14년 시행계획
	• 4-2-1-4(말산업 지원 육성)	
	• 4-2-2-2(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	
	• 4-2-3-2(어촌관광 활성화)	
	• 6-2-1-3(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7-4-1-2(귀어귀촌활성화 지원)	
제 외 (9개)	• 1-4-2-1(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마련)	과제 완료('10년)
	• 2-1-4-1(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과제 완료('10년)
	• 3-2-4-2(금수강촌 만들기 사업)	과제 완료('10년)
	• 6-2-2-2(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과제 완료('10년)
	• 1-3-3-8(농촌여성일자리 지원사업)	과제 완료('12년)
	• 3-2-4-1(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과제 완료('12년)
	• 4-1-4-1(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과제 완료('12년)
	• 1-2-1-8(농어촌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구축)	과제 완료('13년)
	• 5-1-1-2(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과제 완료('13년)
미수립	• 7-2-1-1(지역개발 컨설팅기관 인증제 도입)	인증제 미실시



제 II 장

부문별 시행계획편

1

보건·복지 증진

1. 보건·복지 증진

1-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속 지원
 - 경감률 50%(농식품부 28%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경감)를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완화 및 복지증진 도모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속 지원(최대 50%지원)
 - 연금 신고소득(85만원) 이하 시 보험료의 50%지원, 초과 시 정액지원(38,250원/월)
 - 주기적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대상자 발굴 및 부적격자 지원배제
- 재해공제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를 통해 농어업인 생활·경영 안정 도모
 - 농업인안전보험 사망시 유족급여 보상수준을 최대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14.1월)
 - 보험사업자 확대 : ('13) NH농협생명 → ('14) NH농협생명, LIG손해보험
 - 어업인 및 어업인의 배우자에게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지원
 - *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 ('13) 55.7% → ('14) 60%
 - *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률 제고 : ('13) 41% → ('14) 50%
 - * 어선원/어선 재해보험가입률 제고 : ('13) 16.0%/13.6% → ('14) 17.0%/15.0%
- 농어업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해 원인구명 및 안전기술 개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7-8월), 보행보조용 운반카드 등 3종 산업재산권 등재, 농작업 유해요인 노출수준 DB 구축,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42개) 육성, 인간공학에 기초한 편이장비개선으로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조성(185개소)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83,800				183,800			183,8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40,300				140,300			140,300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39,669				39,669		39,669	79,338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1,500				1,500			1,500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77,500				77,500			77,500
농작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00		400			400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500		500			500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050	4,570			5,620	5,620		11,240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200		200			200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2,100				2,100			2,100
합계	445,919	4,570	1,100	0	451,589	5,620	39,669	496,878

<1-1-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김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jihyun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기본계획 p14)

□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및 내실화 (p14)

- 고소득 농어업인은 현행보다 지원율을 인하하고, 저소득 고령농어업인은 현행보다 지원을 내실화하여 형평성 제고
 -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09.4)
 - * 현행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의 50%(농식품부 28% 지원, 복지부 22% 감면)를 경감·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04년부터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추이 및 지원 실적

구분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고 지원율	28 %	28 %	28 %	28%	28%	28%	28%	28%
월 평균 지원세대 (전년대비 증감)	521천세대	504천세대 (3.3% ↓)	484천세대 (4.0% ↓)	457천세대 (5.6% ↓)	435천세대 (4.8% ↓)	413천세대 (5.1% ↓)	402천세대 (2.7% ↓)	393천세대 (2.2% ↓)
지원예산 (전년대비 증감)	1,339억	1,431억 (6.9% ↑)	1,559억 (8.9% ↑)	1,559억 (-)	1,626억 (4.2% ↑)	1,608억 (1.1% ↓)	1,667억 (3.7% ↑)	1,761억 (5.6% ↑)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속 지원(연중)
 - 주기적인 대상자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대상자 발굴 및 부적격자 지원 배제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 법이 통과되는 대로 지침 개정 등 차등지원 방안 마련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380천세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가입자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76,121					176,121		176,121
2014	183,752					183,752		183,752
(증△감)	7,631					7,631		7,631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세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78	881,438						881,438
'13	393	176,121						176,121
'14	380	183,752						183,752
'15	373	178,287						178,287
'16	366	171,639						171,639
'17	366	171,639						171,639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	8.0	8.0	8.0	8.0	8.0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 / 전년도 1인당 지원액 × 100	건강보험공단 정산자료

<1-1-2-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김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jihyun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2)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가입 유도 (기본계획 p14)</p> <p><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p> <p>*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 ('08)67만원 → ('09)73만원 → ('10)79만원</p> <p><input type="checkbox"/> 지원방식을 농어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p> <p>○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희망할 경우 농어업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연금보험 별도 가입 및 지원 추진</p> <p><input type="checkbox"/> 미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p> <p>○ 연금 급여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소득 신고 유도</p> <p>*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444천 세대이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지원대상 농업인은 270천명(174천명 미가입)</p>
--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 '07년에 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 이관
-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 일제조사, 홍보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신규 가입 유도
- 기준소득금액 인상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보험료율	9%	9%	9%	9%	9%	9%
월보조금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9,900~ 35,550	9,900~ 38,250
비고	기준소득 이하 : 정률(50%) 기준소득 초과 : 기준 소득보험료액 1/2 정액					
기준소득	48만원	52만원	62만원	73만원	79만원	85만원

- 대상자 일제조사 : 신규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

- 홍보 리플릿 배포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농어업인 대상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리플릿 16만부 배포

* 국민연금 신규지원자 : ('12) 63,847명 → ('13) 96,425명 ('12년比 51%증가)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속 지원(연중)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가입 대상자 발굴(연중)
 - 홍보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신규대상자 발굴
 - 주기적인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대상자 발굴 및 부적격자 지원배제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18~60세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291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
 - 연금 신고소득 85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 연금 신고소득 85만원 초과 : 38,250원/월 정액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05,905				105,905			105,905
2014	140,308				140,308			140,308
(증△감)	34,403				34,403			34,403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78	789,023						789,023
'13	257	105,905						105,905
'14	291	140,308						140,308
'15	300	155,996						155,996
'16	310	183,754						183,754
'17	320	203,060						203,06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 증가율(%)	8.0	8.0	8.0	8.0	8.0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 / 전년도 1인당 지원액 × 100	국민연금공단 정산자료

<1-1-3-1.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재해보험팀	담당자	김신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792	이메일	naoko66@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작업 재해 지원 강화 (기본계획 p15)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농작업안전공제 및 수산인 안전공제 보장수준 확대 및 가입률 제고

○ (농업인 안전공제) 사망시 보장수준을 현행 60백만원에서 '14년까지 100백만원 수준으로 확대

- 공제 가입률을 현행 49%에서 '14년까지 60%수준으로 제고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률 : ('04) 35% → ('09) 49.1 → ('14p) 6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 최대 1억원) 강화 및 가입자 확대
- 전체 농림업경제활동 인구 1,445천명 중 805천명 가입, 54천명에게 516억원 보험금 지급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10) 804천명/1,557 → ('11) 816/1,520 → ('12) 803/1,482 → ('13) 805/1,445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가입 확대

- 농장주가 만20~84세 피고용인에 대하여 1~89일 기간 동안 보험 가입

* 농작업재해·일(열)사병 사망보험금, 농작업재해·노동력상실 장애보험금 : 10백만원

* 사업지역 : 경기(3), 강원(3), 충북(5), 충남(4), 전북(4), 전남(5), 경북(7), 경남(7), 제주(1), 부산(1)

- '13년 2,006건 가입 24건 보험금 지급

○ 지역(품목)농협 현장점검 및 농업인 의견 수렴('13.7/11)

- 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 업무담당자 건의사항 청취 등

○ '14년도 농업인재해공제 추진 계획 수립('13.12)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업인재해공제(농업인·농기계·농작업근로자) 사업 확대를 통한 가입률 60% 달성(연중)

- 관련 예산 : ('12) 358억원 → ('12) 368 → ('13) 397(7.7% 증)

- 보상수준 및 보장범위 확대 등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한 상품개선
 - 농업인안전보험 사망시 유족급여를 최대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험사업자 간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상품개선 유도를 위해 복수사업자 운영('14.1월)
 - * 보장수준 : ('13) 50~90백만원 → ('14) 50~100백만원
 - * 보험사업자 : ('13) NH농협생명 → ('14) NH농협생명, LIG손해보험
 - 4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을 전국사업으로 확대 시행('14.2월)
- 현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품개선 및 사업 홍보(연중)
 - 일선 보험사업 영업점 및 농가 방문으로 현지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반기 1회 이상)
 - 농민신문 등 농업전문지 및 지역 언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와 사업조기 확대를 위한 상품안내장 및 팸플릿 등 홍보물 배포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업인재해공제사업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만 15~84세), 농기계(대상 농기계 12종)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업인 805천명, 농기계 38천대
 - 지원 금액 및 형태 : 국고 보조금 39,669백만원('14년도)
 - 지원조건 : 국고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한도)·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보험료 50%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36,818				36,818		36,818	73,636
2014	39,669				39,669		39,669	79,338
(증)	2,851				2,851		2,851	5,702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805/810	36,818/36,818					36,818/36,818	36,818/36,818
'14	827	39,669					39,669	39,669
'15	835	41,698					41,698	41,698
'16	850	43,817					43,817	43,817
'17	850	43,817					43,817	43,817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률	51.7	53.7	54.2	55.7	60.0	(당해연도 안전공제 가입인원/농림업경제 활동인구)×100	공제가입 자료 (농협생명)

<1-1-3-2.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담당자	김봉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0-5467	이메일	kbh93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작업 재해 지원 강화 (기본계획 p15)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농작업안전공제 및 수산인 안전공제 보장 수준 확대 및 가입률 제고

- (수산인 안전공제) 사망 시 보장수준을 현행 45백만 원에서 '14년까지 80백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공제 가입률을 현행 20%에서 '14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기존 절약형(25백만 원), 표준형(45백만 원)에 추가로 고액형(60백만 원)을 신설하여 「수산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보장 수준 제고 ('12. 2)
- 고령의 가입니즈를 반영코자 기존 8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던 것을 만 87세로 상향 조정 ('12. 2. 13)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률을 '12년 35%에서 '13년 40%로 확대
 - 가입자 : ('12년) 26,097명 → ('13년) 30,266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보장 수준 제고로 수산작업 중 재해발생 시 어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 「수산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보장액 확대를 위해 보장수준 상향 조정, 보급
 - ('13년) 절약형 25백만 원, 표준형 45백만 원, 고액형 60백만 원 →
 - ('14년) 절약형 25백만 원, 표준형 50백만 원, 고액형 70백만 원, 프리미엄어형 1억 원(신규 개발)
- 영세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약(장제비지원·재해장해연금)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 국고 보조 실시

- 지자체의 지방비 보조를 확대를 통해 어업인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판매(가입) 장려로 어업인의 복지 혜택 증진에 기여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 목표 (2014년도) : 50%
 - 상반기 캠페인 등 각종 판촉행사 시 수산인안전공제 실적 포함
 - 2014년도 대상 등 각종 평가시 수산인안전공제 실적 인정
 -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별 이벤트 전개
- 수산인안전공제 우수조합 육성 지원
 - 판촉에 필요한 판촉물 등 물품 지원 확대
 - 우수 조합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원 등
- 지역별 영업점 직원 교육 및 판매 독려를 위한 현장 방문 ('14. 5~11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수산인안전공제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배우자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당연 및 임의 가입자 제외
 - 사업 규모(사업량) : 어업인 62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509백만 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자
 - 지원내용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 및 특약(장제비지원·재해장해연금)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50%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항 및 제2항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440				1,440			1,440
2014	1,509				1,509			1,509
(증△감)	69				69			69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30,294명 / 30,266명	1,344 / 1,440						1,344 / 1,440
'14	계획 24,74명	1,509						1,509
'15	계획 25,97명	1,902						1,902
'16	계획 27,21명	1,991						1,991
'17	계획 28,45명	2,080						2,08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수산인안전공제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주체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① 공제사업 약정 체결(수협중앙회 ↔ 회원조합)
- ② 수산인이 관할 시·군 수협에 보험 가입 (공제료 보조 상당액 감면)
- ③ 보조금 지원명세 제출(회원조합 → 공제보험지부 → 수협중앙회)
-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 ⑤ 공제사업 운용현황 보고(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수산인안전공제 어업인 가입률 (단위:%)	30	31	34	41	50	(수산인안전공제가입어 업인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대상어업인) × 100	수협중앙회
수산인안전공제 어업인 배우자 가입률 (단위:%)	-	-	100	100	100	(수산인안전공제가입어 업인배우자이전년도 수 산인안전공제 가입자 × 6%) × 100	수협중앙회

* '10년 ~ '13년은 실적 기준, 그 이후는 계획 기준

<1-1-3.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담당자	이진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471	이메일	zavane@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작업 재해 지원 강화 (기본계획 p15)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농작업안전공제 및 수산인 안전공제 보장수준 확대 및 가입률 제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어업인 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을 통한 가입 확대 도모
 - 어선 평가표 및 감가상각율표 개정('13. 1. 1 시행) : 어선평가액 평균 24% (선체 기준) 상향 조정 및 감가상각방법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 선내외기 어선 어선보험료 현실화('13. 1. 1 시행) : 기본요율의 200%~223%
- 2013년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 특별캠페인 전개('13. 4~9월)
 - 신규 가입 추진실적 : 2,603건, 수입 보험료 5,933백만원
- 어선원 및 어선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어업현장 밀착형 마케팅 전개
 - 지역별 어업인 설명회 개최(6개 지역)
 - ※ 전남 신안·제주·충청(안면도), 강원(강릉), 부산, 전북(군산)
 - 어촌계장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지역별 자문위원회 운영(203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 시범사업 실시('14년 예산 381백만원)
- 어선원보험 병행진료시 1개의 의료기관 요양에서 필요시 2개의 의료기관 지정 요양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어선보험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배상책임특약 보상 한도 상향(최고 1억원)
- 선단가입에 따른 할인제도 및 선택적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할인요율 신설
- 소형어선 가입 확대를 위한 특별 캠페인(6개월) 및 현장중심 홍보 강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 사업 규모(사업량) : 어선원 117천 명, 어선 67천 척
- 지원금액 및 형태 : 77,523백만 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톤급별 차등 지원

구분(구성비)	10톤 미만	10~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50톤 미만	50~100톤 미만	100톤 이상
순보험료(80%)						
- 어선원보험	70%	60%		30%	20%	-
- 어 선보험	70%	60%	-	-	-	-
부가보험료(20%)	75%					

-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 법적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9조, 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8,222				78,222			78,222
2014	77,523				77,523			77,523
(증△감)	△699				△699			△699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8,106						458,106
'13	-어선원 38,504명 / 36,65명 -어 선 11,59척 / 9,41척	78,222	78,222					78,222
'14	-어선원 계획 37,83명 -어 선 계획 10,87척	101,250						101,250
'15	-어선원 계획 37,83명 -어 선 계획 10,87척	85,400						85,400
'16	-어선원 계획 37,83명 -어 선 계획 10,87척	97,334						97,334
'17	-어선원 계획 37,83명 -어 선 계획 10,87척	95,900						95,9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	13.1	14.3	16.1	16.0	17.0	$(\text{어선원보험 가입어선척수} / \text{어선원보험 가입대상 어선척수}) \times 100$	수협중앙회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	9.7	11.9	15.4	13.6	15.0	$(\text{어선보험 가입어선척수} / \text{어선보험 가입대상 어선척수}) \times 100$	수협중앙회

<1-141.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농촌진흥청)>

담당부서	재해예방공학과	담당자	채혜선
전화번호	031-290-1939	이메일	hyeseo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p15)

□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기반 조성

- 전국 단위 표본 조사를 통해 농작업 재해 현황 통계 작성
 - * 국가통계 승인('09) 후 매 2년마다 통계조사 실시
 - * '12부터 짝수년도는 질병영역, 홀수년도는 손상영역 조사 실시
-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 및 건강유해요인 노출 평가를 통해 농작업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09) 근골격계질환 평가→('10)농약중독→('11~)호흡기질환 등
- 유비쿼터스기반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U-Safe Farm)
 - 생체정보측정 및 위치추적(RFID)기능이 탑재된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낙상, 일사병, 농약중독 등) 예방
 - 농작업장·시설 등에 대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활용한 유해인자 체크 및 경고시스템 구축
 - 14개 마을 시범 적용후 '13년 이후 전국 확산(1시·군 당 1개소)

□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확대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농작업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 대상 시범마을 : ('09)36개소 → ('14) 330
 - * 8개 의과대학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해 모니터링 실시
-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농작업 부담경감 기술 : ('09까지) 45종 → ('14까지) 80종
 - 편의장비 지원 : ('09까지) 147개소 → ('14까지) 2,000
- 농작업 안전 가상체험교육 등 재해예방·안전교육 강화
 - * 농촌진흥청 내 가상체험관 신설 및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10)
- 농업안전보건정보 DB 구축 및 농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09~'1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 2013 질병영역(7~8월)
 - 조사대상 : 전국 표본추출에 의한 약 10,000 농가의 농업인
 - 조사내용 : 농업활동 특성,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현황 및 발생 원인 등
-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 및 연구지원 네트워크 강화(연중)
 - 농업인 건강연구회 개최(6회) 및 뉴스레터 발송(7회)
 - 농업인 현장 기술 및 교육 지원(6회)
 - 농작업안전 한일공동 심포지엄(8.9, 농촌진흥청)
 - 농업안전보건세션 운영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공동학술대회(11. 8, 울산)
 - 해외과학자 초청 세미나 개최(1회, 12.9) : 동편란드대학, 끼모라사넨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 2014 손상영역(7~8월)
 - 조사대상 : 전국 표본추출에 의한 약 10,000 농가의 농업인
 - 조사내용 : 농업활동 특성,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현황 및 발생 원인 등
-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 및 연구지원 네트워크 강화(연중)
 - 농업인 건강연구회 운영 및 농촌현장 지원
 - 학술대회 개최시 농업안전보건 세션 운영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작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연구원
 - 사업 규모(사업량) : 1소과제 3세부과제(3.7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험연구사업 예산(국비 100%)
 - 지원조건 : 과제심의 및 선정 통과
 - 지원내용
 -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통한 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 통계 마련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70					370
2014			370					370
(증△감)			-					-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0,000			1,850				1,850
'13	10,000 농가 10,000농가			370/370				370/370
'14	10,000농가			370				370
'15	10,000농가			370				370
'16	10,000농가			370				370
'17	10,000농가			370				370

나. 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조사 연구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추진체계 : 시험연구사업 설계 심의(내외부 심의위원) 및 협약 추진 → 연구수행(연구원) → 중간진도관리(내외부 심의위원) →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서 작성 → 연말평가(내외부 심의위원) → 결과활용 제출(내외부 심의위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작업재해 조사		6,000호	10,000호	10,000호	10,000호	조사대상 농가수	보고서
대내외 협력건수	20	27	42	22	20	건수	성과등록 및 보고자료

<1-1-4-2.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농촌진흥청)>

담당부서	재해예방공학과	담당자	이경숙
전화번호	031-290-1937	이메일	leeks8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p15)

□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기반 조성

- 전국 단위 표본 조사를 통해 농작업 재해 현황 통계 작성
 - * 국가통계 승인('09) 후 매 2년마다 통계조사 실시
-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 및 건강유해요인 노출 평가를 통해 농작업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09) 근골격계질환 평가→('10)농약중독→('11~)호흡기질환 등
- 유비쿼터스기반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U-Safe Farm)
 - 생체정보측정 및 위치추적(RFID)기능이 탑재된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낙상, 일사병, 농약중독 등) 예방
 - 농작업장·시설 등에 대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활용한 유해인자 체크 및 경고시스템 구축
 - 14개 마을 시범 적용후 '13년 이후 전국 확산(1시·군 당 1개소)

□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확대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농작업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 대상 시범마을 : ('09)36개소 → ('14) 330
 - * 8개 의과대학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해 모니터링 실시
-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농작업 부담경감 기술 : ('09까지) 45종 → ('14까지) 80종
 - 편의장비 지원 : ('09까지) 147개소 → ('14까지) 2,000
- 농작업 안전 가상체험교육 등 재해예방·안전교육 강화
 - * 농촌진흥청 내 가상체험관 신설 및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10)
- 농업안전보건정보 DB 구축 및 농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09~'1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업인 개인보호구 및 편이장비 개발 및 산업체 기술이전(연중)
 - 산업재산권 출원(8종) : 농업용 가위, 재귀반사 기능 작업복 등
 - 산업재산권 특허등록(5종) : 무릎보호 삼각쿠션, 전동식 가위 등
 - 산업체 기술이전(2종) : 손잡이 회전 가위, 전동식 전지가위
- 양돈작업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발간 : 1종, 1,000부
- 작목별 작업단계별 현장 노출평가 : 생강, 백합, 옥수수 3작목
 - 총분진, 엔도톡신, 가스, 근골격계 위험요인 등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보행보조용 운반카트 등 산업재산권 : 3종
- 농작업 유해요인 노출수준 DB 구축 : 사과, 백합 등 12작목
 - 근골격계 위험요인, 유기분진, 온열환경,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등
-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개인보호구 활용 지침서 : 1종(영어, 캄보디아 등 4개 국어)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작업해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연구원
 - 사업 규모(사업량) : 3 소과제 6 세부과제(5.0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험연구사업 예산(국비 100%)
 - 지원조건 : 과제심의 통과
 - 사업내용 :
 - 농작업 유해요인 노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고령농업인 농업활동 영향요인에 따른 지원 방안 연구
 - 기능성 농작업화 개발
 - 고령농업인의 상지작업 개선 연구
 - 축산작업자의 안전보건 조사 및 개인보호구 개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800					800
2014			500					500
(증△감)			△300					△3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			1,600				1,600
'13	8/8			800/800				800/800
'14	2			500				500
'15	2			100				100
'16	2			100				100
'17	2			100				100

나.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연구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추진주체 : 시험연구사업 설계 심의(내외부 심의위원) 및 협약 추진
 → 현장 인터뷰 및 방문 조사를 통한 연구수행(연구원) →
 중간진도관리(내외부 심의위원) →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
 서 작성 → 연말평가(내외부 심의위원) → 결과활용 제출
 및 산업재산권 출원(내외부 심의위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영농활용 제출	5	6	4	5	5	건수	성과등록자료
산업재산권 획득	6	6	13	8	5	건수	성과등록자료

<1-1-4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유지현
전화번호	031-299-1074	이메일	puppy33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p15)

□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기반 조성

- 전국 단위 표본 조사를 통해 농작업 재해 현황 통계 작성
 - * 국가통계 승인('09) 후 매 2년마다 통계조사 실시
-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 및 건강유해요인 노출 평가를 통해 농작업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09) 근골격계질환 평가→('10)농약중독→('11~)호흡기질환 등
- 유비쿼터스기반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U-Safe Farm)
 - 생체정보측정 및 위치추적(RFID)기능이 탑재된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낙상, 일사병, 농약중독 등) 예방
 - 농작업장·시설 등에 대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활용한 유해인자 체크 및 경고시스템 구축
 - 14개 마을 시범 적용후 '13년 이후 전국 확산(1시·군 당 1개소)

□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확대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농작업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 대상 시범마을 : ('09)36개소 → ('14) 330
 - * 8개 의과대학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해 모니터링 실시
-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농작업 부담경감 기술 : ('09까지) 45종 → ('14까지) 80종
 - 편의장비 지원 : ('09까지) 147개소 → ('14까지) 2,000
- 농작업 안전 가상체험교육 등 재해예방·안전교육 강화
 - * 농촌진흥청 내 가상체험관 신설 및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10)
- 농업안전보건정보 DB 구축 및 농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09~'1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43마을) * 1년차 기준
 - 사업효과 :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율 33% ↑ 증가 : ('11) 39.4% → ('13) 52.4
 - * 농약보관함 사용, 농약사용 기록, 농기계 관리·점검 등 사업 전·후 비교(20개 항목)



- 농작업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안전 공감대 확산
 -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38명), 편이장비 컨설턴트(39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기술지원
 - * 사업자문, 컨설팅, 교육, 협의회(3회), 훈령 개정, 책자 감수 등
 - 농업인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관리 지침서 지원
 - * 현장 지도용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방안」 발간·보급(36작목, 500부)
 - * 안전관리 기록부(2종), 폭염대비 리플릿 제작(5,000부), 농작업 안전실천자료·장비 전시(4월)
- 인간공학에 기초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559개소)
 - 사업효과 : 농작업위험 부담 해소 및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
 - * 농작업 효율 개선율 : 45.1%(편이장비 도입전후 농가당 연간 농작업시간 비교)
- 도단위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 사업량 : 매년 8개도(도 위원회 103명)
 - 사업실적 : 105회 5,596명(회의 13회 193명, 현장컨설팅 및 교육 등 92회 5,403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작업 안전 전문가 육성 및 안전 실천의식 확산
 - 농작업 안전 마을리더 양성(42명) 및 농작업 안전관리자 육성(30명)
-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지침서 지원
 - 농업인 눈높이에 맞는 「농작업 안전보건 정보」 개발·보급(39작목)
 - 농작업 안전관리 기록부 보급(300부) 및 농작업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 협업 활성화
 - (위원회) 직업환경의학, 인간공학 등 중앙·도단위 전문가 구성·운영
 - * 유해요인 진단, 개선방안 제시, 안전관리 교육, 신규사업 자문·평가 등(9개소, 141명)
 - (공 단) 도별 농업인 안전 교육(8개소), 합동 현장컨설팅 지원(연중)
-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보급 확대
 - 농업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실천 및 정착·확산을 위한 마을 시범육성
 - * 농작업 안전모델 마을 : ('06~'13) 88마을 → ('14) 42
 - 인간공학에 기초한 편이장비 개선으로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
 - *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개선 : ('08~'13) 837개소 → ('14) 185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시설 및 노지원예,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 농업인 단체 등
 - 사업규모 : 227개소(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42,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85)
 - 지원금액 및 형태 : 11,23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5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농업인의 건강수준 및 농작업유해요인 등 진단 실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현황 파악,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농작업 유해요인 등 진단

<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개선 방안 실행 >

- (기초안전 생활화) 농작업 안전 기초, 농약중독 예방, 농기계 안전 등 교육
 - PAOT(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활동), 창고 정리정돈, 올바른 농약 보호구 착용, 폐농약 수거함, 농약 보관함, 농기계 야광 반사판, 농작업 안전기록부 작성 등
- (농작업 환경개선 활성화) 작업자세 및 동선 개선, 작업시간 관리 등
 - 농작업용 보조의자, 광폭 사다리 활용, 좁은 고랑 개선(어깨너비 이상)
 - 중량물 운반 도구 등(운반수레, 하우스 천정부착용 이동운반대 등)
- (농업인 건강관리 습관화) 건강검진, 근골격계 예방 교육, 운동 프로그램 등
 - 농업인 비타민 체조, 스트레칭,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 등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 14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45	3,461			4,206	4,206		8,412
2014	1,050	4,565			5,615	5,615		11,230
(증△감)	305	1,104			1,409	1,409		2,818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7	1,050	4,565			5,615		11,230
경기	25	150	475			625		1,250
강원	25	150	475			625		1,250
충북	16	125	275			400		800
충남	22	175	375			550		1,100
전북	17	125	300			425		850
전남	47	125	1,050			1,175		2,350
경북	25	50	575			625		1,250
경남	30	125	625			750		1,500
제주	8		180			180		360
부산	3	25	50			75		150
인천	2		24			24		48
광주	1		25			25		50
대전	3		75			75		150
울산	2		36			36		72
세종	1		25			25		5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군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113	11,745	18,484			30,229		6,0458
'13	173/173	785	3,461	-	-	4,246	-	8,492
'14	227	1,790	4,565			6,355		12,710
'15	203	2,490	3,486			5,976		11,952
'16	265	2,990	3,486			6,476		12,952
'17	245	3,690	3,486			7,176		14,352

나.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도 농업기술원
- 사업규모 : 8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8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10백만원)
- 지원내용
 - 농작업 안전사업 지문 및 개선 방안 제시, 회의, 컨설팅, 현장교육, 행사, 자료 제작 등
- 근거규정 :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장)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0				40	40		80
2014	40				40	40		80
(증△감)	-				-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40				40		80
경기	1	5				5		10
강원	1	5				5		10
충북	1	5				5		10
충남	1	5				5		10
전북	1	5				5		10
전남	1	5				5		10
경북	1	5				5		10
경남	1	5				5		1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군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40	200				200		400
'13	8/8	40				40		80
'14	8	40				40		80
'15	8	40				40		80
'16	8	40				40		80
'17	8	40				40		8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증가율	-	26.1	29.7	33	36.5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마을 농업인대상 사업 전후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 증가율 조사	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농작업 효율 개선을	44.9	33.6	33.6	45.1	50.8	편이장비 도입 전후 연간 농가당 농작업 시간 분석	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1-1-4-5.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농촌진흥청)>

담당부서	재해예방공학과	담당자	김경란
전화번호	031-290-1888	이메일	kimgr@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p15)

□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기반 조성

- 전국 단위 표본 조사를 통해 농작업 재해 현황 통계 작성
 - * 국가통계 승인('09) 후 매 2년마다 통계조사 실시
- 농작업 재해 원인구명 및 건강유해요인 노출 평가를 통해 농작업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09) 근골격계질환 평가→('10)농약중독→('11~)호흡기질환 등
- 유비쿼터스기반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U-Safe Farm)
 - 생체정보측정 및 위치추적(RFID)기능이 탑재된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낙상, 일사병, 농약중독 등) 예방
 - 농작업장·시설 등에 대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활용한 유해인자 체크 및 경고시스템 구축
 - 14개 마을 시범 적용후 '13년 이후 전국 확산(1시·군 당 1개소)

□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 확대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농작업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
 - 대상 시범마을 : ('09)36개소 → ('14) 330
 - * 8개 의과대학 및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기별 재해 모니터링 실시
-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농작업 부담경감 기술 : ('09까지) 45종 → ('14까지) 80종
 - 편의장비 지원 : ('09까지) 147개소 → ('14까지) 2,000
- 농작업 안전 가상체험교육 등 재해예방·안전교육 강화
 - * 농촌진흥청 내 가상체험관 신설 및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10)
- 농업안전보건정보 DB 구축 및 농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09~'1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작목별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프로그램 DVD 제작 보급 : 12작목, 1,000부
-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화 사업 추진 : <http://farmer.rda.go.kr>
 - ASP에서 JSP로의 컴퓨터 활용 언어기반 전환 등
- 실제운전 상황 구현가능한 트랙터 시뮬레이터 개발 1종
 - 구성요소 : 모의 운전조작장치, 컴퓨터 모델, 플랫폼, 영상장치 등
 - 교육생이 가상화면을 보면서 코스, 도로주행, 농작업 등 연습가능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농작업안전 체험 프로그램 개발 : 3종
 -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등록
-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센터 운영 및 농작업안전 모니터링 조사기반 조성
- 트랙터 운전조작 시뮬레이터 현장실증(2회) 및 산업체 기술이전
- 경운기 운전조작 시뮬레이터 개발 : 1종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연구원
 - 사업 규모(사업량) : 1소과제 2 세부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2억원 (국비 100%)
 - 지원조건 : 과제 심의 통과
 - 지원내용
 - 농작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요령에 대하여 농업인이 양방향 반응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제 위험작업에 대한 대응력 확보
 -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이 농업현장(노지 등)에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기반 구축
 - 농작업 안전사고의 발생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 조성
 - 농기계 안전사고 경감을 위한 운전자 교육용 시뮬레이터 개발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600					600
2014			200					200
(증△감)			△400					△4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			1,400				1,400
'13	3/3			600/600				600/600
'14	2			200				200
'15	2			200				200
'16	2			200				200
'17	2			200				200

나. 농작업 안전관리 정보화 연구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추진주체 : 시험연구사업 설계 심의(내외부 심의위원) 및 협약 추진
 → 현장 인터뷰 및 방문 조사를 통한 연구수행(연구원) →
 중간진도관리(내외부 심의위원) →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
 서 작성 → 연말평가(내외부 심의위원) → 결과활용 제출
 및 산업재산권 출원(내외부 심의위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작업 안전보건 체험프로그램 등 교육 자료 개발	3	5	3	3	3	건수	영농활용 및 교육자료
농업인 건강안전정보 홈페이지 방문자수	180만	2백만	100,000	100,000	100,000	접속자수	홈페이지 방문기록 삭제함

< 1-1-5-1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김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jihyu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p16)

- 농부증(農夫症) 예방 등 농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검진 등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10)
 - 농업인질환센터 지정,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지원방안 수립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연구 및 예방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운영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업안전보건센터 2개소 신규지정, 총 7개소 운영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추진배경
 -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
- 사업기간 : '13~계속 (신규)
- 지원내용
 - 인건비(용역성 경비), 조사연구비, 예방교육 활동비, 센터 운영경비 등
 - 인건비(용역성 경비) : 60% 이내
 - 조사연구비 : 15% 이상
 - 예방교육 활동비 : 15% 이상
 - 센터 운영경비 등 : 10% 이내
- 지원대상 : 대학병원, 의과대학

- 사업주체 : 농업안전보건센터
- 사업추진절차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지침 작성(농식품부) ⇒ 지정신청(대학병원 등→ 농식품부)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농식품부 → 신청기관) ⇒ 예산 배정(농식품부)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농업안전보건센터 → 농식품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505				1,505			1,505
2014	2,105				2,105			2,105
(증△감)	600				600			6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2	12,670						12,670
'13	5	1,505						1,505
'14	7	2,105						2,105
'15	10	3,020						3,020
'16	10	3,020						3,020
'17	10	3,020						3,02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	-	5	7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개소수	관련보고서 및 공문

1-2.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응급의료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존률 개선
 -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11개소, 42억원)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82개소, 208억원)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Uhealth 인프라 구축 원격건강관리(고혈압, 당뇨, 치매환자) 운영지원
 - * ('13) 4 → ('14) 5개 : 강원(강릉), 충남(서산, 보령), 경북(영양), 전북(순창 : '14년 신규)
-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시설·의료장비 현대화 지원
 - 570억원을 지원하여 보건기관 시설(156개소) 개·보수, 보건장비(보건의료장비 831개소·차량 72개소) 및 병원선 5척 수리비 등 지원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 36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1, 적십자병원 5)에 시설개선·장비보강 지원(575억원)
-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공공형산부인과 설치를 위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신규 19개소, 98억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낙도 등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
 - 농어촌 지역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낙도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 등

□ 예산 내역

<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25,010	25,010			25,010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700	700	700		1,400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57,000				57,000	28,500		85,500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57,500		57,500	53,200		110,700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 확보								비예산
농어촌 보건의료기술지원	600				600			600
분만취약지 지원			4,900		4,900	4,900		9,800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				27,372	27,372	27,372		54,744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강화	840			12,519	13,359	10,877	2,012	26,248
합계	58,440	0	62,400	65,601	186,441	125,549	2,012	314,002

<1-2-1-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119구급과 산림항공본부 수색구조과	담당자	서민수 배철희 이민규 박동선 김상희
전화번호	044-202-2557	이메일	resmith@naver.com
	044-202-2559		chorhee@korea.kr
	02-2100-8925		bulbitain@hanmail.net
	033-769-6039		pds1004@forest.go.kr
	032-835-2546		misora9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2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기본계획 p.17)

□ 농어촌 응급의료 체계 개선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 군)에 응급의료시설·장비 지원 및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13개 군), 병원급 의료기관(25개 군)이 있는 군은 시설지원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 공공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군병원(2개 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3개 군)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 취약지 응급진료권(6개 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 '10년까지 3개소 확충 → '11년까지 6개소 모두 확충
- 농어촌 이송취약지역(이송시간 30분이상 소요)에 119 구급 지원센터(구급대원 최소 2명 이상, 구급차 1대)를 단계적으로 설치
 - 구급지원센터 추가설치 계획(누계) : ('10) 50개 → ('11) 100 → ('12) 175
- 낙도·오지지역은 헬기·선박이용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 지원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u-Health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병행
 - * 해경·산림청 헬기에 응급의료장비 설치(매년 8대) 및 오백지 헬기 착륙장 건립지원
 - * 해양경찰청 경비선에 응급의료장비 설치(누계) : ('10) 25척 → ('11) 51척 → ('12) 52척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보건복지부>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운영비 지원(86개소, 98,327백만원)
-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구급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인력 확보 불가, 사업효과성 저조 예상에 따라 사업 중지됨

<소방방재청>

□ 총 60개소 설치·운영

- '10년 : 도서 산간 및 구급차 도착시간 30분 이상 취약지역 56개소 구축

구분	신설	명칭변경	시설장비보강	인근의 기존구급대 활용 장비보강
총 56개소	19개소	10개소	12개소	15개소

- '11년 : 인력확보한 4개 지역(충남3, 전북1)에만 설치
- 활동실적(2010~2012.6)

총계			210년			2011년			2012.1.~6.		
출동 건수	이송 건수	이송 인원	출동 건수	이송 건수	이송 인원	출동 건수	이송 건수	이송 인원	출동 건수	이송 건수	이송 인원
45,680	33,426	34,321	13,887	10,421	10,807	20,292	14,798	15,260	11,501	8,207	8,254

<산림청>

- 산악사고 대비 산림청 보유 헬기 호이스트 장착을 통한 응급구조와 (사)대한산악구조협회의 산악구조대 응급구조차량 지원으로 산악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 구축(계속)
 - 헬기 호이스트 장착 : ('10) 6대 → ('11) 2대 → ('12) 0 → ('13) 0
 - 환자 이송차량 지원 : ('10) 5대 → ('11) 5대 → ('12) 3대 → ('13) 4대

<해양경찰청>

- 함정 139척, 병원6개소, 헬기 8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환경 마련

3. 2014년도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

- 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1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
 - 군 지역내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 11개소, 4,160백만원
 -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 82개소, 20,750백만원

<소방방재청>

-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사업 보류

<보류 사유>

- ❶ 자체 재조사('11.7월) 결과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도서지역 제외, 구급차 도착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 없음
- ❷ 소방공무원 근무형태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 ('10년면서 인력확보가 한계에 이르러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신규설치 곤란
- ❸ '11년 사업을 위해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신규운영인력 300명(2명8교대×50개소)을 지자체 총액인건비에 반영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 ❹ 시설·장비·인력 투입 대비 이송환자가 적어(50개소 연평균 204건) 효율성 저하

⇒ 펌블런스 및 응급구조사 배치확대, 소방헬기를 활용한 항공응급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변경

<산림청>

-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등산객 조난사고 대비 신속한 응급구조를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지속적 장비 확충
 - 산악구조 응급환자 이송차량(3대) 및 산악구조장비(3세트) 구입

<해양경찰청>

- 헬기 응급의료시스템 확대 구축
 - 헬기 응급의료시스템 설치를 통한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응급의료 사각 지대 해소

4. 관련 사업 내용

가. (복지부)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군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 사업규모(사업량) : 249억원, 전국 90개소 지원(개소당 276백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응급기금)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하되, 매년 평가시 필수영역에 대해 3년간 미충족시 지원 중단
 - 법적근거 : 농어촌주민의 복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4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3,890	23,890			
2014				24,910	24,910			
(증)				1,020	1,02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5개소				24,910			
부산	1				254			
인천	1				400			
울산	2				400			
경기	7				2,184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강원	10				3,100			
충북	8				2,032			
충남	7				1,900			
전북	7				2,450			
전남	16				4,450			
경북	13				4,050			
경남	12				3,290			
제주	1				4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7,236			
'13	86				23,908			
'14	93				24,928			
'15	82				32,800			
'16	82				32,800			
'17	82				32,8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소방청)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 '10년도 종료사업

다. (산림청)응급의료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사)대한산악구조협회
- 사업 규모(사업량) : 산악구조 응급환자 이송차량(3대) 및 산악구조장비(3셋트)
- 지원금액 및 형태 : 111백만원(민간보조)
- 지원조건 : 보조율 100%
- 지원내용 : 산악구조 응급환자 이송차량(3대), 산악구조장비(3셋트) 구입비
-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9조,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28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	495	495	-	-	495
2014	-	-	-	111	111	-	-	111
(증△감)				△384	△384			△38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차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4	-	-	-	495/948	-	-	495/948
'13	4/4	-	-	-	495/495	-	-	495/495
'14	3/-	-	-	-	-/111	-	-	-/111
'15	3/-	-	-	-	-/114	-	-	-/114
'16	3/-	-	-	-	-/114	-	-	-/114
'17	3/-	-	-	-	-/114	-	-	-/114

라. (해경)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낙도 및 해양종사자 대상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
- 사업 규모(사업량) : 201.06억
- 지원금액 및 형태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500	2,500			2,500
2014				2,066	2,066			2,066
(증△감)					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응급의료기관 설치 확대(%)	76.7	90.7	90.7	-	-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된 군(郡)단위 개수/43개 군(郡)) x 100	내부자료
	-	-	-	89.4	100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된 군(郡)단위 개수/85개 군(郡)) x 100	내부자료
헬기 산악구조 호이스트 장착율	6 (75%)	2 (100%)	-	-	-	해당년도 장착대수/ 계획대수(8대)	내부자료
산악구조 응급차량 지원율	5 (28%)	5 (34%)	3 (45%)	4 (59%)	3 (69%)	해당년도 지원대수/ 계획대수(29대)	내부자료
해양사고 구조율 (선박사고 비선 박사고 인명)			신규	96.7	96.8	(선박·비선박사고 구조인원/선박 비 선박사고 발생인원)×100(%)	지능형해양 사고통계관 리시스템 선박사고 비선박사고 현황(인명)
				94.9			

<응급의료기관 설치 확대>

- 고도 취약지역 예산 미확보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한 추가 육성이 어려워 2014년 성과목표를 전년도 수준인 85%로 함

* 2013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개선(지원대상 43개 군 → 84개 군 확대, 국정과제로 선정)에 따라 지표값 수정 필요

** '119구급센터 설치 확대' 사업 종료('10년도)로 성과지표에서 제외

<해양사고 구조율>

- 과거실적 및 추세 ('10년 96.7%, '11년 96.4%, '12년 96.5%)를 반영, 평균에 0.17%(30여명) 증가한 '13년 목표는 96.7%로 설정, '14년 목표치는 이에 0.1% 증가한 96.8%로 설정.

※ '13년 새정부 출범 이후 "해양사고 30%줄이기 운동" 전개로 모수인 발생인원 감소

- 증액된 예산으로 인력 및 장비 보강, 신규 도입된 경비함정, 연안구조장비 및 항공기 등을 활용 입체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통한 해양사고 구조율 극대화하여 목표치인 96.8%를 달성하고자 의욕적으로 산정

<1-2-1-2.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오형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428	이메일	ohsidcd@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2. 농어촌 보건·의료보장 확대(기본계획 p17~18)

◇ 응급의료 인프라 등 공공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 농어촌 응급의료 체계 개선

- 낙도·오지지역은 헬기·선박이용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 지원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u-Health 시범사업 지원 병행

□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해당없음('14년 신규사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시군구 원격건강관리 운영 지원 : ('13) 4 → ('14) 5개 시군구 확대(신설 1)
* 강원(강릉), 충남(서산, 보령), 경북(영양), 전북(순창)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U-health 인프라 신규 구축(전북 순창)
 -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 만성질환자 건강증진 서비스 시스템 구축
 - U-care연계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

4. 관련 사업 내용

가.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14년(단년도 신규사업)
- 사업 규모(사업량) : 692백만원, 5개 시군구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한 만성질환(고혈압·당뇨)자, 치매환자 원격건강관리 지원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4				692	692	692		1,384
(증)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개소				692	692		1,384
경기								
충북								
충남	2				36	36		72
강원	1				18	18		36
전북	1				540	540		1,080
전남								
경북	1				98	98		196
경남								
제주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13	4							
'14	5				692	692		1,384
'15	6							
'16	7							
'17	8							

5. 성과목표 : 해당사항 없음

<1-2-1-4.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오혜영
전화번호	044-202-2816	이메일	o.hy@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7)

□ 농어촌 응급의료 체계 개선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 군)에 응급의료시설·장비 지원 및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13개 군), 병원급 의료기관(25개 군)이 있는 군은 시설지원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 공공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군병원(2개 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3개 군)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 취약지 응급진료권(6개 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 '10년까지 3개소 확충 → '11년까지 6개소 모두 확충
- 농어촌 이송취약지역(이송시간 30분이상 소요)에 119 구급 지원센터(구급대원 최소 2명 이상, 구급차 1대)를 단계적으로 설치
 - 구급지원센터 추가설치 계획(누계) : ('10) 50개 → ('11) 100 → ('12) 175
- 낙도·오지지역은 헬기·선박이용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 지원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u-Health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병행
 - * 해경·산림청 헬기에 응급의료장비 설치(매년 8대) 및 오백지 헬기 착륙장 건립지원
 - * 해양경찰청 경비선에 응급의료장비 설치(누계) : ('10) 25척 → ('11) 51척 → ('12) 52척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3년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155개소, 의료장비·차량 423개소, 병원선 5대 수리비 등 총 58,801백만원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156개소, 의료장비·차량 903개소, 병원선 5대 수리비 등 총 56,994백만원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농어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사업 규모(사업량) : ('14) 시설개선 156개소, 보건의료장비 831개소, 차량 72개소, 병원선 5척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 2/3, 지방비 1/3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2, 지역보건법 제1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58,801	-	-	-	58,801	30,282	-	89,083
2014	56,994	-	-	-	56,994	28,497	-	85,491
(증△감)	△1,807	-	-	-	△1,807	△1,785	-	△3,592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2개 지자체	56,994	-	-	-	28,497	-	85,491
인천	2	1,197	-	-	-	599	-	1,796
울산	1	336	-	-	-	168	-	504
경기	17	2,744	-	-	-	1,372	-	4,116
강원	16	3,336	-	-	-	1,668	-	5,004
충북	14	5,462	-	-	-	2,731	-	8,193
충남	20	12,112	-	-	-	6,056	-	18,168

	사업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전북	13	4,209	-	-	-	2,105	-	6,314
전남	22	9,546	-	-	-	4,773	-	14,319
경북	25	9,364	-	-	-	4,682	-	14,046
경남	15	7,086	-	-	-	3,543	-	10,629
제주	6	1,574	-	-	-	787	-	2,361
세종	1	28	-	-	-	14	-	42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88	302,995	-	-	-	151,898	-	454,893
'13	155	58,801/ 58,801	-	-	-	29,801/ 29,801	-	88,602/ 88,602
'14	156	56,994	-	-	-	28,497	-	85,491
'15	158	60,565	-	-	-	30,283	-	90,848
'16	159	62,382	-	-	-	31,191	-	93,573
'17	160	64,253	-	-	-	32,127	-	96,38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이용자 만족도	85 /85.1	90 /90.5	90 /90.4	91 /91	91	설문조사	외부리서치기 관 설문조사
이용자 증가율	0.6 /0.89	1.0 /1.14	1.2 /1.48	1.5 /1.55	1.8	시설개선 전후 대 비 이용자 증가율	지자체 보고 자료

<1-2-1-5.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당자	유만진
전화번호	044-202-2533	이메일	mj877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8)

□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 지방의료원(34개)을 공공의료서비스 중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대책 마련
 - * 중소병원의 특성화(노인성질환, 재활 등)로 지역공공의료 체계와 유기적 관계 형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 국고지원 실적(계속)
 - '05년부터 '13년까지 : 총 4,445억원(시설개선 2,833억원, 장비보강 1,610억원) 지원
 - '13년 600억원(시설개선 290억원, 장비보강 310억원)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 계획
 - 36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1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에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예산 575억원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각 병원, 시도 경유)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지방의료원 35개소(개원예정 포함), 적십자병원 5개소

- 사업규모(사업량) : 지방의료원 31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지방의료원), 국비 100%(적십자병원)
- 지원조건
 - (신축) 의료취약지에 위치하며 신축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 (증개축) 미충족의료서비스 및 급성기 2차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 확충
 - (개보수) 노후 등으로 시설개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의료장비) 노후장비 교체 및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장비 필요 등
- 지원내용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신축, 증개축, 개보수, 의료장비 등)
- 법적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59,975			51,975		111,950
2014			57,469			53,229		110,698
(증△감)			△2,506			1,254		△1,252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084		41,084		82,168
서울	1			295		295		590
부산	1			870		870		1,740
대구	1			650		650		1,300
인천	1			3,660		3,660		7,320
경기	5			9,030		9,030		18,060
강원	4			5,379		5,379		10,758
충북	2			4,970		4,970		9,940
충남	3			2,455		2,455		4,910
전북	3			2,045		2,045		4,090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전남	2			2,540		2,540		5,080
경북	4			3,920		3,920		7,840
경남	1			2,000		2,000		4,000
제주	1			3,270		3,270		6,540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은 민간보조사업('14년 4,240백만원)

* 미통지금액 12,145백만원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2,015		255,515		537,530
'13	36/30			59,975/ 54,000		51,975/ 49,000		111,950/ 103,000
'14	36			57,469		53,229		110,698
'15	36			70,380		64,380		134,760
'16	36			74,080		68,080		142,160
'17	36			77,580		71,080		148,66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방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82.8	80.6	83.0	84.2	84.3	의료원 이용자 대 상으로 설문조사	지역거점공공 병원 운영평가 보고서
지역거점공공 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	68.8	69.7	67.5	69.6	69.7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총점수 / 지역거점공공 병원 수	지역거점공공 병원 운영평가 보고서

<1-2-1-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번호	044-202-2809	이메일	hs390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8)

□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 이후 공중보건의 인력을 대체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10)

*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비율: 54.4%,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비율: 70.7%('09.7, 입학 정원기준)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에 공중보건의사를 최우선 배치하여 농어촌 등과 같은 의료취약지 위주로 인력을 적정 배치 하도록 하였음

- '13년 말 기준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이동진료반에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는 총 3,876명 중 3,244명(83.7%)으로 전년 대비 1.9% 상향 배치

※ '12년 3,311명 (81.8%) → '13년 3,244명 (83.7%)

구분	2012년				2013년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합 계	4,046	2,528	569	949	3,876	2,411	485	980
보건(지)소	3,282	1,839	535	908	3,215	1,848	457	910
병원선, 이동진료반	29	15	7	7	29	15	7	7
국·공립병원	305	282	3	20	273	219	1	53
보건단체·복지시설	57	54	0	3	31	30	0	1
교정시설 등	72	53	19	0	69	53	16	0
국가보건기관	122	107	4	11	95	82	4	9
응급의료센터 등	179	178	1	0	164	164	0	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배치
 -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 농어촌 지역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최우선 배치하고,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등에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배치
 -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특성 및 지역현황 등 분석(의료취약 등)을 통한 지역적 특성(농어촌, 도농, 도시형 구분 등)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 마련

4. 관련 사업 내용

- 공중보건의 인건비 외 예산 수반된 내용이 없어 작성 생략

5. 성과목표

- 해당사항 없음

<1-2-1-7. 농어촌 보건의료기술지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오혜영
전화번호	044-202-2816	이메일	o.hy@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7)

□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 기능강화 및 사업모델개발을 위한 지속적·체계적인 기술지원 수행
- 지자체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개선에 대한 전문기술자문 수행
- 보건의료취약지역지표 구축 및 지역현황 진단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등 지역보건기관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 지원 및 지자체 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 관련 전문기술자문 수행
- 보건기관 현지점검·모니터링, 인프라 확충 현황자료 구축 및 사례 발굴·확산 등 농어촌 지역보건기관 시설·장비 구축 현황과약 및 관리 수행
- 지역보건취약지표 보완, 관련 DB 구축·통계분석, 지역보건정책 및 사업에 지표활용 방안 개발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취약지역 선정·지원 체계 구축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도서 오·벽지 공공보건기관 및 지역주민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어촌 지자체 152개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등 지역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사업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전문기술자문 수행
- 법적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지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2(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572	-	-	-	572	-	-	572
2014	620	-	-	-	620	-	-	620
(증△감)	48	-	-	-	48	-	-	48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65	-	-	-	-	-	4,165
'13		572/572	-	-	-	-	-	572/572
'14		620	-	-	-	-	-	620
'15		948	-	-	-	-	-	948
'16		990	-	-	-	-	-	990
'17		1,035	-	-	-	-	-	1,035

5. 성과목표 : 해당사항 없음

<1-2-1-9. 분만취약지 지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당자	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534	이메일	hwon081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기본계획 p17)

□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시설·장비 현대화, 서비스 여건 개선

-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관리, 치매조기검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분만산부인과 신규 4개소, 기존 5개소 설치·운영 지원
- 외래산부인과 기존 2개소 운영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공공형산부인과 신규 19개소 설치를 위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분만취약지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 사업 규모(사업량) : 분만산부인과 10개소, 외래산부인과 10개소, 취약지 순회진료 10개소 지원(14)
- 지원금액 및 형태 : 4,875백만원(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
- 법적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950		3,950	3,950		7,900
2014			4,875		4,875	4,875		9,750
(증△감)			925		925	925		1,85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			4,875		4,875		
강원	2			350		350		
충북	1			250		250		
전남	2			500		500		
경북	3			750		750		
경남	3			600		600		
미통지	19			2,425		2,425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1/11			3,950/3,950		3,950/3,950		7,900/7,900
'14	30			6,485		6,485		12,970
'15	39			6,235		6,235		12,470
'16	44			6,635		6,635		13,270
'17	48			6,635		6,635		13,270

5. 성과목표 : 해당없음

<1-2-2-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하진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805	이메일	trevi9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기획·추진을 통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증대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 통합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보건사업을 설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정보시스템 개편
 - 기존 개별사업 단위 물량중심의 성과평가에서 탈피하여 통합적 평가가 가능토록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 지역주민들의 예방적 건강정책·보건사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실시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조사실시
 - 건강증진사업 인지도, 성과도, 참여도, 만족도 반영하여 조사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산출근거)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60%)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60	61.28	102%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 안정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시행 2년차인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국정과제)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치매검진사업등 국정과제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원
- (통합·연계) 기존 개별사업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대상자 '생활터' 및 '생애주기별' 사업방식 사업의 통합 연계 수행 유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17개 시도, 250시군구
- 사업 규모(사업량) : 17개 시도, 230 시군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96,796백만원,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국비50%, 지방비50%)
-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
- 법적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 영양관리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41조

「장애인 복지법」 제35조, 「구강보건법」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건강검진)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영유아보육법」 제33조(건강진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91,143	91,143	91,143		182,286
2014				96,796	96,796	96,796		193,592
(증△감)				증 5,653	증 5,65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 계					96,796	96,796		193,592
서울					10,528	10,528		21,056
부산					6,346	6,346		12,693
대구					3,485	3,485		6,970
인천					4,285	4,285		8,570
광주					2,463	2,463		4,926
대전					2,099	2,099		4,198
울산					1,914	1,914		3,828
세종					359	359		718
경기					15,693	15,693		31,386
강원					6,719	6,719		13,438
충북					5,067	5,067		10,134
충남					5,836	5,836		11,672
전북					5,606	5,606		11,212
전남					7,873	7,873		15,746
경북					9,282	9,282		18,564
경남					7,424	7,424		14,848
제주					1,816	1,816		3,632

- '14년 군단위 예산배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27,372	27,372		54,744
부산기장군					313	313		626
대구달성군					371	371		742
인천강화군					339	339		678
인천옹진군					188	188		376
울산울주군					371	371		742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경기소계					1,438	1,438		2,876
여주군					403	403		806
연천군					273	273		546
가평군					346	346		692
양평군					416	416		832
강원소계					3,500	3,500		7,000
홍천군					399	399		798
횡성군					303	303		606
영월군					320	320		640
평창군					322	322		644
정선군					311	311		622
철원군					291	291		582
화천군					277	277		554
양구군					359	359		718
인제군					319	319		638
고성군					317	317		634
양양군					282	282		564
충북소계					3,266	3,266		6,532
청원군					479	479		958
보은군					328	328		656
옥천군					387	387		774
영동군					443	443		886
진천군					321	321		642
괴산군					323	323		646
음성군					381	381		762
단양군					350	350		700
증평군					254	254		508
충남소계					2,220	2,220		4,440
금산군					397	397		794
부여군					275	275		550
서천군					336	336		672
청양군					244	244		488
홍성군					318	318		636
예산군					351	351		702
태안군					299	299		598
전북소계					2,486	2,486		4,972
완주군					387	387		774
진안군					348	348		696
무주군					235	235		470
장수군					271	271		542
임실군					305	305		610
순창군					286	286		572
고창군					310	310		620
부안군					344	344		688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전남소계					5,818	5,818		11,636
담양군					328	328		656
곡성군					313	313		626
구례군					253	253		506
고흥군					338	338		676
보성군					316	316		632
화순군					357	357		714
장흥군					404	404		808
강진군					323	323		646
해남군					407	407		814
영암군					345	345		690
무안군					344	344		688
함평군					366	366		732
영광군					331	331		662
장성군					378	378		756
완도군					309	309		618
진도군					330	330		660
신안군					376	376		752
경북소계					3,978	3,978		7,956
군위군					299	299		598
의성군					363	363		726
청송군					267	267		534
영양군					317	317		634
영덕군					329	329		658
청도군					326	326		652
고령군					292	292		584
성주군					338	338		676
칠곡군					359	359		718
예천군					288	288		576
봉화군					298	298		596
울진군					345	345		690
울릉군					157	157		314
경남소계					3,084	3,084		6,168
의령군					276	276		552
함안군					298	298		596
창녕군					291	291		582
고성군					296	296		592
남해군					302	302		604
하동군					379	379		758
산청군					322	322		644
함양군					295	295		590
거창군					300	300		600
합천군					325	325		65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실적/계획	실적/계획			91,143	91,143		182,286
'14					96,796	96,796		193,592
'15					132,504	132,504		265,008
'16					141,318	141,318		282,636
'17					150,452	150,452		300,90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역사회 건강 증진사업 체감도 (단위: 점)				63	65	지역사회 주민 대상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외부위탁기관 조사결과 보고서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지방자치단체)>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 지자체에서 내과, 한방과, 치과 등 치료·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말함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의미
- 강원(5개군), 충북(2개군), 제주(계획 수립) 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임산부를 찾아가 산전점검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추진
- 인천, 충남, 전남, 경남에서 낙도지역 주민을 위해 병원선 운영
- 경북(3개군)에서는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검진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12.7월 ~)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기존 사업을 지속하여 운영할 계획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구분	실적('13)	계획('14)	'13 예산	'14 예산
합 계				7,002	26,248
대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방문등록관리 가구 4,301가구 ('13년말 까지)	방문등록관리 가구 4,500가구 ('14년말 까지)	-	184

지역	사업구분	실적('13)	계획('14)	'13 예산	'14 예산
인천	병원선 이동진료	8,418명 진료 (옹진군 4개면 11개 도서지역)	7,000명	450	650
울산	한방순회 방문진료	30개소 1,820명	29개소, 1,200명	1,000	5
강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925건 진료	5개군(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2,300명	410	410
충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2개군 (괴산, 단양) 783명 진료	2개군 (괴산, 단양) 월 4회(군별 2회)	80	2,728
충남	병원선 도서주민 진료 등	186일 235,271명 진료	6개 군/ 4,151명	664	3,705
전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45,200명 관리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	3,312
전남	섬주민 순회진료, 상비의약품 지원	11개 군/ 184개 도서	11개 군/ 159개 도서	2,754	7,293
	병원선 순회진료 등	11개 군/ 21,532명 진료	11개 군/ 14,449명 진료		
경북	찾아가는 행복병원	8,896명 검진	8,000명 검진	360	36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493,727회	23개 시·군 (5,170백만원)	430	5,170
경남	만성질환자 정기적 관리	118천명	115천명	360	870
	병원선 도서주민 진료	7개시군 2,849명	7/2,932	924	641
제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25,000명 진료	25,000명 진료	-	1,167
세종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등	2,274회/34,075명	2,100회/20,000명	-	263

1-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업인의 기초생활보장강화를 위해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추가 인정 및 농어업과 관련되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 완화
 - 지출요인 추가 인정 :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14.7월)
 - 소득환산기준 완화 :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액과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농지연금 지급
 - 가입연령 완화 :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 * 농지연금 농가가입률(%) : ('13) 17.4 → ('14) 23.0
-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집 고쳐주기(430가구, 주택별 상태에 따라 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를 통해 영세·고령농어업인의 주거 복지 개선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65세~70세)에게 ha당 연 300만원(매월 25만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 '14년 750명(750ha) 신규 추진
- '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76개소 추진
 - 공동생활 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작은 목욕탕 16개소
- 농어촌에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10(신축 7, 리모델링 3)개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및 농촌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
 - * 시설신축비(419백만원/개소),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시 리모델링 비용(50백만원/개소) 지원
 - * 보건지소, 마을회관, 유희시설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개소당 152백만원, 10개소), 운영비(개소당 14백만원, 10개소)

- 부모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 * '13.3월부터 만0~5세에 대하여 보육료 쏠 계층 지원
 - 장애아 및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하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맞벌이 등 일하는 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및 운영 강화
 - 여성친화도시 조성 법적근거 마련(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여성친화도시 지자체 공무원 및 시민리더 등 정책형성 교육 지속 추진(4~11월)
-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확대 추진 : ('05~'13) 658개소 → ('14)156 (신규 80, 기존 76)
-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 819백만원을 투입하여 366명에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 개설·운영
-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농촌 정착과 우수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820명에게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고, 740명의 이주여성농업인에게는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작목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해외에서 이주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4개소)를 통해 한국어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속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일명 코디네이터, 50명), 방문교육지도사(1,400명), 언어발달지도사(300명)를 배치하여 서비스 확대
-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 취약농가에게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고령농어업인,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를 위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지원경로당수 '13년 1,400개소 → '14년 1,600개소)
 - 지원단가 현실화 : 영농도우미(60천원/1일), 가사도우미(10천원(활동비)/1일)
 -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16천 가구)
 -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등(10천 가구)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비예산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33,900	33,900			33,900
영세 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개선							2,200	2,200
경영이양 직불제	61,700				61,700			61,700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4,150				4,150	4,150		8,300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40		1,540	1,540		3,080
농촌 보육여건 개선	29,396				29,396	30,696		60,092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08,174		308,174	326,382		634,556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00		100			100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3,800		3,800	3,800		7,600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0				800	200		1,00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4,489	485	4,974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	1,500				1,500			1,5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40,900	40,900	19,700		60,60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6,400	6,400	2,800		9,200
취약농가 인력지원	7,600				7,600			7,600
농어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비예산
합계	105,146	0	313,614	81,200	499,960	393,757	2,685	896,402

<1-3-1-1.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번호	044-202-3057	이메일	kymrs103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본계획 p19)

□ 빈곤 농어업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립

-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직불금의 범위 확대
 - * 현재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등은 지출비용에 포함되나 경영이양직불금 등은 미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공제되는 기초재산 공제액 특례 합리화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직불금 범위 확대('10.4월)
 - 1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자의 경영이양보조금 지출요인 인정 추가
- 농어업인 소득 및 재산산정에 대한 특례 적용(계속)
-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인정 및 농어업과 관련되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 특례 지속 적용(계속)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추가 인정
 -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추가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14.7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농어업인 가구
 - 사업 규모(사업량) : 별도 추정 불가
 - 지원금액 및 형태 : 별도 추정 불가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적용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추가 인정
 - 농지 1ha미만 소유한 자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 농어민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업과 관련되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 완화
 -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액과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 법적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예산 : 별도예산 없음(기초생활급여 예산으로 운영)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민가구 특례적용 수급가구 수	281	540	552	509	500	해당없음	행복e음 농어민가구 특례수급자

<1-3-2-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담당부서	농지과	담당자	이창학
전화번호	044-201-1742	이메일	lcha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기본계획 p19)

- 농지 외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제 도입
 -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경지면적 3ha 이하
 -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승계 가능
 - 연금운영 시스템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11년부터 시행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8.4~'08.11)
- 수요예측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로 사업수요 타당성 분석('08.7)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한 농지연금사업 시행근거 마련 ('08.12.29 개정·공포)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09.6.30)
: 농지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구체화
- 농지연금 상품모형 개발, 운영시스템 개발, 사업운영지침 마련, 사업홍보 등 사업시행('11년) 준비 완료('10)
- 농지연금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12.12/'13.12)
 - 농지연금 활성화 및 제도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설문내용 : 가입동기 및 결정사유, 만족도, 영농현황 등
 - * 가입만족도 : '12) 69% → '13) 77, 타인에게 추천의향 : '12) 67% → '13) 69
-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13.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감면내용 : 토지가격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면제, 6억원 초과 경우에는 6억에 해당하는 재산세 공제

- 농지연금 모형 재설계 용역('13.4~7, 고려대학교)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등 모형의 기초변수 산정 및 월지급금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 주요결과 : 담보 평가방법(감정평가 도입), 금리 인하(이자율 4%→3, 기대이율 5.11%→4), 가입비 폐지 등
 - 13년말 가입자 2,927호, 월 평균 연금액 81만원, 총 452억원('11~'13)의 연금액 지급
 - 농지연금 제도개선 시행('14.1~)
 - 담보농지 평가방법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가입자가 하나를 선택
 - 가입비 : 농지가격의 2% 부과 → 폐지
 - 금리 : 이자율 인하(4% → 3), 기대이율(5.11% → 4)
- ⇒ 제도개선을 통해 월평균 지급액이 81 → 92만원으로 약 14% 증가 효과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지연금 가입시 가입연령 조건 완화('14.상반기)
 - 가입연령 :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14.1.3~2.18)
- 정책수요자(65세 이상 농지소유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14.12)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 사업 내용('14)
 - 사업 지원대상 :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면적 30,000㎡이하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3,432건(유지건)
 - 지원금액 및 형태 : 33,935백만원
 - 지원조건 : 용자 100%
 - 지원내용 :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의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을 통해 채무회수
 -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3,669	23,669			23,669
2014				33,935	33,935			33,935
(증△감)				10,266	10,266			10,266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누계)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500				216,629			216,629
'13	2,547/ 2,610				23,669/ 22,684			23,669 /22,684
'14	3,432				33,935			33,935
'15	4,500				43,755			43,755
'16	5,500				51,939			51,939
'17	6,500				63,331			63,331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지연금 농가가입율(%)	-	6.7	14.7	17.4	23.0	(당해연도 유지지원 농가수)/(‘11~’25 총 목표농가수)×100 *농지연금 가입목표 농가수 : 15,000농가	운영시스템 등 가입실적 집계

< 1-3-2-2.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박헌춘 전문관
전화번호	044-201-1554	이메일	hcpark7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고령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기본계획 p20)

□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영세고령농의 노후주택 개량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고령농어업인을 위한 집단거주 주택(공동체형 농어민 홈) 조성 추진
 - '10년 도입방안 마련 및 '11년 시범사업 실시
-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등을 활용한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 활성화
 - * (재) 다솜동지복지재단, (사) 한국농촌건축학회 등 활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집 고쳐주기 실시 : 436가구('13.12, 완료)
 - 추진실적(가구) : ('10)190 → ('11)309 → ('12)407 → ('13)436
- 농어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13.5)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발대식 개최('13.6)
 - 슬레이트 지붕개량 : 18가구, 공동생활 홈 조성 : 4가구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3.11)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집 고쳐주기 실시 : 430가구('14.12)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발대식 개최('14.6)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4.11)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 사업 규모(사업량) : '07~'13년까지 6,460백만원, 1,530가구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업대상 주택별 상태에 따라 개·보수 실비 지원
 - 지원내용 : 농어촌 소외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 주택상태에 따라 시급한 부분 개보수(화장실, 부엌, 지붕, 도장, 도배 등)

○ 예산

- 사업기간 : 2014년

- 재원형태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추진(비예산) : 2,160백만원(마사회특별적립금 1,550백만원, 기부금 610백만원)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00	1,550	1,750			1,750
2014			610	1,550	2,160			2,160
(증△감)			410	0	410			410

* 기금 :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기타회계 : (재)다솜동지복지재단 후원금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지자체 사업 신청 물량에 따라 대상가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배분계획 불필요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동)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0			610	1,550			2,16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동)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436/410			610	1,550			2,160
'14	430			610	1,550			2,160
'15	430			610	1,550			2,160
'16	430			610	1,550			2,160
'17	430			610	1,550			2,16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집 고쳐주기 실시(회)	190	309	407	436	430	(재)다솜동지복지재단 자료 확인	(재)다솜동지복지재단

<1-3-2-3. 경영이양 직불제(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기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	최춘태
전화번호	044-201-1772	이메일	ctchoi@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기본계획 p19)

□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내실있게 운영

○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75세까지 최장 10년에 걸쳐 월 250천원/ha 지급

* 경영이양직불제 참가 농가도 복지지원 등 농업인 관련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3ha 이하의 농업경영은 허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보전에 기여
 - 경영이양직불제 시행기간인 '97년~'13년도까지 9만9천7백명에게 4,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인당 연간 4,012천원의 소득지원
- 농지 이양을 통해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경영이양직불제 시행기간인 '97년~'13년도까지 농지 7만2천6백ha를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5ha 영농규모 확대
- 경영이양직불 사업 참여의사 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내실있는 사업 운영
 - 65~70세의 사업 대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수 상담 실시(연중)
 - 기 사업 참여 농업인(1,019명)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9월)
- 생활 체감형 홍보를 통한 고령 농업인의 사업 참여 촉진
 - 좌담회(121회 3천명) 및 찾아가는 고객센터(373회 7천명) 운영
 - 지역케이블방송(8개, 2월), 지역(농업인) 행사 등을 통한 현장 홍보 등
 - 리플릿 30천매, 포스터 10천부, 안내문 70천매, 현수막 167개 제작 배포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도는 고령농업인 750명(750ha)의 신규 경영이양 추진
 - 신규 목표 축소에 따라 감액된 예산에 맞춰 적정 사업 목표 달성
- 공사 지역본부별 신규 경영이양 목표를 배정하고 목표 달성 시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관리 강화(연중)
- 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의 역할 분담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홍보 추진(연중)
 - TV, 라디오 등 매체 이미지광고,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배포(본사)
 - 도청 등 유관기관 협조, 지역축제 등을 통한 이벤트 홍보 추진(지역본부)
 - 「1:1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자체 실정에 맞는 현장홍보 추진(지사)
- 고객만족도 조사·반영,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 내실화 추진
 - 농업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9월) 및 결과 분석(10월)을 통해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및 만족도 제고에 활용

4. 관련 사업 내용

가. 경영이양 직불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령은퇴 농업인(65세~70세,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 사업 규모(사업량) : 617억원 19,798ha(신규이양 750ha, 분할지급 19,048ha)
 - 지원금액 및 형태 : ha당 3백만원/년,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지원조건 : 대상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육성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농업법인 또는 45세 이하 농업인(3년이상 농업경영) 등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임대위탁)
 - *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3,000㎡이하 소유농지는 경작 허용
 - 지원내용 : 신청연령에 따라 6~10년간 매월 ha당 25만원씩 분할 지급
 - 법적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62,304							62,304
2014	61,737							61,737
(증△감)	△567							△567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5,342/ 295,458						295,342/ 295,458
'13	1,952/1,500	62,304/62,420						62,304/62,420
'14	750	61,737						61,737
'15	750	59,619						59,619
'16	750	57,257						57,257
'17	750	54,425						54,42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1인당 경영이양 면적 달성율(%)	118% (계획 0.75ha, 실적 0.89ha)	120% (계획 0.75ha, 실적 0.90ha)	-	-	-	(1인당 경영이양면적 1인당 경영이양목표 면적) × 100	한국농어촌공사 실적보고서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율(%)	-	-	92% (계획 3,000ha, 실적 2,752ha)	130% (계획 1,500ha, 실적 1,952ha)	750ha (100%)	(당해년도 경영이양 달성면적/목표면적) × 100	한국농어촌공사 실적보고서

< 1-3-2-4.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박헌춘 전문관
전화번호	044-201-1554	이메일	hcpark7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기본계획 p20)

□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영세고령농의 노후주택 개량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고령농업인을 위한 집단거주 주택(공동체형 농어민 홈) 조성 추진
 - '10년 도입방안 마련 및 '11년 시범사업 실시
-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등을 활용한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 활성화
 - * (재) 다솜동지복지재단, (사) 한국농촌건축학회 등 활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 고령자의 취약한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다솜동지복지재단)을 통한 농어촌형 공동생활 홈 조성
 - 추진실적(동/세대) : ('11)1/3 → ('12)2/6 → ('13)4/12
-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신규 예산 반영('13.12)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14.1)
- 시범사업 사업대상지 선정계획안 마련('14.1)
- 시범사업 시·군 공모('14.1.24~2.28)
- 시범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대상지 선정(~'14.3)
- 시범사업 공사시행 및 준공('14.4~10)
- 시범사업 성과 평가('14.11)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규모(사업량) : '14년 시범사업 76개소
 - 공동생활 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작은 목욕탕 16개소

- 지원금액 : 8,3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생활 홈 3,600백만원, 공동급식시설 1,500백만원, 작은 목욕탕 3,200백만원
- 지원내용 : 공동시설 확충 사업비(건축 및 설비 등)
 - 부지 매입비 제외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고령 농어업등의 영양개선),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2014	4,150					4,150		8,300
(증△감)	순증					순증		8,3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지자체 사업 신청 후 평가 후 대상지 확정해야 하므로 배분계획 불필요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4	16,600					16,600	33,200
'13	-	-					-	-
'14	76	4,150					4,150	8,300
'15	76	4,150					4,150	8,300
'16	76	4,150					4,150	8,300
'17	76	4,150					4,150	8,3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공동시설 구축(개소)	-	-	-	76	76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행정조사

<1-3-3-1. ①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육기반과	담당자	양진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579	이메일	jhyang8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0)

□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확충

- 농어촌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20개소씩 확충 (소규모 어린이집 포함)
 - * 전체 농어촌 보육시설('09) 6,504개소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426개
- 아동수가 적지만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 마을회관, 유희공공시설, 보건지소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 * ('09) 10개소(시범사업) → ('11) 20 → ('14) 50
- 농어촌 보육시설에 영아(0~2세)반 설치를 위한 지원 확대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3년 전체 농어촌어린이집 8,269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569개소 ('13.12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13년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 설치 지원* (신축 14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
 - * 농어촌지역 소규모보육서비스 제공사업 중 “농어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로 이관 →해당 실적(목표 10개소)에서 제외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읍·면)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설치 지원 (기능보강 사업비)
 - * 국공립 신축 7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3개소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정인 농어촌 지역(읍·면)
- 사업 규모(사업량) : 10개소 (신축 7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3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신축비 지원 : 419백만원/개소 (지방비 포함)
 - 공동주택리모델링 : 50백만원 (지방비 포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금 지원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515			2,515		5,030
2014			1,542			1,542		3,084
(증△감)			△973			△973		△1,946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어린이집기능보강의 내역사업(일반회계)

** '13년은 집행 실적, 14년은 집행계획 예산임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542		1,542		3,084
..								
..								
..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시설 선정 중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6/15			2,515		2,515		4,902
'14	/10			1,542		1,542		3,084
'15	/10			1,542		1,542		3,084
'16	/10			1,542		1,542		3,084
'17	/10			1,542		1,542		3,084

* '14년이후 국공립 확충은 10개소(신축 7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3개소)임

** '12년부터 농어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확충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목표치를 제외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6/16	25/22	14/13	16/15	/10	농어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	지자체를 통한 자료 취합

* '12년도 사업목표치 23개소 중 10개소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로 이관되어 실적에서 제외

<1-3-3-1. ②농촌 보육여건개선(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강봉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6	이메일	kangbg2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0)

□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 확충

- 농촌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20개소씩 확충
 - * 전체 농어촌 보육시설('09) 6,504개소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426개
- 아동수가 적지만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 마을회관, 유희공공시설, 보건지소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 * ('09) 10개소(시범사업) → ('11) 20 → ('14) 50
- 농촌 보육시설에 영아(0~2세)반 설치를 위한 지원 확대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6개소 설치(이동식놀이교실 3개소 포함)
- 농촌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42,940명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10개소 지원
 -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4백만원(국비 정액지원)
- 농촌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 : 44천명(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 규모(사업량) : (시설비) 10개소, (운영비) 38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운영비) 개소당 최대 17백만원
- 지원조건 : (시설비) 국비 70%, 지방비 30%, (운영비) 국비 정액지원
- 지원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810	-	-	-	4,810	1,732	-	6,542
2014	1,482	-	-	-	1,482	456	-	1,938
(증△감)	△3,328	-	-	-	△3,328	△1,276	-	△4,60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사업대상지 미지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6	7,408	-	-	-	2,071	-	9,479
'13	6/36	820/4,810	-	-	-	247	-	1,067
'14	10	1,482	-	-	-	456	-	1,938
'15	10	1,592	-	-	-	456	-	2,048
'16	10	1,702	-	-	-	456	-	2,158
'17	10	1,812	-	-	-	456	-	2,268

나.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 사업 규모(사업량) : 44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27,914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40~60%(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지방비 40~60%
- 지원내용 : 농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7,914	-	-	-	27,914	30,240	-	58,154
2014	27,914	-	-	-	27,914	30,240	-	58,154
(증△감)	-	-	-	-	-	-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4,056	27,914	-	-	-	30,240	-	58,154
부산	790	490	-	-	-	553		1,043
대구	950	652	-	-	-	602		1,254
인천	145	90	-	-	-	101		191
광주	100	73	-	-	-	59		132
울산	1,060	700	-	-	-	699		1,399
세종	410	254	-	-	-	287		541
경기	11,413	7,382	-	-	-	7,683		15,065
강원	2,250	1,396	-	-	-	1,574		2,970
충북	2,835	1,796	-	-	-	1,946		3,742
충남	4,681	2,904	-	-	-	3,275		6,179
전북	2,000	1,267	-	-	-	1,373		2,640
전남	3,427	2,126	-	-	-	2,398		4,524
경북	4,500	2,851	-	-	-	3,089		5,940
경남	5,300	3,358	-	-	-	3,638		6,996
제주	3,057	1,897	-	-	-	2,139		4,035
유보	1,138	678	-	-	-	824		1,502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2,112	148,967	-	-	-	157,421	-	306,388
'13	44,056	27,914	-	-	-	30,240	-	58,154
'14	44,056	27,914	-	-	-	30,240	-	58,154
'15	46,000	29,753	-	-	-	30,967	-	60,720
'16	48,000	31,046	-	-	-	32,314	-	63,360
'17	50,000	32,340	-	-	-	33,660	-	66,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10/10	10/10	7/10	6/36	-/10	어린이집 확충 개수	지자체

* '1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부 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

<1-3-3-3.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오춘수
전화번호	044-202-3562	이메일	ocsoch@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0)

□ 영·유아 양육비 지원수준 상향 및 중·장기적 무상보육 추진

- 시설이용 지원 : ('09) 70% → (12P) 90% 수준
- 시설미이용 지원 : ('09) 35% → (12P) 60% 수준

* '09년 7월부터 하위 50%에 대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보건복지부)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어린이집 이용아동>

- 보육료 지원 대상 지속적 확대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구 분	'11.3월~	'12.3월~	'13.3월~	'14년
만0~2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가구	영유아가구 전체층	어린이집 이용 아동 영유아가구 전체층	어린이집 이용 아동 영유아가구 전체층
만3~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가구		
만5세		영유아가구 전체층		

-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의 보육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비 지원('12년 및 '13년) 및 '14년 국고 보조율 인상
 - 보육 예산에 대한 지방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고자 '14년부터 국고보조율 15%p 인상

3. 2014년도 추진 계획

<어린이집 이용아동>

- 부모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추진('14.1월~)
 -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 '13.3월부터 만0~5세에 대하여 보육료 쏠 계층 지원
 - 장애아 및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하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맞벌이 등 일하는 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표준보육비용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15년 적정 보육 지원단가 지원 추진 ('15년 예산요구, '14.6월)
-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보육예산 편성 현황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14.3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장애아는 만12세 이하)
 - 사업 규모(사업량) : 1,011천명('14년 예산 기준)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 지원조건 : 소득 계층에 구분 없이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2,736,051	-	2,736,051	2,692,622		5,428,673
2014	-	-	3,329,228	-	3,329,228	1,727,368		5,056,596
(증△감)	-	-	593,177	-	593,177	△965,254		△372,077

* 2013년 예산현액 기준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11,000			3,329,228		1,727,368		5,056,596
서울	164,631			347,839		434,616		782,455
부산	50,747			194,755		67,927		262,682
대구	43,043			162,739		54,246		216,985
인천	55,654			208,598		71,926		280,524
광주	34,861			132,258		44,086		176,344
대전	32,147			135,327		45,109		180,436
울산	23,314			89,137		32,736		121,873
세종	3,517			9,777		5,264		15,041
경기	269,451			966,739		452,315		1,419,054
강원	31,049			88,078		47,427		135,505
충북	35,431			106,337		45,244		151,581
충남	47,447			141,374		76,124		217,498
전북	40,166			138,787		58,575		197,362
전남	38,626			107,898		53,302		161,200
경북	50,150			186,637		83,168		269,805
경남	72,260			259,528		126,538		386,066
제주	18,506			53,420		28,765		82,185

< '14년 시도별(군지역) 배분내역 >

	시도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총계			308,174		326,382		634,556
영유아 보육료	합계			218,318		114,229		332,548
	부산기장			9,966		5,366		15,332
	대구달성			16,198		5,399		21,597
	인천소계			2,969		1,596		4,565
	울산울주			14,708		7,920		22,628
	경기			10,694		5,756		16,450
	강원			17,017		9,162		26,179
	충북			30,076		16,194		46,271
	충남			18,912		10,185		29,097
	전북			17,655		9,506		27,161
	전남			34,709		18,692		53,401
	경북			23,711		12,768		36,479
	경남			21,703		11,685		33,388
가정 양육 수당	합계			89,856		47,123		136,979
	부산기장			3,859		2,078		5,937
	대구달성			6,121		2,040		8,161
	인천소계			1,399		753		2,152
	울산울주			6,480		3,490		9,970
	경기			3,875		2,086		5,961
	강원			7,763		4,180		11,943
	충북			12,318		6,632		18,950
	충남			7,263		3,910		11,173
	전북			6,717		3,616		10,333
	전남			15,723		8,465		24,188
	경북			9,958		5,361		15,319
	경남			8,380		4,512		12,892
누리 과정 보육료	합계					165,030		165,030
	부산기장					4,628		4,628
	대구달성					3,094		3,094
	인천소계					800		800
	울산울주					658		658
	경기					5,087		5,087
	강원					56,901		56,901
	충북					17,670		17,670
	충남					14,998		14,998
	전북					9,545		9,545
	전남					21,694		21,694
	경북					16,454		16,454
	경남					13,501		13,501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475			2,736,051		2,692,622		5,428,673
'14	1,011			3,329,228		1,727,368		5,056,596
'15	-			2,314,644		2,370,870		4,685,514
'16	-			2,342,727		2,399,635		4,742,362
'17	-			2,363,560		2,420,974		4,784,534

* 15년~17년은 13년~17년 중기재정 예산액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비율(%)	-	70 (신규)	88	100	100	전액지원아동수/ 전체 이용아동수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통계자료

<1-3-3-4.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최영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075-4634	이메일	cyh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0)

□ 농어촌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 지역정책에 여성의 참여 제고 등 농어촌여성의 주류화 기반 마련
 - 공공시설 유모차대여 및 수유실 설치, 여성 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농어촌 특성에 맞게 개발
 -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 및 컨설팅 실시('11)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12년 39개→'13년 50개/10~11월/계속)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추진계획의 내용 및 기대효과 등 고려, 신규 도시 확대
-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확대('13년 태안군 지정)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여성친화도시 지정요건 강화 및 내실화 추진
-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및 운영 강화
 - 여성친화도시 조성 법적근거 마련(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여성친화도시 지자체 공무원 및 시민리더 등 정책형성 교육 지속 추진 (4~11월)
 -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지역 컨설팅 강화
-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우수 지자체 지원
 - 우수사업 발굴 예산 지원 및 우수 지자체 포상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형성 교육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여성친화 지정도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리더, 의회의원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360명 교육
- 지원금액 및 형태 : 35백만원(위탁사업)
- 지원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5					35
2014			35					35
(증△감)			-					-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3	320명			35				35
'14	360명			35				35
'15	360명			50				50
'16	360명			50				50
'17	360명			50				50

나.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 발굴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여성친화도시 50개소
 - 사업규모 : 3개 사업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60백만원, 국고보조(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내용 : 여성친화도시 우수모델 개발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13			60					60
2014			60					60
(증△감)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공모를 통해 시도별 배분내역 추후 결정(하반기)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3	3개소			60				60
'14	3개소			60				60
'15	5개소			100				100
'16	5개소			100				100
'17	5개소			100				1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정책형성교육 참여자 수	279	280	301	354	360	정책형성교육 참여자 수 집계	교육결과 보고서

<1-3-3-5.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자원과(팀)	담당자	이병석
전화번호	031)299-2676	이메일	byeong1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기본계획 p.19)

□ 농지 외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제 도입

-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경지면적 3ha 이하
 -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승계 가능
- 연금운영 시스템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11년부터 시행

□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내실있게 운영

-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75세까지 최장 10년에 걸쳐 월 250천원/ha 지급
- * 경영이양직불제 참가 농가도 복지지원 등 농업인 관련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3ha 이하의 농업경영은 허용

□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영세고령농의 노후주택 개량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고령농업인을 위한 집단거주 주택(공동체형 농어민홈) 조성 추진
 - '10년 도입방안 마련 및 '11년 시범사업 실시
-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등을 활용한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 활성화
- * (재) 다솜등지복지재단, (사)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한국해비타트) 등 활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노인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년생활문화조성(완료)

- 노년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658마을)
- * ('11) 148개소(신규 82) → ('12) 163(신규 23) → ('13) 158(신규 53)
- * '13년 사업량: 158개소(1년차 53, 2년차 23, 3년차 82)
- 사업 수혜자 생활만족도 향상: ('11) 72.1% → ('12) 74.7 → ('13) 78.7
-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도 증가(1인당): ('11) 8.4회 → ('12) 10.5 → ('13) 10.7

- 농촌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자생적인 상호 돌봄 문화 조성: 10개소
 -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 기술시범, 농촌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시범
- 농촌노인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 및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완료)
 - 담당공무원 및 마을지도자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교육 (4월 120명)
 - 사업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7~10월): 5개소
 - 건강한 노년생활모델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 실시(11월)
 - * 건강장수문화 우수실천마을(5개소), 공무원(4명)
 - 2013년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성과분석(9~11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11~'13년 선정마을 주민 생활만족도 조사 * 사업대상 마을 78.7 > 인근 마을 68.2

우수사례 : 경기 화성 독정마을

- 사업기간 및 참여 노인수 : 2011~2013년 사업, 참여자 98명(고령화율 64%)
- 주요성과
 - (건강한 마을) 건강체조·웃음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78회)
 - (학습하는 마을) 풍물교실·서예·한지공예 등 운영(326회)
 - (안전한 마을) 벼 마을 공동재배(휴경지), 매실나무 식재(260주)
 - (활력있는 마을) 마을벽화, 한과제조, 사물놀이, 체조 참여(306명)



(쌀뽕튀기 만들기 시연)



(화분만들기 실습)



(사물놀이 연습장면)

* 2013 지역발전사업 평가(지역발전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2012 청 경진평가 최우수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확대 추진
 - 사업량 : ('05~'13) 658개소 → ('14)156 (신규 80, 기존 76)
 - * '17년까지 1,000마을 육성 목표

- 농촌노인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프로그램 지원, 학습·사회활동, 생활환경 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4영역을 중점 지원
 - 농촌건강장수마을 담당자 업무 협의회 및 연찬회 (3월)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조사(5~9월)
 - 사업 추진 시 발생된 문제점 해결 및 사후관리방안 모색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평가회 및 건강장수문화 우수실천 경진(11월)
 - 사업완료 마을의 경진 참여로 사후 관리 강화 및 건강장수문화 지속독려
 - 최근 3년간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성과분석(10~11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마을민간 합의 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정이 완료된 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156개소(1년차 80, 2년차 53, 3년차 23)
 - 지원금액 및 형태 : 7,582백만원, 개소당 연 40~50백만원(3년간 지원)국비/지방비 각 50%
 - 지원조건 : 마을주민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지역 중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 지원내용
 - 노년에 적절한 소일거리 및 저강도의 소득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
 - 평생학습·사회활동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생활 및 건강생활 환경정비 지원
 - 농촌에 부족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보완하여 노인의 안전 돌봄 체계 구축
 -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농촌전통 문화자원 발굴 및 계승을 위한 지원
 -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국가의 재정적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지역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3,935			3,935		7,870
2014			3,791			3,791		7,582
(증감△)			△144			△144		△288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6			3,791		3,791		7,582
경기	7			175		175		350
강원	56			1,400		1,400		2,800
충북	9			225		225		450
충남	7			175		175		350
전북	10			250		250		500
전남	15			375		375		750
경북	12			300		300		600
경남	33			752		752		1,504
부산	2			44		44		88
광주	2			45		45		90
대전	1			25		25		50
울산	2			25		25		5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87		22,430			22,430		44,860
'13	158		4,205			4,205		8,410
'14	151		3,775			3,775		7,550
'15	188		4,700			4,700		9,400
'16	195		4,875			4,875		9,750
'17	195		4,875			4,875		9,75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수혜자 생활만족도 (점수)	71.5	72.1	78.7	80.0	80.0	최근 3년간 사업지역 수혜 노인 생활만족도	외부전문기관 설문조사

<1-3-3-6.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최상열
전화번호	044-202-7311	이메일	dasalja@moel.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고령·취약농,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기본계획 p21)

□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복지지원 확대

- 교육·복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농어촌형 드림스타트(0~12세)모델 제시)
- 위기 청소년 상담·보호·의료·자립 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CYS-net) 구축 및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서비스(방과 후 지원) 확대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단위: 명, %)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				중도탈락	중도탈락률
			소계	조기취업	수료후취업	취업률		
'13년	715	631	236	25	211	36.0	59	8.3

※ '13년 12월말 기준임(취업률은 훈련종료후 6개월까지 실적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변동 됨)

※ 취업률: (조기취업+수료후취업)/(수료인원+조기취업),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수/실시인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훈련목표 및 예산 : 366명(819백만원)
- 훈련계획 심사 및 예산 배정 : '14년 2월
- 지자체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 개설 및 훈련실시: '14.3월~12월(연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에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사업 규모(사업량) : 366명('13년)
 - 지원금액 및 형태 : 81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 대 지방비 매칭비율 80:20)
 - 지원내용 : 훈련비(훈련기관), 훈련수당(훈련생)
 - 법적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63/819					266/205		1,029
2014	819					205		1,024
(증△감)	△56					61		5

* 2014년 계획금액으로 작성(지방비는 80:20매칭 비율로 작성)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6	819				205		1,024
세종	8	17				4		21
부산	43	95				24		119
강원	21	48				12		60
충남	131	293				73		366
전북	21	48				12		60
전남	85	190				48		238
경북	26	59				15		74
경남	31	69				17		86

* 사업규모 및 예산은 가안으로 추후 최종 결정 예정(지방비는 매칭비율 기준)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79	4,039				1,086		5,125
'13	715/366	763/819				266/205		1,029
'14	366	819				205		1,024
'15	366	819				205		1,024
'16	366	819				205		1,024
'17	366	819				205		1,024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수료자 취업률	44.0	44.5	43.8	43.8	43.9	[수료후 취업자수 (조기취업 포함) /수료자수(조기취업 포함)] * 100	지자체 보고자료
훈련참여자 만족도	78.6	80.0	83.0	83.0	84.0	5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한국산업인력 공단 모니터링 조사결과보고서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지방자치단체)>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3년 말까지 추진 실적

- 전북도 2개소 여성농어업인센터 개보수 실시,
- 이 외에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 교육, 문화활동 등 운영 실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교육 및 문화활동 소요 경비 등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 시도별 여성농어업인센터 현황 >

(단위: 개소수, 백만원)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13)	개소수('14)	'13 예산	'14 예산
합 계				5,001	4,974
경기	운영지원	3	3 (용인, 이천, 여주)	327	273
강원	운영지원	2	2 (양구, 횡성)	218	220
충북	운영지원	3	3 (청주, 청원, 영동)	420	435
충남	운영지원	4	4 (서천, 홍성, 예산2)	520	520
전북	운영지원	8	8 (남원2,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2)	1,040	1,040
전남	운영지원	4	4(나주, 고흥, 무안, 장성)	451	520
경북	운영지원	2	2 (안동, 영양)	226	226
경남	운영지원	7	7(창원, 진주, 사천, 함안, 거창, 합천, 고성)	870	870
제주	운영지원	8	8개소(제주4, 서귀포4)	929	870

<1-3-41.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강봉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6	이메일	kangbg2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어촌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기본계획 p21)

□ 결혼이민자 영농정착 지원 강화

-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여성농업인(후견인)을 연계한 1:1 맞춤형 영농 교육 확대 및 기초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추진

* 맞춤형 영농교육/ 기술 및 경영교육 : ('09) 700/500명 → ('14p) 2,500/2,50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 884명('09년 이후 누계 : 2,740명)
-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형 농업교육 : 722명('09년 이후 누계 : 3,291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 820명
-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형 농업교육 : 740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한국어 등 기초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영농의사가 있는 농촌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여성
- 사업 규모(사업량) : 82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960백만원(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지원
- 지원내용 : 농업일반,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등 집합교육 실시
- 법적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900	-	-	-	900	-	-	900
2014	960	-	-	-	960	-	-	960
(증△감)	60	-	-	-	60	-	-	6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 민간보조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254	5,460	-	-	-	-	-	5,460
'13	600/884	900	-	-	-	-	-	900
'14	820	960	-	-	-	-	-	960
'15	850	1,200	-	-	-	-	-	1,200
'16	850	1,200	-	-	-	-	-	1,200
'17	850	1,200	-	-	-	-	-	1,200

나.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형 농업교육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한국어 소통 가능하고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
- 사업 규모(사업량) : 74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566백만원(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와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목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26	-	-	-	426	-	-	426
2014	566	-	-	-	566	-	-	566
(증△감)	140	-	-	-	140	-	-	14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 민간보조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12	4,112	-	-	-	-	-	4,112
'13	700/722	426	-	-	-	-	-	426
'14	740	566	-	-	-	-	-	566
'15	750	1,040	-	-	-	-	-	1,040
'16	750	1,040	-	-	-	-	-	1,040
'17	750	1,040	-	-	-	-	-	1,04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563/500	581/500	712/500	884/600	/600	교육수료인원	교육결과 보고
이민여성농업인 1:1맞춤 농업교육	636/600	655/600	650/600	722/650	/650	"	"

<1-3-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정책과	담당자	송재은 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29	이메일	sartzche@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어촌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기본계획 p21)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 확대

- 지역 사회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자녀 언어발달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센터 접근성이 낮은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및 아동양육)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10년 159개소 → '13년 211개소)
 -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서비스 등 실시('13년 연인원 1,690천명)
 - 방문교육서비스 확대(방문지도사 '13년 2,890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12년부터, 단계별 80시간 → 100시간)
- * 센터 한국어교육 사업비 예산 확충(센터당 10백만원 증, '12년 예산안 반영)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건가-다가 통합센터시범 운영('14년 10개소)
-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 지자체 권한 강화 및 부처간 한국어교육 협의체 구성·운영

- 다문화가족사례관리('13~)
 -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시기부터 안정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타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도우미 역할 수행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개소 50명 배치

4. 관련 사업 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 사업 규모(사업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4개소(국비 211, 지방비 3)
 - 지원금액 및 형태 : 40,903백만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 (서울50%, 지방70%)
 - 지원내용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나눔봉사단 및 자조모임의 운영 지속 및 확대
 -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3,647		21,002		64,649
2014				40,903		19,735		60,638
(증△감)				△2,744		△1,267		△4,011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903	19,735		60,638
서울					3,859	3,859		7,718
부산					1,673	717		2,390
대구					1,383	593		1,976
인천					1,982	849		2,831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광주					793	340		1,133
대전					946	405		1,351
울산					895	383		1,278
세종					158	68		226
경기					6,801	2,915		9,716
강원					2,470	1,058		3,528
충북					2,263	970		3,233
충남					2,682	1,149		3,831
전북					2,773	1,188		3,962
전남					3,725	1,597		5,322
경북					4,301	1,843		6,145
경남					3,697	1,584		5,281
제주					502	215		71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4,770	104,875		319,645
'13	212개소				43,647	21,002		64,649
'14	212개소				40,903	19,735		60,638
'15	212개소				42,130	20,751		62,881
'16	212개소				43,394	21,373		64,767
'17	212개소				44,696	22,014		66,71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1,235천명 (연인원)	1,621천명 (연인원)	1,656천명 (연인원)	78천명 (실인원)	-	평균 이용자 수 추계 및 '14년도 센터 개소 수(212개) 반영	사업결과보고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					12천명 (연인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이 용자 수	사업결과보고서

※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마련으로 '14년부터 센터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성과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센터이용자 수'는 단순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실제 다문화가족의 갈등 해소에 미약한 지표이므로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 자녀갈등 등의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에 기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지표로 판단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 지표로 변경

<1-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정책과	담당자	이조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24	이메일	ejo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농어촌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기본계획 p21)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 확대

- 지역 사회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자녀 언어발달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센터 접근성이 낮은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및 아동양육)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방문지도,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교육 지원
 - * 한국어지도사(온라인 269명, 오프라인 281명), 가족생활지도사(온라인 280명, 오프라인 315명),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활동
-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배치, 센터내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보육 시설 파견을 통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지원서비스 운영
 -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자녀의 알림장, 준비물 챙겨주기 등 원활한 가족·학교생활 지원('13년 방문교육지도사 1,400명)
-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
 - 언어발달지도사 300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 센터 및 보육시설에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13년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 사업 규모(사업량) :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6,424백만원(자치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서울 50%, 지방 70%)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 중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자녀에 대해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 등 언어발달교육 실시
-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 보육·교육)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6,424		2,796		9,220
2014				6,424		2,797		9,221
(증△감)						1		1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0				5,783	2,797		8,580
서울	39				559	559		1,118
부산	15				302	129		432
대구	10				199	85		284
인천	14				278	119		397
광주	10				199	85		284
대전	10				203	87		289
울산	10				199	85		284
세종	1				21	9		29
경기	41				816	350		1,166
강원	19				381	163		544
충북	14				278	119		397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충남	18				364	156		397
전북	23				463	199		520
전남	23				463	199		662
경북	23				460	197		657
경남	25				505	216		721
제주	5				93	40		133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688	15,120		49,808
'13	300명				6,424	2,796		9,220
'14	300명				6,424	2,797		9,221
'15	300명				6,924	3,022		9,946
'16	300명				7,280	3,173		10,453
'17	300명				7,636	3,332		10,968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1,235천명 (연인원)	1,621천명 (연인원)	1,656천명 (연인원)	78천명 (실인원)	-	평균 이용자 수 추계 및 '14년도 센터 개소 수(212 개) 반영	사업결과보고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					12천명 (연인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이 용자 수	사업결과보고서

※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마련으로 '14년부터 센터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성과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센터이용자 수'는 단순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실제 다문화가족의 갈등 해소에 미약한 지표이므로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 자녀갈등 등의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에 기여 척도를 가름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지표로 판단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 지표로 변경

< 1-3-5-1 : 취약농가 인력지원(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김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jihyun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고령·취약농,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기본계획 p21)

□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확대 및 고령·취약 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다양화

- 영농도우미 상한연령 상향(70세 → 75세) 및 지원기간 확대(10일 → 15일) 추진 및 농어촌 경로당 지원 등 가사도우미 다양화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고·질병 및 고령농 등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추진
- 취약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영농도우미,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조건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영농도우미 지원 조건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 지원조건 : ('10) 10일 이상 입원 → ('13) 입원일수(3~10일)에 따라 차등 지원
 -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12) 930개소 → ('13) 1,400 → ('14) 1,600
 - 지원 실적

(단위 : 천가구, 백만원)

연도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10	30	6,520	15	5,460	15	1,060
'11	28	6,520	15	5,460	13	1,060
'12	25	6,300	15	5,460	10	840
'13	25	6,300	15	5,460	10	84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취약농가의 영농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도우미 지속 지원(연중)
- 고령농어업인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복지부와 협의하여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에 신규포함 사업 추진
- 가사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추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취약농가 인력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26천 가구(영농 16천 가구, 가사 10천 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 보조
 - 영농도우미 : 1일당 60천원
 - 가사도우미 : 1일당 10천원(활동비)
 -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 자부담 30%, 최대 10일
 - 가사도우미 : 국고 70%, 농 협 30%, 최대 12일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가사도우미 : 취약 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 가사활동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140				7,140			7,140
2014	7,560				7,560			7,560
(증△감)	420				420			42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천가구)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9	45,164						45,164
'13	25	7,140						7,140
'14	26	7,560						7,560
'15	26	8,960						8,960
'16	26	10,416						10,416
'17	26	11,088						11,088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고객 만족도(%)	92	93	93	93	93	5분위 척도 중 상위 2분위까지를 만점으로 환산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보고서

< 1-3-5-2 :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김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jihyun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고령·취약농,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기본계획 p21)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업인 대상 복지시책을 리플릿 제작 및 배부를 통해 홍보
 - 복지시책 리플릿 작성 배포 : 총 16만부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복지시책 안내를 위한 홍보리플릿 배포 추진
 - 복지시책 리플릿 작성 배포 : 총 16만부(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별도 사업은 아님)

- 사업 내용
 - 사업 규모(사업량) : 홍보리플릿 16만부
 - 지원내용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등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공단 및 농협에 배포
- 예산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 없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홍보추진실적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홍보실적 유무	관련보고서 및 공문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지역주민, 귀촌인력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60개소, 개소당 50백만원) 지원
- 지역농협 행복나눔센터 신규 지원 및 지속 확대 추진
 - '13년 제출한 25개소의 사업추진 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승인(2/4분기), 대상지 확정 및 복지사업 시설 설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4.12월)
 - *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보완 발전시켜 **연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시설을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하고 농촌의 수요에 맞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농협 종합센터**
-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농업인 복지사업을 확대('14년 560개소)제공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1,500				1,500	750	750	3,000
농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선							3,700	3,700
합계	1,500	0	0	0	1,500	750	4,450	6,700

<1-4-1-1. 농촌공동체회사 육성(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김희중(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2	이메일	kimhj120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기본계획 p.22)

- 농어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확산, 도농교류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지역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 * 연구용역('09.12)을 토대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회사 모델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육성방안 마련('10)

4-2. 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3) 농어촌 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 및 다각화(p.47)

- 체험·휴양사업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도농교류형 '농어촌공동체 회사'로 발전토록 유도
 - 농가 레스토랑, 체험학교, 마을문화공방 등 소규모 경영모델 발굴·육성
 - * 농업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도농교류형 농어촌공동체회사 100개소 발굴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54개소, 1,350백만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 공동체 사례 발굴('13.12월)
 - 내남마을 등 24개 사례
- “농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실시('13.5월)
 - 농촌공동체회사 수 725개, 전체 매출액 약 8,015억원, 평균고용인원 22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홍보) 사회서비스제공 농촌 공동체회사 사례집 발간('14.2, 1,600부), 및 사회서비스형 수요발굴, 업무이해도 증진을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14.2)
 - * 민간 공동체 사례 14개, 지자체 사회서비스제공 사례 등 20개 사례 수록

- (선정) 시도별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대상자선정 (‘14.3월, 60개소), 예산지원 실시(‘14.4월)
- (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설치·운영(‘14.1월부터 연중)
 - 우수사례 발굴, 성공모델 확산, 상담, 교육, 경영컨설팅, 현장 모니터링 등
- (정책 현황자료 수집) “농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실시(‘14.5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지역주민, 귀촌인력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
 - 사업규모(사업량) : 30억원, 전국 60개소 지원(개소당 5,000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농특)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지원내용 :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 중단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9조의3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350				1,350	675	675	2,700
2014	1,500				1,500	750	750	3,000
(증)	150				150	75	75	300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3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	1,500				750	750	3,000
경기	3	75	-	-	-	37.5	37.5	150
강원	9	225	-	-	-	112.5	112.5	450
충남	5	125	-	-	-	62.5	62.5	250
충북	4	100	-	-	-	50	50	200
경남	5	125	-	-	-	62.5	62.5	250
경북	6	150	-	-	-	75	75	300
전남	17	425	-	-	-	212.5	212.5	850
전북	9	225	-	-	-	112.5	112.5	450
제주	2	50	-	-	-	25	25	1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4	7,350	-	-	-	3,675	3,675	14,700
'13	54	1,350	-	-	-	675	675	2,700
'14	60	1,500	-	-	-	750	750	3,000
'15	60	1,500	-	-	-	750	750	3,000
'16	60	1,500	-	-	-	750	750	3,000
'17	60	1,500	-	-	-	750	750	3,000

나.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사업규모(사업량) :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35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실태조사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공동체회사 매뉴얼 작성, 교육 및 컨설팅,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등 지원센터 활용 비용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제19조의3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35				135	-	-	135
2014	135				135	-	-	135
(증△감)	-				-	-	-	-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세로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재원명을 별도기재
- * 2013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675	-	-	-	-	-	
'13	1	135	-	-	-	-	-	135
'14	1	135	-	-	-	-	-	135
'15	1	135	-	-	-	-	-	135
'16	1	135	-	-	-	-	-	135
'17	1	135	-	-	-	-	-	135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 [참고 2]의 성과지표와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의 목표치 등을 참고하여 '14년도까지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작성

- 예시)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참고 2]의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2014년 성과목표를 75%로 함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촌공동체회사 평균 매출액 증가율(%)	-		신규	전년비 10%	전년비 10%	[(당년도 평균매출액- 전년도 평균매출액)/ 전년도 평균매출액]×100	당년도 사업 지원대상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행정조사 실시 * 매출액이 없는 사회복지서비스제 공형 농촌공동체회 사는 제외

< 1-4-3-1. 농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김희중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2	이메일	kimhj120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4 농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기본계획 p22)

□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지원

- 취약 및 소외지역에 복지시설 우선 설치 또는 시설 다기능화 유도
- 농·수협 등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를 통해 농어촌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 농협은 2005년부터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현재 446개), 지역농협에서 건강교실, 치매예방프로그램, 농촌사랑자원봉사단, 여성 및 청소년취미교실 등 진행

2. 2013년 말까지 추진 실적

- 기존 지역농협의 지역문화복지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종합적이고 상시 운영 가능한 행복나눔센터로 육성
 - 지역문화복지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실태 파악, 등급화 및 계량화, 지역별 특화된 사업모델 개발 등

3. 2014년도 추진 계획

농업인 행복나눔센터란?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보완 발전시켜 연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시설을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고 농촌의 수요에 맞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농협 종합센터

- 지역농협 행복나눔센터 신규 지원 및 지속 확대 추진(계속)
 - '13년 제출한 25개소의 사업추진 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승인(2/4분기)
 - 대상지 확정 및 복지사업 시설 설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4.12)
 - * 향후 계획 : '17년까지 100개소 육성
- 행복나눔센터와 별개로 기존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도 지속 추진
 - * '14년 계획 : 560개소 운영

4. 관련 사업 내용

○ 지역농협 행복나눔센터 지정 및 육성

- 주요내용 :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복지센터를 개선(기능보강 및 상시운영 등)하여 농업인에 대한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행복나눔센터'로 육성

→ 농협을 통해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기반 구축

< 지역문화복지센터와 행복나눔센터의 비교 >

구 분	지역문화복지센터	농업인 행복나눔센터
운영일수 기준	기준 없음	연간 상시 운영
연간 사업계획 제출	무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사업별 전용면적	기존시설 병행	전용공간 확보
전담인력 배치	타 사업 병행	센터 운영전담인력 배치
정부(유관 기관) 인·허가	무	정부(유관기관) 지정

- 사업 지원대상 : 지역 단위농협
- 사업 규모(사업량) : 25개소
- 투자 계획 : '17년까지 100개소

○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14 : 560개소) 등 지역복지사업 제공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지원 해당없음(비 예산사업*)

* 농협중앙회조합상호지원자금(행복나눔센터, 23억) 등 총 37억 모두 농협 자체자금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100	1,100
2014							3,700	3,700
(증△감)							2,600	2,600

* 기타 금액은 농협자체자금임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

5. 성과목표 : 해당없음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11년, '12년 지정형 전원학교 33교에 9.9억원(특교)을 지속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 '13년 지정 63교에 약 18억원 지원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 '13년에 선정한 300개교에 스마트 멘토링 등 지속 지원 (6억원), '14년 신규 1,700개교에 스마트 기기, 무선 인터넷망 등 지원(약 110억원), 연수·컨설팅 등을 통한 ICT 활용 체험학습 역량 강화(약 20억원)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13년 20개교 및 '14년 신규 30개교에 교당 5억원씩 지원(250억원), 자유학기제 운영, 학생 오케스트라, 스포츠클럽, 진로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숙사 운영 등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2억원)
-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기숙형 고교의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 수행 등 학교 특성에 맞는 기숙사 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일반운영비 등(150개교, 177억원))
- 농어촌지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개방 등 학교시설 이용과 평생학습관 신규 설치 및 운영 지원
- 한국농수산대학의 창조경제 관련 및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교과과정 확대, 우수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이론 및 실습 교육 강화,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농어업인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39,800		39,800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97,500		97,500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17,683		17,683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716		716	11,594	102	12,41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14,300		14,300			14,300
시·군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7		7	75	80	162
합계			15,023		15,023	166,652	182	181,857

<2-1-1-1.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교육부)>

담당부서	학생복지정책과	담당자	김홍오 사무관 강덕기 주무관
전화번호	044-203-6987, 6594	이메일	dkkang1004@mo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조성을 위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기본계획p25)

자연친화적 환경과 첨단 e-러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로 육성

○ 자연체험 학습장, 생태연못, 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시설과 전자칠판 IPTV 등 e-러닝 교실 구축

○ 110개교(초77, 중33)를 선정, '09~'11년까지 총 1,393억원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독서교육, 작가와의 만남, 에너지교육 및 텃밭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 운영

○ 유치원생·저학년생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고,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K-2학교를 전원학교 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

(2) 교육·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 육성

농어촌 취약지역 학생의 학력신장과 기초안전망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 종합 서비스 연중 지원

○ (학기 중) 학업성취도 향상 및 도농간 학력·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말 및 방학)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습·문화·보건의료 등 지원

- 378개 유·초·중·고교(유 24, 초 222개 등)에 '09~'11년간 총 894억 지원

학교간 시설·프로그램 공동 활용 및 학교·지역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농어촌 초중학교의 학력 증진, 특기·적성 계발, 맞춤형 돌봄 등 교육여건 개선지원('09년~'13년 총 874교 약 1,925억원)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 스마트 기기, 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초중학교의 온라인 체험학습 활성화('13년 신규 300교 약 35억원 지원)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초등학교(전원학교), 고등학교(기숙형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중학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여건 개선('13년 신규 20교 100억원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11년, '12년 지정형 전원학교 33교에 9.9억원(특교)을 지속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 '13년 지정 63교에 약 18억원 지원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 '13년 300교에 스마트 멘토링 등 지속 지원(6억원)
 - '14년 신규 1,700교에 스마트 기기, 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멘토링 등 지원(약 110억원)
 -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한 ICT 활용 체험학습 역량 강화(약 20억원)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13년 20교 및 '14년 신규 30교에 교당 5억원씩 지원(250억원)
 - 자유학기제 운영, 학생 오케스트라, 스포츠클럽, 진로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숙사 운영 등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2억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11년, '12년 지정형 전원학교 33교 및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한 '13년 지정 63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96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특별교부금 9.9억원(33교), 보통교부금 약 18억원(63교,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
-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 지원내용 : 농어촌의 불리한 교육여건 해소를 위해 농어촌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특별교부금)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2013		5,490		5,490
2014		990		990
(증감)		△4,500		△4,500

※ 미확정 금액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미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특별교부금)	자부담	합계
합계	156		6,930		6,930
'13	156/156		5,490		5,490
'14	96		990		990
'15	78		450		450
'16	63		-		-
'17	63		-		-

※ 미확정 금액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 초·중학교 2,000교('13년 선정 300교 및 '14년 신규 1,700교)
- 사업 규모(사업량) : 2,000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특별교부금 136억원

- 지원조건 : ICT 활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등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스마트 기기(10대 내외), 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멘토링(40회 내외), ICT 콘텐츠 활용 연수 등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2013			3,509	3,509
2014		특교	13,600	13,600
(증감)			10,091	10,091

※ 미확정 금액으로 교육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미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4,000		45,209		45,209
'13	300/300		3,509		3,509
'14	2,000		13,600		13,600
'15	4,000		16,600		16,600
'16	3,700		8,500		8,500
'17	2,000		3,000		3,000

※ 미확정 금액으로 교육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중학교 50교('13년 선정 20교 및 '14년 신규 30교)
- 사업 규모(사업량) : 50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특별교부금 252억원

- 지원조건 : 60명 이상 읍 지역 소재 중학교로 향후 거점의 우수 중학교로 육성 가능성이 높은 학교
- 지원내용 :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유학기제 운영, 학생 오케스트라, 스포츠클럽, 진로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숙사 운영 등 통학여건 개선 추진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2013			10,000	10,000
2014		특교	25,200	25,200
(증감)			15,200	15,200

※ 미확정 금액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미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80		120,600		120,600
'13	20/20		10,000		10,000
'14	50		25,200		25,200
'15	80		40,200		40,200
'16	60		30,100		30,100
'17	30		15,100		15,100

※ 미확정 금액으로 교육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전원학교 수	110	170	304	156	126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농산어촌 ICT지원 학교 수	-	-	-	300	2,000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수	-	-	-	20	50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2-1-2-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교육부)>

담당부서	방과후학교지원과	담당자	이지윤 주무관
전화번호	044-203-6416	이메일	pqqq79@mo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양질의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06년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지원 사업’ 시범 실시(19개군, 8,475백만원)
- 2007년 공모를 통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적극 참여할 군 또는 도·농 복합 도시 69개 추가 지정 예산 지원(88개 지역, 49,700백만원)
- 2008년부터 농어촌 지역 전체로 예산지원* 확대(14,645학급, 528억원)
 - * ‘08년부터 방과후학교사업 지방이양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지원
-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어촌 지역 지원학급을 학년당 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전체학교로 확대
- 2013년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농어촌 토요일프로그램 지원금 23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보통교부금 총 973억원으로 확대 지원
-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산지원 현황(‘09~’13)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금액(억원)	382	421	515	657	973
지원학급 수(개)	14,605	16,210	17,162	46,948	45,998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도교육청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농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① (교육부)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교부 시,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기준재정 수요 산정 → ②(시도교육청)농어촌 방과후 지원계획 수립, 예산 지원 →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추진방향

- 교육청과 지자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4. 사업 내용

- 방과후학교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 사업 규모 : 농어촌 지역 46,401학급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975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제외(별도 기준에 의해 교부)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컴퓨터 및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
-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97,325		97,325
2014						97,489		97,489
(증△감)						164		16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학급)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6,401					97,489		97,489
서울								
부산	551					1,158		1,158
대구	891					1,872		1,872
인천	440					924		924
광주								
대전	6					13		13
울산	1121					2,355		2,355
세종	437					918		918
경기	9,591					20,151		20,151
강원	3,919					8,234		8,234
충북	3,017					6,339		6,339
충남	5,497					11,549		11,549
전북	3,277					6,885		6,885
전남	5,618					11,803		11,803
경북	5,609					11,785		11,785
경남	6,427					13,503		13,503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학급)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1,927	0	0	0	0	490,212	0	490,212
'13	46,323					97,325		97,325
'14	46,401					97,489		97,489
'15	46,401					97,976		97,976
'16	46,401					98,465		98,465
'17	46,401					98,957		98,95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11	'12	'13	'14		
농어촌방과후학교 참여율	72.4	82.8	84.5	85.0	참여학생수/전체학생 수 × 100	매년 4월기준 방과후학교 운 영 현황 자체 전수 조사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교육부)>

담당부서	학교정책과	담당자	배진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6450	이메일	jinsugi@mo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09년까지 기숙형고교 150교 선정(시설비 5,551억원 지원)

※ 82교, 3,173억원('08년), 68교, 2,378억원('09년)

☞ 국정과제를 2년차에 완료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으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발표
 - 자율형 고교 100교, 기숙형고교 150교, 마이스터고 50교 설립
 -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 농어촌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여건 조성으로 우수 학생 외부 유출 방지 및 학업성취도 향상

- 기숙형고교 기숙사 수용능력 확대: 14,157명('10년) → 25,618명('13년)

- 기숙형고교 관내 중학교 상위 10% 이내의 우수 학생 입학자 수 증가

※ 교당 평균 인원 : 18명('10년) → 28명('11년) → 35명('12년)

- 학력향상 및 인성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신장

※ 국어 : 65.6%(‘10년) → 78.5%(‘11년) → 82.9%(‘12년)

※ 영어 : 48.0%(‘10년) → 74.1%(‘11년) → 82.3%(‘12년)

※ 수학 : 59.7%(‘10년) → 72.3%(‘11년) → 79.4%(‘12년)

* 학업성취도평가 보통이상 비율임

* 근거 : ‘12년 기숙형고교 평가지표 개발 등 연구(전북대학교 박세훈)

○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지원 확대**

- 지역사회 장학금 지급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기숙사비 경감

※ 학생 1인당 월 평균 기숙사비

: 151천원(‘10년) → 113천원(‘11년) → 105천원(‘12년) → 111천원(‘13년)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기숙형고교 지원 조례 제정 확산 및 기숙형고교와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사회 모형 모색

※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 : 23곳(‘11년) → 46곳(‘12년)

* 근거 : ‘11~ ‘12년 기숙형고교 평가지표 개발 등 연구(전북대학교 박세훈)

○ ‘13년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

- 기숙사 운영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 기숙형고교생 기숙사 이용 부담 경감 추진(교당 평균4.3억 지원)**

※ 지방재정교부금법시행령(‘12.10.15) 및 시행규칙(‘12.11.14) 개정으로 기준재정수요에 포함

○ 기숙형고교 **연구·모델학교 운영**

-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기숙형고교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연구학교) : 15교(‘10년) → 30교(‘11년) → 25교(‘12년)

(모델학교) : 8교(‘09년) → 9교(‘10년) → 8교(‘11년)

○ **성과평가 및 현장컨설팅 실시**

- 전체 기숙형고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현장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 (우수학교 선정 및 지원) 50교, 850백만원('11년) → 65교, 1,475백만원('12년)

※ (컨설팅) 72교('09년) → 67교('10년) → 100교('11년) → 45교('12년) → 42교('13년)

○ 학교장, 담당교사 및 사감교사, 행정실장, 시·도 담당자 워크숍 실시

※ 4회('09년) → 8회('10년) → 5회('11년) → 4회('12년) → 1회('13년)

○ 홍보자료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

- 영문 홍보 브로셔 발간, 현장컨설팅 결과보고서 발간·보급

- 홈페이지 운영('10년~) : www.dormschool.or.kr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기숙형고교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 수행, 현장 컨설팅 추진('14. 1~2월)

○ 기숙형고교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직원 워크숍 등 추진('14. 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군 및 도농복합도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기숙형고교 150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7,683백만원(시·도교육청 지방비)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기숙사 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운영비, 급식비 등)

- 법적근거 : 법적근거 없음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4,728		24,728
2014						17,683		17,683
(증감)						△7,045		△7,045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교					17,683		17,683
부산	1교					199		199
대구	2교					800		800
인천	3교					1,350		1,350
울산	1교					183		183
세종	1교					-		-
경기	14교					-		-
강원	18교					3,018		3,018
충북	13교					1,511		1,511
충남	16교					2,504		2,504
전북	13교					1,653		1,653
전남	23교					3,063		3,063
경북	25교					1,180		1,180
경남	20교					2,222		2,222

* '14년 지원 예산은 예정액임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교					87,411		87,411
'13	150교					24,728		24,728
'14	150교					17,683		17,683
'15	150교					15,000		15,000
'16	150교					15,000		15,000
'17	150교					15,000		15,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 교육만족도 (%)	계획	51.8	55	65	68	70	기숙사생 대상 설문 조사	내부자료
	실적	51.8	63.2	80.6	78.1*			

*기숙형고교 150교 중 120교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임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지방자치단체)>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 등을 실시
 - 강원(301개교), 충남(69개기관), 전북(33개), 대구(47개교)에서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 실시
 - 전북(7개소)은 평생학습관 운영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의 지속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생학습 여건의 지속적 확대 추진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 ('13)	개소수 ('14)	'13 예산	'14 예산
합 계				6,032	12,412
강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2개기관	22개기관	3,518	4,715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279개교	-		
충북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교육부 주관 공모 결과 ※ 5개분야 26개 프로그램 선정	평생교육 과제발굴	90	306
충남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	69개 기관	33개 기관	362	418
전북	평생학습관 운영	7개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7개관	140	150
	마을도서관 등 개방운영	33개	34개	36	485
전남	농어업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1개관	21개관	855	3,123
경북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14개소	16개소	160	160
	도민참여교육	23회 8,380명	23회 7,000명	102	96
	행복학습지원센터 등	23개 사업 등	20개 읍면동	260	1,866
경남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모 등 실시	45개	21개	110	597
대구	학교평생학습관 사업 추진	47개교	47개교	228	155
인천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환경원예과(80), 향토자원개발과(44) 등	환경원예과, 향토자원개발과 등	-	147
광주	소외계층 농어촌평생교육	11기관, 30명	11기관, 35명	-	7
울산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64기관 39,528명	53기관 16,530명	90	106
세종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7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공모 2월	81	81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재구축 8월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주5일(1일 3시간)	주5일(1일 3시간)		
	토요프로그램 운영	주5일 수업제 활성화	좌동		

<2-1-5-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기획조정팀	담당자	강미현
전화번호	031-229-5161	이메일	kmh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 후계농업인 육성 교육을 통한 우수 농어업인 배출
 - 2013년 졸업생 14년차 3,012명 배출 및 의무영농이행률 94.5%
- 농림축산업 6차 산업화 적극 추진을 위한 창조농업인력 확보
 - 농산물가공분야, 시설자동화분야 교수인력 2명 확보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4개학과 60명 모집 및 운영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농업의 리더로써 다양한 농업인 단체에서 중요 역할 수행
 - 졸업생 73.6%가 농어업인 단체 활동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창조경제 관련 및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교과과정 확대
 - 생산과 연계한 농어촌 관광·체험 등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우수학생 및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제도 개선
 - 수시모집 확대 및 심층면접 강화로 우수인재 확보
- 우수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이론 및 실습 교육 강화
- 졸업생의 영농정착률 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농어업인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한국농수산물대학 개편·운영(한국농수산물대학교육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한국농수산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사업 규모(사업량) : 재학생 1,050명(11개학과, 3년제), 졸업생 3,402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4,278백만원(국비 100%)
- 지원조건 : 수업연한의 2배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 또는 영어종사
- 지원내용
 - 우수 신입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학홍보와 면학분위기 조성 및 실습 기자재 확충 등 교육인프라 확대
 - 재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전문교과에 대한 책임교육 교수 지정 운영
 - 졸업생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다양한 졸업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영농정착 애로사항 해결 전담반 운영, 농가경영 컨설팅 실시, 졸업생 영농정착 사례집 및 졸업생 우수농산물 안내책자 발간, 졸업생 농산물 홍보품목별·과제별 소그룹 연찬회 지원 영농정착 아이디어 과제 지원사업 등
 - 창업 후계농 및 졸업생 중심의 농어업인 전문 교육 강화
- 법적근거 : 「한국농수산물대학 설치법」 및 「한국농수산물대학 설치법 시행령」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4,451		14,451			14,451
2014			14,278		14,278			14,278
(증△감)			△173		△173			△17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4,590			76,429				76,429
'13	4,138			14,451				14,451
'14	4,528			14,278				14,278
'15	4,918			15,900				15,900
'16	5,308			15,900				15,900
'17	5,698			15,900				15,9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졸업생 영농정착률	92/92.5	92/91.3	92/94.5	92	92	(영농정착 졸업생수/영농 대상 졸업생 수)×100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졸업생 영농 이행상황 보고서
졸업생 농가 평균 소득률	235/229	230/220	231/206	231	231	(졸업생농가 평균소득/일반농가 평균소득)×100	졸업생 농가 영농 이행상황 보고서 일반농가: 농촌통계조사
교육만족도	80/78.4	78.5/73.3	80/79.6	80	80	5점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 의뢰 재학생 : 자기입식 졸업생 : 0메일, 우편

<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지방자치단체) >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p> <p>□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p> <p>○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농어촌 학교 지원방안, 교육환경 개선 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p>
--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시·군별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실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역교육정책 토론회 및 협의회를 실시하고, 협의회가 미설치된 시·군은 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속적으로 권고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현황>

지역	사업구분	설치현황 ('13)	설치현황 ('14)	('14) 예산
강원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17개 교육지원청	17개 교육지원청	-
충북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10개 교육지원청	10개 교육지원청	-
충남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14개 교육지원청	14개 교육지원청	7
전북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등 2회 개최	교육발전협의회 등 운영(연1회)	-
전남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22개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22개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80

지역	사업구분	설치현황 (‘13)	설치현황 (‘14)	(‘14) 예산
경북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23개 교육지원청 교육해영협의회 운영	23개 교육지원청 교육해영협의회 운영	74
경남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유도	-	-
부산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협의회 운영	-	-
대구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협의회 운영(5월 12월) 15개교 설치	-	-
울산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	-	1
세종	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

2-2.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12, 13기 배치사업 지속 추진(391명)과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강의, 영어캠프, 현직교사 초청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졸업생 포함)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생과 함께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치고, 원어민 장학생이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을 배우게 하는 미래 친한 인재 육성
- 글로벌 선도학교(60개교)를 통해 농어촌 다문화가족 학생(1,700명)의 한국어·교과보충수업을 지원하고, 1:1멘토링 실시로 상담 및 학습지도
- 농어촌 학교에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를 실시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시범학교 운영, 교육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개발 보급 등 농어촌 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대책 마련
- 사이버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학습 모바일러닝 기반 확충, 2009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 등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14,600		14,600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3,000		3,000	600		3,600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비예산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4,300		4,300
합계			3,000	0	3,000	19,500	0	22,500

<2-2-1-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교육부)>

담당부서	영어교육팀	담당자	김영은 연구사
전화번호	044-203-6179	이메일	youngeun@mo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기본계획p28)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영어교육 여건 개선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을 선발하여 활용

* TaLK(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08년 380명, '09년 543명 선발 배치

□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강의 확대 및 국내 거주 원어민을 활용한 방학 중 무료 영어캠프 활성화

* '08년 56개교(2,882명 학생 수혜), '09년 531개교(33,855명) 참여

* 학생 117천명(비수도권 9만명) 및 3천명의 원어민 강사 참여, 학생 만족도가 최하 88%이상의 높은 만족도 실현('08)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TaLK) 농산어촌 초등 방과후학교에 국내·외 영어봉사장학생 배치('13, 491명)

연도 (기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전체인원	380명	374명	543명	596명	596명	530명	502명	496명	493명	491명	490명	5,491명	
신규인원	380명	175명	441명	293명	345명	230명	306명	224명	290명	211명	278명	3,173명	

-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강의 실시

구 분(명, 시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원어민 원격화상 강의	3,462(6)	33,855(12)	35,039(12)	42,643(13)	110,000(13)

※ '13년부터 시·도교육청 자율 운영

- 국내 체류 원어민을 활용한 방학 중 단기 영어캠프 운영

구 분(명, 시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상반기
방학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116,535(15)	162,104(16)	188,606(16)	202,486(16)	116,000(16)

※ '13년부터 시·도교육청 자율 운영

- 외국 현직교사 초청 방학 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12, 900여명)

※ '13년부터 시·도교육청 자율 운영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12, 13기 배치 사업 지속 추진(391명*)
 - 원어민 장학생 선발 : 12기 완료, 13기 '14. 3 ~ 8
 - 원어민 장학생 사전연수 실시 : 12기 '14. 2, 13기 '14. 8
 - * 장학생 인원은 예산액 및 시·도 수요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원어민 원격 영어화상강의 및 방학 중 단기 영어캠프, 해외 현직교사 초청 방학 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4. 관련 사업 내용

가.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 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초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391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특교포함) 14,594백만원
 - 지원조건 : 일부 경비(원어민 장학생 모집 등)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투자
 - 지원내용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졸업생 포함)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한국인 국내 대학생과 함께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치고(teach), 원어민 장학생들이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을 배우게 함으로써(learn) 미래 친한·지한 인재 육성
 - 법적근거 : 없음(장관 결재 의거 자체 추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9,110		19,110
2014						14,594**		14,594
(증△감)						△4,516		△4,516

* 특교 및 시도 예산

** '14년 예산은 TaLK 장학생 인원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농산어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및 기타 시·도 자율 영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TaLK 장학생 배치 규모가 축소됨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91					14,594		14,594
부산	3					115		115
인천	11					412		412
세종	4					142		142
강원	42					1,555		1,555
충북	13					506		506
충남	64					2,275		2,275
전북	66					2,576		2,576
전남	60					2,178		2,178
경북	85					3,169		3,169
경남	11					373		373
제주	32					1,293		1,293

* '14년은 특교 및 시도 예산이며 TaLK 장학생 인원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60					77,486		77,486
'13	500/491					19,110		19,110
'14	391					14,594		14,594
'15	391					14,594		14,594
'16	391					14,594		14,594
'17	391					14,594		14,594

* 특교 및 시도 예산

- 나. 농산어촌 학생들의 방학 중, 방과 후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
→ 특별교부금 지원 없이 시·도교육청 자율 운영('13년 이후)
- 다. 해외 현직교사 초청 방학 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
→ 특별교부금 지원 없이 시·도교육청 자율 운영('13년 이후)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원어민 영어수업 기회확대(학교수)	3,000	3,250	3,500	3,750	4,000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농산어촌 학교수*	시도교육청 통계자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TaLK 장학생 배치, 영어 교육격차 해소 및 해외 현직교사 초청 방학 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원어민 영어교육이 지원되는 학교 수 포함

<2-2-2-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교육부)>

담당부서	학생복지정책과	담당자	황선국(주무관)
전화번호	044-203-6524	이메일	skhwang4002@mo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2)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지원 강화 (기본계획 p28)

□ 농어촌 다문화 가족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취학전 다문화가정 유아 등을 위한 수준별 발달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한국어 등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 등 지원
-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초·중등 예비교사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멘토링 (교과지도·숙제지도) 지원

* 학생 중 읍·면지역 국제결혼 가정 자녀 : 8,180명(초 7,274, 중 718, 고 188)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계속)
 - '13년 농어촌지역의 52개 학교를 글로벌 선도학교(거점형)*로 지정하여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 * 글로벌 선도학교(농어촌 거점형) : ('11) 34교 → ('12) 50교 → ('13) 52교
-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습·진로상담·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연결한 1:1 멘토링 사업 지원(계속)
 - 대학생 농어촌 멘토링 참여 실적 : ('11년) 1,000명→('12년)1,241명('13년) 1,146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계획」 수립('14.2월)
- 2014년도 대학생 멘토링 추진계획 수립('14.3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학생 및 글로벌 선도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어촌 다문화학생(1,700명), 글로벌 선도학교(60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600백만원(글로벌 선도학교 60교*10백만원)

국고 3,000백만원(1,600*1.4만원*150시간)

- 지원조건 : 글로벌 선도학교, 다문화학생
- 지원내용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및 교과보충수업 지원 및 일반학생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학생을 위한 1:1 멘토링(상담 및 학습 지도, 문화체험 등) 참여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 지급
-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000		2,000	500		2,500
2014			3,000		3,000	600		3,600
(증)			1,000		1,000	100		1,1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경기								
충북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시도별 배분내역은 미정('13년 특별교부금 미확정)

* 멘토링 장학금은 각 참여 대학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3							
'13				2,000		500		2,500
'14				3,000		600		3,600
'15				3,000		600		3,600
'16				3,000		600		3,600
'17				3,000		600		3,6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글로벌선도학교 수	19	34	50	52	60	글로벌 선도학교 (거점형) 운영 수의 합	시도교육청 보고자료
대학생 멘토링 참여 학생수			1,241	1,146	1,600	농어촌 다문화학생 멘토링 참여 학생수의 합	장학재단 사업 보고서

<2-2-3-1.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교육부)>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담당자	김학승 강종부
전화번호	203-6940 203-6689	이메일	kimh1714@moe.go.kr kjb3055@mo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강구 (기본계획 p29)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11년 시행)

- 기존 임용절차와 별도로 근무예정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 교원을 채용하고,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여 교원의 안정적 확보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부담 경감

- 행정업무 처리 전담모형 개발 등을 통한 농어촌 학교 교사 업무 부담 경감방안 마련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 (제도도입)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완료(법령개정 '11.9)

※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채용실시) 2013학년도 지역 단위 신규교원 임용시험 실시('12.9~'13.2)

※ 2013학년도 지역 단위 신규교원 130명(초등 81명, 중등 49명) 채용

○ 농어촌 학교의 교사 업무부담 경감

- 교무행정팀 구성·운영 지속적 확대 추진

※ 전국 학교별 교무행정팀 구성·운영 비율 : 60.6%('12.6.30) → 76.0%('13.6.30)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자문단 구성('13.5.2)

- 교무행정인력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13.6~10월)

- 교무행정인력 역할·기능 모색 관련 전문가 회의('13.6~11, 14회)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업무 담당 교육청 관계자 회의('13.10.25, 11.19)
- 교사 행정업무 경감 관련 현장의견 수렴('13.11.18~2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학교·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 지속 추진
 - 2014학년도 신규교원임용시험 시 지역 단위 신규교원 지속 채용
- 농어촌 학교의 교사 업무부담 경감
 - 교무행정팀 구성·운영 내실화('14년 연중)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시범학교 운영('14년9월~'15년8월)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14년 하반기)
 - 시·도교육청에 교원 행정업무 경감 컨설팅 지원('14년 하반기~)
 - 교무행정인력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14년 연중, 시도교육청)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 사업 규모(사업량) : 17개 시·도교육청
 - 지원금액 및 형태 : 해당 없음
 - 지원조건 : 해당 없음
 - 지원내용 : 시·도교육청의 지역단위 신규교원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나. 농어촌 학교의 교사 업무부담 경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 사업 규모(사업량) : 17개 시·도교육청
- 지원내용 : 시·도교육청의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완료)	-	2건	-	-	-	법령개정여부	국회 등
교무행정팀 구성 학교 수				60%	65%	구성학교수/ 전체학교수	공문 수합 등

<2-2-4-1.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교육부)>

담당부서	이러닝과	담당자	박덕호 교육연구사
전화번호	044-203-6426	이메일	pdh1214@mo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사이버학습 운영 지원

- 주5일수업제 지원을 위한 실시간 멘토링서비스 시범 운영
 - 교사를 멘토로 활용한 화상상담시스템기반의 서비스 운영
 - 주5일수업제 지원을 위한 토요 프로그램 운영
 -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의 사업계획서와 사이버가정학습 운영현황 등 평가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을 선정·예산지원
- 시·도교육청과의 공동사업 추진, 시·도 교육청 서비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센터운영 지원
 -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운영 지원 등 사이버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 시·도교육청 사이버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추진/분과협의회 개최, 만족도 조사 및 통계·배포 시스템 운영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이버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중학교 온라인수업 실시
 - 전학 등으로 인해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중학생이 사이버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
- ※ '13.2학기 총 2897명이 온라인수업 이수
- 2009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학생용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 초등국어 4종(1~4학년), 초등수학 4종(1~4학년), 초등사회 2종(3~4학년), 초등과학 2종(3~4학년), 중학수학 2종(1~2학년), 중학사회 3종(사회1, 역사1, 사회2-1), 중학과학 2종(과학2, 학습콘텐츠·평가콘텐츠)

- 시도교육청의 특색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교육청(6개*)을 선정·지원하여 지역특화모델 개발·보급

* 부산·대구·강원·충남·전북·경북교육청

- 시·도교육청과의 공동사업 계속 추진
 -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및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운영 지원 등 사이버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 시·도 교육청 사이버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분과협의회 개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이버학습 모바일러닝 기반 확충
 - 사이버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서비스 환경 구축
 -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콘텐츠를 모바일용으로 변환
 - 사이버학습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검토
- 2009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계속)
 -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대상 학습 콘텐츠 평가콘텐츠 및 주제별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시·도 교육청과의 공동사업 계속 추진
 - 시·도교육청의 특색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특색 사업 지원
 -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운영 지원 등 사이버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 시·도 교육청 사이버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분과협의회 개최

4. 관련 사업 내용

가. 사이버학습 운영지원

○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중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4,300백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특별교부금 : 2,000백만원), (시도교육청 사업비 : 2,300백만원)
- 지원조건 : 특교 : 지방비 = 1 : 1.15
- 지원내용 : 사이버학습 모바일러닝 기반 확충 및 시·도교육청 운영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3,001			13,672		16,673
2014						2,000 (2,300)		4,300
(증△감)			△3,001			△9,372		△12,37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 미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01		6,001
'13	17개 교육청					3,001		3,001
'14	17개 교육청					2,000		2,000
'15	17개 교육청					1,000		1,000
'16	17개 교육청					-		-
'17	17개 교육청					-		-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특별교부금 사업수행기관)→예산 배정 및 사업관리(교육부)→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특별교부금 사업수행기관)→사업평가 및 환류(교육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	75.74점	75.74점	미측정	75점	농어촌지역사이버가정 학습을 이용하는 담임형 학생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목표치 100.5%달성)	전문기관 조사 결과
모바일용 콘텐츠 변환 수	-	-	-	-	1,000차시	2009교육과정 적용 콘텐츠 중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수의 총합	콘텐츠 관리 중앙 시스템 탑재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
 - 농어촌 지역에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70,544명에게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에 거주(6개월 이상)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43천명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무이자 용자 지원(졸업 후 2년 거치, 1학기분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
- 농림수산물식품계열학과 재학생인 농어업인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금을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부터 마련·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 양성(6,300명, 12,000백만원)
- 초·중·고등학교(9,267개교)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농산물 소비기반 확보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 농과계 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 수산계 고등학교 자영수산물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농업인에 대한 급식비 부담 경감
- 농어촌지역의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어촌학교 통학 차량지원, 노후통학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운영 등 지원
- 개별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선발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의 전형 유형 파악 및 선발 인원 통계관리를 하도록 하여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1,497		1,497	42,991	8,890	53,378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20,800				20,800			20,800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11,600	11,600			11,600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1,700		201,700
자영농수산물고교 급식비 지원				60	60	9,983	762	10,805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68,770	706	69,476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비예산
합계	20,800	0	1,497	11,660	33,957	323,444	10,358	367,759

< 2-3-1-1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지방자치단체) >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p> <p><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p>*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현황('09) : 81,705명/801억원</p>
--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90년부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2013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41,876백만원 지원
- * '05년에 지자체로 이양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속 지원(연중)
- 지원 규모 : 70,544명, 53,378백만원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구분	실적('13)	계획('14)	'13 예산	'14 예산
합 계				63,057	53,378
서울	고교생 학자금 지원	27명 지원	21명 지원	42	22
부산	고교생 학자금 지원	357명 지원	436명 지원	931	610
대구	고교생 학자금 지원	383명 지원	379명 지원	700	487
인천	고교생 학자금 지원	407명 지원	548명 지원	689	607
광주	고교생 학자금 지원	773명('10-'13년)	191명 지원	234	269
대전	고교생 학자금 지원	83명 지원	79명 지원	96	122

지역	사업구분	실적('13)	계획('14)	'13 예산	'14 예산
울산	고교생 학자금 지원	387명 지원	301명 지원	591	409
경기	고교생 학자금 지원	22,170명('10-'13년)	4,111명	6,572	4,158
강원	고교생 학자금 지원	3,900명 지원	3,500명 지원	4,000	2,800
충북	고교생 학자금 지원	3,000여명 지원	3,193명 지원	3,671	3,396
충남	고교생 학자금 지원	22,800명 지원	22,700명 지원	8,103	6,077
전북	고교생 학자금 지원	4,945명 지원	4,902명 지원	6,988	5,392
전남	고교생 학자금 지원	12,000명 지원	12,000명 지원	12,000	11,398
경북	고교생 학자금 지원	7,012명 지원	8,276명 지원	7,962	7,812
경남	고교생 학자금 지원	6,000여명 지원	6,107명 지원	7,400	6,107
제주	고교생 학자금 지원	2,350명 지원	2,800명 지원	3,340	3,340
세종	고교생 학자금 지원	37,026명 지원('09-'13년)	1,000명 지원	-	372

4.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계획대비 지원율(%)	90	90	90	90	90	집행실적 ÷ 집행계획 × 100	지자체 자료

<2-3-1-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이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8	이메일	leejh7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농과계 대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보조(장학금 등) 지원 확대
 -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인원/지원금액 현황('09) : 농촌희망재단(2,300명/54억) 농협문화복지재단(1,205명/35억원)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지원 지속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
 - 졸업후 1년 유예 후 상환 → 상환 유예기간 연장 추진
 - *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 현황('09) : 29천명/929억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UR 이후 어려움을 겪게된 농어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94년도부터 농특회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
- 농어촌 주민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1인당 용자지원 규모 지속 확대
 - ('94~'00) 학기당 100만원 → ('01~'02) 학기당 150만원 → ('03) 학기당 200만원 → ('04 이후) 등록금 범위내
 - * '04년에 교육부에서 농식품부로 업무 이관
- 지원실적('94~'13) : 국고출연예산 5359억원, 472천명, 총 용자액 10,566억원
 - 최근 5년간 지원실적('09~'13)

구분	'09	'10	'11	'12	'13
국고출연예산(억원)	475	505	605	355	311
지원인원(천명)	29	31	33	34	40
총 용자액(억원)	929	1,012	1,103	925	1,021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속 지원(연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6개월 이상)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43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출연금 208억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용자 학기 : 재학대학의 정규 학기수까지 지원
 - 상환 조건 : 졸업 후 2년 거치, 1학기분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
 - 지원내용 :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범위내 무이자 용자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3조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1,100				31,100			31,100
2014	20,800				20,800			20,800
(증△감)	△10,300				△10,300			△10,300

* 국가장학금의 수혜자 확대에 의해 지원규모 감소

* 총 용자규모 : ('13 실적) 1,021억원, 40천명 → ('14 계획) 1,096, 4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 용자)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40,267/31,500	31,100/31,100						31,100
'14	43,000	20,800						20,800
'15	43,000	11,400						11,400
'16	43,000	11,400						11,400
'17	43,000	11,400						11,4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수혜자 만족도	88	89	89	89	89	5분위 척도 중 상위 2분위까지를 만점으로 환산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보고서

<2-3-1-3.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이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8	이메일	leejh7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농과계 대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보조(장학금 등) 지원 확대
 -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인원/지원금액 현황('09) : 농촌희망재단(2,300명/54억) 농협문화복지재단(1,205명/35억원)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지원 지속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
 - 졸업후 1년 유예 후 상환 → 상환 유예기간 연장 추진
 - *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 현황('09) : 29천명/929억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원규모('05~'13) : 68,546백만원, 45,290명
- '13년 11,676백만원, 6,463명 지원
 - 다양한 농어업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13년 2학기부터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을 영농(1차산업), 브레인(2·3차산업) 장학금으로 분리
 - * ('13년 1학기) 자녀 1,631명, 후계 1,425, (2학기) 자녀 1,624명, 브레인 1,526명, 영농 257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속 지원(연중)
 - '14년 대학장학금 6,300명에게 12,000백만원 지원 계획
 - * '14년 마사회특별적립금 사용계획(2월)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후계인력(농림수산물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6,5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사회특별적립금, 120억원
 - * '14년 지원금액 및 사업량 미정(마사회특별적립금 사용계획 수립(2월) 이후 확정)
- 지원조건 : 마사회특별적립금(100%)
- 지원내용 : 장학금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 장학금 지원
 - * 자녀장학금 : 학기당 150만원, 브레인장학금(2·3차산업) 200만원, 영농장학금(1차산업) 250만원
- 법적근거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마특)	소계			
2013				11,676				11,676
2014(p)				11,600				11,600
(증△감)				2.7				2.7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마특)			
합계					11,676/ 11,696			11,676/11,696
'13	6,463/6,255				12,000			12,000
'14	6,300				12,000			12,000
'15	6,300				12,000			12,000
'16	6,300				12,000			12,000
'17	6,300				12,000			12,0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원계획인원 대비 실적인원	99.8%	99.8%	110%	103.3%	99%	(연간 총 지원실적인원÷ 당초 지원계획인원) × 100	-
지원계획금액 대비 지원금액	99.8%	99%	99.9%	99.8%	99%	(연간 총 지원실적금액÷ 당초 지원계획금액) × 100	-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교육부)>

담당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박진욱/김동로
전화번호	044-203-6543	이메일	kim5092@m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 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 교육부와 농식품부의 안전 농식품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3.5.7), 시·도교육청에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 자치단체별 지역 거점의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협조 등 행정지침 시달('13.1월) 및 학교급식 담당관 회의 실시(3회)는 물론,
 -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회 개최('13.5.30~5.31, 교육청 관계자 등 160명), 우리 농축산물 바로알기 교육('13.7.22~7.23, 7.25~7.26, 영양교사 및 조리사 255명, 농협안성교육원 공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
- 그 결과, 우수농산물 지원 학교수는 당초 목표 대비(8,969교) 298개교 늘어난 9,267개교로 목표치 대비 103%달성하였으며, 지원액도 목표치를 초과한 2,017억원을 지원하였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시달('14.1월)
-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회 개최('14.6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9,267개교(추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2,017억원(추정), 지방비 100%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 지원내용 : 우수농산물(현물 또는 현금)
-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01,711		201,711
2014						201,711		201,711
(증△감)						0		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9,267개교	실적/계획				201,711		201,711
'14	9,267개교					201,711		201,711
'15	9,267개교					201,711		201,711
'16	9,267개교					201,711		201,711
'17	9,267개교					201,711		201,71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수)	8,389	8,578	8,969	9,267	9,267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지원 학교수	우수농산물 지원현황 통계조사 (교육청 제출자료)

< 2-3-2-2 :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지방자치단체) >

담당부서	농어촌사회과	담당자	김병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74	이메일	kim9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 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영세농업인에 대한 부담경감과 젊고 유능한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해 자영 농과생 급식비 지원('86~)
 - '13년 지방비 등으로 자영농수산고교생 약 3천여명을 대상으로 98억원 수준 지원
 - * '05년에 지자체로 이양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영세농업인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속 지원(연중)
 - 지원 규모 : 10개 시·도, 10,805백만원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구분	실적('13)	계획('14)	'13 예산	'14 예산
합 계				2,702	10,805
울산	급식비 지원	56개교	56개교	-	7,993
경기	급식비 지원	여주지역농고 450명	여주지역농고 450명	729	907
강원	급식비 지원	3개교, 290명	3개교, 290명	268	268
충북	급식비 지원	자영 보은농고 280명	자영 보은농고 280명	166	272

지역	사업구분	실적('13)	계획('14)	'13 예산	'14 예산
충남	급식비 지원	충남해양과학고 75명	충남해양과학고 77명	142	54
전북	급식비 지원	김제자영고 429명	김제자영고 429명	368	360
전남	급식비 지원	168명	219명	386	223
경북	급식비 지원	315명	315명	217	297
경남	급식비 지원	250여명	255명	329	292
제주	급식비 지원	207명	290명	97	139

4.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15		
계획대비 지원율(%)	93.5	100	100	100	100	100	집행실적 ÷ 집행계획 × 100	지자체 자료

<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지방자치단체) >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학교의 통학차량지원(강원 17개교, 전북 250개교, 경남 223개교, 부산 11개교, 대구 11개교, 인천 23개교)을 실시하였고,
- 노후 통학차량의 교체(충북 8대, 전남 19대), 통학버스 안전도우미(전남 305명) 운영, 통학택시 지원(전북 38개교, 51대) 실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어촌학교 통학차량지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무료통학버스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 ('13)	개소수 ('14)	'13 예산	'14 예산
합 계				63,598	69,476
강원	교통여건 불편지역 고등학교 방과후 차량지원	17개교	17개교	327	331
충북	농촌학교 통학차량지원	8(교체)/236(차량)	6/248	5,763	6,318
전남	농산어촌 통학버스 지원	421대	431대	9,673	12,647
전북	통·폐합학교 및 통학여건이 불편한 학생 통학차량 지원	250개교	버스 423 교체 20 택시 51	13,169	15,483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 ('13)	개소수 ('14)	'13 예산	'14 예산
전남	노후 통학차량 교체	19	22	32,598	2,994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305	303		
경북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737	715	16,979	18,549
경남	통학버스 지원 등	223개교	217개교	11,562	9,716
제주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	10개교, 504명	4,800명	-	700
부산	농어촌 원거리 통학학교 통학버스 지원	28개교, 45대	28개교, 45대	1,059	1,316
대구	원거리 통학학생 무료 통학버스 지원	11개교	11개교	288	442
인천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23개교	23개교	1,271	1,310
울산	노후 통학차량 교체 및 통학차량 운영비 등 지원	운영 10개교	운영 11개교	150	399
세종	노후 통학차량 교체 및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운영 29대	운영 29대	756	581

<2-3-3-1.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교육부)>

담당부서	대입제도과	담당자	최영진
전화번호	044-203-6362	이메일	feelshop@mo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기본계획 p30)

-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추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립대학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권장
 - * 선발인원: ('09) 4,964명 → ('10 예정) 6,248명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지역균형 선발제에 대한 공정성·형평성 제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4.1.28)
- 학생선발 규모 : 2014학년도 기준 모집인원 2,017명(목표 : 2,000명, 100.9%달성)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개별 대학 단위로 사업 추진
 - 개별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선발 기준 설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의 전형 유형 파악 및 선발 인원 통계 관리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개별대학 및 학생·학부모
 - 사업 규모(사업량) : 2,500명 내외
 - 지원금액 및 형태 : 비예산
 - 지원조건 :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자적 추진
- 예산 : 비예산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학년도	'12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15학년도		
모집인원	7,304	6,792	7,894	2,017	2,500	2015학년도 선발학생수	대학교협 통계 ('15.2월)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3-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
 - '농촌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 발간, '지역희망드림팀' 발족 등
- 지자체와 연계를 통한 역량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으로 역량 있는 지역에 사업지원(2,600억원)
- '농어촌인성학교' 법제화, "지역개발지원단" 개편 및 현장지원체계 구축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선도지구 내용, 추진체계, 일정, 지표 등
- 2015년 신규사업성 검토 추진
 - 사업개편에 따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군역량강화 등
-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 지역개발 추진('14년, 7억원)
-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한 시·군간 협력사업 지원(715억원)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일반농어촌개발 관리	3,690	872,334			876,024	373,858		1,249,882
일반농어촌(돈갈 보조) 관리	3,690				3,690			3,690
일반농어촌개발		872,334			872,334	373,858		1,246,192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65,000			65,000	6,500		71,500
합계	3,690	937,334			941,024	380,358		1,321,382

<3-1-1.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기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1) 지역사회 주도 개발을 뒷받침하는 포괄보조제도 도입 (기본계획 p34)
-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하에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집행
 -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을 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 *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사업, 지방비포함) : ('09) 12,900억원 → ('10) 13,910
 -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주거, 교통, 정보통신 등 분야별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자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개정 배포(4월)
- 일반농어촌개발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추진(3~4월)
-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예산 편성 및 신청(5~6월)
-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5월)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농어촌인성학교 44권역 교과부와 공동 지정·운영(상반기 28, 하반기 16)
 - 농어촌 체험학습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 함양 및 권역 활성화
- 2013년도 일반농어촌개발사업 현장컨설팅 지원(11~12월)
 - 평가결과가 미흡한(C, D등급) 40지구(읍면 12, 권역 28)를 대상으로 지역개발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컨설팅 실시
- 지역발전사업 부처 자체평가 및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모니터링 실시(11월)
 - 117개 시·군 일반농어촌 1,162개사업(9,182억원)에 대한 평가 실시
 - '12년 실태조사 결과 중점관리 31권역을 대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이행여부 현장 확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개최(2013.12.27. 완료)
 - 사업 개편방향 및 2015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설명
-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편방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마련(완료)
 - 지자체와 주민 주도의 농촌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시설투자 중심에서 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역량 단계별 지원 방안 구축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
 - ‘농촌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 발간, ‘지역희망드림팀’ 발족 등
- 지자체와 연계를 통한 역량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으로 역량 있는 지역에 사업지원(2,600억원)
- ‘농어촌인성학교’ 법제화 및 지속 추진
- “지역개발지원단” 개편 및 현장지원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총괄계획가” 지침 개정 및 교육일정 수립
 -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
- 일반농산어촌마을개발사업 홍보 추진
 - TV 및 중앙일간지, 잡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선도지구 내용, 추진체계, 일정, 지표 등 수립
- 일반농산어촌사업 개편에 따른 역량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
- 2015년 신규사업성 검토 추진
 - 사업개편에 따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군역량강화 등
-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7억원)으로 체계적 지역개발 추진
 - (‘12) 시범사업, (‘13) 7억원, (‘14) 7억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시·군(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규모(사업량) : 117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3,690백만원, 민간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포괄보조계획 컨설팅 및 검토, 신규사업성 검토,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강화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690	.	.	.	3,690	.	.	3,690
2014	3,690	.	.	.	3,690	.	.	3,690
(증△감)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개 시군	.	18,450	18,450
'13	117개 시군	.	3,690	3,690
'14	117개 시군	.	3,690	3,690
'15	117개 시군	.	3,690	3,690
'16	117개 시군	.	3,690	3,690
'17	117개 시군	.	3,690	3,690

나. 일반농산어촌개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872,334백만원,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918,246	-	-	918,246	393,534	-	1,311,780
2014	-	872,334	-	-	872,334	373,858	-	1,246,192
(증△감)	-	△45,912	-	-	△45,912	△19,676	-	△65,588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세종	1개 시		4,164			1,785		5,949
경기	7개 시군		31,226			13,383		44,609
강원	9개 시군		60,552			25,951		86,503
충북	11개 시군		76,083			32,607		108,690
충남	14개 시군		108,783			46,621		155,404
전북	13개 시군		107,056			45,881		152,937
전남	21개 시군		189,380			81,163		270,543
경북	22개 시군		152,901			65,529		218,430
경남	17개 시군		122,899			52,671		175,570
제주	2개 시		19,290			8,267		27,55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개 시군		4,407,582			1,888,966		6,296,548
'13	117개 시군		918,246			393,534		1,311,780
'14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15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16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17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인구유입(%)	104.8	113.4	100	128.9	100	지자체 조사	지자체 조사
주민 만족도(%)	77.9	78.8	79.8	80.5	81.0	만족도 설문조사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3-1-1-2.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기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 제고
 - 지역발전위원회와 농식품부는 사업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간 연계사업 모색기회 제공
 - 지자체는 지역특화,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간 또는 2개 이상의 기초광역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발굴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가이드라인 마련(1월)
-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계획 배포(1월)
-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1월)
- 2013년 신규사업 신청건에 대한 중복성 검토(2월)
-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선정결과 알림(3월) : 33건
-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사전컨설팅 추진(5~6월)
-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사업계획 승인(7~8월)
-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정책 수요 조사(8월)
-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예산 정부안 확정(10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2013년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실적보고서 취합(1월)
-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가이드라인 작성(2월, 지역위)
-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계획 배포(2월)
-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사업신청 및 접수(~2.28일)
- 2014년 신규사업 선정 및 예산지원(4~5월)

- 2014년 신규사업 컨설팅 및 사업계획 수립(5~6월)
- 2014년 신규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6월~)
-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워크숍 개최(9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한 시·군간 협력사업
 - 사업 규모(70건 예정) : 계속사업 31건, 신규사업 39건
 - 지원금액 및 형태 : 65,000백만원,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 다만 2013년 재정자주도가 전체 평균 이하인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90% 지원
 - 지원내용 : 기초 인프라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으로서, 생활권 협력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30,000	-	-	30,000	3,000	-	33,000
2014	-	65,000	-	-	65,000	6,500	-	71,500
(증△감)	-	35,000			35,000	3,500		38,5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 2014년 신규사업 미선정(4월 예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3	-	395,000	-	-	39,500	-	434,500
'13	33개소	-	30,000	-	-	3,000	-	33,000
'14	70개소	-	65,000	-	-	6,500	-	71,500
'15	100개소	-	100,000	-	-	10,000	-	110,000
'16	100개소	-	100,000	-	-	10,000	-	110,000
'17	100개소	-	100,000	-	-	10,000	-	110,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역행복생활권 체결 비율	-	-	-	-	미정	지역행복생활권을 체결 한 지자체 비율 측정	지역발전위원회 자료

3-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은퇴자·슬로우푸드(slow food)·예술인마을 등 특색있는 모델제시와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 신규마을조성시 마을의 규모(주택신축기준)에 따라 12~36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시장·군수 등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소규모(10호~19호) 마을조성 시범 추진
 - * '14년 소규모 신규마을 : 2지구(안동 갈전, 함안 의암), 세대당 30백만원 지원
- 낙후된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 슬레이트 철거, 영유아보육시설, 에너지 효율화사업, 공동생활형 홈 등을 통합적 지원하는 농어촌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 * '14년 시범사업 대상 : 4개소(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진도, 경북 영주)
- 지역특성을 감안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전략적으로 개발 : 권역단위종합정비 404개 권역 추진(계속 329개, 신규 75개)
 -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기반시설,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 인근 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읍·면소재지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283개 지구 추진(계속 190, 신규 93)
 -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중심가로 경관개선,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 시설 등 거점지역 육성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		16,872			16,872	7,231		24,103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4,050			2,190	6,240	3,150		12,190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		872,334			872,334	373,858		1,246,192
지역거점 기능향상		872,334			872,334	373,858		1,246,192
합계	4,050			2,190	6,240	3,150		12,190

*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 지역거점 기능 향상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관리 사업에 포함됨

< 3-2-1-1. 신규마을 조성사업 및 마을재개발(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형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8	이메일	heezee2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 재개발로 인구유입 유도

□ 해당 지역의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신규마을 조성

- 은퇴자·슬로우푸드(slow food)·예술인마을 등 특색 있는 모델 제시
 - * 신규마을 조성사업 등 : ('09) 108개소 → ('14P) 200
- 상하수도, 마을진입로·안길, 마을공동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노후주택 개량 등 기본생활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 경관개선활동, 도시학생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체험휴양사업 등 마을 공동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

□ 기존마을 주민과 이주 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마을 재개발 추진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보제공, 교육 및 자금지원을 연계하여 지자체별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유도
- 마을기반 정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농외소득 창출방안, 마을공동체 강화, 교육·복지·문화·친교프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도시민 유치촉진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 144지구 추진(계속)
 - 20세대 이상 입주규모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 택지조성 84지구, 주택건축 78지구
 - * 총 144지구 : ('04~'09년) 91, ('10년) 19, ('11년) 12, ('12년) 7, ('13) 15
- 웰촌(포털)에 신규마을 조성현황을 게재, 귀농·귀촌 희망자 정보제공(계속)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신규마을 조성 41지구
 - 신규마을 조성 : 39지구 시행(신규 16, 계속 23)
 - 소규모 신규마을 조성 : 2지구(안동 갈전, 함안 의암) 시행
 - 시장·군수 등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소규모(10호~19호) 마을조성 시범 추진
 - * 세대당 30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4. 관련 사업 내용

가. 신규마을 조성사업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시장·군수, 마을정비조합(입주자 주도)
- 사업유형 :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 지원규모 : 마을규모(주택신축기준)에 따라 12~36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20~29호	30~49호	50~74호	75~99호	100호이상
12억원이내	18억원이내	24억원이내	30억원이내	36억원이내

* 부지구입비 : 전액 입주자 자부담 또는 지방비

- 보조내용 : 자치단체자본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부족한 기반시설비등은 지방비, 입주자 부담
- 사업내용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주차장 등 마을 기반 조성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2조, 제101조~제103조

○ 예 산

- 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	16,884	-	-	16,884	7,236	-	24,120
2014	-	16,872	-	-	16,872	7,231	-	24,103
(증△감)	-	12	-	-	12	5		17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계속사업 포함)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		16,872			7,231		24,103
강원	4		700			300		1,000
충북	1		243			104		347
충남	2		598			256		854
전북	2		345			148		493
전남	15		8,257			3,539		11,796
경북	12		4,410			1,890		6,300
경남	5		2,319			994		3,313

○ 중기재정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767,072			2,043,031		6,810,103
'13			897,900			384,814		1,282,714
'14			924,837			396,359		1,321,196
'15			952,582			408,249		1,360,831
'16			981,159			420,497		1,401,656
'17			1,010,594			433,112		1,443,706

- 신규마을조성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 하나임

5. 성과목표

○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도시민 유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도시민 농어촌유치(명)	3,174	3,312	3,525	3,900	4,275	'04부터 신규마을조성 도시민 유치수(누계)	지자체 도시민 유치실적 조사

○ 입주자 주도형 사업을 통한 민간참여 촉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민간사업자 (정비조합) 참여비율	73.6	67.1	80	71.1	72.1	(민간사업자 사업장수 /전체사업장수)×100% * 신규마을조성사업대상	신규마을조성 사업 신규사업 선정 현황 조사

<3-2-1-2.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박중훈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58	이메일	kimu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신규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 재개발로 인구유입 유도 (기본계획 p35)

□ 해당 지역의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신규마을 조성

- 은퇴자·슬로우푸드(slow food)·예술인마을 등 특색 있는 모델 제시
*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 ('09) 108개소 → ('14P) 200
- 상하수도, 마을진입로·안길, 마을공동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노후주택개량 등 기본생활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 경관개선활동, 도시학생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체험휴양사업 등 마을 공동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

□ 기존마을 주민과 이주 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마을 재개발 추진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보제공, 교육 및 자금지원을 연계하여 지자체 별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유도
- 마을기반 정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농외소득 창출방안, 마을공동체 강화, 교육·복지·문화·친교프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시범사업 4개소(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진도, 경북 영주) 선정
- 각 지구별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 완료하여 사업착수
-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발주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시범사업 4개소 완료
-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완료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 규모(사업량) : 4개소(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진도, 경북 영주)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 지원조건 : 국고70%, 지방비30% * 일부 국고50%, 지방비30%, 자부담20%
- 지원내용
 - 기반시설 정비, 슬레이트 철거, 공동생활형홈 조성, 영유아보육시설,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108조(자금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용자	소계			
2013	4,200				4,200	2,950		7,150
2014	4,050			2,185	6,235	3,146	2,798	12,179
(증△감)	△150			2,185	2,035	196	2,798	5,029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용자			
합계	4	4,000			2,185	3,146	2,798	12,129
충남	1	1,000			1,100	429	45	2,574
전북	1	1,000			750	1,617	2,287	5,654
전남	1	1,000				671	60	1,731
경북	1	1,000			335	429	406	2,170

○ 중기재정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융자			
합계	4	8,250			2,185	6,096	2,798	19,329
'13	4	4,200				2,950		7,150
'14	4	4,050			2,185	3,146	2,798	12,179
'15								
'16								
'1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시범사업 4개소 조성			4	4		시범사업 조성개소	시범사업 추진 실적 조사

<3-2-2-1.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기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소생활권 종합 정비 (기본계획 p35)

-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3~5개마을) 하여 소득기반확충, 생활환경정비,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주민-기업-공공), 지역역량 향상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대표 모델로 정착
 - * ('10) 310 → ('11) 471 → ('12) 557 → ('13) 642 → ('14) 717 [사업추진 누계]
 - * 마을종합개발 : 지역주민 22만여명, 컨설팅업체 55개, 전문가 130여명 등 참여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642개 권역 추진
 - 216개 권역 준공, 396개 권역 사업추진
 - 지역위 평가결과 미흡한(C, D등급) 28권역 현장컨설팅 지원(11~12월)
 - '12년 실태조사 결과 중점관리 31권역을 대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여부 현장 모니터링 실시(12월)
 -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단위 및 마을단위 종합정비로 개편(12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역특성을 감안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전략적으로 개발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사업규모에 따라 3 ~ 5년
 - 지원규모 : 권역당 50억원 내외
- 권역단위종합정비 404개 권역 추진(계속 329개, 신규 75개)
- '1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2월)
- '15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4월)
-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및 지원
 - 헬프데스크, 현장활성화 센터 등 운영

- 마을권역 활성화 대책 추진
 - '농촌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 발간, '지역희망드림팀' 발족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일반산어촌개발(권역단위종합정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872,334백만원,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918,246	-	-	918,246	393,534	-	1,311,780
2014	-	872,334	-	-	872,334	373,858	-	1,246,192
(증△감)	-	△45,912	-	-	△45,912	△19,676	-	△65,588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개 시군		4,407,582			1,888,966		6,296,548
'13	117개 시군		918,246			393,534		1,311,780
'14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15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16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17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주민 만족도(%)	77.9	78.8	79.8	80.5	81.3	만족도 설문조사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3-2-3-1. 지역거점 기능 향상(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기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거점읍·면의 기초생활서비스·농어촌 경제 거점 기능 향상 (기본계획 p36)

- 거점읍·면 소재지를 기초서비스의 중심지 및 경제활동 다각화 선도거점으로 활성화
 - 보육·운동·휴식·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 생활편의 기초서비스 거점지역으로 종합개발
- 농어촌지역과 인근 중소도시의 동반 발전을 추구하는 도·농 통합적 접근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정비
 - 거점지역과 배후마을 및 인근 중소도시 간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제공 방식 다양화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 추진(217개 추진, 2013년 예산지원)
- 지역위 평가결과 미흡(C, D등급) 12개 지구 현장컨설팅 실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인근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 읍면소재지역활강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4년
 - 지원규모 : 읍(동) 100억원 이하, 면 70억원 이하
- 읍면소재지종합정비 283개 지구 추진(계속 190, 신규 93)
- '1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2월)
- '15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4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일반산어촌개발(읍면소재지종합정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872,334백만원,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중심가로 경관개선,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 시설 등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업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918,246	-	-	918,246	393,534	-	1,311,780
2014	-	872,334	-	-	872,334	373,858	-	1,246,192
(증△감)	-	△45,912	-	-	△45,912	△19,676	-	△65,588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개 시군		4,407,582			1,888,966		6,296,548
'13	117개 시군		918,246			393,534		1,311,780
'14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15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16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17	117개 시군		872,334			373,858		1,246,19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주민 만족도(%)	77.9	78.8	79.8	80.5	81.3	만족도 설문조사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3-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출지원
 - 1만동의 농어촌지역 불량주택에 대하여 6천억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연리 2.7%)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실시(신·개축 동당 6,000만원)
- 석면비산 및 건강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영세 농어가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
 - 노후 슬레이트 거주자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환경부, 20천동)과 연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물량 중 30%를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
- 농어촌 면지역 이하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개발 지속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지방상수도 설치 비용 지원)
 - 농어촌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180개소에 국고 2,567억원 지원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29개소에 국고 206억원 지원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28개소에 국고 547억원 지원
- 저소득 농어촌 거주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900가구, 가구당 3,800천원 지원)
- 농어촌 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시(3.1km,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벽지노선 운행손실, 공영버스 운행지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방안 강구
 -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손실금의 일정액 지원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용 지원 :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버스)의 구입비용 일부 금액을 국비지원
- 낙도 도서주민에게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목포지역

(향화~낙월 항로) 노후여객선 1척(신해5호) 건조 완료, 통영지역(통영~두미 /삼천포 항로) 및 군산지역(군산~개야 항로)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착수

-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을 위해 국가 재정운영계획('15~'18)에 '15년도부터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추가반영('14.4월)
 - 지원내용 : 연간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여객운임의 20%을 정률 지원 (도서민 부담 상한액 적용) 및 차량운임의 20% 정률지원(도서민 부담상한액 미적용)
-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정보화마을 359개소에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홍보, 전자상거래 및 인건비 지원
- 농어업인 및 경영체, 농어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농림수산물정보망 운영 및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농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81억원 지원
- '14년도 농수산물 ICT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추진(10개 과제) 등 농업정보서비스 및 지식정보서비스 및 원격영상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정보격차 감소 및 경쟁력 강화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 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600,000	600,000
농어촌주택 스트레이트 철거처리지원			28,800		28,800	28,800		57,600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56,700	75,300		332,000	127,900		459,900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1,700				1,700	1,700		3,400
농어촌 도로정비			1,000		1,000	1,000		2,000
교통서비스강화			7,950		7,950	77,010		84,960
국고여객선건조			1,940		1,940			1,940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10,400		10,400	10,400		20,800
정보화마을 조성			4,800		4,800	1,900	400	7,100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7,380			18,580	25,960	9,840	7,200	43,000
농어촌광대역 통합망 구축				5,000	5,000	4,700	9,400	19,100
합계	9,080	256,700	130,190	23,580	419,550	263,250	617,000	1,299,800

<3-3-1-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박현춘 전문관
전화번호	044-201-1554	이메일	hcpark7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p37))

□ 농어촌 주택개량 확대

- 농어촌주택을 보다 쉽게 신·개축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금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물량 확대
 - 지원물량(동) : ('09) 7천동 → ('14P) 10천동
 - 농어촌 특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주거모델(환경친화형, 고령자 편의형, 에너지절약형 등) 개발·보급
- 노후주택 고쳐주기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주택개량 등 생활여건 개선에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 * (재)다솜동지복지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4천여 가구 개량 지원중
- 마을경관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 * 지자체 농어촌 빈집정비 현황('97~'09) : 91천동/452억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주택개량사업 세대별 융자 한도액 및 지원물량 : 50백만원, 10,000동(계속)
- 농어촌 생활형주택 표준설계도 8종 개발 착수('13.4)
- '12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확대 추진 : (계획)410동 → (실적)436
- 마을경관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97년~, 계속)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통보('14.1)
 - 동당 한도액 상향조정 : ('13)50백만원 → ('14)60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승인·공고
- 농어촌 지역의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확대
- 노후불량주택개량 융자지원 : ('14)10천동
 - * 노후불량주택개량(누계) : ('13)468천동 → ('14)488
- 농어촌 빈집정비(지방비) : ('13)6,127동(9,480백만원) → ('14)6,872(12,126)
-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지원 : ('13p)4,667동 → ('14p)4,350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사업 규모(사업량) : 10,000동
- 지원금액 및 형태 : 6,000억원(농협자금 100%)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신·개축 동당 6,000만원(부분개량 1/2)
 - 대출금리 : 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2%)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500,000	500,000
2014							600,000	600,000
(증△감)							100,000	100,000

*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농협자금임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동)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000						600,000	600,000
부산	20						1,200	1,200
대구	31						1,860	1,860
인천	96						5,760	5,760
광주	13						780	780
대전	11						660	660
울산	36						2,160	2,160
세종	72						4,320	4,320
경기	483						28,980	28,980
강원	765						45,900	45,900
충북	500.5						30,030	30,030
충남	1,358.5						85,510	85,510
전북	1,611.5						96,690	96,690

	사업규모 (동)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전남	1,745.5						104,730	104,730
경북	1,829						109,740	109,740
경남	1,134						68,040	68,040
제주	294						17,640	17,64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동)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0,000						500,000	500,000
'14	10,000						600,000	600,000
'15	10,000						600,000	600,000
'16	10,000						600,000	600,000
'17	10,000						700,000	700,000

*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농협자금임

나. 슬레이트 주택 처리

○ 사용실태

- 농가 본채건물 중 슬레이트 지붕재 약 37.9% 점유('08년 환경부 표본조사)
- 농어촌 지역(86개군) 건축물(1,980천동) 중 슬레이트 지붕재 약 28.9%(574천동) 차지('10년 환경부 조사)
- 슬레이트 건축물(573,506동) 중 주택용 건물이 약 72.7%(415,376동) 차지

○ '14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안(환경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지원조건 : 동당 국비 144만원 정액지원(동 당 처리비 240만원 적용)
 - 신청대상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 노후 슬레이트 거주자 우선

○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 방안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물량 중 30%를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1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불량주택정비율(%)	79.7	80.9	82.1	83.5	84.5	불량주택 정비실적 (용자지원 대상주택 개량 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 량 목표치×100)	· 지자체 사업추진 실적 · 농협 대출실적

<3-3-1-2.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환경부)>

담당부서	환경보건관리과	담당자	김병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6813	이메일	kbjoh@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p37)

□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10~)

-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개량 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우선지원
 - * 표본조사 결과, 농가 건물의 약 38%가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
-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지원방안 검토('10)
 - 농어촌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제거, 수립·운반, 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 농어촌 슬레이트 현황 조사('09-'10) 및 '슬레이트 관리 및 처리 매뉴얼' 개발·보급('1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월) 수립
- '11년 시범사업을 거쳐 '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본격 지원 중
 - * ('11년) 2,500동/2,372동 철거, ('12년) 10,000동/8,290동 철거, ('13년)20,000동/17,877동 철거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국고지원율 상향조정('13년 40%→'14년 60%)
 - 가구당 국고지원금 상한을 높여(96만원→144만원) 철거에 대한 자부담 해소

4. 관련 사업 내용

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주택 슬레이트 소유자

- 사업 규모(사업량) : 20,000동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 288억원,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 지원조건 : 국고 가구당 144만원 정액, 지방비 국고이상, 자부담 소요비용차액
- 지원내용 :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 및 '14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환특세)	기금등	소계			
2013			19,200			19,200	9,600	48,000
2014			28,800			28,800		57,600
(증△감)			9,600			9,600	△9,600	9,600

* 13년 정산처리중으로 계획으로 작성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동)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환특세)	기금등			
합계	20,000			28,800		28,800		57,600
서울	392			565		565		1,130
부산	1,400			2,016		2,016		4,032
대구	200			288		288		576
인천	164			236		236		472
광주	152			219		219		438
대전	200			288		288		576
울산	136			196		196		392
세종	460			662		662		1,324
경기	1,185			1,706		1,706		3,412
강원	2,000			2,880		2,880		5,760
충북	1,550			2,232		2,232		4,464
충남	1,750			2,520		2,520		5,040
전북	1,680			2,419		2,419		4,838
전남	2,781			4,005		4,005		8,010
경북	2,450			3,528		3,528		7,056
경남	2,500			3,600		3,600		7,200
제주	1,000			1,440		1,440		2,88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환특세)	기금등			
합계				192,480		192,480	9,600	394,560
'13	17,877/20,000			19,200		19,200	9,600	48,000
'14	20,000			28,800		28,800		57,600
'15	30,000			50,400		50,400		100,800
'16	40,000			67,200		67,200		134,400
'17	16,000			26,880		26,880		53,76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슬레이트 처리실적			7,000동 (8,290동 철거)	14,000동 (17,877동 철거)	17,380동	슬레이트 철거동수	지자체 보고 자료 및 취합자료

<3-3-1-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환경부)>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담당자	이순우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122	이메일	woo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p38)

□ 상수도 보급률 증대 및 수질관리 강화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14년까지 75%로 제고('10~'14간 11,361억원 투자)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 중 30호 이상 마을은 간이(마을)상수도를 설치하되,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수질 관리
 - 면단위 지역 생활용수의 안정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 농업·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정수시설·송·배수관, 물탱크 등) 설치 지원
 - '09~'12년 간 1,218개소 개발('94~'08년까지 5,842개소 개발)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향상(계속)
 - '13년 예산 3,295억원 지원, 보급률 향상(69%/ '13년말)
 - 농어촌(183개) 2,539억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33개) 253억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183개) 503억원 지원
 - ※ 총 10,205억원 지원('11년 3,464억원, '12년 3,446억원, '13년 3,295억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향상(계속)
 - '13년 예산 3,320억원 지원, 보급률 향상 기대(70% 계획/ '14년말)
 - 농어촌(180개) 2,567억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29개) 206억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928개) 547억원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농어촌 면단위 이하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어촌 지방상수도 553개소(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수정 계획, '10, 환경부)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 31,881억원(13까지 21,551억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80%('09년까지 80%, 이후 70%)
- 지원내용 :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지방상수도 설치 비용
- 법적근거 : 「수도법」 제2조(책무), 제56조(국고보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53,945			253,945	89,833		343,778
2014		256,737			256,737	95,742		352,479
(증△감)		2,792			2,792	5,909		8,701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0		256,737			95,742		352,479
대구	1		1,330			570		1,900
세종	4		2,751			1,179		3,930
경기	17		11,090			4,289		15,379
강원	9		39,726			11,076		50,802
충북	8		16,128			5,931		22,059
충남	25		30,051			11,672		41,723
전북	14		20,237			7,757		27,994
전남	37		53,199			20,398		73,597
경북	41		51,374			19,950		71,324
경남	23		28,334			11,841		40,175
제주	1		2,517			1,079		3,596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22,310			562,419		1,984,729
'12	179개소		259,405			83,032		342,437
'13	183개소		253,945			89,833		343,778
'14	180개소		256,737			95,742		352,479
'15	140개소		323,557			138,667		462,224
'16	140개소		323,509			138,647		462,156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도서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264개소(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수정 계획, '10, 환경부)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 11,880억원(13년까지 6,474억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 지원내용 :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지방상수도 설치 비용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법적근거 : 「수도법」 제2조(책무), 제56조(국고보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5,281		25,281	10,835		36,116
2014			20,576		20,576	8,819		29,358
(증△감)			△4,705		△4,705	△2,016		△2,016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개소			20,576		8,819		29,358
인천	2개소			2,168		929		3,097
충남	1개소			245		105		350
전북	1개소			2,700		1,157		3,857
전남	18개소			9,657		4,140		13,797
경북	1개소			1,500		643		2,143
경남	5개소			2,866		1,228		4,094
제주	1개소			1,440		617		2,057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0,928			43,241		144,132
'12	37개소		35,348			15,134		50,482
'13	33개소		25,281			10,835		36,116
'14	29개소		20,576			8,819		29,358
'15	33개소		9,017			3,864		12,881
'16	33개소		10,706			4,589		15,295

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소규모수도시설 7,764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 10,124억원(13년까지 4,605억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 지원내용 :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송·배수관, 물탱크 등) 설치 비용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법적근거 : 「수도법」 제2조(책무), 제56조(국고보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50,750		50,750	21,750		72,500
2014			54,668		54,668	23,431		78,099
(증△감)			3,918		3,918	1,681		5,599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구분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21			54,668		23,431		78,099
인천	19			1,099		471		1,570
광주	17			42		18		60
대전	4			70		30		100
울산	15			1,440		617		2,057
세종	7			500		214		714
경기	18			1,609		690		2,299
강원	69			8,944		3,833		12,777
충북	37			3,135		1,344		4,479
충남	75			6,438		2,758		9,196
전북	338			5,422		2,323		7,745
전남	84			10,252		4,396		14,648
경북	76			6,710		2,875		9,585
경남	155			8,130		3,486		11,616
제주	7			877		376		1,25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88		333,268			142,797		476,065
'12	688		49,910			21,356		71,266
'13	282		50,750			21,750		72,500
'14	921		54,668			23,431		78,099
'15	915		81,420			34,894		116,314
'16	982		96,520			41,366		137,886

5. 성과목표

-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에 '14년 농어촌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이 75%이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 집행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함에 따라 '14년도 보급률을 70%로 하향 조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55.9	58.8	67.0	67.6	70.0	(농어촌·도서지역 급수 인구/농어촌·도서지역 인구)*100	지방상수도확충 사업 추진성과 보고자료 활용

<3-3-14. 농어촌장애인지원주택개조사업(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문인근
전화번호	044-202-3304	이메일	muhningu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주택개량 및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p37)

□ 농어촌 주택개량 확대

- 농어촌주택을 보다 쉽게 신·개축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위한 용자금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물량 확대
 - 지원물량(동) : ('09) 7천동 → ('14P) 10천동
 - 농어촌 특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주거모델(환경친화형, 고품자 편의형, 에너지절약형 등) 개발·보급
- 노후주택 고쳐주기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주택개량 등 생활여건 개선에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 * (재)다솜동지복지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4천여 가구 개량 지원중
- 마을경관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 * 지자체 농어촌 빈집정비 현황('97~'09) : 91천동/452억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연도	추진계획 (가구수)	추진실적 (가구수)	세부지원내역 (지원 가구수, 복합 지원 포함)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설 치 등	싱크대 설치	기타
합 계	8,000	7,551	3,423	702	788	831	3,362
2006	1,000	1,091	544	76	102	95	466
2007	1,000	1,037	477	72	80	77	425
2008	1,000	1,075	491	111	193	160	590
2009	1,000	1,088	552	94	143	111	435
2010	1,000	1,091	487	128	151	137	444
2011	1,000	1,115	449	114	61	128	513
2012	1,000	1,054	423	107	58	123	489
2013	1,000	1,048	408	128	50	132	443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저소득장애인지원주택개조사업 지원 : 900가구 x 3,800천원 x 50%(보조율) = 1,710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 농어촌 거주 재가 장애인
- 사업 규모(사업량) : 900여 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가구당 3,800천원/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의 보급)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900				1,900	1,900	-	3,800
2014	1,710				1,710	1,710	-	3,420
(증△감)	△190				△190	△190	-	△38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00	1,710				1,710		3,420
대구	5	9.5				9.5		19
인천	8	15.2				15.2		30.4
광주	5	9.5				9.5		19
대전	2	3.8				3.8		7.6
울산	5	9.5				9.5		19
세종	9	17.1				17.1		34.2
경기	51	96.9				96.9		193.8
강원	85	161.5				161.5		323
충북	102	193.8				193.8		387.6
충남	77	146.3				146.3		292.6
전북	123	233.7				233.7		467.4
전남	162	307.8				307.8		615.6
경북	133	252.7				252.7		505.4
경남	115	218.5				218.5		437
제주	18	34.2				34.2		68.4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가구)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000	10,044				10,044		20,088
'13	1,000	1,900				1,900		3,800
'14	1,000	1,957				1,957		3,914
'15	1,000	2,016				2,016		4,032
'16	1,000	2,076				2,076		4,152
'17	1,000	2,095				2,095		4,19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장애인 주택개조 수급자 만족도(점)	-	-	90	90	90	10점 척도 조사 후 100점 환산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저소득농어촌 장애인가구 커버리지(%)	-	3.2	3.5	3.8	4.1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 가구(누적)/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가구수 * 100%	○ 장애인 주택개 조사원 지원 가구수 : 지자체 보고 실적 ○ 농어촌저소득 장애인가구수 : 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중 농어촌가구 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2013년 실적은 잠정치임

<3-3-2-1. 농어촌 도로정비(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박춘기
전화번호	02-2100-3856	이메일	end2av5r@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도로·교통망 정비

- 농어촌 주민 교통편의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및 교통시스템 개선
 - 농어촌 지역의 교통편의와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어촌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의 개선을 통한 도로 기능향상과 교통사고 예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의 개선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04~'13) : 83.8km, 888억원(균특 444, 지방비 444)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의 개선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3.1km, 20억원(균특 10, 지방비 10)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중 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 등 위험구간의 개선
 - 사업규모 : 217.2km, 2,418억원(국비 1,209 지방비 1,209)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지원조건 : 지자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보통교부세)	기금			
2013		7,252			7,252		14,504
2014		976			976		1,952
(증△감)		△6,276			△6,276		△12,552

- '14 시도별 계획(안)

	사업규모 (km)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		976			976		1,952
경기	1.4		443			443		886
강원	0.5		125			125		250
충북	0.8		130			130		260
경남	0.4		278			278		556

<3-3-2-2. 교통서비스 강화(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건호(사무관) 이경섭(주무관)
전화번호	044-201-3826 044-201-3825	이메일	enp301@mltm.go.kr ks719@mltm.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도로·교통망 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p38)

□ 농어촌 주민 교통편의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및 교통시스템 개선

- 지자체의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비용 지원, 순환버스 운행 지원 또는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 제공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단 강구

* 사례) 전남 신안군은 13개 버스노선 공영버스화로 주민만족도 제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벽지노선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비용 지원
 - 2013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정한 한도액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배분기준에 각 시·도별 예산 배분 완료
 - 각 시·도별로 사업시행 완료
 - 시·도별 사업시행 내역은 현재 시·군에서 정산을 절차를 밟고 있는 중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벽지노선 운행손실, 공영버스 운행지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방안 강구
- 추진절차 및 일정
 - 분권교부세에 대한 시·도 수요조사 및 소요액 통보(국토부→안행부) : 완료
 - 버스재정지원(안행부→시·도) ⇒ 사업시행(시·도)

4. 관련 사업 내용

가. 교통서비스강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노선(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사업 규모(사업량)
 -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
 - 개선명령으로 운행하는 벽지노선 25,367km에 대한 운행손실금 보전
 - 농어촌 벽·오지노선에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시·군의 공영버스 1,566대 중 매년 평균 169대에 대한 일부 구입비용 지원(1대/1,800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매년 약 848억원, 매칭펀드
- 지원조건 : 벽·오지의 기피운행 노선 버스운행(최소한의 교통이용권 확보)
- 지원내용 : 이용객이 줄어 버스운행을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에 최소한의 교통 서비스 확보를 위해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훈령)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 (분권교부세)	소계			
2013			7,852		77,008		84,860
2014			7,947		77,008		84,955
(증△감)			95		-		95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분권교부세	기금등			
합계				7,947		76,252		84,199
부산	벽지노선			1		-		1
인천	벽지노선 공영버스			108		2,580		2,688
광주	"			15		338		353
울산	"			25		394		419
세종				52		320		372
경기	"			555		107		662
강원	"			452		3,401		3853
충북	"			1,011		12,582		13,593
충남	"			617		1,900		2,517
전북	"			1,255		18,159		19,414
전남	"			1,491		14,334		15,825
경북	"			1,199		12,162		13,361
경남	"			959		7,200		8,159
제주	"			207		2,775		2,982

○ 중기재정계획

(단위: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 (분권교부세)			
합계							
'12	실적/계획			6,967/7,287	77,821/70,219		84,788/77,506
'13	실적/계획			7,852/7,148	76,252/79,844		84,104/86,992
'14	계획			7,947	76,252		84,199
'15	계획			-	76,252		76,252
'16	계획			-	76,252		76,25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예산확보율	6,329 /6,000	6,809 /6,000	6,967 /7,287	7,148 /7,852	7,947 /7,947	예산확보실적/목표치	- 분권교부세 배정내역 - 시·도 예산집행내역

<3-3-2-3. 국고여객선 건조(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권영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731	이메일	blast0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도로·교통망 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p38)

□ 낙도 도서주민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전국의 26개 보조항로*에 운항하는 국고여객선 26척에 대해 노후선 대체 건조 또는 차도선으로 개조 지원

* 보조항로 : 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해운법 15조)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인천지역(인천~풍·육도 항로)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완료('12.10)
 - 서해누리호, 차도선, 106톤, 정원 97명
- 목포지역(북강~북강 항로)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완료('12.11)
 - 섬사랑11호, 차도선, 109톤, 정원 60명
- 목포지역(향화~낙월 항로) 노후여객선(신해5호) 대체 건조 진행 중('13~)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목포지역(향화~낙월 항로) 노후여객선(신해5호) 대체 건조 완료
- 통영지역(통영~두미/삼천포 항로) 노후여객선(바다랑호) 대체 건조 착수
- 군산지역(군산~개야 항로) 노후여객선(개야훼리호) 대체 건조 착수

4. 관련 사업 내용

가. 국고여객선 건조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낙도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 등 대체필요 선박
 - 사업 규모(사업량) : 매년 여객선 1~2척 신조

- 지원금액 및 형태 : 2,200백만원('13년 착공 선박 총사업비 기준), 국고 100%
- 지원조건 : 해당 없음
- 지원내용 : 해당 없음
- 법적근거 : 「해운법」 제15조의2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800		800			800
2014			1,940		1,940			1,940
(증△감)			1,140		1,140			1,14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1			799/800				799/800
'14	1			1,940				1,940
'15	2			5,796				5,796
'16	2			5,000				5,000
'17	2			5,000				5,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국고여객선 건조공사 공정률	100	56	100	100	100	집행금액/계약금액 ×100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3-3-2-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권기정(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733	이메일	kgj223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도로·교통망 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p38)

□ 낙도 도서주민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
 - 도서민에 한해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하되, 본인부담액이 5천원 이하가 되도록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도서민 운임지원 국비 증액 확보
 - 일반회계 64억원 → 87억원(연평균 증가율 11%)
- '12년도 인천시 국비 부족분 예산전용 지원('12.12월)
 - 백령도 대형여객선 투입 등으로 국비 부족분이 과다 발생, 2.9억원 추가 교부
- '13년도 도서민 운임지원 국비 부족분 증액 확보('12.12월)
 - 인천시 국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국회 예결위 심의시 6억원 추가
 - * (당초 정부안) 84억원 → (최종안) 90억원
- '14년도 도서민 운임지원 여객운임 증액 확보 및 차량운임 신규 확보('13.12월)
 - 여객운임은 물가상승률 감안 전년대비 7% 증액 반영(87→93억원)
 - 차량운임을 신규 지원('14.7.1 시행) 하고자 9.5억원 신규 반영
 - * 차량운임 6개월분 7.5억원, 도서민 차량인증시스템 구축 2억원
- 도서민 운임지원 제도개편을 통한 지원기준의 적정성 도모
 -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개편 방안 마련('13.1~5월) 및 「도서관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13.12.30)에 따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조정('14.3.1 시행) 등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을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15~'18)에 '15년도 운임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추가반영('14.4월)
- 도서민 차량운임 신규('14.7.1)을 통해 해상교통비 부담 완화
 - 도서민 부담 상한액 적용없이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도서(연륙도서 및 제주본도 제외)에 거주하는 도서민
 - 사업규모(사업량) : 20,748백만원, 전국 20개소 지원(개소당 1,037백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보조(일반, 광특)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연간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여객운임의 20% 정률 지원(도서민 부담 상한액 적용) 및 차량운임의 20% 정률지원(도서민 부담 상한액 미적용)
 - 법적근거 : 「해운법 제4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315	8,700	.	9,015	9,015	.	18,030
2014	.	315	10,059	.	10,374	10,374	.	20,748
(증)	.	.	1,359	.	1,359	1,359	.	2,718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개시군	-	315	10,059	-	10,374	-	20,748
해수부	-	-	-	100	-	100	-	200
인천	2	-	-	2,585	-	2,585	-	5,170
경기	1	-	-	12	-	12	-	24
충남	4	-	-	193	-	193	-	386
전북	2	-	-	254	-	254	-	508
전남	7	-	-	4,550	-	4,550	-	9,100
경북	1	-	-	2,060	-	2,060	-	4,120
경남	1	-	-	305	-	305	-	610
제주	2	-	315	-	-	315	-	630

* '14년 지원 예산 중 해수부 100백만원은 배분처 미 확정(유보)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개시군	-	1,575	59,438	-	61,013	-	122,026
'13	20	-	315/315	8,700/8,700	-	9,015/ 9,015	-	18,030/ 18,030
'14	20	-	315	10,059	-	10,374	-	20,748
'15	20	-	315	12,909	-	13,224	-	26,448
'16	20	-	315	13,550	-	13,865	-	27,730
'17	20	-	315	14,220	-	14,535	-	29,07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이며, '14년 이후는 계획(안) 기준임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보조금 교부율 (%)	100	100	100	100	100	(지자체 교부액/국고 보조금 예산액)×100	내부자료

<3-3-3-1. 정보화마을 조성(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전자정부지원과	담당자	김석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3547	이메일	maradona@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지역 생산품에 대한 수요확대 지원(기본계획 p43)

□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생산품에 대한 수요확대 지원

- 농어촌 정보화마을('08년까지 358개소) 등의 상품 품질관리, 지도자 및 운영역량 강화,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주민 역량강화 교육(정보화, 운영) 및 e-Commerce를 통한 직거래 추진으로 마을 공동수익 신장(계속)
 - ※ 매출 : '06년 29억원 ⇒ '13년 223억원
 - ※ 교육 : '06년 19천명 ⇒ '13년 53천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전자상거래 등의 운영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마을의 소득창출 지원
- 정보화마을 내실화를 통한 유형별 수준에 따라 차별화하여 활성화 지원 및 관리, 성공적인 발전모델 육성·제시
-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생활화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마을공동체 확립

4. 관련 사업 내용

가.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정보화마을 359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48억 / 직접수행(36억), 지자체보조(12억)
 - 지원조건 : 운영평가 결과 마을별 수준구분, 차등관리
 - ※ 인건비지원의 경우 마을자부담 10%(전국 359개소 중 231개소 지원)
 - 지원내용 : 주민 대상 역량강화교육, 홍보, 전자상거래 및 인건비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5,197		5,197	1,948	352	7,497
2014			4,797		4,797	1,948	352	7,097
(증△감)			감 400		감 400			감 4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1			1,219		1,948	352	3,519
부산	2			11		17	3	31
대구	1			5		8	2	15
광주	4			21		34	6	61
울산	1			5		8	2	15
세종	1			5		8	2	15
경기	32			169		270	49	488
강원	37			195		312	56	563
충북	10			53		84	15	152
충남	25			132		211	38	381
전북	21			111		177	32	320
전남	39			206		329	59	594
경북	22			116		186	33	335
경남	23			121		194	35	350
제주	13			69		110	20	199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1/361			34,831		9,740	1,760	46,331
'12	361/361			5,197		1,948	352	7,497
'13	361/361			5,197		1,948	352	7,497
'14	361/361			4,794		1,948	352	7,094
'15	363/363			7,455		1,948	352	9,755
'16	365/365			12,188		1,948	352	14,488

* '14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5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단위 : 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16		
일반국민·주민참여도	8,500	7,400	9,000	10,000	10,500	마을홈페이지 총 게시글수/마을수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시스템

<3-3-3.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도재규(주무관)
전화번호	044-201-1409	이메일	jkdo@korea.kr
담당부서	해수부 소득복지과	담당자	김수진(주무관)
전화번호	044-200-5470	이메일	sjkim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정보화기반 구축 및 교육 추진 (기본계획 p39)

□ 농어촌 정보화교육 등을 통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 '14년까지 농어업인 20만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및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이용 등 생활체감형 교육 강화
 - 컴퓨터 활용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농어업인에게는 소득창출로 연결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 농어업정보서비스 및 농어업인정보화교육 투자('10안) : 72억원

□ 농어업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

- u-IT 기술 등을 활용한 생산·유통·경영정보시스템 개발·보급
 - u-IT 기술 활용 농업생산기반 지능화 투자('10안) : 35억원
 - * (전남 신안군) RFID(전자태그) 기술을 활용한 천일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속적인 정보서비스 및 지식정보서비스 및 원격영상교육을 통해 정보격차 감소 및 경쟁력 강화
- 농수산물 ICT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추진(22개 과제)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 마련 및 시설원예, 과수, 축산분야 확산사업비 확보
- 전국 어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정보화능력 함양 등으로 정보격차 해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업정보서비스 및 지식정보서비스 및 원격영상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정보격차 감소 및 경쟁력 강화
- '14년도 농수산물 ICT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추진(10개 과제)
- 시설원예·과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1,280호)
- 전국 어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정보화능력 함양 등으로 정보 격차 해소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업인 및 경영체, 농촌주민, 도시소비자
 - 사업규모(사업량) : 농어업정보서비스 및 경영체정보시스템 보급
 - 지원금액 및 형태 : 25,951백만원(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융자)
 - 지원조건 : 농업정보서비스(국비 100%, 민간보조), ICT 융복합 모델보급(국비 40%, 지자체보조), ICT 융복합 확산사업(국비 50%, 지자체보조), 디지털어촌구축지원(국비 100%)
 - 지원내용 :
 - 농업관련 정보콘텐츠 제공으로 도농간 교류촉진 및 정보격차 감소에 기여
 - ICT 융복합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생산비 절감 및 경영효율화 지원
 - 농어업경영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등
 - 원격영상 수산기술 교육 및 어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등 디지털어촌구축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농림)	5,700				5,700	1,200	600	7,500
(해수)	826				826	360		1,186
2013	6,526	0	0	0	6,526	1,560	600	8,686
(농림)	6,391			18,575	24,966	9,120	7,200	41,286
(해수)	985				985	720		1,705
2014	7,376	0	0	18,575	25,951	9,840	7,200	42,991
(증)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농림)							
	(해수)							
합계	정보서비스	36,533			80,000	41,640	29,400	187,573
	(농림)	5,700				1,200	600	7,500
	(해수)	837				360		1,197
'13	정보서비스	6,537	0	0	0	1,560	600	8,697
	(농림)	6,391	0	0	18,575	9,120	7,200	41,286
	(해수)	985				720		1,705
'14	정보서비스	7,376	0	0	18,575	9,840	7,200	42,991
	(농림)	6,420			18,575	9,120	7,200	41,315
	(해수)	980				720		1,700
'15	정보서비스	7,400	0	0	18,575	9,840	7,200	43,015
	(농림)	6,420			18,575	9,120	7,200	41,315
	(해수)	780				720		1,500
'16	정보서비스	7,200	0	0	18,575	9,840	7,200	42,815
	(농림)	6,420			18,575	9,120	7,200	41,315
	(해수)	780				720		1,500
'17	정보서비스	7,200	0	0	18,575	9,840	7,200	42,81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이용자만족도	80.4	83.5	80.2	83.8	85.0	7등급 최도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100점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업무처리절감율	32.5	36.0	40.4	42.8	46.2	업무처리시간(구축전- 구축후)/업무처리시간 (구축전)*100	설문조사

<3-3-3-4.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 구축(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	네트워크기획과	담당자	유태복
전화번호	02-2110-2957	이메일	cup2006@msip.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정보화기반 구축 및 교육 추진 (p39)

- 농어촌 어디에서나 IP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통합망 구축
 - '10년 실태조사를 거쳐 '14년까지 80% 구축('17년까지 구축 완료)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50세대미만 농어촌지역 1,010개 마을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완료
 - 전국 9개 광역지자체 대상 구축 대상마을 선정 및 지자체, 사업자와 3자 계약체결(4월)
 - 농어촌지역 1,010개 행정리(마을)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완료(9월)
 - 정부, 지자체 합동 구축마을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 실시(10월)
 - 망구축 정산(11월) 및 결과보고회 개최('14.1월)
- 농어촌 광대역망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서비스 제공('12.12월)
 - 농어촌지역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발굴(5-8월)
 - 경북 영주시 내 사과 작황정보 및 병충해 예방정보 서비스 등 2종 제공(12월)
 - 서비스 개통식 개최 및 결과보고회 개최('14.1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50세대미만 농어촌지역에 지속적으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확대 추진
 -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지역 구축 예산 배분 및 구축물량 선정
 -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매칭펀드를 통해 농어촌 마을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확대
 - '14년부터 읍지뿐만 아니라 도서지역까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추진
- 농어촌지역 광대역망 시범서비스 제공
 - 광대역망 이용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특화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시범제공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50세대 미만 규모의 행정리(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전국 13,217개 행정리 대상('09년말 기준)
- 지원금액 및 형태 : - 억원(13년까지 기 투자액 : 140.7억원), 출연(일반회계)
- 지원조건 : 100%(망구축은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 50%)
- 지원내용 : 도·농간 네트워크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50세대미만 농어촌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및 농어촌 특화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51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방송통신 발전기금	소계			
2013				3,435	3,435	3,100	6,200	12,735
2014				5,000	5,000	4,700	9,400	19,100
(증△감)				1,565	1,565	1,600	3,200	6,365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마을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방송통신 발전기금			
합계	1,060				4,700	4,700	9,400	18,800
인천	6				62	62	124	248
세종	3				12	12	24	48
경기	20				59.1	59.1	118.2	236.4
강원	55				228	228	456	912
충북	144				594	594	1,188	2,376
충남	150				633.9	633.9	1,267.8	2,535.6
전북	191				797	797	1,594	3,188
전남	207				1,035	1,035	2,070	4,140
경북	146				614	614	1,228	2,456
경남	138				665	665	1,330	2,660

※ 지자체별 예산확보 현황에 따라 시도별 조정 가능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방송통신 발전기금			
합계	5,542/5,284				25,804	23,669	47,338	96,811
'13	1,010/752				3,435/3,435	3,100	6,200	12,735
'14	1,055				5,000	4,700	9,400	19,100
'15	1,061				5,300	4,800	9,600	19,700
'16	1,144				5,727	5,227	10,454	21,408
'17	1,272				6,342	5,842	11,684	23,868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BcN유선 가입율(%)	76	86	89	92	(종료)	(농어촌지역 BcN 유선 가입지수 /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가입지수) × 100	통신사업자연합회 제출자료
50세대미만 농어촌 망구축율(%)	-	-	-	(신규)	60	(농어촌지역 BcN구축 마을수 / 농어촌지역 BcN 구축대상마을수) × 100 ※대상마을수 : 13,217개 ('09년말 기준 50세대미만 행정리 기준)	사업결과보고서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4-1. 농어촌산업 고도화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지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 경제활동 다각화
 - 국내외 판로확보를 위한 소비자 판촉전,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 해외 판촉전 등 농촌기업 역량강화 및 판로확보를 위한 유통활성화 사업 추진
 - 농촌 전통지식 유망자원 발굴 및 활용 콘텐츠 개발(세시풍속을 활용한 마을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및 전통생태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사업화 전략 개발(전통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농촌기업의 실질적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전 역량강화 교육, 바이어 품평회, 소비자 판촉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농업인 소규모 창업 활성화(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15개소), 시군센터를 통한 창업보육기반 확립(농산물종합가공시설 6개 설치), 지역식자재와 문화를 연계한 향토음식소득 자원화(농가맛집 5개 조성)
 - 음식관광 마케팅 및 외래 관광객 수요확대, 농촌관광마을 6차산업화 경쟁전략 및 공정관광 도입방안, 농촌관광마을 판매상품 및 전시판매장 디자인 개선 연구
 - 복합산업화 및 어업기반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 평가 등 지원, 어촌 6차 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5개소 추진('14.9~'15.12)
 -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 등 관련 사업의 창업·확장·개선 자금 지원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촉진
 - 6차산업화를 추진중이거나 추진(창업)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 대상 융자지원
- * 지원내용 : 제조·가공 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입자금(총 사업비의 100%),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자금, 사업 운영 자금(금융기관 대출 승인금액의 50% 이내)

- 총 결성액 100억원 규모의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합작 방식의 6차산업화 특수목적펀드 결성
 - * 농식품모태펀드 수시출자(70억원)와 민간자금(30억원 이상)의 매칭
- 지역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가공·유통시설,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으로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개선방안 마련(2월) 및 사업단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9월), 지역전략 '15년 예비사업단(5개소) 선정('17년까지 90개소 선정·육성)

□ 예산 내역

<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복합산업화지원 (포괄보조) 관리		216,000			216,000	216,000		432,000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400		400			400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6,500				6,500			6,500
소규모농업인 창업 소득화 지원		3,500			3,500	3,500		7,000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750			750	750		1,500
농산물종합가공기 술 지원		2,500			2,500	2,500		5,000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250			250	250		500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420		420			420
어촌활력정착지원	1,750				1,750	1,250		3,000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	11,000				11,000		31,000	42,000
창업자금 지원							30,000	30,000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1,000				1,000		1,000	2,000
6차산업화 특수목적 모태펀드	10,000				10,000			10,000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9,160			9,160	9,120		18,280
합계	19,250	228,660	820		248,730	229,870	31,000	509,600

< 4-1-1-1.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재천 방도혁
전화번호	044-201-1586 044-201-1584	이메일	leejc@korea.kr dhpa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기본계획 p.42)

□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13 → 1개 포괄보조금)하고, 지자체가 계획수립·시행토록 자율성 확대
 - 지역 산업화 역량강화, 상품 생산·유통기반 구축,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가공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관리 등 추진
 -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지방비포함) : ('09) 3,916억원 → ('10) 4,738
 - * (사례) 전북 부안 : 뽕·오디의 산업화를 통해 뽕재배 농가 확대('05년 45농가 → '08년 697농가) 및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
- 지역별 핵심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투자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새로운 제품 발굴·자원화, 제품·공정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역 단위 R&D 투자 확대 유도
 - * 향토산업육성지원 등 지역 R&D 분야 지원('10안) : 313억원
- 농어촌산업에 대한 종합적·다층적인 지역 R&D 지원체계 구축
 - 중앙(농식품부,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지역협력단) - 시·군(지역협력단,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단계로 기능분담 체계 정비
 - 지역 특성화 연구과제를 신설하고 지역개발 사업과 연구사업간 연계를 강화(특성화 연구기관의 참여 권장)

□ 농촌 입지 제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내실화 추진(p44)

- 농공단지는 2차 계획기간까지 약 400개소('08년까지 330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 인프라 보강 및 소프트웨어 지원에 역점
 - * 지역 식품산업, 향토자원 활용형 기업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 ※ 4-1-3-1 :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농식품부)에서 이관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가.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향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처·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 농식품부-지경부간 MOU 체결 및 공동기획단 구성('11.2.21), 협력업무 시행지침 수립('11.3.2), 농식품부·지경부 공동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지원단』 회의를 통해 12개 시군별 연계협력 시행계획 검토·승인('11.7.18), 시군연계협력사업 모니터링('11.10월)
- 지역별 산업화자원 일제조사('12.1~2월) 및 보완조사('12.10~'13.2월) 완료
- 농어촌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활성화 방안관련 연구용역 추진('11.7~12월) 완료
 - 농어촌산업화지원사업(향토, 복합)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12.1월) 완료
 - 향토산업육성사업 제2기 추진방안 마련('12.9월) 완료
 -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추진('13.12)
- 지원대상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및 예산편성('10년이후 매년)
- 농어촌산업육성사업 업무편람 제작·보급 완료('12.1월, '13.1월)
- '11~'12년도 추진사업 실적평가(지역발전위 주관, 부처 자체평가) 완료
- 향토산업육성사업 '11~'12년도 추진실적 평가('12년, '13년) 완료

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새로운 제품 발굴·자원화, 제품·공정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역단위 R&D 투자 확대 유도
 - 개별 경영체 대상 시설설치 위주의 단편적 지원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생산·제조가공·R&D·마케팅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지원, S/W분야 지원 강화

다. 농촌 입지 제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내실화

-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추진
 - '13.6월 기준 농공단지 총 447개소 지정, 382개소 조성 완료
 - * 농식품 산업과 연계한 특화농공단지는 22개소
 -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 및 지자체 농공단지 관리매뉴얼 마련('11.6.29) 완료
 - 입주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12년부터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추진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마련('12.3~12월)
 - “농산업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13.8~'14.2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개편('14.1월)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해 사업 내실화 도모 등(R&D 평가체계 구축 포함 등)
- 농공단지통합지침 개정안 마련('14.5월)
 - 특화농공단지 농식품부 이관, 단지내 녹지율 반영, 지원단가 등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 경제활동 다각화('14년 연중)
- 농촌기업 역량강화 및 판로확보를 위한 유통활성화 사업 추진('14년 연중)
 - 국내외 판로확보를 위한 소비자 판촉전,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 해외 판촉전 등
- 농촌사업 육성·지원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 6차산업화 촉진기반 마련('14년 연중)
- 향토자원 발굴·육성(누계) : ('13년)182개 → ('14년)203개(신규 21개*)
 - * '14년 신규 발굴자원 : 장흥 표고, 천안 배, 산청 홍화, 창녕 마늘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조직,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시·도별 예산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검토·반영
 - 지원금액 및 형태 : '10~'13년까지 기투자액 8,927억원, 국고보조 50%
 - 지원조건 : 지자체 예산한도내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예산신청을 하여 사업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농촌산업기획·평가체계구축, 생산유통기반구축지원,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체험전시지원, 농촌체험관광지원, 특화농공단지조성 및 개보수 등
- * 농공단지 조성지원은 '10년부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내역사업에 편입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10,560			210,560	210,560		421,120
2014		176,293			176,293	176,293		352,586
(증△감)		△34,267			△34,267	△34,267		△68,53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293			176,293		352,586
부산			500			500		1,000
대구			490			490		980
인천			601			601		1,202
광주			1,700			1,700		3,400
울산			2,485			2,485		4,970
경기			4,465			4,465		8,930
강원			5,276			5,276		10,552
충북			8,545			8,545		17,090
충남			26,820			26,820		53,640
전북			58,543			58,543		117,086
전남			17,725			17,725		35,450
경북			25,371			25,371		50,742
경남			19,065			19,065		38,130
제주			4,707			4,707		9,414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17,232			917,232		1,834,464
'13			210,560/ 228,023			210,560 228,023		421,120/ 456,046
'14			176,293			176,293		352,586
'15			176,793			176,793		353,586
'16			176,793			176,793		353,586
'17			176,793			176,793		353,586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

* '13년 계획액 228,023백만원은 해수부 소관 17,463백만원이 포함된 규모

나. 향토산업육성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군·구
- 사업 규모(사업량) : '13년 82개 사업 438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업당 총사업비 30억원,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원내용 : 산·학·관·연 연계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 + H/W 포괄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3,800			43,800	43,800		87,600
2014		39,700			39,700	39,700		79,400
(증△감)		△4,100			△4,100	△4,100		△8,200

- * 단위 : 억원 단위가 아니고 백만원 단위임
- * 농특세 전입금 사업은 농특 부분에 기재하고, 현 회계는 별도 기재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자원명을 별도기재
- * 2013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0		39,650			39,650		79,380
경기	2		850			850		1,700
강원	10		5,550			5,550		11,100
충북	5		2,750			2,750		5,500
충남	10		5,700			5,700		11,400
전북	12		5,800			5,800		11,600
전남	16		8,100			8,100		16,200
경북	9		5,150			5,150		10,300
경남	6		2,750			2,750		5,500
제주	4		2,400			2,400		4,800
인센티브	6		600			600		1,2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1,850			191,850	383,700	
'13	82/82		43,800/ 43,800			43,800/ 43,800	87,600/ 87,600	
'14	72		39,650			39,650	79,300	
'15	71		38,800			38,800	77,600	
'16	71		31,900			31,900	63,800	
'17	75		37,700			37,700	75,4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

5. 성과목표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실적)	'11 (실적)	'12 (실적)	'13 (목표)	'14 (목표)		
지원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	42	28.6	28.1	28.4	26.4	((당해년도 매출액 전 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행정조사
농공단지 고용인원 수(명)	129,806	138,181	139,706	143,000	147,000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한국 산업단지공단)

* '13년.11월 기준으로 조사한 최근 3년간 실적치('11~'13년 매출액) 결과를 반영하여
'14년 매출액 증가율 목표치(3개년 실적평균치) 하향 조정

○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실적)	'11 (실적)	'12 (실적)	'13 (실적)	'14 (목표)		
참여기업매출액 증 가율(사업당 평균 (%))	20.5	△10.6	△27.1*	45.0 (추정치)	14	((당해년도 매출액 전 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행정조사

* [13년도중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매출액(사업당 평균) 3,307백만원 - 12년도중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매출액(사업당 평균) 2,280백만원] ÷ 2,280백만원 × 100 = 45.0%

< 4-1-1-2.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정명철
전화번호	031-290-0285	이메일	jmc680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기본계획 p.42)

□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13 → 1개 포괄보조금)하고, 지자체가 계획수립·시행토록 자율성 확대
 - 지역 산업화 역량강화, 상품 생산·유통기반 구축,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가공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관리 등 추진
 -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지방비포함) : ('09) 3,916억원 → ('10) 4,738
 - * (사례) 전북 부안 : 병·오디의 산업화를 통해 병재배 농가 확대('05년 45농가 → '08년 697농가) 및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

- 지역별 핵심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투자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새로운 제품 발굴·자원화, 제품·공정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역 단위 R&D 투자 확대 유도
 - * 향토산업육성지원 등 지역 R&D 분야 지원('10안) : 313억원
- 농어촌산업에 대한 종합적·다층적인 지역 R&D 지원체계 구축
 - 중앙(농식품부,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지역협력단) - 시·군(지역협력단,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단계로 기능분담 체계 정비
 - 지역 특성화 연구과제를 신설하고 지역개발 사업과 연구사업간 연계를 강화(특성화 연구기관의 참여 권장)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 전통지식 유망자원 발굴 및 활용 콘텐츠 개발(계속)
 - 세시풍속 실태조사(30건) 및 세시풍속 유망자원 발굴

- 체험마을: 양평 보릿고개마을 태안 벚거리마을·매화둔벼마을 화순 도장밭노래마을 울진 양떡음뽕마을
- 축제: 이천 쌀문화축제, 강릉단오제, 영광 법성포단오제, 남원 삼동굿놀이, 창녕 3.1민속문화제



화순도장밭노래마을(농요) 강릉단오제(학산서낭제) 이천쌀문화축제(거북놀이)

- 전통 마을숲 실태조사(115건) 및 활용 우수사례 발굴
- 축제: 강릉 학산마을숲, 속초 상도문마을숲, 영광 법성진숲쟁이, 거창 동호마을숲
- 체험: 원주 성황림, 영주 솔향기마을숲, 군위 한밤마을숲
- 교육: 의성 사촌서림, 임실 방동마을숲, 담양 관방제림



영광 법성진숲쟁이(축제) 원주 성황림(체험) 임실 방동마을숲(교육)

○ 전통생태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사업화 전략 개발(계속)

- 전통생태자원 활용 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4종
- 생태체험지도, 관찰/관람 체험, 모험/레포즈 체험, 휴양 체험



생태체험지도 관찰/관람 체험 모험/레포즈 체험 휴양 체험

- 생태체험 사업화 단계 및 사업화 전략 개발 : 4유형
- 하천 및 습지 체험, 숲 체험, 곤충 체험, 농업 체험
- 전통생태자원 평가체계 개발 : 3유형(습지, 노거수, 마을소하천)
- 습지 8항목, 소하천 6항목, 노거수 5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및 가중치 부여

순서	항목	내용	비고
1	농업정책	농업정책	농업정책
2	농업현황	농업현황	농업현황
3	농업인구	농업인구	농업인구
4	농업소득	농업소득	농업소득
5	농업정책	농업정책	농업정책
6	농업현황	농업현황	농업현황
7	농업인구	농업인구	농업인구
8	농업소득	농업소득	농업소득
9	농업정책	농업정책	농업정책
10	농업현황	농업현황	농업현황
11	농업인구	농업인구	농업인구
12	농업소득	농업소득	농업소득

습지 평가체계

소하천 평가체계

노거수 평가체계

○ 강소농 육성을 위한 팜파티(Farm party) 현장 지원(완료)

- 팜파티를 위한 문화콘텐츠 모델 개발 : 2지역(해남, 화순) 24종
- 팜파티를 위한 농가이야기 스토리북 개발 : 5종
- 유형별 콘텐츠 모델 개발 : 공연, 전시, 음식, 체험/놀이, 영상, 문학 등 19종



공연콘텐츠

전시콘텐츠

음식콘텐츠

체험/놀이콘텐츠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

비전	향토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목적	지역의 유망 향토자원 발굴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산업화 모델 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 기반조성
추진 내용	▶ 향토자원 보전 및 DB 구축을 위한 발굴조사 ▶ 지역마케팅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 향토자원 활용 콘텐츠의 현장 적용		

○ 농촌 전통지식 유망자원 발굴 및 활용 콘텐츠 개발(계속)

- 세시풍속을 활용한 마을 축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3건
- 마을숲 관련 전통지식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콘텐츠 개발 : 3건
- 마을숲의 경관생태적 가치평가 및 현장적용 : 6개소(호남·제주권)

○ 전통생태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사업화 전략 개발(계속)

- 전통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4건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물서식처 조성계획 모델 개발 : 3종
- 농외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화 전략 개발 : 3유형

4. 관련 사업 내용

가.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향토자원 발굴 및 활용 관련 연구과제 추진 연구부서
- 사업 규모(사업량) : 향토자원 발굴 및 활용 관련 2개 과제
 - 세시풍속과 마을숲을 활용한 축제·체험 콘텐츠 개발
 - 전통생태자원 활용콘텐츠 및 사업화 전략 개발
- 지원금액 및 형태 : 3.65억, 국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향토자원 보전 및 DB 구축을 위한 발굴조사
 - 지역마케팅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 향토자원 활용 콘텐츠의 현장 적용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490	-	490	-	-	490
2014	-	-	365	-	365	-	-	365
(증△감)	-	-	△125	-	△125	-	-	△125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8			1,455				1,455
'13	28/10			490/440				490
'14	10			365				365
'15	10			200				200
'16	10			200				200
'17	10			200				2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유망 향토자원 발굴조사	504	288	256	145	100	산업화유망 향토자원 조사 및 발굴 건수	문헌 및 현지조사
향토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3	11	11	28	10	문화콘텐츠별 상품 시개발 건수	문헌 및 현지조사

<4-1-3-1.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당자	방도혁
전화번호	044-201-1584	이메일	dhpa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정비 (기본계획 p44)

□ 소규모 사업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11)

- 공동 가공시설 설치·이용, 가공·마케팅 지원, 자금조달 개선, 기술개발 지원, 규제완화 등 종합 지원
 - * '09년 농어촌기업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10년중 과제 확정
- 농업기술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협력단 등의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단위 농상공 상생협력기구 설치 유도

□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 지원(기본계획 p.43)

- 박람회 개최,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을 통해 시장 접근기회 다양화
 - 농어촌산업박람회를 대표적인 지역생산품의 판촉·상담 장으로 육성
 - 대형 마트, 농수협 매장 등 주요 판매처와 지자체를 연결하고, 지역 생산품 전문코너 개설 유도 등 마케팅전략 컨설팅 지원
- 해외 박람회, 국외바이어 초청 품평회 등 수출시장 개척활동 지원
- 시장성을 감안한 최적의 R&D, 마케팅 전략, 자금조달방식 선택을 돕고 민간펀드 등 투자 유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소규모 사업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

- 자금·정보·기술지원·창업보육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원활한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10년에 이어 '농어촌기업 사업추진 매뉴얼 II' 제작('11.12)
 - 기업 발전 단계에 맞춰 농어촌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시장분석·고객관리·조직진단 분야에 대한 '농어촌기업 사업추진 매뉴얼 III' 제작('12.12)
- * 매뉴얼은 시·군 및 농어촌기업을 대상으로 배포 완료

농어촌기업 사업추진 매뉴얼 I	농어촌기업 사업추진 매뉴얼 II	농어촌기업 사업추진 매뉴얼 III
농어촌기업 설립 및 세무절차, 공장 설립, 홍보·마케팅 분야로 구성	유통 관리에 중점	시장분석·고객관리·조직진단 분야 중점

- 향토기업(제품)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출매뉴얼 제작 보급('12.12월) 완료
 - 시도, 시군구 사업담당자 및 향토기업체 등에 배포(500부)
- 농촌기업 유통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바이어 ⇔ 농촌기업 매칭 컨설팅 추진('13.2~7)
 - 바이어 품평회(41개 기업 138개 제품 대상 17개 업체 35명의 바이어) 이후 선정된 우수제품에 대해 추가 컨설팅 지원(18개 기업 참여)

□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 지원

-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여 개발된 우수 제품을 전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요창출 촉진하고자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 제3회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11.9.5~9.8, aT센터)
 - 유통전문가 교육(7.26~27), 유통품평회(8.2~3), 유통역량강화 컨설팅(8.4~31) 을 박람회 사전 프로그램으로 실시
 - 54개 시·군 및 139개 업체('10년 76개 시·군 290개 업체)
 - 대한민국 향토제품대전(제4회 농어촌산업박람회:'12.8.30~9.2, 킨텍스) 등을 통해 전략적·잠재적 수요처 발굴 지원
 - 계획수립(5.15, 장관방침), 순회설명회(6월), 품평회(3~4월), 유통바이어 컨설팅(5~6월), 우수제품 선정(7월) 등 사전 실시로 내실화
 - 76개 지자체 및 176개 농어촌기업체 참여, 우수제품 특별전시관운영
 - 6차산업 박람회('13.8.29~9.1, 킨텍스/ 기존 농어촌산업박람회 명칭 변경 추진) 등을 통해 B2B, B2C 비즈니스 실시, 다양한 수요처 발굴 지원
 - 계획수립(4.19, 장관방침), 순회설명회(7월), 품평회(3~4월), 유통바이어 컨설팅(5~6월), 우수제품 선정(7월) 등 사전 실시로 내실화
 - 74개 지자체 및 163개 농어촌기업체 참여, 우수제품 특별전시관운영

<산업박람회 추진결과>

구분	전체 매출액 (백만원)	계약 상담(건)	계약 체결(건)	홍보(건)	바이어 상담(건)
2013	2,542	217	12건	244	464
2012	2,015	192	13건	237	581
2011	1,783	43	9	512	45

- 농촌기업 제품의 해외 바이어 품평회 및 소비자 품평회, 소비자 판촉전을 통해 향토자원의 수출 판로 확보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미국('13.7), 중국('13.10) 시장 확보를 위한 품평회 추진으로 총 10건 342만불 계약 체결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업·농촌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창업 매뉴얼 및 지원정책 매뉴얼 제작·배포
 - 지원정책 매뉴얼 및 창업매뉴얼('14. 3월중)
- 농촌기업의 실질적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전 역량강화 교육→바이어 품평회→소비자 판촉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14년 연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활력정착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군 및 참여 업체
 - 사업 규모 : -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백만원('13년까지 14,392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100%(직접수행, 민간보조)
 - 지원내용 : 농촌산업육성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평가, 컨설팅,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지역연계발전시스템 구축, 6차산업 디자인페어 개최 등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251				2,251			2,251
2014	6,525				6,525			6,525
(증△감)	4,274				4,274			4,27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민간보조)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399						12,339
'13	해당없음	2,238 /2,251						2,238 /2,251
'14		2,355						2,355
'15		2,463						2,463
'16		2,576						2,576
'17		2,694						2,69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산업박람회 방문객 증가율(%)	64.8	△40.8	35.1	-	-	(금년도 방문객 - 전 년도 방문객) / 전 년도 방문객 * 100	행사 결과 보 고서
농어촌산업박람회 계약상담(건) 증가율(%)	-	-	-	10 (13)	10	(금년도 계약상담(건) - 전 년도 계약상담(건)) / 전 년도 계약상담(건) * 100	행사 결과 보 고서
농어촌산업박람회 계약체결(건) 증가율(%)	-	-	-	10 (△8)	10	(금년도 계약체결(건) - 전 년도 계약체결(건)) / 전 년도 계약체결(건) * 100	행사 결과 보 고서
바이어 품평회 입점계약 체결(건)					8	바이어 품평회 이후 입 점계약 체결 건	행사 참석 업체 계약체결건 집계
6차산업화 우수사례 발굴·확산사례(건)					50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 건수	6차산업화 우수 사례집 수록 건수

* '11년 박람회(방문객 수 : 63,000명)보다 홍보 등의 노력을 통해 방문객이 상당수 증가('12: 85,131명)

* '13년 이후 성과지표 변경 : 박람회 개최목적에 맞는 성과지표(계약상담(건) 및 계약체결 증가율)로 변경

* '14년 이후 성과지표 변경 : 박람회 폐지에 따라 '14년 중요 추진사업의 성과지표(입점계약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사례)로 변경하되, '14년 사업 초년도 이므로 증가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지표가 없으므로
증가율이 아닌 실적으로 목표 설정

<4-1-3-2.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장시연
전화번호	031-299-1071	이메일	jsy04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정비 (기본계획 p44)

- 소규모 창업 및 소득증대 활동 지원을 통한 농어촌형 微小기업 (micro-business)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고양
 - 농외소득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촌형 미소기업의 창업보육 종합 지원센터로 정립
 - * ('10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술지원 10억원(4개소)
 - 마을단위, 가족단위, 여성·노인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단체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소규모 사업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11)
 - 공동 가공시설 설치·이용, 가공·마케팅 지원, 자금조달 개선, 기술개발 지원, 규제완화 등 종합 지원
 - * '09년 농어촌기업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10년 중 과제 확정
 - 농업기술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협력단 등의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단위 농상공 상생협력기구 설치 유도
- 농촌 입지 제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내실화 추진
 - 농공단지 2차 계획기간까지 약 400개소('08년까지 330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 인프라 보강 및 소프트웨어 지원에 역점
 - * 지역 식품산업, 향토자원 활용형 기업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완료)
 - ('06~'12)156개소, 70.3억원 → ('13)22, 11억원
 - * 농업인 창업지원사업장 소득 : ('12) 76 → ('13) 91백만원(평균 매출 24%↑)
 - * 상시인력 일자리 창출(신규) : ('13) 2.5명

- 농업인 가공 사업장에 대한 창업에서 자립단계까지 체계적인 기술지원 실시
 - *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4월, 90명), 농업인 CEO 경영개선교육(7월, 80명), 유관기관 업무 협력(농식품부, 중기청), 마케팅 지원(직거래장터 지원), 가공경진 시상 등

○ **공동가공이용 시설 설치 및 창업보육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 추진(완료)**

- ('10~'12)16개소, 40억원 → ('13)8, 20억원
 - * 농산물가공전문가 교육(3~4월, 2기 73명), 사업담당자 워크숍(6월, 47명), 현장기술지원(8시군, 6~11월)

<가공플랜트 활용한 가공 및 창업기반 조성 지원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 파일럿플랜트 활용 농가 스스로 가공·포장 판매하도록 지원
- ◇ 사업규모 : 공동이용시설(464㎡), 가공단위 생산장비(73종)
- ◇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9과정 40회(990명), 가공제품 개발 36건, 기술이전 9건, 특허출원 2건, 농가의 부역 상표출원
 - *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농가의 부역 50선
 - * 창업코칭(5농가) : 감장고무신, 일로떡집, 강화왕송편, 콩세알, 강화순무명인김치
 - * 창업보육 품목 : 순무레몬발효액, 마늘식초, 발효액장아찌, 배즙 등 15종



<가공센터 전경>



<발효 가공실>



<상표·특허출원>

○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 증진(완료)**

- 「농가맛집」 조성 : ('07~'12)74개소, 34억원 → ('13)9, 4.5억원
 - *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장 소득 : ('12) 65.1 → ('13) 102.8백만원(평균 매출 57.8%↑)
- 향토음식자원화사업 현장 컨설팅 및 농가맛집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 담당자 업무 협의회(3월), 위생·경영·서비스 등 품질관리 현장 기술지원, 유관 기관 업무협력(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농가맛집 지도제작(2,000부) 등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업인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창업 활성화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 ('06~'13) 178개소 → ('14) 15
 - * 농식품가공CEO 아카데미(4월), 가공경진(11월), 현장기술지원(년중)
- 시군센터를 통한 농업인의 가공기술력 향상 활동 강화 및 창업보육기반 확립
 - 공동이용 및 창업보육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 : ('10~'13) 1년차 16개소 → ('14) 6
 - * 개소당 5억원씩 2년간 지원, 12개 완료 및 10개 설치 예정('13. 4개, '14. 6개)
 - * 가공기계 활용교육(3월), 담당자 현장워크숍(3월), 가공장비 활용매뉴얼 제작(3월)
- 지역식자재와 문화를 연계한 향토음식소득 자원화
 - 지역별 향토음식 체험공간 「농가맛집」 조성 : ('07~'13) 83개소 → ('14) 5
 - *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배부(3월), 음식관광 전문교육(4월), 전문가 현장 컨설팅(연중)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2인 이상의 농업인 공동사업체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5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1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가공 작업장 및 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포장개발,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홍보,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등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제50조, 농촌진흥법 제2조·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100			1,100	1,100		2,200
2014		750			750	750		1,500
(증△감)		△350			△350	△350		△7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750			750		1,500
경기	3		150			150		300
강원	2		100			100		200
충북	1		50			50		100
충남	1		50			50		100
전북	2		100			100		200
전남	2		100			100		200
경북	1		50			50		100
경남	2		100			100		200
제주	1		50			50		1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7		6,350			6,350		12,700
'13	22/22		1,100/1,100			1,100/1,100		2,200/2,200
'14	15		750			750		1,500
'15	30		1,500			1,500		3,000
'16	30		1,500			1,500		3,000
'17	30		1,500			1,500		3,000

나.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규모(사업량) : 10개소(1년차 6개소, 2년차 4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50억원(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단가 5억원씩, 2년간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 공동 이용 공간 확보, 기자재·장비 시설 설치 및 운영 인력 확보, 상품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가공 기술이전,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가공기술 개발·표준화·상품화·컨설팅 보급에 따른 운영, 지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컨설팅 지원 등
- 법적근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촌진흥법 제2조·제13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			
2013			2,000		2,000		4,000
2014		2,500			2,500		5,000
(증△감)		2,500	△2,000		500		1,0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농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2,500			2,500		5,000
경기	1		250			250		500
강원	2		500			500		1,000
충남	3		750			750		1,500
전남	2		500			500		1,000
경북	1		250			250		500
경남	1		250			250		5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8		15,000	2,000		17,000		34,000
'13	8/8			2,000/2,000		2,000/2,000		4,000/4,000
'14	10		2,500			2,500		5,000
'15	16		4,000			4,000		8,000
'16	18		4,500			4,500		9,000
'17	16		4,000			4,000		8,000

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및 농가공동 참여자
- 사업 규모(사업량) : 5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5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향토음식 자원화 기반조성을 위한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 발굴, 향토음식 자료화,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한 사업자 역량 개발, 농가맛집 조성, 향토음식 상품화 등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제50조, 농촌진흥법 제2조, 제13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50				450		900
2014		250				250		500
(증△감)		△200				△200		△4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250			250		500
경기	1		50			50		100
강원	1		50			50		100
전북	1		50			50		100
경남	1		50			50		100
세종	1		50			50		1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4		3,700			3,700		7,400
'13	9/9		450/450			450/450		900/900
'14	5		250			250		500
'15	20		1,000			1,000		2,000
'16	20		1,000			1,000		2,000
'17	20		1,000			1,000		2,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업인 창업사업 장 매출액 증가율 (%)	20	21	33	24	26.4	(지원후 3년차 사업장 의 당년 매출액 - 동 사업장의 전년 매출액 / 동 사업장의 전년 매출액) × 100	해당 농업기술 센터 담당자
향토음식자원화율 (%)	128	125.4	147.5	128.7	129	향토음식 발굴·개발 및 대 자료화에 대한 계획 대 비 실적 : (①+②)/2 ①(향토음식 발굴· 개발 실적/계획) ×100 ②(향토음식 자료화 보급 실적/계획) ×100	해당 농업기술 센터 담당자

<4-1-3-3.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조록환 연구관
전화번호	031-290-0270	이메일	tryjoh@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지역간 농어촌산업 활성화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기본계획 p45)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특산물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푸드투어리즘 개발
 - 푸드투어리즘 유형별 목표시장 설정 및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 푸드투어리즘을 통한 지역농산물 활용 증진 방안 개발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농가 음식관광 성공사례’ 책자 발간 :1000부
 - 지역 특산 향토음식을 활용한 맛기행 루트 개발: 3종(와인, 한우, 국수)
 - 한국형 푸드투어리즘 외래관광객 유치 및 서비스방안 개발
 - 음식관광객 특성분석, 외국인관광객 서비스전략 개발(중국어권, 영어권)
- 농촌교육농장 운영 및 법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농촌교육농장 목표고객 및 유형별 운영방안 도출 : 1종
 -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장애가 되는 제도 개선 : 2종
 - 농촌교육농장 보험상품 개발 및 품질 인증 개선방안 도출
- 농촌관광마을 판매상품 디자인 실태 조사 및 디자인 요소 분석
 - 농촌관광마을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방안 도출 : 3유형
 - 표준규격표시 디자인 2유형(과일·채소류, 발효·가공류), 택배용 디자인 1유형
 - 농촌관광마을 포장디자인 가이드 북 발간 : 1000부
 -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및 법규, 디자인 가이드(가공류, 발효류, 택배포장) 등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실태조사 및 시설 유형 분석 : 2유형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음식관광 마케팅 및 외래 관광객 수요확대 방안 연구
 - 국내 음식관광 유형별 목표시장 설정 및 서비스 방안 도출
 - 한국형 음식관광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전략 개발
 - 영미권, 중화권 관광객 요구에 대응한 서비스 및 마케팅 방법
 - 음식관광과 연계한 지역농산물 활용증진 방안 개발 : 구매연계 등
 - 지역 특산 향토음식을 활용한 맛기행 루트 개발 : 2종(산채, 전통주)
- 농촌관광마을 6차산업화 경쟁전략 및 공정관광 도입방안 연구
 - 농촌관광마을의 6차산업화를 위한 경쟁요소 분석 및 수준 평가
 - 농촌축제·이벤트 중심형 6차산업화 성공요인, 지역농업 연관관계 등
 - 공정관광 현황 및 소비자 요구분석 : 300명(농촌관광마을, 도시민)
 - 국내외 공정관광 프로그램, 공정 관광객 특징, 요구사항 등
- 농촌관광마을 판매상품 및 전시판매장 디자인 개선 연구
 - 농특산물 판매상품 포장디자인 개선 : 3유형(채소, 발효상품, 택배형)
 - 전시판매장 디자인 개선 방안 도출 : 2유형(구조, 환경)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기술개발 연구 추진 부서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기술 8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4.5억원(기타회계)
 - 지원조건 : 국비 100%
 - 전문가 등의 심의와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관리를 위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제
 -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관련 연구
 - 지원내용
 - 푸드투어리즘 마케팅 및 외래관광 수요확대 전략 연구

- 농촌관광마을 판매상품 현황 분석 및 포장디자인 개선 연구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정관광 도입방안 연구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50					450
2014			420					420
(증△감)			△30					△3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							
'13	8/5			450/400				450/400
'14	5			400				400
'15	5			400				400
'16	5			400				400
'17	5			400				4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촌관광상품 개발건수	5	5	5	8	5	현지조사	보고서 농촌관광현장확인

<4-1-3-4. 어촌활력정착지원(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담당자	남우진(사무관) 변민준(주무관)
전화번호	044-200-5657 044-200-5660	이메일	wjnam@korea.kr pw434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정비(기본계획 p.44)

□ 소규모 사업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11)

- 공동 가공시설 설치·이용, 가공·마케팅 지원, 자금조달 개선, 기술개발 지원, 규제완화 등 종합 지원

* '09년 농어촌기업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10년중 과제 확정

- 농업기술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협력단 등의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단위 농상공 상생협력기구 설치 유도

(4) 지역간 농어촌산업 활성화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기본계획 p.47)

□ 농어촌산업의 규모화·광역화와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간(시·군간) 연계·협력 촉진

- 동일 테마(품목)를 공동마케팅 하는 등 시·군간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사업 전개 촉진

- 시·군간 테마별 연계 마케팅전략, 공동판매장, 안테나숍 등

* (사례) 한방생약초산업 : 제천·산청·진안·대구 동구 등 12개 지자체간에 한방약초 산업 진흥 협의체 구성(지역별 약초품목 특화, 한방 전문인력 양성 등)

* (예시) 대도시에 지자체 연합출자로 와인판매장을 형성, 국내산 와인(영동, 영천, 부안, 청도 등)과 국내산 안주(임실 치즈, 서천 김, 상주 꽃감 등)로 시너지 창출

(3) 지역(마을)별 전담 컨설팅제 정착 유도(기본계획 p.69)

□ 현행 농촌마을종합개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담컨설팅제도를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포괄보조사업 전체로 확대

- 지역개발 전문가, 총괄계획가, 컨설팅 기관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정('12.5.23)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13.5.31)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시행규칙 제정('13.6.12)
- 어촌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13.7~12)
 - 5개시도 10시군 10개 어촌마을(교육대상인원 : 395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복합산업화 및 어업기반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 평가 등 지원(연중)
-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 연구('14.3~ 8)
- 어촌 6차 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5개소 추진('14.9~'15.12)

4. 관련 사업 내용

가. 어촌활력 정착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73개 연안시군 826개 읍·면·동, 1,982개 어촌계
 - 사업 규모(사업량) : 5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 보조(개소 당 10억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자체 보조 50%
 - 지원내용 : 사업조사·모니터링·평가 등 사업관리, 6차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연구, 6차산업화 시범사업
 - 법적근거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어촌정비법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육성),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	-	-	-	-	-
2014	1,750					1,250	-	3,000
(증△감)	1,750					1,250	-	3,000

* 소득사업의 경우 자부담 20%내외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개소	1,750	-	-	-	1,250	-	3,000
전국	5개소	1,750	-	-	-	1,250	-	3,000

* 시·도 미확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9개소	59,050	-	-	-	53,000	-	112,050
'13	-	-	-	-	-	-	-	-
'14	5개소	1,750	-	-	-	1,250	-	3,000
'15	28개소	6,850	-	-	-	3,750	-	10,600
'16	40개소	43,600	-	-	-	42,500	-	86,100
'17	36개소	6,850	-	-	-	5,500	-	12,350

5. 성과목표

- 어촌마을 역량강화 교육 주민만족도는 [참고 2]의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2014년 성과목표를 80%로 함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어촌마을 역량강화 교육 주민만족도(%)	-	-	-	-	80	역량강화마을 주민대상 전수 설문조사	외부기관 설문조사서

< 4-1-3-5.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당자	방도혁
전화번호	044-201-1584	이메일	dhpa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정비 (기본계획 p.44)

- 소규모 창업 및 소득증대 활동 지원을 통한 농어촌형 微小기업 (micro-business)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고양
 - 농외소득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촌형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종합 지원센터로 정립
 - * ('10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술지원 10억원(4개소)
 - 마을단위, 가족단위, 여성·노인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단체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소규모 사업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형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11)
 - 공동 가공시설 설치·이용, 가공·마케팅 지원, 자금조달 개선, 기술개발 지원, 규제완화 등 종합 지원
 - * '09년 농어촌기업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10년중 과제 확정
 - 농업기술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협력단 등의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단위 농상공 상생협력기구 설치 유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해당없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 등 관련 사업의 창업·확장·개선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촉진
- 사업추진계획 시달('14.2월), 사업신청 접수 및 선정('14.3월), 자금 지원 등 사업추진('14.4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창업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6차산업화를 추진중이거나 추진(창업)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285백만원(이차보전액 300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융자
- 지원조건 : 연리 3%(시설·장비 설 및 및 구입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제조·가공 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입자금(총 사업비의 100%),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자금, 사업 운영 자금(금융기관 대출 승인금액의 50% 이내)
- 법적근거 : -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해	당	없	음			
2014	-	-	-	-	-	-	30,000	30,000
(증△감)	-	-	-	-	-	-	30,000	30,000

* 기타 30,000백만원은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농협자금임.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	-	-	-	-	-	-	-
'14	-	285	-	-	-	-	-	285
'15	-	285	-	-	-	-	-	285
'16	-	285	-	-	-	-	-	285
'17	-	285	-	-	-	-	-	28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사업자금 지원실적(억원)	-	-	-	-	10%	자금 지원실적(억원)	농협은행(2014.12월말)

나.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6차산업화 다각화를 원칙으로 생산자단체, 법인 등이 참여하는 법인격 있는 컨소시엄사업단, 업무협약(공증)을 체결한 컨소시엄사업단, 향후 법인격 있는 사업단으로 발전계획이 있는 사업단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2,000백만원(국고 1,000, 자부담 1,000)
- 지원금액 및 형태 :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공동마케팅(관로확보, 관촉,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스토리텔링 등,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등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 1차 생산물 품질관리(재배기술, 종자개발 등)를 위한 지원사업은 제외, 농식품 기능성 연구 및 참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소비자 트렌드 분석 및 시장조사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해	당	없	음			
2014	1,000	-	-	-	-	-	1,000	2,000
(증△감)	1,000	-	-	-	-	-	1,000	2,0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	-	-	-	-	-	-	-
'14	-	1,000	-	-	-	-	1,000	2,000
'15	-	1,000	-	-	-	-	1,000	2,000
'16	-	1,000	-	-	-	-	1,000	2,000
'17	-	1,000	-	-	-	-	1,000	2,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사업단의 매출액 증가율(%)	-	-	-	-	10%	(전년도 매출액 - 당 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100	전수조사

다. 6차산업화 특수목적 모태펀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축산물을 포함,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타산업(2,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도모하거나 산업적 고도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10,000백만원(국고)
- 지원금액 및 형태 : 출자
- 지원조건 : 총 결성액 100억원 규모의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합작 방식의 6차산업화 특수목적펀드 결성
* 농식품모태펀드 수시출자(70억원)와 민간자금(30억원 이상)의 매칭
- 지원내용 : 투자금 전액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하려는)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목적투자)에 사용
- 법적근거 : -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0,000	-	-	-	10,000	-	-	10,000
2014	10,000	-	-	-	10,000	-	-	10,000
(증△감)	-	-	-	-	-	-	-	-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	-	-	-	-	-	-	-
'14	-	10,000	-	-	-	-	-	10,000
'15	-	10,000	-	-	-	-	-	10,000
'16	-	10,000	-	-	-	-	-	10,000
'17	-	10,000	-	-	-	-	-	10,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투자실적 (건수)	-	-	-	-	2건	투자실적 (건수)	농업정책자금 관리단

<4-1-4-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담당자	조안태
전화번호	044-201-2185	이메일	call11880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기본계획 p.42)

□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 촉진

-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13 → 1개 포괄보조금)하고, 지자체가 계획수립·시행토록 자율성 확대
 - 지역 산업화 역량강화, 상품 생산·유통기반 구축,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가공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관리 등 추진
 -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지방비포함) : ('09) 3,916억원 → ('10) 4,738
 - * (사례) 전북 부안 : 뽕·오디의 산업화를 통해 뽕재배 농가 확대('05년 45농가 → '08년 697농가) 및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

- 지역별 핵심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투자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새로운 제품 발굴·자원화, 제품·공정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역 단위 R&D 투자 확대 유도
 - * 향토산업육성지원 등 지역 R&D 분야 지원('10안) : 313억원
- 농어촌산업에 대한 종합적·다층적인 지역 R&D 지원체계 구축
 - 중앙(농식품부,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지역협력단) - 시·군(지역협력단,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단계로 기능분담 체계 정비
 - 지역 특성화 연구과제를 신설하고 지역개발 사업과 연구사업간 연계 강화(특성화 연구기관의 참여 권장)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중앙정부 평균적 농어가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주도하는 기술과 경영이 융합된 농식품산업 지원 시스템구축
 - 지역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방안 마련 및 20개소의 지역클러스터활성화사업 시범사업단 선정·지원('05~'07)
 -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07) 및 2011년까지 67개소로 사업확대 추진중
- * 선정현황 : 77개소('05, 20 → '08, 22 → '09, 12 → '11, 13 → '14, 10)
- 광역클러스터활성화사업으로 명칭변경 및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정책영역 구분('09)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기초 시군단위 클러스터 육성, 광역클러스터활성화 사업은 복수 시군 및 도단위 클러스터 육성 및 고도화 지원 담당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명칭변경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10)
 - 단순 생산·유통 중심의 사업단은 선정배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추진방안 개선(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개정, '11.2)
 - 일정금액 이상 집행시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여 투명성 확보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개선방안 보고(제2차관, '12.9)
 - '14년부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식품산업정책관) 및 향토산업육성사업(농어촌정책국)간 사업통합 추진
- * 현행 3년 지원(향토산업 30억, 지역전략 5년 50억) → 통합 5년 지원(기초 30억 ~ 광역 60억 지원), 지역전략 추가지원은 본 사업비로 전환
- 예비사업단 민간전문가 컨설팅 도입('13)
 - 지원전년도 예비사업단에 대한 사업추진방향, R&D, 홍보·마케팅 등 컨설팅(4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개선방안 마련(2월)
 - 지원 전년도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단 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등 최종 조정확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간평가,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단 자체평가제 도입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료사업단 경영회생방안 심의 후 재생기회 부여

- 사업단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9월)
- 사업성과 우수사례 전파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상반기)
- 지역전략 '15년 예비사업단 평가를 통하여 5개소 정도 선정(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사업단
 - 사업 규모(사업량) : '17까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9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60억원,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지역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구축, 가공·유통시설,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통 산업화 및 마케팅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2,815				12,745		25,560
2014		9,158				9,120		18,278
(증△감)		△3,657				△3,625		△7,282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개소		9,158			9,120		18,278
부산	1		800			800		1,600
강원	1		800			800		1,600
충북	1		800			800		1,600
전북	2		1,600			1,600		3,200
전남	2		1,600			1,600		3,200
경북	1		800			800		1,600
제주	2		1,600			1,600		3,200
유보	4		1,158			1,120		2,278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9		65,573			65,055		
'13	19/19		14,750/12,815			12,745		
'14	14		9,158			9,130		
'15	21		13,820			13,680		
'16	20		14,740			14,600		
'17	25		15,040			14,9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클러스터특화품목 매출액증가율	15.0 34.9	15.5 23.3	16.0 19.1			(측정연도매출액/전년 도매출액)×100	사업단의 매출 액 지자체 조사
흑자사업단 비율 (%)				50 53.8	70	(흑자사업단 개소/평 가대상 사업단)×100	사업단 손익계산 서 지자체조사

4-2.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 체험·휴양시설 기반시설, 체험·휴양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교육·견학·마케팅비 등 지원
 - 어촌관광단지(어촌관광안내센터, 해안산책로, 특산물 판매장, 낚시공원 조성 등 어촌관광시설 확충) 16개소 사업 추진
- 산림을 휴양과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
 - 자연휴양림 조성(20개소)·보완(70개소), 산림욕장 조성(5개소)·보완(3개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계획·조성(8개소) 실시
 -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전하고 증식에 필요한 서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립수목원과 산림박물관 지속적 조성·보완(공립수목원 26개소, 산림박물관 6개소)
-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구축, 수요확충 등에 중점 지원
 - 승마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전문인력양성, 특구 지정, 체험승마 및 승마대회 확대, 말페스티벌, 승마장 정보 제공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시행
 - 도농교류 촉진 : 2014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14.6월), 도농교류 정부포상 추진('14.12월)
 - 도농교류 협력사업 : '14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공고 및 선정('14.1~3)
 -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450명 지원(1~12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마을대표 등 역량강화 교육(2~12월)
- 도시농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 공공건물 및 아파트 옥상텃밭 조성 시범사업 추진 (5월~12월)
-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대상 학교교육용 텃밭 조성 지원 확대 (65개소)
- 어촌관광활성화 사업계획 추진
 - 어촌관광홍보, 어촌관광포털 운영,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우수마을 육성, 어촌관광 컨설팅, 바다해설사 양성
-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를 위해 농어촌 유학지원 사업 실시(16개소),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팜스쿨(50개소) 지원

□ 예산 내역

<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8,230			8,230	8,230		16,460
산림휴양공간 조성		29,270	4,170		33,440	33,440		66,880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14,720			14,720	14,580		29,300
말산업 지원 육성			20,000		20,000	25,000		45,000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12,670				12,670	4,060		16,730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	1,200				1,200	900		2,100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1,770	1,770	1,770		3,540
어촌관광 활성화	2,900				2,900	600		3,500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1,250			1,250	1,250		2,500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		450			450	450		900
농촌교육농장 육성		600			600	600		1,200
농촌체험 명품화		200			200	200		400
초중등학생의 농어촌체험·교류확대	320				320	320		640
합계	16,770	53,470	24,170	1,770	96,180	89,830		186,010

* 초중등학생의 농어촌체험·교류확대 예산은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에 포함됨

< 4-2-1.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당자	송현주(사무관) 유재중(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2 044-201-1590	이메일	songhjoo@korea.kr yujj86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기본계획 p46)

□ (거점) 농어촌 테마공원, 어촌관광단지,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거점 지속 확충 및 연계 운영

- * 농어촌테마공원: ('09까지) 22개소 → ('14까지) 68
- * 산림휴양시설: ('09까지) 281개소 → ('14p) 363
- 문화교류를 위한 지역밀착형 신문화 공간, 생태·문화·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산림문화체험숲길 등을 확대 조성하고 상호 연계
-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09~'11년 6개 시범 추진, 산림문화체험숲길 1,000km

□ (마을) 농어촌의 경관과 문화·역사, 생태자원, 농어업 자원·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체험기반 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을 통해 운영 내실화
- * 농어촌체험마을 : ('09까지) 544개소 → ('14까지) 817

□ (농가) 체험과 산업, 교육 등을 연계한 다양한 농가형 체험관광 조성

- * 낙농체험관광사업 : ('09까지) 18개소 → ('14까지) 38
- * 교육농장 : ('09까지) 176개소 → ('14까지) 68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 '13년도 사업도 기본방침 충실히 이행 : 예산신청 전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 절차 의무이행, 총사업비 규모 30억원이상 사업 사업성검토 실시, 조성규모는 시·군당 1개 지구 조성 원칙 등
- '14년도 신규지구 사업성 검토 ('13.3)
 - 검토결과 6개도 9개 시·군·구 중 6개 타당성 확인 및 결과 통보

- '14년 신규 지구 예산신청(안) 적정성 검토('13.5~6)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서면 모니터링 실시('13.7~8)
 - '07~'13년까지 조성 중인 65개 지구
- '14년 신규 및 계속지구 예산신청 및 반영('13.6, 기재부)
 - 신규 3, 계속 32개 지구, 34,368백만원
- '13년 말 기준 16지구 개장, 49개 지구가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공사 중으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 농촌관광 등급평가 실시(7월~11월) : 200개소(체험마을 118, 관광농원 3, 농촌민박 79)
-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45개소(1~12월)
- 농촌체험·휴양마을 신규지정 103개소(누계 803개, 1~12월)
-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389명) 지원(1~12월)
- 농어촌체험마을 체험보험 386개 마을, 화재보험 165개 마을 지원(1~12월)
- 관광명소 개발로 외국인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20 프로젝트 대상지역 20개소 선정심사 및 개발(3~6월)
- 농어촌체험마을 지역리더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계획 수립(1월) 및 교육 실시(3~1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평가 및 결과 후속조치(4~9월)
 - 308개 마을에 대한 평가결과 관리대상마을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체험마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종합진단 컨설팅 지원(4~9월)

<낙농체험관광조성>

- 낙농체험관광사업 '12년 사업대상자 3개소 선정(3월~4월)
 - 청원목장(충북 청원), 성동목장(충남 부여), 내화목장(경남 양산)
 - 개소당 135백만원 용자 지원
- 낙농체험목장 방문객 지속 증대
 - 낙농체험목장 지역현황 ('12년 사업대상자 포함 총 24개소)
 - 경기(9), 강원(1), 충북(1), 충남(3), 전북(2), 전남(3), 울산(1), 경남(3), 제주(1)
 - ('04)1개소 → ('06)5개소 → ('08)12개소 → ('10)18개소 → ('12)24개소

- 체험객 현황

· ('04)0.4천명 → ('06)15천명 → ('08)78천명 → ('10)91천명 → ('12)280천명

○ 낙농체험목장 2개소 추가 인증(12월)

- 인증 대상목장 : 크로바목장(충남 홍성), 대한목장(전북 임실)

○ 낙농체험 교육목장 홍보 책자 제작 보급(2월)

- 제작목적 : 교육목장의 교육효과 향상 및 홍보 강화

- 전국 199개 시·군·구 교육청에 배포

○ 낙농체험목장운영협의회 워크숍 개최 지원

- (1차) : '12.1월, (2차) : '12.3월, (3차) : '12.7월

⇒ 체험 운영방안 및 현안과제 논의, 모니터링 결과 공람 및 교양강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 '15년도 신규지구 사업성 검토 ('14.3)

○ 농어촌 테마공원 가이드라인 정책연구용역 실시('14.3~7 잠정)

· 농촌관광·체험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15년 신규 지구 예산신청(안) 적정성 검토('14.5~6)

○ '15년 신규 및 계속지구 예산신청 및 반영('13.6, 기재부)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서면 모니터링 실시('14.7~8)

· '07~'14년까지 조성 중인 68개 지구

· 모니터링 결과 부진지구 현장점검 등 실시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 녹색농촌체험마을 45개소 신규조성(1~12월)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450명 지원(1~12월)

○ 농촌체험마을 보험지원(관광보험 386개마을, 화재보험 165개마을) (1~1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00개소 평가(3~9월)

○ 농촌관광사업 등급제(6~12월)

○ 농촌관광 웰촌포털 기능개선(3~12월)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마을대표 등 역량강화 교육(2~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 규모(사업량) : '13년까지 총 65개 지구가 조성 중, 착수시점에 따라 단계별 추진 중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지원(지구당 3~5년에 걸쳐 지원.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 지원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56조, 제58조 내지 제61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1,314			41,314	41,314		82,628
2014		34,386			34,386	34,386		68,772
(증△감)		△6,928			△6,928	△6,928		△13,856

* 2010년도부터 광특회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내역사업임(중복체크)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지구)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34,386			34,386		34,386
광주	1		1,700			1,700		1,700
울산	1		1,300			1,300		1,300
경기	1		703			703		703
강원	1		1,298			1,298		1,298
충북	5		5,450			5,450		5,450
충남	3		1,520			1,520		1,520
전북	5		5,538			5,538		5,538
전남	5		4,685			4,685		4,685
경북	6		4,850			4,850		4,850
경남	7		7,342			7,342		7,342

○ 중기재정계획

* 테마공원조성사업은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 예산으로 중기계획 산출 불가

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사업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마을공동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지역단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지원

* 이미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법적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지원부문

- 체험·휴양 기반조성 시설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교육·견학·마케팅비 등
- 사무장 활동비 : 별도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위사업별 3억원 이하)

○ 지원대상 : 농어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농어촌지역의 단일 (20호 이상) 또는 둘 이상(30호 이상)의 마을

<농어촌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의한 농어촌 지역, 마을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洞)·리(里) 또는 행정 동·리>

* 지원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도농교류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7,117			7,117	3,051		10,168
2014		미정						
(증△감)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미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일반농산어촌에서 총괄 작성						
'14								
'15								
'16								
'1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웹촌포털 활용 도(%)	신규	83.1	84	85	86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설문조사(웹촌포 털 방문객)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 증가율(%)	9.2	11.5	10.6	10.8	11.0	(당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전년도 체험마 을 평균 매출액)*100	행정조사(지자체, 녹색농촌체험마 을)

<4-2-1-1.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담당자	남우진(사무관) 변민준(주무관)
전화번호	044-200-5657 044-200-5660	이메일	wjnam@korea.kr pw434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기본계획 p46)

□ (거점) 농어촌 테마공원, 어촌관광단지,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거점 지속 확충 및 연계 운영

* 농어촌테마공원: ('09까지) 22개소 → ('14p) 82

* 산림휴양시설: ('09까지) 281개소 → ('14p) 363

○ 문화교류를 위한 지역밀착형 신문화 공간, 생태·문화·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산림문화체험숲길 등을 확대 조성하고 상호 연계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09~'11년 6개 시범 추진, 산림문화체험숲길 1,000km

□ (마을) 농어촌의 경관과 문화·역사, 생태자원, 농어업 자원·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체험기반 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을 통해 운영 내실화

* 농어촌체험마을 : ('09까지) 544개소 → ('14까지) 817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04년부터 어촌관광단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8개소 중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한 4개소를 제외한 14개소를 '12년까지 조성완료

○ '13년 말 기준 어촌관광단지 35개소를 선정하여 20개소를 완료하고, 12개소를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성 중에 있음(4개소는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사업보류)

- '13년까지 어촌관광단지 35개소에 65,674백만원 투자(국비50%, 지방비 50%)

○ '04년부터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리더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실시

* 총 10회 494명 교육수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어촌관광단지 16개소에 82억원(국비기준-국비50%) 사업 추진(1~12월)
- 어촌관광개발사업 지역리더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실시('14.4)
- 어촌관광개발사업 리더 등에 대한 워크숍 개최('14.6)
- '15년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14.4)
- '15년도 신규·계속사업 예산 적정성 검토('14.6)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73개 연안시군 826개 읍·면·동 어촌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사업 당 50억원 내외(계속사업)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보조(사업당 50억원 내외)
 - 지원조건 : 국비 50%
 - 지원내용 :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등(생태·문화체험 등 각종 체험장, 어촌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해안산책로, 수산물 판매장, 해안 공원조성, 전망대, 낚시공원 조성, 상징조형물, 해상콘도, 주차장, 친수시설, 낚시터조성 등 관광기반 시설)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호,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7,976	-	-	7,976	7,976	-	15,952
2014	-	8,225	-	-	8,225	8,225	-	16,450
(증△감)	-	249	-	-	249	249	-	498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	-	8,225	-	-	8,225	-	16,450
부산	1	-	500	-	-	500	-	1,000
경기	2	-	1,625	-	-	1,625	-	3,250
강원	2	-	1,050	-	-	1,050	-	2,100
충남	1	-	200	-	-	200	-	400
전남	6	-	2,900	-	-	2,900	-	5,800
경북	1	-	1,050	-	-	1,050	-	2,100
경남	3	-	900	-	-	900	-	1,8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7	-	40,876	-	-	40,876	-	81,752
'13	13/13	-	7,976/7,976	-	-	7,976/7,976	-	15,975
'14	16	-	8,225	-	-	8,225	-	16,450
'15	16	-	8,225	-	-	8,225	-	16,450
'16	16	-	8,225	-	-	8,225	-	16,450
'17	16	-	8,225	-	-	8,225	-	16,450

5. 성과목표

- 어촌체험마을 체험소득 증가율은 [참고 2]의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2014년 성과목표를 20%로 함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어촌체험마을 체험소득 증가율(%)	12.1	32.7	33.8	27.5	26.5	{{당년도 체험마을 체험소득-전년도 체험마을 체험소득}/전년도 체험마을 체험소득}×100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통계자료 *바다여행 포털(www.seantour.com)사이트

<4-2-1-2. 산림휴양공간 조성(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휴양문화과	담당자	박상춘(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12	이메일	pscfoa@for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기본계획 p46)

□ (거점) 농어촌 테마공원, 어촌관광단지,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거점 지속 확충 및 연계 운영

* 산림휴양시설: ('12까지) 322개소 → ('15까지) 42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자연휴양림 조성(완공) : ('13까지) 156개소(국유 40, 공유 98, 개인 18개소)
- 산림욕장 조성(완공) : ('13까지) 178개소(공유)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계속) : 10개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90개소 ※ 준공 : 20개소(국유1, 공유1)
- 산림욕장 조성·보완 : 8개소 ※ 준공 : 5개소(공유)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8개소 ※ 준공 : 없음

4. 관련 사업 내용

가. 자연휴양림·산림욕장·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각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규모(사업량)
 - 자연휴양림 : 조성 19개소(국가3, 지자체16), 보완 72개소(국가 37, 지자체 35)
 - 산림욕장 : 8개소(조성 5, 보완 3개소)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10개소(조성1년 2, 조성2년 1, 조성3년2, 조성4년 5)

- 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형태/지원조건
 - 국유자연휴양림 조성(50억) : 국가 100%
 - 국유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100%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50억)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지자체 산림욕장 조성(4억)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300억) : 국고보조 50%, 지자체 50%
- 사업내용
 - 숲속의집 등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화장실·음수대 등 위생시설
 - 자연관찰원·목공예실 등 체험·교육시설, 다목적잔디구장 등 체육시설
 - 전기·통신시설, 화재 및 재해경보기·사방댐 등 안전시설 등
- 법적근거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38,119	6,000	-	44,119	44,119	-	88,238
2014	-	29,267	4,175	-	33,442	33,442	-	66,884
(증△감)	-	△8,852	10,175	-	77,561	77,561	-	155,122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8		29,267	4,175		33,442		66,884
대전	2		600			600		1,200
경기	6		2,108			2,108		4,216
강원	9		2,400			2,400		4,800
충북	7		4,610			4,610		9,220
충남	8		2,979			2,979		5,958
전북	4		3,806			3,806		7,612
전남	10		3,750	1,975		5,725		11,450
경북	9		3,364	2,200		5,564		11,128
경남	9		4,550			4,550		9,100
제주	4		1,100			1,100		2,2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3,124	13,175		176,299		352,598
'13	69	-	38,119/38,119	6,000/6,000	-	44,119	-	88,238
'14	68	-	29,267	4,175	-	33,442	-	66,884
'15		-	30,912	1,000	-	31,912	-	63,824
'16		-	31,978	2,000	-	33,978	-	67,956
'17		-	32,848	-	-	32,848	-	65,69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만족도	91	85	85	83	85	자연휴양림 이용자대상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환산	국립자연휴양림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지자체자연휴양림 가동율(%)	37	38	40	42	45	(연간 실 운영 객실수 연간 운영 가능 객실 수) ×100	자연휴양림 가동실적 보고서(분기 보고)

<4-2-1-3.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장영택(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dx0106@for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기본계획 p46)

□ (거점) 농어촌 테마공원, 어촌관광단지,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거점 지속 확충 및 연계 운영

* 농어촌테마공원: ('09까지) 22개소 → ('14p) 82

* 산림휴양시설: ('09까지) 281개소 → ('14p) 363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전하고 증식에 필요한 서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립수목원·산림박물관 조성·운영
 - 공립수목원 : 2013년까지 총 42개소 조성·운영(조성완료 25, 조성중 17)
 - 산림박물관 : 2013년까지 총 12개소 조성·운영(조성완료 11, 조성중 1)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공립수목원·산림박물관의 지속적 조성
 - 공립수목원 조성 : 26개소(연차별조성 13, 보완 13)
 - 산림박물관 건립 : 6개소(연차별조성 1, 보완 5)

4. 관련 사업 내용

가.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공립수목원 : 10ha이상의 조성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산림박물관 : 산림박물관 건립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공립수목원 : 2014년 전국 26개소 조성·보완(시·도별 1~3개소)
 - 산림박물관 : 2014년 전국 6개소 조성·보완(시·도별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공립수목원 : 개소당 총사업비 60억원(국비 50%·지방비 50%)
 - 산림박물관 : 개소당 총사업비 40억원(국비 50%·지방비 50%)
- 지원조건
 - 타당성심사를 실시하여 부지확보 및 입지여건 등을 종합심사하여 적합한 지자체에 한하여 사업 지원
 - 조성기간 : 공립수목원 4년(설계 1, 조성 3), 산림박물관 3년(설계 1, 조성 2)
- 지원내용
 - 공립수목원 :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 및 전시시설, 편익시설 등 조성
 - 산림박물관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보존·전시관 등 건립
- 법적근거
 - 「산림기본법」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8,133			18,133	18,133		36,266
2014		14,715			14,715	14,582		29,297
(증△감)		△3,418			△3,418	△3,281		△6,969

- * 마사회 적립금 등 기금 성격이 높은 재원은 기금으로 기재하고, 재원명을 별도기재
- * 2013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계획금액을 기재하고 계획임을 표시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2		14,715			14,582		29,297
부산	1		2,600			2,600		5,200
대구	1		200			200		400
대전	1		50			50		100
경기	3		1,175			1,175		2,350
충북	3		1,350			1,350		2,700
충남	5		1,950			1,950		3,900
강원	3		1,100			1,100		2,200
전북	3		2,050			2,050		4,100
전남	4		1,840			1,840		3,680
경북	2		300			300		600
경남	5		1,850			1,717		3,567
제주	1		250			250		5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		113,271			113,105		226,376
'13	37		18,133/18,133			18,000/18,133		36,133/36,266
'14	32		14,715			14,582		29,297
'15	35		15,807			15,807		31,614
'16	35		16,293			16,293		32,586
'17	35		16,783			16,783		33,56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공립수목원의 식물 자원 누적 평균 확보량(종)	1,801	1,903	1,858	1,676	1,700	식물종 확보량조사	조사보고서

<4-2-14. 말산업 육성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담당자	하옥원(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324	이메일	hauw@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2 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기본계획 p.46)

(1)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거점) 농어촌 테마공원, 어촌관광단지,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거점 지속 확충 및 연계 운영

* 농어촌테마공원: ('09까지) 22개소 → ('14p) 82

* 산림휴양시설: ('09까지) 281개소 → ('14p) 363

○ 문화교류를 위한 지역밀착형 신문화 공간, 생태·문화·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산림문화체험숲길 등을 확대 조성하고 상호 연계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09~'11년 6개 시범 추진, 산림문화체험숲길 1,000km

(마을) 농어촌의 경관과 문화·역사, 생태자원, 농어업 자원·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체험기반 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을 통해 운영 내실화

* 농어촌체험마을 : ('09까지) 544개소 → ('14까지) 817

(농가) 체험과 산업, 교육 등을 연계한 다양한 농가형 체험관광 조성

* 낙농체험관광사업 : ('09까지) 18개소 → ('14까지) 38

* 교육농장 : ('09까지) 176개소 → ('14까지) 68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승마시설 지원 확대, 특구 지정 등 말산업 육성 여건 조성

- 승마시설 신규·개보수 지원으로 승마 인프라 구축(승마시설 11개소 등, 5,550백만원)

- 제주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14.1월)하여 말산업 육성 전진 기지화

○ 관계부처 협업(농식품부, 말산업 인프라 확충, 교육부·문체부: 수요확대)을 통한 '승마 활성화 방안' 발표('13.11월)

- 승마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향상, 청소년 인성함양, 건전한 레저 문화 정착에 기여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구축, 수요확충 등에 중점 지원
 - (인프라) 승마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전문인력양성, 특구 지정 등
 - (수요확충) 체험승마 및 승마대회 확대, 말페스티벌, 승마장 정보 제공
 - (경영개선 등) 컨설팅 지원, 조사료 지원, 통계조사 기반 구축 등
- 말산업 관련 인프라·수요확충 등 분야별로 전문가 포럼·워크숍 등을 통해 보완·개선사항 등 지속 발굴 추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말산업 육성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규모(사업량) : '17년까지 승마시설 500개소, 승마인구 200만명 확보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 융자 등(축발기금)
 - 지원조건 : 보조(20~50%), 융자(20~70%), 민간대행(10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농축협, 마사회, 민간단체, 농업인 등
 - 법적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9,300	-	9,300	11,600	-	20,900
2014	-	-	20,000	-	20,000	25,000	-	45,000
(증)	-	-	10,700	-	10,700	13,400	-	24,1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승마시설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	-	-	10,630	-	10,635	-	21,265
경기	3	-	-	620	-	249	-	869
충남	3	-	-	650	-	370	-	1,020
전북	2	-	-	950	-	1,260	-	2,210
전남	2	-	-	260	-	96	-	356
경북	3	-	-	730	-	908	-	1,638
경남	2	-	-	825	-	1,116	-	1,941
대구	1	-	-	280	-	720	-	1,000
광주	2	-	-	665	-	266	-	931
제주	(특구 1)	-	-	5,650	-	5,650	-	11,300

* '14년 지원 예산 20,000백만원 중 9,370백만원은 미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승마시설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1	-	-	110,300	-	104,600	-	214,900
'13	11	-	-	9,300	-	11,600	-	20,900
'14	15	-	-	20,000	-	25,000	-	45,000
'15	15	-	-	25,000	-	22,000	-	47,000
'16	15	-	-	28,000	-	23,000	-	51,000
'17	15	-	-	28,000	-	23,000	-	51,0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개소)	-	-	-	21	23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규 개소수	지자체 등

<4-2-2-1.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당자	송현주 유재중
전화번호	044-201-1592 044-201-1590	이메일	songhjoo@korea.kr yujj86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2)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기본계획 p.46)
- 대도시 입지 도농교류 거점으로 '도농교류 안테나 숲' 네트워크 구축
 - 농어촌체험·휴양정보, 농어촌유학, 전원생활 정보·상담, 문화교류정보, 도농교류 기업의 제품 전시·판매 등 서비스 제공
 - 녹색성장의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도시농업모델 발굴·확산
 - 도시농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모델개발 및 교육, 기술지도,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10)을 거쳐 도시농업 정착 유도
 - * 도시근교 체재형 주말농장, 시민(또는 상자)텃밭, 옥상정원 등
- (3) 농어촌 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 및 다각화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육성 및 브랜드화('10~)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향상 유도
 - * 프랑스(지트), 영국(팜스테이) 등 해외사례를 참조, 서비스 수준 등 평가
 - 한식 세계화와 연계, 외국인이 농어촌에서 다양한 한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특색 있는 음식과 문화·역사 등을 외국어로 소개
- (4) 도농교류·1사1촌운동 심화를 위한 도농교류 문화운동 저변확대
- 도시민,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농어촌 환경·문화·경관 보전활동 추진
 - 양수장, 정미소, 가공공장 등 근대의 농어업·농어촌 역사가 담긴 자원을 발굴하여 보전 및 활용
 - * (유사 사례) 일본 시라가와촌·일본환경교육포럼·도요타 자동차(주)가 '도요타 시라가와 자연학교'를 설립하여 환경교육, 자연보전활동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는 알선·상담,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시스템 마련('10)

□ **1사1촌 운동을 1사다촌, 다사1촌으로 다양화하고 농산물 소비, 자원보전활동과 연계 발전**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산물 소비운동 전국 확산
 - * (유사사례) 미국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프랑스 아마프(AMAP)협회 활동
- NGO 협력활동 확대 및 500여개 우수 활동 모델 발굴·확산('14년)
 - * (예) 오창농협과 SK그룹과의 결연(1촌다사), 1사1군, 도농 창업, 1가족1농가 등

□ **도농교류 수요 창출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도농교류 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
 - *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05~), 도농교류 정부포상('04~), 농어촌 축제('08~), 도농교류 협력사업('99~) 등
 - *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 ('09) 10개 시·군 → ('13이후) 30개

□ **農商간 자율적 신뢰협력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문화 형성유도**

- 전통시장 상인, 농어민간 현장 교차방문 및 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전국상인연합회와 농협 공동 추진)
- 전통시장 내 빈점포 등을 농상간 정보교류, 도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 만남의 장 등으로 활용
- 우수 도농교류 중소기업에 '1사 1촌 사회공헌 인증'을 수여하고 기업홍보 (농촌사랑운동범국민본부, 농식품부 지원)

□ **농어촌 체험관광 확대, 도농교류·지역축제,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강화**

- 지역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전통시장·5일장 활성화 및 파머스마켓, 직거래 장터, 소비자단체,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활동 등 촉진
- 『한식문화체험관』을 통해 한식 관련 전시, 체험상품 개발·제공('11)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도농교류 촉진>

- 2013 농어촌 여름휴가 패스티벌 개최계획 수립('13.3월)
- 2013 농어촌 여름휴가 패스티벌 개최('13.6월)
 - 305개 체험마을 및 지자체(11) 참석, 방문객 93천명
- 관광명소 개발로 외국인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20프로젝트 대상지 20개소 선정심사 및 개발(3~6월)
- 1사1촌 우수기업, 단체, 기관 사회공헌인증 등을 통해 농어촌마을 결연 확대
 - 1사1촌 결연 : ('12) 9.6천개 → ('13) 10.4천개
- '13년도 도농교류 정부포상 추진
 - 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21

<농어촌축제>

-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주도의 농촌 마을·권역 단위 축제 지원 확대
 - 지원실적 : ('12) 33개 축제 → ('13) 37개

<도농교류협력사업>

- 도농교류협력사업 사업자 선정, 지원조건 등 공모방식의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
- '13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13.1)
 - 211개 민간단체 및 초등학교, 체험마을 응모
- 1차 전문가 서류심사 및 2차 심사회 실시('13.1)
 - 최종 103개 선정 : 민간단체 25, 초등학교 49, 체험마을 5, 체험휴양마을협의회 9, 농어촌 인성학교 15개
 - * 농어촌 인성학교는 별도 추진('13.4)
- 도농교류협력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13.11)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389명 지원(1~12월)
- 농어촌체험마을 체험보험 386개 마을, 화재보험 165개 마을 지원(1~12월)

- 농어촌체험마을 리더, 주민 등의 역량강화 교육계획 수립(1월)
- 체험마을 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13.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평가 및 결과 후속조치(4~9월)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4~8월), 관리대상마을 워크숍 개최(9월)
- 체험마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종합진단 컨설팅 지원(4~9월)
 - 체험휴양마을 통합관리, 문서수발, 교육관리, 메신저 연계 등
- 농어촌체험마을 대표·사무장 역량강화 교육(4,523명, 2~12월)
- 농촌 체험·관광·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 *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 ('11)692만명 → ('12)884 → ('13)1,052

3. 2014년도 추진 계획

<도농교류 촉진>

- 2014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14.6월)
- 도농교류 정부포상 추진('14.12월)
- 1사1촌 운동을 농수산물 직거래 등 단순교류에서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등 재능 기부로 확산

<농어촌축제>

- 지원대상 시·군(마을) 선정 공모 및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 선정·지원(2~3월)
 - 지원실적 : ('13) 37개 축제 → ('14) 40개소(계획)
- 농어촌축제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14.1월)

<도농교류협력사업>

- '14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개선방안 마련('14.1~2)
 - 지원대상, 규모 및 선정방법·평가지표 등 개선
- '14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공고 및 선정('14.1~3)
 - 초등학교와 민간단체(체험분야와 비체험분야 구분) 부분을 나누어 추진
 - 선정된 초등학교·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14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추진('14.2~11)
 - 초등학교 50개소, 민간단체 25개소 내외
- 도농교류협력사업 중간점검 실태조사('14.6월)
- 도농교류 협력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14.11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450명 지원(1~12월)
- 농촌체험마을 보험지원(관광보험 386개마을, 화재보험 165개마을) (1~12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00개소 평가(3~9월)
- 농촌관광사업 등급제(300개) 확대시행(6~12월)
- 농촌관광 웰촌포털 기능개선(3~12월)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마을대표 등 역량강화 교육(2~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시민, 농어촌주민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보조(농특), 지자체보조(농특)
- 지원조건 : 민간보조(국고100%), 지자체보조(국고·지방비 각 50%)
- 지원내용 : 도농교류촉진, 체험·휴양마을육성, 도농교류인적역량강화, 도농교류센터 운영, 도농교류협력, 도농교류종합정보지원,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농어촌축제지원, 신문화공간조성, 업무지원경비 등

- 사업추진절차

- 도농교류활성화(민간보조)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농식품부)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비 검정(농식품부)
- 도농교류활성화(지자체보조) : 사업신청(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시행계획 수립 보고(지자체) → 사업추진 및 정산요청(지자체)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농식품부)

- 지원근거 : 도농교류촉진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3,100				13,100	3,600	-	16,700
2014	12,670				12,670	4,060		16,730
(증△감)	△430				△430	460		△3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3,589				3,488		17,077
'14		12,971				4,060		17,031
'15		13,750				4,304		18,054
'16		14,562				4,562		19,124
'17		14,562				4,562		19,12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웹촌포털 활용 도(%)	신규	83.1	84	85	86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설문조사(웹촌포 털 방문객)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 증가율(%)	9.2	11.5	10.6	10.8	11.0	(당년도 체험마을 평균 매출액/전년도 체험마 을 평균 매출액)*100	행정조사(지자체, 녹색농촌체험마 을)

< 4-2-2.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종자생명산업과	담당자	이수현
전화번호	044-201-2477	이메일	shlee2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 구축(기본계획 p46)

□ 녹색성장의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도시농업모델 발굴·확산

- 도시농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모델개발 및 교육, 기술지도,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10)을 거쳐 도시농업 정착 유도

* 도시근교 체재형 주말농장, 시민(또는 상자)텃밭, 옥상정원 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시농업 홍보지원 및 교육 추진
 - 제2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9월)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6~11월, 도시농업시민협의회)
- 도시농업 관련 정보제공, 공간확보 등 기초 인프라 구축
 - 학교교육형 텃밭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공간 확대 지원(계속)
 -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7~11월)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보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시농업 종합계획 심의 등을 위한 도시농업위원회 개최(5월)
 -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6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도시농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 공공건물 및 아파트 옥상텃밭 조성 시범사업 추진 (5월~12월)
 -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대상 학교교육용 텃밭 조성 지원 확대 (65개소)

- 도시농업 가치·기능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강화
 - 도시농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5개소 4월~12월)
 -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지원 (1개소 4월~12월)
 - 도시농업인, 시민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6월중)
 - 제3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및 생활원예경진대회 개최 (9월중)
- 도시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R&D 추진
 - 한국형 텃밭모델 구축 및 실내·외 이용기술 확립
 - 도시농업용 품종선발 및 식물자원의 활용기술 개발
 - 도시농업 교육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4. 관련 사업 내용

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시민,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도시농업박람회(1식), 도시농업지원센터(5개소), 전문인력 양성기관(1개소), 옥상텃밭 조성(8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200백만원
 - 지원조건 : 민간보조 100%(박람회), 민간보조 50%(지원센터 및 인력양성기관) 지자체보조 50%(옥상텃밭)
 - 지원내용 : 도시농업 교육, 홍보 및 옥상텃밭 조성비용 지원
 - 법적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9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00	-	-	-	300	300		600
2014	1,200	-	-	-	1,200	900		2,100
(증△감)	900	-	-	-	900	600		1,5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인천								
..								
..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300/200	300/200				300		
'14	1,200	1,200				900		
'15	2,000	2,000				1,000		
'16	2,000	2,000				1,000		
'17	2,000	2,000				1,0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도시농업 참여자수	-	-	769	885	1,000	행정조사	농식품부

<4-2-3-1.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개발지원과	담당자	최계원
전화번호	044-203-2884	이메일	hasllar@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 및 다각화(기본계획 p.47)

□ 슬로시티를 국제적인 농어촌 관광상품으로 발전 유도

- 아시아 최초로 인증된 슬로시티(담양, 장흥, 신안, 완도, 하동, 예산)를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한국 고유문화를 전파
- 방문자센터, 체험장 등 기초인프라 구축과 통합 홍보·마케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별 휴양·체험프로그램과 연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12년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2개 지역, 22억)
- 슬로시티관련 운영 프로그램 지원(계속)
 -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협의체 운영 등
- 2013 한국 슬로시티 본부총회정(제천)
- 외국인 대상 팸투어(2회), 동남아 파워블로그 팸투어(1회)
- 슬로시티 인증지역 등 홍보(한국의 멋과 맛을 살리 슬로치프)
- 대학생 기자단 슬로시티 인증지역 현장체험 홍보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및 협의체 운영(계속)
- 슬로시티 마을 향토자원 조사 및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계속)
 - 마을별 향토역사자원, 슬로푸드, 자연식생 조사 및 보존 등 슬로시티 기초 콘텐츠 자원 마련
 - 슬로시티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홍보 마케팅 등(계속)

4. 관련 사업 내용

가.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국내 슬로시티 인증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10개 슬로시티 인증지역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17.7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슬로시티 인증지역 사업계획 검토 후 지역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슬로시티 지역 향토자원 조사 및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교육 및 협의체 운영 지원 등
- 법적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4항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250	2,250	2,250		4,500
2014				1,770	1,770	1,770		3,540
(증△감)				△21	△21	△21		△21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770	1,770		3,540
경기	1				220	220		440
강원	1				220	220		440
충북	1				220	220		440
충남	1				180	180		360
전북	1				150	150		300
전남	2				300	300		600
경북	2				330	330		660
경남	1				150	150		3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000	12,000		24,000
'13	12/12				2,400 /1,770	2,400 /1,770		4,800 /3,540
'14	10/10				2,400	2,400		4,800
'15	10/10				2,400	2,400		4,800
'16	10/10				2,400	2,400		4,800
'17	10/10				2,400	2,400		4,8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방문객 증가율	1	3	3	3	3	관광객 방문통계	한국관광지식 정보시스템에 및 지자체 통계

<4-2-3-2. 어촌관광 활성화(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담당자	정동기(서기관) 변민준(주무관)
전화번호	044-200-5659 044-200-5660	이메일	chong3283@korea.kr pw434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기본계획 p.46)

(마을) 농어촌의 경관과 문화·역사, 생태자원, 농어업 자원·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 체험기반 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을 통해 운영 내실화
- * 농어촌체험마을 : ('09까지) 544개소 → ('14까지) 817

(3) 농어촌 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 및 다각화(기본계획 p.47)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육성 및 브랜드화('10~)

-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 경영지원 등으로 사업자를 육성하고 사업자(마을)간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 유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향상 유도
- * 프랑스(지트), 영국(팜스테이) 등 해외사례를 참조, 서비스 수준 등 평가
- 한식 세계화와 연계, 외국인이 농어촌에서 다양한 한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특색 있는 음식과 문화·역사 등을 외국어로 소개

체험·휴양사업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도농교류형 '농어촌 공동체 회사'로 발전토록 유도

- 농가 레스토랑, 체험학교, 마을문화공방 등 소규모 경영모델 발굴·육성
- * 농업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도농교류형 농어촌 공동체회사 100개소 발굴

(2) 도농간 취업 및 인력교류 추진('11~'14)(기본계획 p.71)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10)

-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는 은퇴교사, 예술가, 기술자 등 도시민·단체를 농어촌 마을·단체와 연결·중개

중개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희망도시민에 대하여 일정기간 연수후 체험·교류를 추진토록 유도

- 취업·봉사분야 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활용모델 발굴·보급
- * 지자체 농업엑스포 등 행사지원, 체험지도, 환경·경관·문화보전활동 등

1사1촌 운동과 더불어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내고향돕기' 운동 전개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어촌관광 활성화 강화>

- 바다여행 포털사이트(www.seantour.com) 운영
 - 어촌관광 정보를 포털사이트에서 통합 제공하여 어업인의 어촌관광 홍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 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 '03년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04~'13 : 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사이트 회원 및 이용자 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회원수	6,212	8,570	12,631	17,642	35,219	47,154	55,200	63,783
연간이용자	416,488	432,075	905,546	966,325	1,042,245	1,408,236	1,276,673	938,342

*

-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 도시민의 어촌관광 인식제고 및 어촌체험마을의 마을운영 학습 및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 운영 수준향상 도모
 -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행사 추진실적

구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방문 마을 수	123	12	13	20	23	20	20	15
체험객수	8,336	862	927	1,400	1,456	1,515	1,365	811

- 우수 어촌체험마을 육성
 - 어촌체험관광을 운영하는 마을 간 경쟁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어촌체험마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촌체험마을에 추가사업비를 지원하여 명품마을로 육성
 - 우수마을 선정마을 수

구분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선정 마을수	81	10	10	10	11	10	10	10	10
지원사업비 (백만원)	2,900	3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 어촌관광 컨설팅

- 어촌체험마을 운영시 마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험마을사업 운영 내실화 도모
-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추진실적>

구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마을수	121	13	18	20	20	20	10	20

○ 바다해설사 양성

- 어촌 고유의 생태·자연·문화자원 등을 안내하는 해설사를 양성하여 어촌관광 만족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일자리 창출
- 바다해설사 양성 실적

구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바다해설사 수	134	65	-	34	35

<도시와 어촌 교류 촉진>

-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어촌민의 삶의질 향상 및 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
- 2005년부터 도시와 어촌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과 상생의 기반 구축을 위해 “도시와 어촌간 자매결연” 추진
- ‘05년부터 도시-어촌 교류 발전 유공자 발굴 포상 추진
 - * ‘13년도 19명 포상(국표 2, 농식품부장관 표창 9, 수협중앙회장 표창 8)
- 도시-어촌 자매결연 체결실적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매결연 체결건수	실적	214	225	114	109	110	195	150	83	127
	누계	214	439	553	662	772	967	1,117	1,200	1,327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여 어업의 소득증대와 어촌활력 증진도모
- ‘01년부터 ‘13년까지 100개소의 어촌체험마을 선정 및 운영 중
- ‘06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현황

구 분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채용지원 마을수	363	5	18	30	30	70	70	70	7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달성을 위한 '13년도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어촌관광활성화 시행지침 마련('14.3)
 - 어촌관광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4.3)
 - 어촌관광활성화 추진(연중)
 - 어촌관광 활성화 추진성과 조사('14.12)

4. 관련 사업 내용

가. 어촌관광활성화 강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어촌관광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73개 연안시군 826개 읍·면·동, 1,982개 어촌계
 - 지원금액 및 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어촌관광홍보, 어촌관광포털 운영,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우수 마을 육성, 어촌관광 컨설팅, 바다해설사 양성
 -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제58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576	-	-	-	2,576	-	-	2,576
2014	2,330	-	-	-	2,330	-	-	2,330
(증△감)	△246	-	-	-	△246	-	-	△246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식	2,330	-	-	-	-	-	2,330
전국	1식	2,330	-	-	-	-	-	2,33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식	12,642						12,642
'13	1식/1식	2,576/2,576	-	-	-	-	-	2,576
'14	1식	2,330	-	-	-	-	-	2,330
'15	1식	2,476	-	-	-	-	-	2,476
'16	1식	2,630	-	-	-	-	-	2,630
'17	1식	2,630	-	-	-	-	-	2,630

나. 도시와 어촌교류촉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어촌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73개 연안시군 826개 읍·면·동, 1,982개 어촌계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자매결연 체결 지원
-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제58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식	600	-	-	-	-	-	600
전국	1식	600	-	-	-	-	-	6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식	3,000						3,000
'13	1식	600	-	-	-	-	-	600
'14	1식	600	-	-	-	-	-	600
'15	1식	600	-	-	-	-	-	600
'16	1식	600	-	-	-	-	-	600
'17	1식	600	-	-	-	-	-	600

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어촌체험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100개 어촌체험마을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4대 보험료 자담)
 - * 지원한도 : 마을당 월 최대 국비 6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용 지원
-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제58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5명	604	-	-	-	604	-	1,208
부산	1	7	-	-	-	7	-	14
인천	2	13				13		26
울산	2	10				10		20
경기	7	52				52		104
강원	4	28				28		56
충남	7	48				48		96
전북	5	36				36		72
전남	25	180				180		360
경북	7	49				49		98
경남	18	131				131		262
제주	7	50				50		1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10	-	-	-	3,010	-	6,020
'13	85명	504/504	-	-	-	504/504	-	1,008/1,008
'14		604	-	-	-	604	-	1,208
'15		634	-	-	-	634	-	1,268
'16		634	-	-	-	634	-	1,268
'17		634	-	-	-	634	-	1,268

5. 성과목표

-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 증가율은 [참고 2]의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2014년 성과목표를 26.1%로 함
- 도시-어촌자매결연 체결 건수는 [참고 2]의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2014년 성과목표를 150건으로 함
- 사무장 채용지원 건수는 [참고 2]의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2014년 성과목표를 85명으로 함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어촌체험마을 이용객수 증가율(%)	11.1	50.2	16.5	26.5	26.1	{(당년도 체험마을 이용객수 - 전년도 체험마을 이용객수)/전년도 체험마을 이용객수}×100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통계자료) *바다여행 포털(www.seantour.com)사이트
도시-어촌자매결연 체결 건수(건)	195	150	83	127	150	해당년도 자매결연 체결건수	자매결연 체결 결과보고서
사무장채용지원 건수(명)	70	70	70	66	85	해당년도 사무장 채용인원	지자체 사업결과 보고서

<4-2-4-1.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임은성
전화번호	031-299-2677	이메일	lim7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기본계획 p.22)

□ 농어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확산, 도농교류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지역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 연구용역('09.12)을 토대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회사 모델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육성방안 마련('10)

4-2. 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3) 농어촌 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 및 다각화(p.47)

□ 체험·휴양사업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도농교류형 '농어촌공동체 회사'로 발전토록 유도

○ 농가 레스토랑, 체험학교, 마을문화공방 등 소규모 경영모델 발굴·육성

* 농업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도농교류형 농어촌공동체회사 100개소 발굴

2. 2013년 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전통테마마을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 ('02~'09) 163개소
 - 농촌전통테마마을 협의회 임원 교육 및 회의('12.3. 7) 및 연찬회(11.22)
 - 농촌전통테마마을 평가 및 현장모니터링 분석('12. 9~12월)
- 농촌체험활동활성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추진('13.5)
 - (업무협력)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한국철도공사·13개 시군 협력

【농촌체험프로그램활성화 다자간 업무협력】

농촌진흥청, 한국철도공사·13개지자체(MOU체결 2013. 5)협력 공정여행개발

- (한국철도공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차여행 상품 운영관리, 홍보
- (지자체)지역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지원, 상호 홍보

- (프로그램)우리청, 코레일, 13개 지자체 공정여행 “레일그린” 운영: 21,531명(13.12.31)
 - ‘이색 맛 vs 이색체험’(용인시)
 - ‘청춘양구 배꼽잡는 여행’(양구군)
 - ‘자연에 로그인하고 싶을때’(홍성군)
 - ‘산골짜 옛날썸’(김천시)
 - 동강따라 영월여행(영월군)
 - 산·들·바다따라 부안여행(부안군)
 - 두루미가 찾는 도심속 농촌(대구 동구)
 - ‘청정보고 DMZ체험’(철원군)
 - ‘일단 와 봐유~ 봐 봐유~’(충주시)
 - ‘美 - 순천만 느낌여행’(순천시)
 - ‘약초향기 따라 행복 따라’(산청군)
 - 고맷나루와 함께하는 추억만들기(공주시)
 - 참 좋은 순창 나들이(순창군)
- 교육과학기술부와외의 농촌체험활성화와 농어촌교육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마련(12.7월)

농촌진흥청과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업무협력 체결(7.18)

○(업무협력)농촌체험관광 콘텐츠 상호활용 및 재능교류(교육기부·재능기부)

- 기 개발된 농촌체험학습 콘텐츠를 학교 교육과 연계, 새로운 수요창출
 - (교과부·우리청)지방 농촌지도기관 및 교육청 연계 근거 및 제도마련
 - (학교)농촌현장활용, 마을리더 또는 농장주 명예교사 위촉 등
 - (농장 또는 마을)명예교사 활동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지원
- ※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연찬회(2.19), 상호기관 방문협약(11.12.23, 28, 2012.5.9 4.4. 4 회 시도교육청 워크숍(6.20)학교장 담당교사 워크숍 교육연계협력 특강 및 토론(9.19)

○(후속조치) 농촌지도기관 및 시도교육청 대외협력 확산 지속추진

- 학교교원대상 농촌어메니티체험연수과정 운영 : 7.25~8.8(3기, 120명)
- 체험학습프로그램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확산, 교육계 연계협력추진 (8.13~계속)

<지방농촌지도기관 교육계 대외협력 현황(~10.20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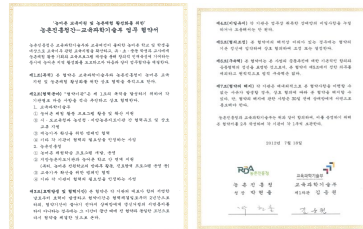
업무협약체결 42건, 교원연수·팜투어 등 공동주최 57회 24,627명
 학생·학교대상사업 72건 339학교, 45,755명, 1교-1촌·1농장 결연 25건 등



<협약서 조인식>



<기념촬영>



<업무협약서>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육성 ('06~'13) 429농장

- 농장단위 표준화된 농업농촌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육계와 소비자에게 신뢰 받기 위한 품질인증 농장 선정 : 48농장

- 품질인증 평가 기준 마련 : '13. 7. 26('12 용역연구 결과 및 전문가 논의)
- * 농업 자원, 교육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교육 환경, 교육 서비스 등 5항목 72지표
- * 기준 : 인증(80점 이상), 예비 인증(60점 이상~80점 미만), 탈락(60점 미만)
-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로 농촌교육농장 자궁심 고취
- 품질인증 농장(48) 포털 사이트(happyfarm.or.kr) 구축 및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자료집 제작하여 홍보 아이템으로 활용
-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개념 및 절차) 및 선정농장(48개소) 프로그램(일반 현황, 교육장, 교구 사진, 교육활동계획안, 워크시트, 활동 사 등) 소개
- 농촌교육농장 전국협의회 임원 워크숍 및 임원회의 : 3회(5.20, 7.17, 8.29)
-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교육과정 운영(3.26~5.23 3회 120명) : 기초, 심화, 전문가 추진
-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 경진(11~12월) : 9농장 시상, 학교교사 공동참여 유도
-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체계화 및 콘텐츠 다양화로 경쟁력 강화, 저변 확대
- 농진청·코레일·지자체 협력을 통한 레일그린 활성화 : 13개소
 - 레일그린 협력지자체 추가 선정 : ('12) 8 → ('13년)13개소
 - * ('12) 본사중심, 토,일 2회 운영 → ('13) 지역본부 중심, 수, 토, 주중 상시운영
 - 생산자 및 지역 공동체가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 운영 : 11개소
 - * 이동식 파머스마켓 “황금마차PX” (철원, '12. 11월 개장), 매출액 : 250백만원
 - 지자체에서 농촌체험관광 해설사로 육성 : 866명
 - * 농촌체험관광 해설사에 의한 안내 설명 등 서비스 수준 제고
 -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농촌체험 상품 개발·운영 만족도 제고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광, 체험학습의 다차원적 서비스 개발과 유기적인 협력 강화
- 농촌체험형 관광상품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활성화
 - * 코레일·13개지자체 농촌체험상품개발 MOU 결과 출시된 “레일그린” 상품 확산
 - * 숙박상품, 수학여행 상품 개발, 역사 내 직거래 장터 운영, 현장 모니터링 등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농업에 대한 진로탐색 및 학습기회 제공
 - *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 체험학습 강사지원 등

○ 학교 교과과정(창의·인성교육)과 연계 강화

- 농촌교육농장 육성 : ('06~'13) 429농장 → ('14) 48농장
- 농촌교육농장교사 및 담당공무원 전문역량강화 : 2회, 85명
- 단계별(기초→심화→연수) : ('06~'13) 43회, 1,727명 → ('14) 2회, 85명
- 농촌교육농장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제 추진
 -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시범 추진 : ('13) 48 → ('14) 118 → ('17) 409개소

○ 농촌체험 관광서비스 체계화 및 콘텐츠 다양화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지원 : ('06~'13) 56개소 → ('14) 9(기존 9)
 - * 지역협의체운영, 공동품질관리, 마케팅·관광대학, S/W개발 등
- 전통테마마을 품질관리(163개소) 및 '농촌체험명품화'(2개소)
 - * 유형별 차별화를 위한 체험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보완, 품질관리 등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규모(사업량) : 9개소(기존 9)
- 지원금액 및 형태 : 900백만원(국비, 지방비 각 50%), 개소당 100백만원
 - ※ 개소당 1억원씩 2년간 지원
- 지원조건
 - 지역 내에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촌관광 경영체가 많으며, 농업관광에 대한 지자체나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 농촌관광 관련 농업인 조직을 이미 조직화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금후 운영 계획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 내의 인력 조직 배치와 기능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센터 및 도원
- 지원내용
 - 농산어촌체험관광지역 협의체 구성 및 one stop service 지원체계 구축
 -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 농촌관광 활동의 공동 브랜드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 및 관광상품의 품질관리 기술 개발 등

- 법적근거: 농촌진흥법 제4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8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25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050				1,050		2,100
2013		750				750		1,500
2014		450				450		900
(증△감)		△300				△300		△6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		450			450		900
경기	1		50			50		100
강원	1		50			50		100
충북	1		50			50		100
충남	1		50			50		100
전북	1		50			50		100
전남	1		50			50		100
경북	1		50			50		100
경남	1		50			50		100
제주	1		50			50		100

○ 중기재정계획('15년 사업 종료)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6		7,800			7,800		15,600
'13	15		750			750		1,500
'14	9		450			450		900
'15	0		0			0		0

나. 농촌교육농장 육성

○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
- 사업 규모(사업량) : 48농장(시군당 2 또는 4농장)
- 지원금액 및 형태 : 1,200백만원(국비, 지방비 각 50%), 농장당 25백만원
- 지원조건
 -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
 - 체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농가(법인)
- 지원내용 :
 - 전문가 컨설팅,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워크북 제작
 - 농장교사의 운영·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 시설 및 장비 설치, 교구·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 법적근거: 농촌진흥법 제4조, 제13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8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4조, 제25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50				650		1,300
2013		900				900		1,800
2014		600				600		1,200
(증△감)		△300				△300		△6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8		900			900		1,800
인천	4		50			50		100
대구	4		50			50		100
부산	4		50			50		100
경기	4		50			50		100
강원	4		50			50		100
충북	4		50			50		100
충남	4		50			50		100
전북	4		50			50		100
전남	4		50			50		100
경북	4		50			50		100
경남	4		50			50		100
제주	4		50			50		1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33		6,650			6,650		13,300
'13	72		900			900		1,800
'14	48		600			600		1,200
'15	56		700			700		1,400
'16	68		850			850		1,700
'17	80		1,000			1,000		2,000

다. 농촌체험 명품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전통테마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2개소(2년씩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400백만원(국비, 지방비 각 50%), 개소당 200백만원
 - 지원조건 : 우수 농촌전통테마마을로써 시도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
 - 지원내용 : 조성된 마을의 현재 수준의 진단분석을 통한 컨텐츠 보완 및 경영혁신
 - (상품혁신) 환경친화적 시설정비 마을갤러리 등 H/W, 명품체험 S/W
 - (운영체계) 커뮤니티 비즈니스체계 구축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화
 - (인적자원) PBL 문제중심학습교육, 어메니티자원 활용 기술능력 배양
 - 법적근거: 농촌진흥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무총리실 농어촌 체험마을조성 운영실태 평가결과(평가관리관 -76, '09. 12. 17.)에 의거 향후 개선 조치계획 수립 시행 권고
- ※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한 수준별 진단, 향후 차등적 지원·관리 계획 수립 시행 지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00				200		400
2014		200				200		400
(증△감)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		200			200		400
강원	1		100			100		200
전북	1		100			100		200

○ 중기재정계획('15년 사업 종료)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800			800		1,600
'13	2		200			200		400
'14	2		200			200		400
'15	0		0			0		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수혜자 만족도 (%)	90.1/78	89.9/78	89.1/79	90.6/79	80	3개 분야별 만족도 조사결과 (원칙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값 - 대상지만족도 당해년도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대상자) - 방문객만족도 당해년도 농촌체험 방문객) - 교육생만족도 당해년도 농촌교육 농장 교사양성과정 교육생)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4-2-4-2. 초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농촌복지여성과	담당자	유재중 이진희
전화번호	044-201-1590 044-201-1578	이메일	yujj8610@korea.kr leejh7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도농교류·1사1촌운동 심화를 위한 도농교류 문화운동 저변확대(기본계획 p.48)

□ 초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 사업 확대

- 도시학생이 한 학기 이상 농어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농어촌 유학제도 활성화
 - 유학프로그램·매뉴얼개발과 시범사업 실시('10) 후 단계적으로 확대
 - * 유학센터 대표·지자체·교육청·학교 등이 참여하는 '가칭'농어촌 유학 추진단 구성
-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농어촌 현장체험교육 공동협력추진 확대
 - * '충남교육청-서천군'은 농어촌현장체험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09.7)
- 초등학교 기간 중 최소 1회, 3~5일간 농어촌 장기 체류형 체험교육을 유도하는 장기간 교류사업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3년도 농어촌 유학사업 추진
 - '13년 추진계획 수립, 농촌유학센터 13개소 지원
 - * 사업계획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유학생수, 사업내용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개소당 9~70백만원(국고 50%, 지방비50%))
 - 농촌유학 관계자(지자체, 교육청, 활동가, 학부모 등) 관심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자교육*(5~11월), 워크숍 개최(10.25) 추진
 - * 청소년활동진흥원(여가부)과 연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위한 기본교육 실시
 - 농촌유학 홍보(예비유학캠프 지원, 관련 박람회시 농촌유학 부스 설치 등) 추진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도 농촌유학 지원사업 추진
 - '14년도 농촌유학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2월, 16개소(계획))
 - 농촌유학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법령 보완
 - 농촌유학 예비캠프 지원, 관계자교육 및 워크숍 추진

<도농교류협력사업>

- '14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개선방안 마련('14.1)
 - 지원대상, 규모 및 선정방법·평가지표 등 개선
- '14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공고 및 선정('14.1~2)
 - 선정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14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추진('14.2~11)
 - 초등학교 50개소
- 도농교류 협력사업 중간점검 실태조사('14.6월)
- 도농교류 협력사업 정산 및 종합평가('14.11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농어촌 유학)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법인격을 갖춘 농촌유학센터
 - 지원금액 및 형태 : 640백만원(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컨설팅·홍보 및 시설 개보수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
 - 법적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87.5				187.5	187.5		375
2014	320				320	320		640
(증△감)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3/16	187.5/320				187.5/320		375/640
'14	16	320				320		640
'15	16	320				320		640
'16	16	320				320		640
'17	16	320				320		640

나. 초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도농교류협력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등학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3) 5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농특)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농촌 체험마을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농식품부) → 시행계획 공고(농식품부) → 심사 및 선정(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설명회 개최(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추진(초등학교) → 사업추진 실태 점검(농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평가(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비 정산(한국농어촌공사)
- 지원근거 : 도농교류촉진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500							500
2014	500							500
(증△감)	0							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0	2,300						2,300
'12	30	300						300
'13	50	500						500
'14	50	500						500
'15	50	500						500
'16	50	500						5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유학 지원 개소 수	3	5	7	13	13	지원 개소 수	내부자료
초등학교 농어촌체 협사업 지원개소 수	20	20	30	49	50	참여학교 수	내부자료

5

문화·여가여건 개선

5. 문화·여가여건 개선

5-1.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공공도서관 4개관 건립 지원
- 농어촌지역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1개소 조성 지원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15개관) 지원
 - 서가 열람공간 모임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공간 조성 자료, PC·프린터 등 적정 소요 물자 구입경비 지원
-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문화기반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지역내 정책현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9개 시·도, 15개 과제)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400			3,400	1,500		4,900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500			500	1,100		1,600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800		800	1,000		1,800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370			370	370		740
합계		4,270	800		5,070	3,970		90,040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도서관진흥과	담당자	윤덕영
전화번호	044)203-2622	이메일	enosh@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촌 공공도서관, 테마과학관 등 정보인프라 구축(기본계획 p.52)

□ 읍·면단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을 '13년까지 총 260관으로 확대(현재 243관)하여
도·농간 정보인프라 격차 완화
- * '13년까지 전국에 OECD 국가 평균 도서관 인프라(인구 5만명 당 1관) 수준인 900개
공공도서관 건립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13. 1월 ~ 12월)
 - 5개 시도, 10개관, 10,005백만원 ※ '10년부터 '13년까지 55개관, 417억원 지원
 - * '91~'12년까지 총 276개소 개관
-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13. 3월 ~ 12월)
 - 전문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경북 의성군 의성군립도서관 등 읍면지역 6개관)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계획 수립·통보('14.1월)
 - 사업 규모(사업량) : 3,409백만원, 3개 시도 4개관 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14. 2~12월)
-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실시('14년 상반기)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3,409백만원, 3개 시·도 4개관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총 건립비의 80%까지 국고 지원(최대 16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내용 : 읍면지역 건립하는 공공도서관에 국고 지원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0,005				5,631		15,636
2014		3,409				1,503		4,912
(증△감)		6,596				4,128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3,409			1,503		4,912
경기	1		649			480		1,129
전남	2		2,360			923		3,283
경북	1		400			100		5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2		42,214			14,334		56,548
'13	10		10,005/ 10,005			5,631		15,636
'14	4		3,409			1,503		4,912
'15	6		9,600			2,400		12,000
'16	6		9,600			2,400		12,000
'17	6		9,600			2,400		12,000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세부 사업 내에 통합되어 있어 국가에서 사업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공공도서관 개관수(관)	15	7	8	7	6	읍면지역 공공도서관 신규개관 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 전화조사

※ 공공도서관 건립은 평균 2~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원관수와 신규 개관수에 차이가 있음

<5-1-2-1.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최대경
전화번호	044-203-3139	이메일	mabaria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p.52)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학교, 등산로, 약수터, 마을 공터 등에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 위주 설치
 - * 학교 내 야간체육시설, 농구장·게이트볼장 등 간이운동시설,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및 조깅로 등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 유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설치
 - 레크레이션 센터, 다목적 구장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로 지원
 - * '10년 7개소('06~'10년 간 총 35개소) 설치 후 사업규모 확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지원사업 선정('13. 2월)
 - 개소당 6억 정액지원 * 5개소 선정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효과성 분석을 통한 향후 지원 방향 설정(4월)
 - 수혜기관 필요성 및 이용자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 지속여부 결정
 -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지원방향 모색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광특) 내 내역사업으로 1개소(강원 홍천) 480백만원 지원
- '1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광특) 예산계상 신청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에서 1개소 이상씩 신청토록 지침 마련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
- 사업 규모(사업량) : 매년 5개소 지원('13년도 까지 48개소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30억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개소당 6억원 정액지원)
- 지원내용 : 공공 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읍·면 단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35조
 -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000	3,000	750		3,750
2014		480			480	1,120		1,600
(증△감)		480		△3,000	2,520	370		2,15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		480			1,120		1,600
강원	1		480			1,120		1,6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		3,855		3,000	9,745		16,600
'13	5/5				3,000/3,000	750/750		3,750/3,750
'14	1		480			1,120		1,600
'15	5		1,125			2,625		3,750
'16	5		1,125			2,625		3,750
'17	5		1,125			2,625		3,75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원 개소수 (개소)	5	5	5	5	5	지원 결정 사업수	문체부의 지원 결정 내역

<5-1-3-1.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도서관진흥과	담당자	이옥주
전화번호	044-203-2630	이메일	iokju@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지원(기본계획 p.53)

□ 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

-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13년까지 153개소 조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작은도서관 173개관 조성('04~'13년)
 - '14년 14개관(1,140백만원) 조성 계획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계획 수립('13. 9월)
-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공모('13. 10~11월)
- 농어촌 작은도서관 선정 통보('14. 1월)
- 국고보조금 교부('14. 2월)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시행('12. 2~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관 내외
- 지원금액 및 형태 : 최대 50~70백만원 지원(지자체자본보조)
 - * 지원금액은 전용면적 33㎡당 2.5백만원 산정(최대 40평/1억)하여 총액을 산출하며 매칭비율을 적용

- 지원조건 : 국비 50% 지원(재정자립도 30%미만 70% 지원)
- 지원내용 : 서가 열람공간 모임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공간 조성 및 자료, PC, 프린터 등 적정 소요 물자 구입경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932			541		1,473
2014			811			964		1,775
(증△감)			△121			423		302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11		964		1,775
대구	3			150		150		300
경기	3			170		473		643
강원	1			70		60		130
충북	1			56		56		112
충남	1			46		20		66
전북	2			129		95		224
전남	1			70		30		100
경북	1			70		30		100
제주	1			50		50		1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843		3,299		7,142
'13	15			932		571		1,503
'14	14			811		964		1,775
'15	10			700		588		1,288
'16	10			700		588		1,288
'17	10			700		588		1,288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기관별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지도·감독, 평가 등
 - 시·도 : 광역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계획서, 조성 신청서 취합 및 추천, 정산서 취합·제출 등
 - 시·군·구 : 사업 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시행, 정산 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작은도서관 개관 수	14	19	22	15	14	읍면지역 작은도서관 신규 개관 수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문서

<5-1-4-1.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번호	044-203-2556	이메일	khjju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기본계획 p.53)

권역별 지역문화서비스센터*를 활용하여 농어촌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선정 및 컨설팅 제공

-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연계, 문화컨텐츠 및 여가활용 정보를 집적하여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전주권 문화정보114, 원주·횡성 문화정보센터,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운영 중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제도 활성화

- 지역문화정책, 지역문화시설의 운영개선,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09년 17개 시군 컨설팅 지원)

* 예) 보성군-한영대 : 보성분청차사발의 확산 및 보성녹차와 연계한 문화상품 개발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연간 13개 내외 컨설팅 과제 지원('10~'13년 총 55개 과제, 17억원 지원)
 - '10년 15개, '11년 14개, '12년 13개, '13년 13개 과제 지원
- 지역문화재단 건립 증가 추세 반영 주관 기관을 지역대학에서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등 범위 확대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9개 시·도, 15개 과제)
- 추진일정
 - '14년 신규과제 착수 보고 및 국고보조금 교부 : '13. 1~2월
 - 중간평가 워크숍, '15년 과제 공모 및 선정 : '14. 7~10월
 - 최종평가 워크숍 및 인센티브 지원 결정 : '14. 11~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지역문화컨설팅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지역문화재단, 지역 대학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9개 시·도, 15개 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366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률지원(50%)
- 지원내용 :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문화 기반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 지역의 문화정책 현안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08			408	408		816
2014		366			366	366		732
(증△감)		△42			△42	△42		△42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366			366		732
인천	1		35			35		70
울산	1		20			20		40
경기	3		93			93		186
강원	3		70			70		140
충북	2		54			54		108
충남	1		20			20		40
전북	1		20			20		40
경북	2		31			31		62
제주	1		23			23		46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3/14		408/408			408		816
'14	15		366			366		732
'15	13		366			366		732
'16	13		366			366		732
'17	13		366			366		73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결과 활용도(점)	81	81	82	81	81	민간평가위원의 활용도평가 (\sum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5점 척도 $\times 20$)/전체응답자)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조사

5-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레퍼토리를 소외지역 문예회관(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에 공연하는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으로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전국 보육원, 저소득층 결손·조손가정 등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찾아가는 박물관 및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운영으로 안정적 독서기반 제공과 정보 문화 격차 해소
-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410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150개),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23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55개),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50개), 생활문화전승(15개), 어르신 문화축제(17개), 어르신 신바람놀이문화 프로그램(70개) 등 지원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40개 내외를 등급에 따라 구분, 차등 지원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및 농어민 소득 창출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8,000	8,000			8,000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900		900			900
찾아가는 도서관			700		700			700
찾아가는 박물관			100		100			100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100		100			100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4,100		4,100			4,100
문화나눔				51,791	51,791	21,398		73,189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1,200	1,200			1,20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6,900	6,900	6,900		13,800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연계	300			400	700			700
합계	300		5,000	68,291	73,591	28,298		101,889

<5-2-1-1.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류현욱
전화번호	044-203-2733	이메일	eric772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본계획 p.54)

□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 농어촌 지역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09년, 11개 단체 참여)의 우수프로그램 순회 활동 강화
- 우수 민간예술단체를 선정, 농어촌에 파견 또는 순회공연 등을 통해 우수 공연·전시프로그램 관람기회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시/군	시 : 32지역 시 : 28지역	시 : 21지역 군 : 29지역	시 : 30지역 군 : 49지역	시 : 30지역 군 : 44지역	시: 40지역 군: 38지역
참여단체	13개 단체	10개 단체	15개 단체	8개 단체	15개 단체
문예회관	61개	51개	80개	75	78
공연횟수	90회	123회	160회	153회	136회
관객수	53,000명	55,000명	67,068명	65,920명	61,103명
예산규모 (백만원)	2,000	2,500	3,375	3,035	2,883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기본방향 :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에 위치한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국립예술단체의 우수레퍼토리를 소외지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공연 실시
- 소요예산 : 2,9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 사업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추진일정
 - 사업기본계획 수립 (2월 중)
 - 국립예술단체 프로그램 협의 및 문예회관 대상 사업공지 (3월 중)
 - 문예회관 사업 신청 및 배정(4월 중)
 - 사업 실행 및 평가(4월~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문예회관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 국립예술단체 참여 80개 지역 140회 공연
 - 지원금액 및 형태 : 공연당 40~80백만원 지원(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지원내용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전국 문예회관을 통한 공연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883		2,883			2,883
2014				8,000	8,000			8,000
(증△감)			△2,883	8,000	5,117			5,117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 공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 단계에서 시도별 배분내역 파악 불가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78개 지역 (61,103명)/ 80개 지역 (67,000명)			2,883 /2,883				2,883
'14	80개 지역 (67,000명)				2,900			2,900
'15	80개 지역 (69,000명)				3,190			3,190
'16	85개 지역 (71,000명)				3,509			3,509
'17	90개 지역 (73,000명)				3,860			3,86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관리 감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실행, 관리, 홍보 및 평가
- 지역문예회관 : 공연 및 연계프로그램 홍보, 진행
- 국립예술단체 : 공연 및 연계프로그램 실행, 홍보 협조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수혜자수	55천명	67천명	65천명	61천명	67천명	관람객 조사	문예회관 및 참여 단체 결과보고

<5-2-1-2. 찾아가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담당자	김영란 김주녕 박선주
전화번호	02-3413-4756 02-2077-9307 02-3704-4526	이메일	keajin@korea.kr joonyeung@korea.kr seonju3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본계획 p.54)

□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확대

* ('09) 도서관(40개관, 24회), 박물관(77회), 미술관(10회)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가. 찾아가는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추진기간 : 2013. 2 ~ 11(10개월)
- 사업내용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층 결혼·조손가정 어린이, 보육원 어린이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지원
- 추진실적 : 4,320회, 135개 기관, 2,700명 참여
- 지원대상 : 전국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 어린이
- 지원내용 : 책읽기, 동화구연, 독후활동 등 독서프로그램 및 도서관문화체험 프로그램 4,320회 운영, 도서 총4,191종 43,796책 지원
- 주요 성과
 - 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들의 변화
 - ‘책읽기’, ‘책읽어주기’ 독서프로그램 참여로 어린이들의 독서습관 형성 및 책에 대한 관심 증가, 도서관 방문 횟수 증가
 - 어린이들의 심적 안정감 및 발표력 향상
 -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사회성, 자아존중감, 문해력 향상
 - 어린이들이 개인도서를 소장하게 됨으로써 책과의 친밀감 형성

- 보육원 · 지역아동센터 등 참여기관의 변화
 - 보육원 ·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에 도서관이 생기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관계 형성
 - 기관의 도서관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 제공
- 공공도서관 등 참여기관의 변화
 -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관심 증가,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 지역의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책읽기 사업에 대해 홍보

나. 찾아가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추진기간: 2013. 8.9 ~12.5
- 추진실적: 9회, 13개 지역(장소), 7,985명 참여
- 2013년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결과 현황

회 수	일 시	장 소	방문 인원	비 고
1회	2013.08.09	충남 보령시 관당초등학교	810명	
	2013.08.10	충남 보령시 석탄박물관	1,494명	
2회	2013.08.28	전남 신안군 지도초등학교	854명	
	2013.08.29	전남 신안군 압해초등학교	792명	
3회	2013.09.04	충북 괴산군 감물초등학교	710명	
4회	2013.09.25	전북 정읍시 다송학교	830명	
	2013.09.26	전북 정읍시립박물관	300명	
5회	2013.10.16	포천시 화현면 화현초등학교	450명	
	2013.10.17	포천시 산정호수	720명	
6회	2013.10.23	경북 청송군 도평초등학교	100명	
	2013.10.24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180명	
7회	2013.11.06	충남 태안읍 방포초등학교	285명	
	2013.11.07	충남 태안문화예술회관	230명	
8회	2013.11.20	경남 의령군 경남은광학교	60명	
	2013.11.21	경남 의령군 경남은광학교	50명	
9회	2013.12.04	전남 구례군 청천초등학교	70명	
	2013.12.05	전남 구례군 청천초등학교	50명	
합 계			7,985명	

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 교육기간 : 2013. 3. 13 ~ 11. 22
- 운영기관 및 인원 : 전국 초등학교, 도서관 등 총 57개 기관, 4,180명 참여
- 내용 : 다문화꾸러미 체험, 세계의 민속악가악기야 안녕? 전시 관람 및 관련 교육

〈참가 학교 및 인원〉

차수	교육일	지역	학교	참여인원 (단위:명)
1차	3월 13일	강원 철원	문혜초등학교	87
2차	3월 14일	강원 양구	죽리초등학교	80
3차	3월 15일	강원 철원	토성초등학교	40
4차	3월 27일	경남 의령	정곡초등학교	26
5차	3월 28일	경남 창원	우산초등학교	44
6차	3월 29일	경남 창원	하북초등학교	100
7차	4월 9일	전북 군산	개정초등학교	73
8차	4월 10일	충남 보령	주포초등학교	51
9차	4월 11일	충남 당진	합덕신촌초등학교	47
10차	4월 24일	경남 함안	법수초등학교	53
11차	4월 25일	경남 하동	적량초등학교	49
12차	4월 26일	경남 진주	수곡초등학교	58
13차	5월 8일	강원 화천	풍산초등학교	67
14차	5월 9일	강원 속초	청호초등학교	50
15차	5월 10일	강원 고성	천진초등학교	58
16차	5월 22일	경남 김해	대감초등학교	43
17차	5월 23일	경남 밀양	태룡초등학교	51
18차	5월 24일	경남 창녕	장마초등학교	33
19차	6월 11일	경북 청도	풍각초등학교	84
20차	6월 12일	경북 칠곡	낙산초등학교	83
21차	6월 13일	경북 의성	다인초등학교	81
22차	6월 14일	경북 상주	모서초등학교	67
23차	6월 19일	전남 여수	봉덕초등학교	48
24차	6월 20일	전남 순천	월등/황전초등학교	101
25차	6월 21일	전남 구례	문척초등학교	60
26차	6월 24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	79

차수	교육일	지역	학교	참여인원 (단위:명)
27차	6월 26일	충북 영동	미봉초등학교	52
28차	6월 27일	충북 보은	수정초등학교	76
29차	6월 28일	충북 청주	내곡초등학교	67
30차	7월 10일	경남 남해	지족초등학교	63
31차	7월 11일	경남 진주	예하초등학교	67
32차	7월 12일	경남 합천	삼가초등학교	123
33차	8월 28일(수)	세종시	장기초등학교	112
34차	8월 29일(목)	세종시	도담초등학교	102
35차	8월 30일(금)	세종시	연동초등학교	104
36차	9월 11일(수)	강원 홍천	화계초등학교	83
37차	9월 12일(목)	강원 인제	용대초등학교	47
38차	9월 13일(금)	강원 양양	상평초등학교	80
39차	9월 24일(화)	경남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	264
40차	9월 25일(수)	경남 거제	명사초등학교	41
41차	9월 26일(목)	경남 통영	광도초등학교	124
42차	9월 27일(금)	경남 고성	방산초등학교	58
43차	10월 10일(목)	경기 여주	북내 초등학교 도전분교	79
44차	10월 11일(금)	강원 영월	연당초등학교	58
45차	10월 12일(토) ~10월13일(일)	강원 영월	세계민속악기박물관	150
46차	10월 16일(수)	강원 정선	봉양초등학교	99
47차	10월 17일(목)	강원 평창	주진초등학교	52
48차	10월 18일(금)	강원 평창	계촌초등학교	66
49차	10월 23일(수)	경남 산청	도산초등학교	52
50차	10월 24일(목)	경남 거창	신원초등학교	30
51차	10월 25일(금)	경남 함양	마천초등학교	86
52차	11월 06일(수)	경남 김해	주동초등학교	43
53차	11월 07일(목)	경남 김해	칠산초등학교	80
54차	11월 08일(금)	경남 양산	영천초등학교	62
55차	11월 20일(수)	경남 남해	고현초등학교	35
56차	11월 21일(목)	경남 사천	곤명초등학교	62
57차	11월 22일(금)	경남 하동	화개초등학교	150
학교 55개(3,766명), 박물관 2개(414명)				4,180

※ 지역별 운영 횟수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25	4	3	1	2	3	14	1	4

※ '2013 경남민속문화의해' 사업과 연계하여 경남 지역 초등학교에 집중함

3. 2014년도 추진 계획

가. 찾아가는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사업기간 : 2014년 3월~11월
- 사업횟수 : 총 4,320회(135개관/관당 32회 독서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전국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 어린이
- 사업내용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찾아가 책읽기와 도서선물 등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습관 형성, 도서관 견학 등 도서관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 사업추진체계
 - 절차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운영도서관 공모('14.1월) → 운영도서관 선정('14.2월) → 전국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지원('14.3월~11월) → 운영 평가('14.12월)

나. 찾아가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사업추진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 사업추진절차 : 계획 수립·확정 - 사업 운영 - 사업 평가
- 사업추진 일정
 - 운영기간: '14. 3~11월(9개월)
 - 운영계획: 34회, 9,000명

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 사업기간 : 2014년 2~11월
- 사업횟수 : 총 60회(예정)
- 대상 : 지역 초등학교 1~6학년
- 사업추진체계
 - 운영계획안 보고('14.1월) → 상반기 운영 기관 신청 접수 및 선정('14.2월) →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14.2~7월) → 하반기 운영 기관 신청 접수 및 선정('14.6월) →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14.8~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찾아가는 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어린이 대상
- 사업 규모(사업량) : 733백만원, 전국 135개관 지원(관당 466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금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 책 크게 읽어주기, 동화구연·독후활동 등 독서프로그램 4,320회 운영 등
 - 우수 신간 어린이도서 지원 : 총 40,500책(1개관 300책)
- 법적근거 :
 - 도서관법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19조(업무) ①항 제8호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③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시행령 제12조(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제2호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제4호 농산어촌의 주민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33					733
2014			733					733
(증△감)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700명/135개관			733				733
'14	2,200명/135개관			733				733
'15	2,200명/135개관			733				733
'16	2,200명/135개관			733				733
'17	2,200명/135개관			733				733

나. 찾아가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초등학교(유치원포함) 학생 및 다문화지원센터 등 문화소외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연 34회, 9,0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17,897천원/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전액국고부담
- 지원내용 : 찾아가는 박물관 버스 전시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법적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0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20					120
2014			118					118
(증△감)			△2					△2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6개소 8,000명			120/120				120/120
'14	34개소 9,000명			118				118
'15	35개소,9,500명			120				120
'16	37개소,9,800명			125				125
'17	38개소,10,000명			127				127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기관
- 사업 규모(사업량) : 연 60회, 4,0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85,000천원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전액국고
- 지원내용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버스 전시 관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적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0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84		84			84
2014			90		90			90
(증△감)			6		6			6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62/57			84/84				
'14	64			90				
'15	66			95				
'16	68			95				
'17	70			1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지원 도서관수	75	90	135	135	135	운영계획서, 성과실적	공문
	참여 어린이수	1,500	1,800	2,700	2,700	2,200	참가자 통계	참여어린이 명단
국립 중앙 박물관	횟 수	71회	65회	67회	13회	34회	1회(1일)×운영일수	실 운영일
	참가인원 (명)	39,964	40,392	37,163	7,985	9,000	회당 실참여 인원	회당 실참여 인원 합산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참여자수		2,352	4,855	5,217	4,180	5,500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참여자 수 합계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참여자 수

<5-2-1-3.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이경화
전화번호	044-203-2552	이메일	hihappy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본계획 p.54)

□ 지방문화원을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문화활동의 거점기관으로 활성화

○ 은퇴 및 귀향전문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토문화 발전과 청소년 창의성 계발에 기여토록 운영

- 역사문화유적탐방,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향토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문화활동 등 지원 ('09년 150개원)

* 프로그램 수/예산 : ('09) 137개/19억원 → ('10) 150/23 → ('14)170/25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추진기간 : 2013. 1 ~ 12월

○ 진행상황 : 계속

○ 추진실적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379개 프로그램)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154개),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33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70개),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11개), 어르신 문화동아리(43개), 어르신 문화축제(14개), 어르신 문화교류활성화(54개)

- 어르신 신바람 놀이문화 프로그램(70개 마을)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추진일정

- 2014년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교부(1월)

- 사업 공모 및 선정심사(2~3월)

· 1차 : 서류심사 / 2차 : 사업계획서 보완컨설팅

- 사업 운영(4~11월)
 - 국고보조금 재교부(문화부→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등), 해당 문화원 교육 및 컨설팅 상시운영, 사업 발대식 개최, 사업 중간평가, 단위사업·권역별 워크숍 외
- 사업완료(12월) 및 정산보고('15.2월)
 - 사업평가보고회 및 2015년 사업설명회 외
- 추진계획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410개 프로그램)
 - 어르신문화학교(150개),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23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55개),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15개), 어르신 문화동아리(50개), 어르신 문화축제(17개), 어르신 신바람놀이문화 프로그램(70개) 등 지원
- ※ '14년부터 사업 주체를 지방문화원 이외에도 타 문화예술단체로 확대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명칭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기존,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4. 관련 사업 내용

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 사업 규모(사업량) : 410 프로그램
 - 지원금액 및 형태 : 4,053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어르신 문화동아리, 어르신 문화축제, 어르신 신바람놀이문화 프로그램 등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053					4,053
2014			4,053					4,053
(증△감)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84			24,706				24,706
'13	379/160			4,053/2,500				4,053
'14	410			4,053				4,053
'15	450			5,000				5,000
'16	495			5,500				5,500
'17	550			6,100				6,1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프로그램수(개)	170	202	340	379	170	지원사업수	사업평가보고서

<5-2-1-4. 문화나눔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	담당자	엄희정
전화번호	044-203-2519	이메일	kiki9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본계획 p.54)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농어촌 특성에 맞게 집중 추진

- 문화바우처(전시·공연), 스포츠바우처(체육센터 이용), 복지관광, 사랑티켓(전시·공연) 사업 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 기회 제공(총 160만명 수혜 예상 *14.1월 사업 완료)
 - 자발적 관람 지원하는 문화카드 농어촌 지역 8만여매 발급 15만여명 수혜
 - 근린 문화시설 부족한 농어촌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2만여명 수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의 향유 기회 제공
 - 고령층 비율이 높고 근린 문화시설 부족한 농어촌 지역 여건 감안하여 기획바우처 사업 지속 확대
 - ※ '14년부터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운영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문화나눔 사업(통합문화이용권)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 규모(사업량) : 144만명 지원(농어촌 지역 25만여명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간 10만원 이내 문화예술프로그램·여행·스포츠관람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지자체경상보조(매칭, 7:3), 민간경상보조(정액)
- 지원내용 : 문화카드 가구당 1매 발급(청소년 대상자의 경우 개인당 발급),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모셔오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	34,946	34,946	14,400	-	49,346
2014	-	-	-	51,791	51,791	21,398	-	73,189
(증△감)	-	-	-	16,645	16,645	6,998	-	23,64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0,016	21,398		70,914
서울		-	-	-	6,676	3,643	-	10,319
부산		-	-	-	4,900	2,002	-	6,902
대구		-	-	-	3,569	1,486	-	5,055
인천		-	-	-	2,517	1,094	-	3,611
광주		-	-	-	2,245	815	-	3,060
대전		-	-	-	1,612	675	-	2,287
울산		-	-	-	554	253	-	807
세종		-	-	-	122	53	-	175
경기		-	-	-	6,700	3,139	-	9,839
강원		-	-	-	2,120	866	-	2,986
충북		-	-	-	1,794	726	-	2,520
충남		-	-	-	2,122	834	-	2,956
전북		-	-	-	3,517	1,314	-	4,831
전남		-	-	-	3,233	1,192	-	4,425
경북		-	-	-	3,800	1,536	-	5,336
경남		-	-	-	3,394	1,373	-	4,767
제주		-	-	-	641	397	-	1,038

* 운영비 1,575백만원 및 공익사업적립금(미정) 별도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60만명	-	-	-	34,946	14,400	-	49,346
'14	144만명	-	-	-	51,591	21,398	-	72,989
'15	150만명	-	-	-	54,180	23,220	-	77,400
'16	160만명	-	-	-	57,900	24,820	-	82,720
'17	170만명	-	-	-	62,100	26,620	-	88,72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문화이용권 이용자 수	470,219	130만명	160만명	160만명	144만명	문화이용권 이용자 수 집계	사업실적보고서

*'14년부터 문화·여행·스포츠관광 이용권 통합에 따른 지원금액 상향조정(5만원→ 10만원)으로 전년대비 목표치 144만명 조정

<5-2-2-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번호	044-203-2556	이메일	khjju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기본계획 p.55)

□ 농어촌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추진

- 자생적 문화클럽을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강사 지원
 - 농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12년까지 80개소 조성
- 농요, 세시풍속 등 전통 생활문화·예술 발굴 및 창작 지원
 - 지역별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관련 자료 및 지도서 개발
 -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3년 27개 단체 지원(12억원)
 - '10년 19개소(계속 14, 신규 5개), '11년 25개소(계속 13, 신규 12), '13년 27개소(계속 15, 신규 12)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원대상 :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
- 수혜대상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주민
- 지원규모 : 25개소 내외
 - 연속지원 : '13년 기 수행단체 중 사업성과평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신규지원 : 지역의 문화환경 및 시행단체 역량 등 심사 선정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시행단체
 - 사업추진일정 : 연속단체 심사 및 지원규모 확정('14. 2월) → 신규단체 공모 및 심사, 선정('14. 2~4월) → 선정단체 사업설명회('14. 5월) → 사업비 지원 및 지역별 사업 추진('14. 4~12월) → 전문가 컨설팅(상·하반기 1회) 및 담당자 모니터링(정기 및 집행실적 부진시) → 생활문화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14. 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단지, 노안어촌 지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 사업 규모(사업량) : 27개 내외 단체
- 지원금액 및 형태 : 1,2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지원내용 :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조성 지원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180	1,180			1,180
2014				1,200	1,200			1,200
(증△감)				20	20			2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공모 진행 후 확정(공모 : '14. 3~4월)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7/20		1,180 /1,180					1,180 /1,180
'14	27		1,200					1,200
'15	27		1,200					1,200
'16	27		1,200					1,200
'17	27		1,200					1,2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문화예술단체 지원 (개소)	19	25	24	27	27	지원 단체 수	추진실적 자료

<5-2-2.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번호	044-203-2839	이메일	withluc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기본계획 p.55)

지역의 향토문화 관광축제 지원

- 전국의 주요 축제를 단계별(대표, 우수, 유망 등)로 구분, 차등지원
 -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13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42개 문화관광축제, 67억 지원)
 - ※ 대표축제(2개, 각6억), 최우수축제(8개, 각3억), 우수축제(10개, 각1.5억), 유망축제(22개, 각0.79억)
- 문화관광축제당 평균관람객수는 '13년 700천명으로 전년대비 4.6% 상승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평균 외국인관광객수는 '13년 39천명으로 전년대비 125% 상승하여 문화관광축제가 글로벌축제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
 - ※ 평균 총관람객수 ('12) 669천명→('13) 700천명
 - ※ 평균 외국인관람객수 ('12) 669천명→('13) 695천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40개 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축제당 3명<교수 2, 직원1>/ '14. 1 - 11월)
- 외국인 축제 모객지원 및 팸투어, 홍보 웹사이트 운영
- 지역축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4.~)
- 16개 시도 공무원 대상 축제 워크숍 개최('14. 2월중)
- '15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14. 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관광축제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 사업 규모(사업량) : 40개 문화관광축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6,9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 정률 50%
- 지원내용 : 문화관광축제 지원
-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	6,700	6,700	6,700	-	13,400
2014	-	-	-	6,900	6,900	6,900	-	13,800
(증△감)	-	-	-	200	200	200	-	4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개	-	-	-	5,991	5,991	-	
서울	1개	-	-	-	89	89	-	178
부산	2개	-	-	-	178	178	-	356
대구	1개	-	-	-	130	130	-	260
인천	1개	-	-	-	89	89	-	178
광주	1개	-	-	-	250	250	-	500
울산	1개	-	-	-	89	89	-	178
경기	5개	-	-	-	767	767	-	1,534
강원	4개	-	-	-	849	849	-	1,698
충북	2개	-	-	-	178	178	-	356
충남	4개	-	-	-	558	558	-	1,116
전북	3개	-	-	-	880	880	-	1,760
전남	6개	-	-	-	897	897	-	1,794
경북	4개	-	-	-	558	558	-	1,116
경남	4개	-	-	-	479	479	-	958

※ 관광진흥개발기금 900백만원(미배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42개/42개				6,700	6,700	-	13,400
'14	40개/40개				6,900	6,900	-	13,800
'15	40개/40개				6,700	6,700	-	13,400
'16	40개/40개				6,700	6,700	-	13,400
'17	40개/40개				6,700	6,700	-	13,400

나. 문화관광축제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각 지자체
- 추진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천요청(문화부→시·도)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 → 지자체) → 사업시행 및 축제 개최(지자체) → 현장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반영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문화관광축제 당 관람객수(천명)	707	690	710	700	703	문화관광축제 관광객 통계	지자체 보고

<5-2-2-3.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농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당자	유재중
전화번호	044-201-1590	이메일	yujj86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기본계획 p.55)

□ 농어촌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현지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 우선 추진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에 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고 문화예술관련 교육에 지역개발전문가, 마을리더, 담당공무원 등 참여 확대
- 농어촌개발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의 협력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간 MOU 체결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전국 시·군단위 10개 지역 2회씩 총 20회 문화공연 실시(4~5월)
 - 청소년, 소외계층 대상 단체공연 경험이 풍부한 공연단을 선정하여 지역별 2회 이상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
 - 해당 시·군의 적극적 협조로 공연소식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전달 및 참석 유도
 - 농촌 청소년의 흥미 유발 가능한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으로 많은 참석 및 호응 유도
 - 농촌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촌지역 문화공연 실시로 청소년, 농업인 관람(5~6월)
 - 전국 시·군단위 8개 지역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지역 문화공연 실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계속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시·군 단위 지역 공연
 - 지원금액 및 형태 : ('14) 600백만원(300 : 민간경상보조, 농특, 300 : 농협 중앙회 별도)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내용 : 농촌지역 문화공연 실시로 청소년, 농업인 관람
 - 법적근거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380				380		300	680
2014	300				300		-	300
(증△감)	△80				△80		△300	△380

* 기타는 농협중앙회 별도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0	1,900					1,500	3,400
'12	10	380					300	680
'13	10	380					300	680
'14	8	300					300	600
'15	8	300					300	600
'16	8	300					300	600

<5-2-2-3.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번호	044-203-2556	이메일	khjju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기본계획 p.55)

□ 농어촌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현지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 우선 추진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에 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고 문화예술관련 교육에 지역개발전문가, 마을리더, 담당공무원 등 참여 확대
- 농어촌개발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의 협력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간 MOU 체결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주민 대상 농어촌문화리더, 농어촌 문화매개 인력 양성('13년 216명 수료, 18개 기획사업 지원)
- '10년 320명, '11년 331명, '12년 209명 수료
- 농어촌 문화 활동가 양성으로 한 마을의 주요자원의 가치발견 및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촌 주민 대상 기초, 심화, 실습지원을 통한 농촌문화 인력 양성(350여 명)
- 1단계 지역 거점별 기초과정, 2단계 심화과정, 3단계 실습지원(컨설팅 병행)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문화이모작)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 주민 및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사업 규모(사업량) : 지역 거점별 인력 양성(200여명, 기획사업 15개 내외)
- 지원금액 및 형태 : 4억원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지원내용 : 농촌 주민 대상(일반인 포함) 기초, 심화 교육 및 실습지원 교육 지원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00	400			400
2014				400	400			400
(증△감)				-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16/350				400/400			400
'14	400				400			400
'15	400				400			400
'16	400				400			400
'17	400				400			4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교육인원 수(명)	320	331	209	261	350	교육인원 수	사업추진실적 자료

5-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하여 청소년의 감수성 함양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14년도 7,809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강사 4,735명 파견
- 1인 1예능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어촌 등 소외/취약 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30개교)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계발과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47,721		47,721	32,404		80,125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			44,221		44,221	32,404		76,625
예술꽃 씨앗학교			3,500					3,500
합계			47,721		47,721	32,404		80,125

<5-3-1-1.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정해경
전화번호	044-203-2763	이메일	creed@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마을문화시설 등에 문화예술 전문인력 파견(기본계획 p.56)
 - 농어촌 작은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에 사서 또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파견(순회)하여 주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 확산 지원
- 농어촌 초·중·고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 청소년의 감수성 함양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해 농어촌 지역 '문화예술교실' 운영 등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강화
 - 방과 후 교육(교육부)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 *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연계협력을 위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08.10))
 - 초·중·고교 예술 강사(연극, 무용 등) 지원 확대
 - * ('09) 전국적으로 4,700개교 150만명 학생 수혜
 - 전교생에게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농어촌 지역에 확산
 - * ('09) 시범학교 10개소 중 농어촌학교 6개소 포함
- 창의적인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 지역문화 활동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지역 문화창조 교육기회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지역문화예술 인력 간 교류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형성 유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3년도 전국 초·중·고 7,254개교에 예술강사 4,485명 파견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지원(수혜학생 210만여 명)
- 문화예술교육 집중지원을 위한 예술꽃씨앗학교 운영(30개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청소년의 감수성 함양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농·산·어촌 소외계층 대상 1인 1예능활동을 하는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산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4년도 7,809개교(수혜학생 약 250만명), 예술강사 4,735명 파견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사업비 765억원(국고442억원 지방비 58억원 지방교육재정 265억원)
- 지원조건 : 신청학교 심사를 통해 강사파견 학교 선정
- 지원내용 :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시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 법적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39,421	-	39,421	31,101	-	70,522
2014	-	-	44,221	-	44,221	32,404	-	76,625
(증△감)			4,800	-	4,800	1,303	-	6,103

*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예산을 지방비에 포함함(지방비 : 시도비 + 시도교육청 예산)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735, 7,254)	-	-	44,221	-	32,404	-	76,625
서울	(885,972)			4,233		5,228		9,461
부산	(379,473)			3,104		2,112		5,216

	사업규모 (개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대구	(213,271)			1,687		1,145		2,832
인천	(191,317)			2,013		1,073		3,086
광주	(218,234)			1,601		1,346		2,947
대전	(193,234)			1,613		1,082		2,695
울산	(140,165)			1,904		1,274		3,178
세종	(11,30)			146		98		244
경기	(556,1,238)			4,625		3,202		7,827
강원	(175,443)			2,569		1,784		4,353
충북	(197,328)			2,418		1,627		4,045
충남	(212,493)			1,746		1,246		2,992
전북	(378,566)			3,956		2,635		6,591
전남	(311,600)			4,241		2,863		7,104
경북	(302,607)			3,826		2,619		6,445
경남	(282,716)			3,528		2,388		5,916
제주	(92,147)			1,011		682		1,693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4,485/7,235	-	-	39,421	-	31,101	-	70,522
'14	4,735/7,809	-	-	44,221	-	32,404	-	76,625
'15	8,000	-	-	63,549	-	35,000	-	98,549
'16	9,000	-	-	72,329	-	35,000	-	107,329
'17	10,000	-	-	80,974	-	35,000	-	115,974

나.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4년도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30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사업비35억원(국고35억원)
- 지원조건 : 신청학교 심사를 통해 대상학교 선정
- 지원내용 : 농산어촌 등 소외/취약 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계발과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 제시
- 법적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2,500					2,500
2014			3,500					3,500
(증△감)			1,000					1,000

*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예산을 지방비에 포함함(지방비 : 시도비 + 시도교육청 예산)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6			2,500				2,500
'14	30			3,500				3,500
'15	30			3,500				3,500
'16	30			3,500				3,500
'17	30			3,500				3,5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예술강사 수혜자 만족도(점)	76	77	78	79	80	{ \sum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매우불만(5점 척도)}X20} / 전체응답자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경관보전직불제를 작물 보조금 중심에서 마을을 포함한 생활·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보전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확대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마을경관보전활동에 200억원 지원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내의 농지 및 초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밭·과수원 500천원/ha, 초지 250천원/ha), 사업대상 토지 요건 완화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지원 확대 추진
- 지역생태숲(13개소), 자생식물원(11개소) 조성을 통해 향토·자생식물의 체계적 보전과 함께 식물교육 등 자연학습 및 환경교육의 공간으로 제공
 - 전문전시원 및 산림생태관찰원, 교육·탐방·체험시설, 연구기반시설, 자생식물 전시원, 생태관찰원·탐방로, 편익시설 등 조성
- 독창적이고 고유한 농법 및 생태경관지역,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지역을 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농어업농어촌유산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다원적자원 보전·활용계획' 수립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역에 대한 브랜드가치 제고를 높이기 위하여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추진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경관보전직불제	13,968				13,968	5,986		19,95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39,500				39,500	9,700		49,200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5,950	2,500		8,450	8,420		16,870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400				1,400	600		2,000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300		300			300
합계	54,868	5,950	2,800		63,618	24,706		88,324

<6-1-1-1. 경관보전직불제(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민동명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60	이메일	dmmi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마을경관 개선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착(기본계획 p.58)

□ 직불 보조금에 편중된 경관보전직불제를 마을을 포함한 생활·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보전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확대

○ 마을과 시·군간 협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관협약 내실화

2. 2013년 말까지 추진 실적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완료)
 - 동일지구내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최소면적기준 2ha로 면적기준 완화
 - 친환경, 조건불리직불은 사업참여 가능하게 하여 사업참여 확대
 -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참여불가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단위를 명확화
 -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효과를 높이고,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한 사업참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 제재기준 강화
- 협약사항 이행점검 상/하반기 2회 실시(완료)
 - (상반기)489개지구 10,234농가, 11,639ha, (하반기) 49개지구 624농가 580ha
 - 점검내용 : 품목, 과중면적, 생육 및 개화상태, 마을경관보전활동 여부 등
 -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및 활동비 지급
- 2014년 예산신청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및 시도별 사업면적 배정
 - 574개마을, 14,316농가, 총 18,565ha 신청("14사업면적배정 12,678ha, 13,968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5년 사업대상지역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경관보전직불제 상/하반기 협약사항 이행점검
- 경관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을 통한 농촌경관형성계획 및 개선방안 수립

4. 관련 사업 내용

가. 경관보전직불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농어촌 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13년 기준 12,796ha, 527개 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13,968백만원('14예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 법적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3,968				13,968	5,986		19,954
2014	13,968				13,968	5,986		19,954
(증△감)	-				-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694	13,968				5,986		19,954
인천	81	104				45		149
광주	119	109				47		156
대전	54	61				26		87
울산	43	45				19		64
경기	2	3				1		4
강원	57	74				32		106
충북	5	7				3		10
충남	1,296	1,649				707		2,356
전북	3,792	4,098				1,756		5,854
전남	6,443	7,010				3,004		10,014
경북	142	143				61		204
경남	545	516				221		737
제주	115	149				64		213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4,396	68,832				29,498		98,333
'13	12,796/12,796	13,968/13,968				5,986		19,954
'14	12,900	13,716				5,878		19,594
'15	12,900	13,716				5,878		19,594
'16	12,900	13,716				5,878		19,594
'17	12,900	13,719				5,878		19,59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역축제 등 도농 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 가율(%)	-	5	3	3	3	당해연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100-100	지자체에서 보고한 방문객 조사결과자료

<6-1-1-2. 조건불리지역직불제(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기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	최춘태
전화번호	044-201-1772	이메일	ctchoi@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마을경관 개선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착(기본계획 p.58)

□ 조건불리직불제는 대상지역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경관유지 효과 제고

○ '10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밭 40만원/ha → 50), '11년 오지면의 경지 경사율 요건 완화(14%→7%) 등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정책환경 변화 반영 및 조건불리지역 주민 복지향상 등을 위해 마을공동 기금 사용 다양화 추진
-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여 조건불리직불금 실제 농가수령액 상향(35만원 → 40) 조정
 - * 마을공동기금 조성(20%)에 따라 농가 수령액 400천원/ha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대상 토지 요건 완화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지원 확대 추진
- 마을활성화 실천의무를 탄력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도모
- '15년 밭고정직불 시행에 따라 기본 밭직불금에 조건불리지역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산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사업 담당자 교육 및 워크쇼 등을 통해 개선방안 의견 수렴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직불금과 통합 신청 및 사업 집행 절차 일원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내의 농지 및 초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해당 농지소재 읍·면에 거주하는 자
- 사업 규모(사업량) : 395억원, 98.2천ha(농지 95, 초지 3.2)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지 500천원/ha, 초지 250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 80%, 지방비 20%),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지원조건 :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
- 지원내용 : 조건불리 법정리의 농지 및 초지에 대해 직불금 지급
- 법적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9,363				39,363	9,629		48,992
2014	39,511				39,511	9,659		49,170
(증△감)	148				148	30		178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98,142	39,363				9,629		48,992
	/98,175	/39,511				/9,659		/49,170
'14	98,175	39,511				9,659		49,170
'15	98,175	39,511				9,659		49,170
'16	98,175	39,511				9,659		49,170
'17	98,175	39,511				9,659		49,170

5. 성과목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해당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로 '14년 조건불리지역 정주농비율 98.5% 유지
 - * 사업시작 당시 5년간('01~'06년) 농가수 평균 감소율은 1.7%(정주농비율 98.3%)이나, 직불금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주농 비율 목표치를 5개년 평균치보다 높은 98.5%로 설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정주농비율(%)	100.5	100.5	116.0	108.5	98.5	지원대상 법정리의 당 해연도 정주농 비율 / 최근 5년간 평균 정 주농 비율 × 100 *당해연도 정주농 비율: 금년 농가수 /작년 농 가수×100	agrix입력자 료 확인

<6-1-2-1.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장영택(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dx0106@for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지역별 고유한 식물경관 및 생태숲 조성 지원(기본계획 p.59)

자생식물원 조성을 확대하여 향토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전 및 식물교육 등 자연학습 기회 강화

○ '14년까지 10개소의 자생식물원 조성('08까지 4개소)

산림생태계가 보전된 숲 조성 및 복원 추진

○ 지역, 기후, 생태전이 등을 종합 고려한 생태숲 조성을 확대하여 건강한 여가 생활·자연학습 공간 제공

- '14년까지 48개소의 생태숲 조성('08년까지 33개소)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산림환경의 연구 및 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지역생태숲 조성 등 자생 식물 서식기반 확충

- 지역생태숲 : 2013년까지 총 29개소 조성·운영(조성완료 29, 조성중 16)

- 자생식물원 : 2013년까지 총 10개소 조성·운영(조성완료 10, 조성중 11)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역생태숲 및 자생식물원의 지속적 조성

- 지역생태숲 조성 : 13개소(신규조성 1, 연차별조성 10, 보완 2)

- 자생식물원 조성 : 11개소(연차별조성 11)

4. 관련 사업 내용

가.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생태숲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 내 보존·관리가 필요한 산림면적 30ha(휴양림 등과 연접하여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이는 경우 20ha)이상의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자생식물원 : 3ha이상의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지역생태숲 : 2014년 전국 13개소 조성(시·도별 1~3개소)
- 자생식물원 : 2014년 전국 11개소 조성(시·도별 1~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역생태숲 : 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국비 50%·지방비 50%)
- 자생식물원 : 개소당 총사업비 15억원이내(국비 50%·지방비 50%)

○ 지원조건

-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부지확보 및 입지여건 등을 종합심사하여 적합한 지자체에 한하여 사업 지원
- 조성기간 : 지역생태숲 4년(설계 1, 조성 3), 자생식물원 3년(설계 1, 조성 2)

○ 지원내용

- 지역생태숲 : 전문전시원 및 산림생태관찰원, 교육·탐방·체험시설, 연구 기반시설, 편익시설 등 조성
- 자생식물원 : 자생식물 전시원, 생태관찰원·탐방로, 편익시설 등 조성

○ 법적근거

- 지역생태숲 : 「산림보호법」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 자생식물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8,839	3,250		12,089	12,089		24,178
2014		5,946	2,500		8,446	8,416		16,862
(증△감)		△2,947	△750		△3,697	△3,673		△7,856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		5,946	2,500		8,416		16,862
부산								
대구	1			250		250		500
강원								
충북	2		800	250		1,050		2,100
충남	1			250		250		500
전북	2			500		500		1,000
전남	7		1,282	750		2,032		4,064
경북	3		924			924		1,848
경남	6		2,540	500		3,010		6,050
제주	1		400			400		8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0		44,020	22,500		66,520		133,040
'13	32		8,893/8,893	3,250/3,250		11,313/12,143		24,286
'14	23		5,946	2,500		8,446		16,892
'15	22		6,374	2,000		8,374		16,748
'16	20		6,570	1,500		8,070		16,140
'17	23		6,767	2,250		9,017		18,034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생태숲 누적 조성 개소(개소)	42	44	44	44	45	생태숲 누적 조성개 소수 조사	조사보고서

<6-13-1.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민동명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60	이메일	dmmi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기본계획 p.60)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경관을 고려하도록 사업별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지역개발 사업 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관지표와 경관계획 수립 요령을 마련하여 보급
- 지자체 단위의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
 - 주민 참여형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4)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경관 가꾸기 활동 촉진

- 주민의 자발적인 경관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컨설팅 강화
 - 주민들이 경관 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 프로그램(경관맵, 경관가이드라인 등) 개발·보급
 - 마을·경관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컨설팅 체계 구축
- 어메니티 자원도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1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도를 작성,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농어촌 경관 가꾸기 운동 확산
 - 「우수 경관 컨테스트」 등을 통해 농어촌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컨테스트에서 입선한 우수작품은 달력 제작, 포털사이트 콘텐츠 제공 등 파생상품으로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 경관가꾸기 활동을 물·흙·바다 살리기 국민운동으로 발전 유도

2. 2013년 말까지 추진 실적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및 농촌다원적활용사업 추진
 - ‘청산도 구들장 논(국가농업유산 제1호)’ 및 ‘제주도 돌담밭(제2호)’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신청서 제출(‘13.6)
 - 지정 절차, 보전 및 활용 원칙 등 지정제도에 대한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등 추진
 - 농어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 ‘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돌담밭) 사업계획서 승인
- 제2회 농촌경관우수마을 콘테스트 추진(‘13.10)
 -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경관관리활동을 추진하는 마을을 발굴, 사례 확산을 위한 「농촌 경관우수마을 콘테스트」 추진
 - 대상(청산도 도락마을), 우수상(예산 대흥마을, 구례 반곡마을, 평창 효석문화마을)
- 제7회 『농어촌 경관사진 콘테스트』 개최(‘13.10)
 - 도시민에게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주계기를 부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농어촌 사진 콘텐츠 발굴·시상(60점, 대상:농식품부장관상)
 - 『농어촌 경관사진 콘테스트』 선정작품을 통한 ‘한국의 농어촌’ 카렌다 제작 배포하여 농어촌 홍보(3,000부, ‘13.12)
 - 아름답고 매력적인 우리의 농어촌 모습을 재외공관 및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하고 외국인 등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어촌에 대한 관심유발 및 방문동기 부여
- ‘총괄계획가’제도 도입으로 마을개발사업전 마을의 생태·환경·문화 등에 대해 사전 분석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중심의 지역개발사업 추진(계속)
 - ‘13년 8개 마을권역사업 총괄계획가 참여
- 『농어촌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하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고 ‘13년 신규사업 선정시 적용(‘13.4)
 - ‘13년 신규사업선정 : 읍면(93), 마을권역(75), 신규마을(16), 창의아이디어(41)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농어촌 다원적자원 발굴 및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지구 '농어촌다원적자원 보전·활용계획' 수립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지역에 대한 브랜드가치 제고를 높이기 위하여 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 등재 추진
 - 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14.4.1) : 청산도 구들장논(제1호), 제주도 돌담밭(제2호)
-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고시 개정 공포
 - '14.6월이후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추가 지정 및 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 후보지 : 전남 담양(대나무밭), 전남 보성(계단식 녹차밭), 전남 구례(산수유 시목지)
- 농촌마을개발사업 경관계획수립시 적용한 농촌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경관우수마을 콘테스트」 및 「농촌경관사진 콘테스트」 추진
- 총괄계획가제도를 통한 계획중심의 마을개발사업 및 경관계획수립 추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농촌다원적활용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다원적 자원 및 농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 보유 지역(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우선 선정)
 - 사업 규모(사업량) : 2019년까지 25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업 1개소당 3년간 총사업비 15억
 - 지원조건 : 국고70%, 지방비 30%, 민간경상보조 100%
 - 지원내용 : 농어업유산자원 발굴·정비 및 관리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050				1,050	450		1,500
2014	1,400				1,400	600		2,000
(증△감)	350				350	150		5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1,400				600		2,000
전남	1	350				150		500
제주	1	350				150		500
유보	2	700				300		1,0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	11,900				5,100		17,000
'13	3/3	1,050/1,050				450		1,500
'14	4	1,400				600		2,000
'15	7	2,450				1,050		3,500
'16	8	2,800				1,200		4,000
'17	12	4,200				1,800		6,0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 사업진도율(%)	-	-	-	100	100	사업실적/사업계획 × 100	다원적자원활용 사업 추진실적

<6-141.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임창수
전화번호	031-290-0268	이메일	visioninj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3)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기본계획 p.60)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경관을 고려하도록 사업별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지역개발 사업 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관지표와 경관계획 수립 요령을 마련하여 보급
 - 지자체 단위의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
 - 주민 참여형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 경관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4유형
 - 농촌경관 유형 : 자연경관, 농업생산경관, 생활경관, 역사·문화경관



<영주 주치골마을>



<서천 동자복마을>



<예산 장복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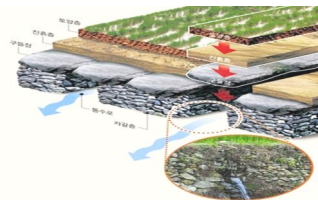
- 마을경관 및 공간 계획 : 5종(이천 도니울마을, 강릉 소금강장천마을 등)
- 마을길 조성 : 2종(용인 학일마을, 강릉 안반데기마을 등)
- 농업유산 관리기술 개발 : 1종(농업유산 발굴, 선정 및 관리기준 등)
 - (발굴) 강원 강릉 안반데기 등 2, 충북 제천 의림지 등 5, 경남 남해 죽방렴 등 5, 전남 신안 염전 등 12, 제주 돌담밭 등 3 등 27개소
 - (DB항목) 자원개요 6, 지역현황 4, 유산적 가치 10 등 20항목



<경관 디자인 적용사례>



<리모델링 시설별 디자인 사례>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설별 지침 개발 : 3종 125시설
 - 농식품부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4개소)과 연계하여 생산·주거·커뮤니티 공간의 실행지침 개발 및 제공(마을시설 18유형)
- 농촌 어메니티자원 활용 '농촌체험' 앱 개발 및 정보서비스 : 1종
 - 전국 257개 농촌마을 체험정보 제공 : 체험유형별, 지역별 검색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촌마을 경관 계획 및 리모델링 기술 개발
 - 농촌마을 경관 및 공간계획 디자인 개발 : 2종(속초 등)
 - 농촌마을 공간분석 및 공간구조 유형별 리모델링 방안 개발 : 3종
 - 농촌마을 공간 분석 및 특성 제시(생산·주거·커뮤니티 공간)
 -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정원 모델 개발
 - 공공정원 분석(10개소) 및 유형별 구성요소 도출(건축물, 화목 배식 등)
 - 농촌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 기술 개발 : 4종(강릉 등)
- 한국형 농촌주택 모델 및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 농촌주택에 나타나는 전통적 디자인 요소 및 내·외부 공간 분석
 - 물리적(지붕, 벽체 등), 공간적(주택형태, 마당 등) 디자인 특성 분석
 -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3종) 및 실시 설계도 개발(1종)
 - 전통·지역적 재료, 현대적 구법의 활용 가이드라인 및 상세도 제시
- 농업·농촌 유산의 유지·보전 및 경관 가치 증대 기술 개발
 - 농업·농촌 유산의 유지·보전 효과성 평가 지표 개발 : 2종
 - 농업활동 시스템의 유지,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 등 도출
 - 세계농업유산제도의 정보콘텐츠 분석 → 데이터베이스 설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촌경관조성 및 마을 리모델링 기술개발 연구 추진 부서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촌경관조성 및 마을 리모델링 기술 4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27억원(기타회계)
 - 지원조건 : 국비 100%
 - 전문가 등의 심의와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농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제

- 지원내용 :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기반 조성 연구
 - 농업·농촌유산의 유지·보전 방안 연구
 -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의 디자인 요소 및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정원모델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00		300			300
2014			300		300			300
(증△감)			0		0			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			1,500				1,500
'13	14/5			300/300				300/300
'14	5			300				300
'15	5			300				300
'16	5			300				300
'17	5			300				3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조사 읍면지역수	179	145	134			자원발굴· DB구축 읍면수	자원조사 보고서
농촌경관조성· 관리기술개발 및 현장지원 건수			9	14	5	경관기술개발 및 현장지원 건수	연구결과 보고서

6-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마을하수처리장(307개) 및 마을하수관거 설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를 위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12개소) 및 공동집하장(1,000개소)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14년까지 71% 수준 달성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공급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으로 토양 환경 보전
 - 유기질비료 262만톤에 대해 1,603억원 지원, 토양개량제 68만톤에 637억원 지원
-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 구축을 위해서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 등 지원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업인 등에게 수거보상금 지급을 통해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 도모(톤당 1만원씩 1,950백만원 지원), 공동집하장 1,000개 설치
- 해양폐기물 정화·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수산자원회복 및 해상교통 개선
 - 전국 주요항만 및 연근해 주요 해역 20여개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11개 광역 지자체에서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및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
 - 폐기물 배출해역(3개 해역) 정밀조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전·폐업 지원 및 분노·분뇨처리오니와 음폐수 전량 육상처리('13.1~)
-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치수·이수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소하천정비(4,179억원)
- 하천 상류에서 하구까지 방치·산재·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113억원) 지속 지원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81,940	2,100	255,270		339,310	151,220		490,530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8,360				8,360	5,450		13,810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500		1,500			1,500
유기질비료 공급	223,969				223,969	27,281		251,250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17,200			17,200	25,360	13,680	56,240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7,880		7,880			7,880
해양폐기물 정화		3,270		10,240	13,510	3,270		16,780
소하천 정비	209,360				209,360	208,580		417,940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11,300		11,300	9,800		21,100
합계	523,629	22,570	275,950	10,240	832,389	430,961	13,680	1,277,030

<6-2-1-1.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하수과(팀)	담당자	윤태근
전화번호	044-201-7143	이메일	ytg700@m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하수도 정비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대(기본계획 p.61)

□ 마을별 소규모 하수도 확충·정비 추진

- '14년까지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71% 수준으로 제고
 - 소규모하수도(500톤 미만/일) 신설·개량 및 면단위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10~'14 기간 중 11,166억원 지원)
 - * 농어촌지역(면단위) 하수도보급률 : ('05)35.8% → ('10P)56.0% → ('14P)71%
 - 소규모 마을은 자연 친화형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검토

2. 2013년 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율 향상(계속)
 - '13년 예산 4,924억원 투자, 보급률 향상(60.6%/ '13년말)
 - 계속사업 186개소 278,047백만원, 신규사업 106개소 60,638백만원
 - ※ 총 15,403억원 투자('10년 2,938억원, '11년 3,678억원, '12년 3,863억원, '13년 4,924억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지역 하수처리장 307개소 국고 490,532백만원 투자
 - 계속사업 : 197개소 407,353백만원 투자
 - 신규사업 : 110개소 83,179백만원 투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마을하수도 미설치 지역 하수도 시설 설치
 - 기존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지역으로 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 사업 규모(사업량) : 매년 100개 내외의 마을하수도 신규(개량사업 포함) 사업 추진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 3,000억원 수준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율 :신설 70%, 개량 30%)

- 지원조건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공하수도 시설
- 지원내용 : 마을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관거 설치사업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30,429	1,748	206,472		338,649	153,782		492,431
2014	81,937	2,099	255,272		339,308	151,224		490,532
(증△감)	△48,492	351	48,800		659	△2,558		△1,899

- * 농특 : 면단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 균특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제주도)
- * 기타회계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7	81,937	2,099	255,272		151,224		490,532
인천	3	2,246	-	1,127	-	1,446	-	4,819
광주	11	-	-	7,431	-	3,185	-	10,616
세종	2	-	-	2,230	-	956	-	3,186
경기	19	7,213	-	11,806	-	8,151	-	27,170
강원	20	-	-	15,928	-	10,813	-	26,741
충북	27	10,236	-	19,157	-	12,596	-	41,989
충남	30	1,393	-	31,276	-	14,002	-	46,671
경북	45	6,987	-	56,621	-	23,231	-	86,839
경남	51	21,731	-	44,048	-	28,236	-	94,015
전북	36	13,127	-	29,982	-	18,474	-	61,583
전남	56	19,004	-	35,666	-	29,234	-	83,904
제주	7	-	2,099	-	-	900	-	2,999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95,352	10,798	865,297		659,443		2,030,890
'10	279	104,967	2,348	98,349		88,091		293,755
'11	365	82,537	2,373	148,599		134,337		367,846
'12	214	95,482	2,230	156,605		132,009		386,326
'13	292	130,429	1,748	206,472		153,782		492,431
'14	307	81,937	2,099	255,272		151,224		490,532

5. 성과목표

- 농어촌 마을하수도 보급률을 2015년까지 70%로 제고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53.5	55.0	56.5	60	63	$\frac{\text{농어촌지역 하수처리인구}}{\text{농어촌지역 총인구}} \times 100$	하수도통계 (군지역 하수도 보급률)

* 기존 노후시설 개량사업 추진에 따라 하수도보급율 목표 하향 필요

<6-2-1-2.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환경부)>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박재완
전화번호	044-201-7411	이메일	wanjp@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하수도 정비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대(기본계획 p.61)

□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폐기물 매립,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 군 단위 이하 지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확대
- '10년~'14년간 33개소에 총 535억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3년 15개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5억원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2개소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 계속사업 5개소, 신규사업 7개소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95 ~ 계속
- 사업 규모(사업량) : 12개소(계속 5, 신규 7)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70%, 15억원까지/개소)
- 지원조건 : 정률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의 매립지 여유용량 확보와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소각, 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7,475					1,428		8,903
2014	8,358					5,451		13,809
(증△감)	883					4,023		4,906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	8,385				5,451		13,836
강원	2	1,392				597		1,989
충남	1	1,214				520		1,734
전남	6	3,089				1,324		4,413
경남	1	560				240		800
제주	2	2,130				2,770		4,9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	41,360				17,808		59,168
'13	15	7,475/7,475				1,428		8,903
'14	12	8,385				5,451		13,836
'15	11	8,500				3,643		12,143
'16	11	8,500				3,643		12,143
'17	11	8,500				3,643		12,143

나.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장

사업계획 수립(지자체)→사업계획 검토(환경부)→국고편성 및 지원(환경부)→사업시행(지자체)→집행실태 파악 및 기술지원, 정산 등(환경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생활폐기물 소각율(%)	-	-	24.4	26.9	27.1	(13년도 농어촌생활 폐기물 소각량 / 13년 도 농어촌생활폐기물 발생량) × 10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 자료

<6-2-1-3.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환경부)>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정종범
전화번호	044-201-7381	이메일	jjbmail@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폐기물 매립,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기본계획 p.61)
 - 군 단위 이하 지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확대
 - '10년~'14년간 33개소에 총 535억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14년 신규사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공동집하장 1,000개소 시범설치

4. 관련 사업 내용

가. 공동집하장 확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사업 규모(사업량) : 1,00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15억원
 - 지원조건 : 민간자본보조
 - 지원내용 : 1개당 1.5백만원 지원(국비30%)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
2014			1,500		1,500			1,500
(증△감)			100		100			1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50				1,950
부산				1.4				1.4
대구				5				5
인천				4				4
광주				1.4				1.4
대전				8				8
울산				9.1				9.1
세종				4.75				4.75
경기				143.2				143.2
강원				224.05				224.05
충북				196.55				196.55
충남				270				270
전북				193.2				193.2
전남				332.05				332.05
경북				319				319
경남				188.3				188.3
제주				50				5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톤)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500				7,500
'13	-			1,500				1,500
'14				1,500				1,500
'15				1,500				1,500
'16				1,500				1,500
'17				1,500				1,500

5. 성과목표

○ 해당사항 없음

<6-2-2-1.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최남근(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92	이메일	gun10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기본계획 p.61)

□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하 저감

- 화학비료·농약사용 감축을 통해 '흙살리기' 추진
 -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 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250만톤/연) 및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
 - *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 ('09) 292kg/ha → ('14p) 220
 - * 녹비작물 재배면적 : ('09)135천ha → ('14p)25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유기질비료 공급확대 및 토양개량제 지속 공급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및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 도모(연중, 완료)
 - * 유기질비료 : ('11) 2,500천톤/1,250억원 → ('12) 2,858/1,434 → ('13) 3,081/1,613
 - * 규산·석회질비료 : ('11) 800천톤/756억원 → ('12) 710/672 → ('13) 671/620
 - * 녹비작물 재배면적 : ('11) 103천ha/122억원 → ('12) 115/104 → ('13) 100/94
- 유기질 비료의 품질별 차등지원 추진으로 품질개선 유도(계속)
 - 부숙도 측정기준, 중금속 기준, 퇴비 품질등급제 등 운영
- '10년부터 기존 관행비료 대신 토양검정결과와 양분수지를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전환을 통해 비료사용량 감축(완료)
 - 예산지원 : ('10) 465천톤, 600억원 → ('11) 541, 298 → ('12) 500, 200
 - * 비료사용량 : ('99~'01 평균) 375kg/ha → ('11) 249(△34%)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유기질 비료 신청 접수기관 변경(농협→지자체)에 따른 농가, 지자체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agrix시스템 개선 추진
- 유기질비료 공급확대 및 토양개량제 지속 공급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 * 유기질비료 : ('12) 2,858천톤/1,434억원 → ('13) 3,081/1,613 → ('14) 2,618/1,603
 - * 규산·석회질비료 : ('12) 710천톤/672억원 → ('13) 671/630 → ('14) 677/637
 - * 녹비작물 재배면적 : ('11) 115천ha/104억원 → ('13) 100/94 → ('14) 40/47
- 일몰예정에 따라 맞춤형비료 예산지원은 중지되었으나, 공급은 '13년 수준(400천톤)으로 유지하고 교육·홍보 강화
 - 교육·홍보 예산 : ('13) 2억원 → ('14) 2
 - 우수기관 평가·시상, 친환경비료 확대를 위한 전문지 홍보·리후렛 등 배포
- 부정·불량비료 생산업자 처벌강화 등 비료관리법 개정
- 부정·불량 비료의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 방지(연중)
 - 유기질비료 품질향상을 위해 업체 자체 품질관리 및 단속 강화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 사업 규모(사업량) : '14년 2,618천톤
 - 지원금액 및 형태 : 1,603억원, 정액지원
 - * 유기질비료 : 1,400원/20kg, 부산물비료(1,2,3 등급) : 1,200원/20kg, 1,000, 700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 1,400원/20kg, 부산물비료(3개등급) 1,200~700원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의 농가 구입비 일부지원
 - 법적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61,327							161,327
2014	160,316							160,316
(증△감)	△1,011							△1,011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천톤, 백만원)

	사업규모 (천톤)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농특회계	기금등			
합계	2,618	160,316					160,316	
서울	3	308					308	
부산	25	1,509					1,509	
대구	18	1,099					1,099	
인천	28	1,710					1,710	
광주	18	1,126					1,126	
대전	18	1,056					1,056	
울산	22	1,354					1,354	
세종	9	592					592	
경기	302	18,099					18,099	
강원	239	14,674					14,674	
충북	180	11,125					11,125	
충남	183	11,085					11,085	
전북	229	14,188					14,188	
전남	505	29,940					29,940	
경북	467	29,777					29,777	
경남	298	18,099					18,099	
제주	74	4,575					4,575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천톤)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681	839,327						839,327
'13	3,081/2,900	161,327/ 145,000						161,327/ 145,000
'14	3,000	150,000						150,000
'15	3,200	176,000						176,000
'16	3,200	176,000						176,000
'17	3,200	176,000						176,000

나. 토양개량제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경지

- 사업 규모(사업량) : '14년 676천톤(규산질 434, 석회질 242)

- 지원금액 및 형태 : 63,969백만원(규산질 39,456, 석회질 24,513)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 무상 공급 지원

- 법적근거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농특회계	기금	소계			
2013			62,020			26,581		88,601
2014			63,653			27,281		90,934
(증△감)			1,633			700		2,33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천톤)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농특회계	기금등			
합계	677			63,653		27,281		90,934
서울	-			29		12		41
부산	3			245		105		350
대구	1			141		61		202
인천	8			738		316		1,054
광주	4			397		170		567
대전	1			98		42		140
울산	1			140		60		200
세종	4			393		168		561
경기	59			5,494		2,355		7,849
강원	39			3,736		1,601		5,337
충북	41			3,954		1,695		5,649
충남	116			10,826		4,640		15,466
전북	106			9,911		4,247		14,158
전남	148			13,880		5,949		19,829
경북	101			9,589		4,110		13,699
경남	45			4,082		1,750		5,832
제주	23			2,274		974		3,248

*제주도는 광특회계로 2,274백만원별도지원할계획임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구분	'10	'11	'12	'13	'14		
단위면적당화학비 료사용량(kg/ha)	목표		241 (신규)	236	225	220	화학비료사용량(kg)/ 전국경지이용면적(ha)	화학비료 사용 량(비료공업협 회),경지이용면 적(통계청)
	실적		249	267	256 (잠정)			
논토양유효규산함 량(ppm)	목표		-	157 (신규)	157	157	살포한다음해의토양유 효 규산 함량 측정치 (ppm)	전년도 토양 개 량제 살포 토양 의 유 효 규 산 함 량을 실측 조사 하여 산출 (농진 청)
	실적			달성 (잠정)	168			

<6-2-2-3.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김 동 남
전화번호	044-201-2438	이메일	young0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기본계획 p.61)

□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으로 인한 환경부하 저감

-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를 친환경농업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
 - 친환경지구 사업 : ('09까지)992지구 → ('14p)1,152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95년부터 마을단위로 10ha 규모의 집단화된 친환경농업지구사업
 - '13년도까지 1,112개소 선정·지원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무농약이상 인증면적('13)이 전국 평균(7.3%) 보다 8.2배 높은 59.0%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내 인증면적도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하여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대에 기여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자 선정 : 1월
 - 농경지가 10ha 이상,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친환경인증면적, 인증농가수 등) 점검 : 3월
- 농업환경 기초조사 실시(농촌진흥청 → 사업대상지) : 3월~6월
- '13년도 사업지구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 : 3월
- 사업자 교육 및 사업추진 점검(수시)
- '15년도 신규 사업대상지구 제출
 -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월), 사업계획서 시·도 제출(3월)
 - 시·도는 신청조직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후 사업지구별 평가표 제출(7월)
 - 예산 가내시(10월)
- 사업시행 지침 개정 : 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친환경농업기반(지구) 구축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지구 사업 개소수 : 3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4,500백만원(광특)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 등 지원
- 법적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500			4,500	7,500	3,000	15,000
2014		4,500			4,500	7,500	3,000	15,000
(증△감)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		4,500			7,500	3,000	15,000
세종	1		173			288	115	576
경기	2		400			667	267	1,334
강원	4		509			848	339	1,696
충북	4		350			583	233	1,166
충남	7		583			972	389	1,944
전북	9		611			1,018	407	2,036
전남	6		900			1500	600	3,000
경북	7		532			887	355	1,774
경남	2		272			453	181	906
제주	1		170			284	114	568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6		22,500			37,500	15,000	75,000
'13	30/36		4500/4500			7,500	3,000	15,000
'14	30		4,500			7,500	3,000	15,000
'15	30		4,500			7,500	3,000	15,000
'16	30		4,500			7,500	3,000	15,000
'17	30		4,500			7,500	3,000	15,000

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원(광역친환경농업단지)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지원대상 : 지역농 · 축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 규모(사업량) : '17년까지 광역단지 60개소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12,612백만원(광특)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 · 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 가공 · 판매에 필요한 시설 · 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 등
- 법적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0,891			20,891	32,843	13,137	66,871
2014		12,712			12,712	17,856	10,676	41,244
(증△감)		△8,179			△8,179	△14,987	△2,461	△25,627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		12,712			17,856	10,676	41,244
경기								
강원								
충북	2		2,256			3,760	1,504	7,520
충남	1		1,200			2,000	800	4,000
전북	2		2,700			4,000	2,300	9,000
전남	2		1,971			2,628	1,971	6,570
경북	4		4,101			5,468	4,101	13,670
경남								
제주								
기타			484					484

* '14년도 시도별 배분내역은 미확정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9		94,703			132,165	84,913	311,781
'13	17/17		20,891/ 20,891			32,843	13,137	66,871
'14	11		12,712			17,856	10,676	41,244
'15	13		18,700			24,933	18,700	62,333
'16	15		21,100			28,133	21,100	70,333
'17	16		21,300			28,400	21,300	71,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광역·지구조성 친환경 농업단지의 인증면적 비율(%) (무농약 이상)	32.5	34.0	34.2	36.7	37.0	(광역·지구조성의 전체면적에 대한 친환경인증면적의 비율 산출)	각 시·도 인증면적 보고자료

<6-2-2-4.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환경부)>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정종범
전화번호	044-201-7381	이메일	jjbmail@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기본계획 p.62)

- 농어촌 폐비닐 수거비 및 소각, 재활용 등 처리 지원
 - '11년까지 적체폐비닐 제로화를 위해 민간 기술공모 위탁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민간매각 실시
 - 폐비닐 수거를 위해 '10~'14년간 총 731억원 투자
 - * '07년 기준, 영농폐비닐 적체량은 198천톤 수준('06년 적체량 276천톤 + '07년 발생량(추정) 340천톤 - 처리량 254천톤('07년 수거량 175천톤 포함))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폐 농약용기 수거 처리 지원
 - * 폐 농약용기 발생량은 감소 추세('01년 84백만개 → '06년 38백만개)
 - * '09년 한국환경자원공사-지자체-작물협회 출연금을 활용, 29억원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적체 폐비닐 적기 처리를 통한 농촌 환경 보전
 - 2013년 적체폐비닐 처리목표 : 39천톤
 - 2013년 적체폐비닐 처리실적 : 38천톤
-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통한 효율적인 수거·처리 도모
 - 2013년 영농폐비닐 수거목표 : 195천톤
 - 2013년 영농폐비닐 수거실적 : 158천톤
- 폐농약용기 등 유해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농촌환경 보호
 - 2013년 영농폐기물 수거목표 : 52,500천개
 - 2013년 유해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 51,537천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적체 폐비닐 적기 처리를 통한 농촌 환경 보전
 - 처리 목표 : 37.5천톤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폐비닐 수거활성화 도모
 - 수거 목표 : 195천톤
- 유해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촌환경 보전
 - 수거 목표 : 53,000천개
-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마을 조성
 - 조성 마을 목표 : 10개

4. 관련 사업 내용

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부녀회장 등 농업인/재활용업체
 - 사업 규모(사업량) :
 - 농촌폐비닐처리 : '13년 까지 824억원
 - 폐비닐수거비 : '13년 까지 78억원
 - 자원순환형 마을 조성 : '14~17년까지 50개소 조성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14년 1,000개소 설치
 - 지원금액 및 형태 :
 - 농촌폐비닐처리 : 4,425백만원, 농촌폐비닐 톤당 처리비 지급
 - 폐비닐수거비 : 1,950백만원, 정액지원(10원/kg, 국고보조 100%)
 - 지원조건
 - 농촌폐비닐처리 : 공단에 적체된 농촌폐비닐 처리
 - 폐비닐수거비 :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수집전표를 발행한 물량

-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처리 : 농촌폐비닐 처리 계약 업체에 톤당 처리비 지급
- 폐비닐수거비 : 영농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으로 경작 후 발생한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을 기하고자 그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환경부로 일원화('11)하여 예산반영
- 자원순환형마을 조성 : 민·관 협력으로 폐기물을 수거 자원화 하는 자원순환형 마을 지정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환경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환경환경공단법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산

- 농촌폐비닐처리사업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6,375		6,375			6,375
2014			6,375		6,375			6,375
(증△감)			-		-			-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
2014			1,500		1,500			1,500
(증△감)			-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50				1,950
부산				1.4				1.4
대구				5				5
인천				4				4
광주				1.4				1.4
대전				8				8
울산				9.1				9.1
세종				4.75				4.75
경기				143.2				143.2
강원				224.05				224.05
충북				196.55				196.55
충남				270				270
전북				193.2				193.2
전남				332.05				332.05
경북				319				319
경남				188.3				188.3
제주				50				50

○ '14년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톤)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750				9,750
'13	158			1,950				1,950
'14				1,950				1,950
'15				1,950				1,950
'16				1,950				1,950
'17				1,950				1,950

나. 유해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53,000천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빈병류 50원/개(수거비), 봉지류 60원/개(수거·처리비)
- 지원조건 : 영농 후 발생한 유해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수집전표를 발행한 물량
- 지원내용 : 영농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으로 경작 후 발생한 유해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통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을 기하고자 예산반영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구분	'10	'11	'12	'13			'14
적체폐비닐 누적재고량(천톤)	목표	45	41	40	39	37.5	한국환경공단 유해영농폐기물 수거량	한국환경공단 보고자료
	실적	41	38	35	38			
유해영농폐기물 수거량(천개)	목표	35,122	46,300	46,500	50,000	53,000	한국환경공단 유해영농폐기물 수거량	한국환경공단 보고자료
	실적	49,773	51,039	51,925	52,537-			

< 6-2-3-1. 해양폐기물 정화(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김채균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301	이메일	nobakim@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기본계획 p.63)

- 국가어항·무역항 및 주요 연근해역의 부유·침적된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와 수거·처리
 -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해 '10~'14년간 730억 지원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로 수거처리 효율성 증대
 - '10~'14년간 443억(국비 295, 지방비 148) 지원
- '12년까지 해양배출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처리 추진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 ('06)261만톤 → ('08)170 → ('12)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주요 항만 및 연근해의 침적쓰레기 3,190톤 수거·처리(계속)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5,275톤 수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49개소 설치(계속)
- '13년 육상폐기물의 감축목표(250만m³) 달성(228만m³)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전국 주요 항만 및 연근해의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14.3~12)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14.2~12)
- 폐기물 배출해역(3개 해역) 정밀조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전·폐업 지원 및 분뇨·분뇨처리오니와 음폐수 전량 육상처리('13.1~)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해양폐기물 정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민간대행),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및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지자체보조)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대행(84억원), 지자체보조(33억원)
- 지원조건 : 민간대행사업(국비 100%), 지자체 보조(광특, 50%)
- 지원내용 : 전국 주요항만 및 연근해 주요 해역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11개 광역지자체의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및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지원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및 제119조(국고보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3,489	13,489	2,333		15,822
2014		3,268		8,352	11,620	3,268		14,888
(증△감)		3,268		△5,137	△1,869	935		△93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개 지자체		3,268		8,352	3,268		14,888
부산			40			40		40
인천			0			0		0
울산			90			90		90
경기			40			40		40
강원			190			190		190
충남			304			304		304
전북			350			350		350
전남			1,384			1,384		1,384
경북			226			226		226
경남			499			499		499
제주			145			145		145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개 지자체		13,072		46,897	15,405		75,374
'13					13,489	2,333		15,822
					/13,400	/2,000		/15,400
'14			3,268		8,352	3,268		14,888
'15			3,268		8,352	3,268		14,888
'16			3,268		8,352	3,268		14,888
'17			3,268		8,352	3,268		14,888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한국해양연구원
- 사업 규모 : 폐기물 배출해역 정밀조사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직접수행(19억원)
- 지원내용
 -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구 해수부 및 환경부) 및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06.3.27,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배출해역의 친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안 마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100	2,100			2,100
2014				1,890	1,890			1,890
(증△감)				△210	△210			△21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개 지자체				1,890			1,890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개 지자체							
'13					2,100			15,822
					/2,100			/15,400
'14					1,890			1,890
'15					2,185			2,185
'16					2,185			2,185
'17					2,185			2,185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량 (단위:만 m³)	448	397	228	120	60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감축량	해양경찰청 실적 통계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및 수매량(단위톤)	12,737	10,017	8,149	8,866	8,986	침적쓰레기 수거량 및 해양쓰레기 수매량	해양환경관리공단 실적 보고 및 지자체 실적보고

<6-2-3-2. 소하천 정비(소방방제청)>

담당부서	재해경감과	담당자	박혜열(주무관)
전화번호	02-2100-5461	이메일	p980426@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한 수해 방지 및 생태계 보전(기본계획 p.63)

- 소하천 정비율을 '09년 40%에서 '14년까지 45% 수준으로 제고
- 생태수로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친환경 수로 정비
 - 생태환경 보전과 영농급수·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로여건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 수로정비 공법 활용
 - * 수로비탈면 보강, 생태수로, biotope(생물서식공간) 확대 등
- '12년까지 96개의 농업용 저수지 뚝 높임을 통해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수질 개선을 도모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전국 소하천 총연장 35,157km(22,612개소)에 대한 총사업비 26조 1,132억원 소요
- '95년 소하천정비법 제정 전까지 10,287km 정비, 법제정 이후 2012년까지 국비, 양여금 및 지방비를 투자하여 5,100km 정비
 - '95 ~ '12년까지 3조 8,211억원을 투자하여 15,387km정비(정비율 43.8%)
 - '13년도 추진 322km, 5,166억원(국비2,585, 지방비2,581)(정비율 44.6%)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소하천정비법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의 소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
 - 소하천 특성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연형 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특회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연계 투자 지속 추진

○ '14년 사업 현황 : 14개시·도 375개소 4,179억원(국비 2,094, 지방비 2,085)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구수	지구수	'14년도 예산액		
			계	국비	지방비
계	134	375	417,930	209,355	208,575
부산	1	1	300	150	150
대구	1	3	3,950	1,975	1,975
인천	2	7	8,520	4,650	3,870
울산	1	2	1,328	664	664
세종	1	3	4,600	2,300	2,300
경기	16	44	62,058	31,029	31,029
강원	15	38	37,986	18,993	18,993
충북	11	32	37,504	18,752	18,752
충남	14	35	39,064	19,532	19,532
전북	12	38	41,914	20,957	20,957
전남	19	48	50,834	25,417	25,417
경북	22	68	64,710	32,355	32,355
경남	17	45	49,164	24,582	24,582
제주	2	11	15,998	7,999	7,999

4. 관련 사업 내용

가. 소하천 정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읍·면지역, 시의 지역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용도지역
 - 자치구의 지역중 생산·보전녹지, 생산·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다른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35,157km('13년까지 15,709km 완료, 정비율 44.6%)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Matching Fund)
- 지원내용 : 사업수요, 투자효과 등을 감안 사업비 50% 지원
- 법적근거 :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58,461	-	-	-	258,461	258,143	-	516,604
2014	209,355	-	-	-	209,355	208,575	-	417,930
(증△감)	△49,106	-	-	-	△49,106	△49,568	-	△98,67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 계	375	209,355	-	-	-	208,575	-	417,930
부산	1	150	-	-	-	150	-	300
대구	3	1,975	-	-	-	1,975	-	3,950
인천	7	4,650	-	-	-	3,870	-	8,520
울산	2	664	-	-	-	664	-	1,328
세종	3	2,300	-	-	-	2,300	-	4,600
경기	44	31,029	-	-	-	31,029	-	62,508
강원	38	18,993	-	-	-	18,993	-	37,986
충북	32	18,752	-	-	-	18,752	-	37,504
충남	35	19,532	-	-	-	19,532	-	39,064
전북	38	20,957	-	-	-	20,957	-	41,914
전남	48	25,417	-	-	-	25,417	-	50,834
경북	68	32,355	-	-	-	32,355	-	64,710
경남	45	24,582	-	-	-	24,582	-	49,164
제주	11	7,999	-	-	-	7,999	-	15,988

○ 중기재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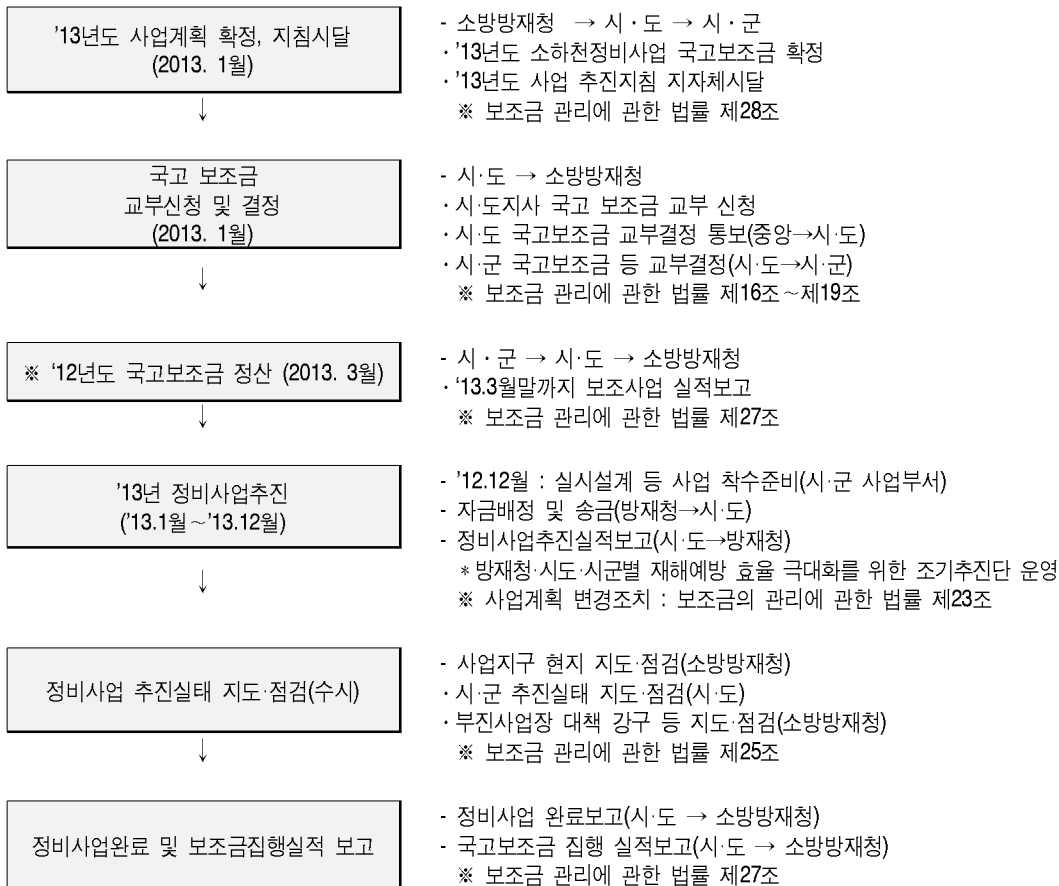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km)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18	1,382,278	-	-	-	1,381,180	-	2,763,458
'13	322	258,461	-	-	-	258,143	-	516,604
	/322	/258,461	-	-	-	/258,143	-	/516,604
'14	204	209,355	-	-	-	208,575	-	417,930
'15	245	251,226	-	-	-	251,226	-	502,452
'16	294	301,471	-	-	-	301,471	-	602,942
'17	353	361,765	-	-	-	361,765	-	723,530

나. 소하천정비사업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소하천 정비 확대(%)	42.0	43.1	43.8	44.6	45.0	(당해연도 소하천정비 연장 / 전국 소하천 총연장 ×100)	내부 자료

<6-2-3-3. 하천·하구 쓰레기정화(환경부)>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담당자	박석천 사무관 장경환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041 044-201-7042	이메일	buffer@me.go.kr amakin83@m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기본계획 p.62)
 - 하천·하구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목은 쓰레기 수거
 - 「하구·하천쓰레기 수거처리기본계획(환경부)」에 따라 관련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
 - 농어민과 저소득층 등 공공근로인력(희망근로프로젝트) 활용연계방안 강구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하천·호소 등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하구 등에 산재(부유)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처리
 - 하천·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 : 48.6천톤('13년 기준)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하천 상류에서 하구까지 방치·산재·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113억원) 지속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집중 호우 시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70개 지자체에 국고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광역시 40%, 일반시군 70% 보조
- 지원내용 : 하천·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0,816			9,590		20,406
2014			11,275			9,865		21,140
(증△감)			459			275		73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0			11,275		9,865		21,140
부산	1			1,195		1,793		2,988
인천	1			3,280		4,920		8,200
울산	1			220		330		550
세종	1			105		45		150
경기	2			60		26		86
강원	6			507		218		725
충북	3			163		69		232
충남	8			795		342		1,137
전북	14			1,200		515		1,715
전남	16			2,245		962		3,207
경북	4			302		130		432
경남	13			1,203		515		1,718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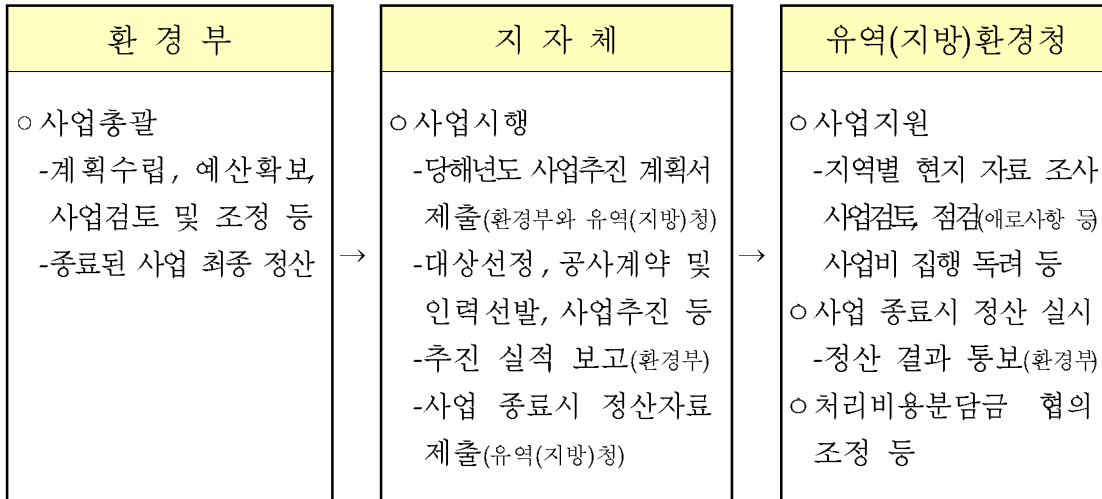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71/71			10,816		9,590		20,406
'14	71			11,275		9,865		21,140
'15	71			11,850		10,448		22,298
'16	71			12,500		11,050		23,550
'17	71			13,000		11,570		24,57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 절차 및 임무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하천·하구쓰레기 수거량(천톤/년)	38.0	56.8	46.1	48.6	50(목표)	계획대비 수거실적 쓰레기	쓰레기 수거 실적 보고서

6-3.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에 목재펠릿의 사용확대를 위해 연중 목재펠릿보일러의 보급 (주택용 2,000대, 주민편의시설용 100대, 산업용 20대)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6개소) 등으로 고유가대처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
-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및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지원으로 고유가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시설원예(원예작물), 축산(양돈, 계사), 수산(양어장) 분야에 천공 등 토목공사 및 히트 펌프, 온실내 배관시설 설치에 국비 및 지방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12년부터)에 따라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자원화시설 확대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유통기반 구축
 - * 공동자원화시설 : ('13) 98개소 → ('14) 113
 - * 유통센터/액비저장조 : ('13) 177개소/9,208기 → ('14) 192/9,908
 - * 녹색성장 대비 에너지화시설 확대 : ('13) 8개소 → ('14) 11
- 농작물과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확보 및 저탄소 경제 실현
 - 농작물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9,120백만원 지원
 -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800백만원 지원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으로 농어촌의 에너지자립도 제고와 녹색성장 구현
 - 저탄소 녹색마을(2개소, 1년차 4억원) 선정 추진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목재펠릿 사용 확대	8,500				8,500	4,500	7,100	20,100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농식품부)			36,120		36,120	12,040	12,040	60,200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해수부)			15,070		15,070	5,020	5,020	25,110
축산분뇨 자원화 에너지화(바이오에너지)			125,460		125,460	65,860		191,320
가축분뇨처리 지원		700		970,00	97,700	46,500	10,900	155,100
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6,900				6,900		2,200	9,100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800		800			80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환경부)			1,400		1,400	1,400		2,800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13,500		13,500			13,500
합계	15,400	700	192,350	97,000	305,450	135,320	37,260	478,030

<6-3-1-1. 목재펠릿 사용 확대(산림청)>

담당부서	목재생산과	담당자	최태환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201	이메일	choita-1@for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13년까지 농산어촌 주거용 유류 사용량의 7%(37만톤), 시설 원예 난방기 유류 사용량의 20%(50만톤)를 목재펠릿으로 공급(기본계획 p.64)

- 시설원예난방기 설치·교체시 펠릿보일러로 대체, 단계적으로 제조시설 확충 및 보일러 보급 확대
 - 펠릿 제조시설 설치 : ('09까지) 5개 → ('13p) 41개
 - 펠릿 보일러 보급 : ('09까지) 3천대 → ('13p) 39천대
 - * 목재 펠릿 이용시 경유에 비해 비용은 1/3,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2 수준
- 목재 펠릿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펠릿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목재펠릿 보일러 약 16,000대 보급
 - 주택용 : ('09) 3천대 → ('10) 4천대 → ('11) 4천대 → ('12) 2.4천대 → ('13) 2천대
 -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 ('11) 255대 → ('12) 156대 → ('13) 200대
 - 지역단위 집중난방시설용 : ('12) 3대 → ('13) 1대
 - 산업용 : ('11) 9대 → ('12) 27대 → ('13) 21대
 - 목재펠릿 제조시설 21개소 조성 및 효율개선사업 4개소
 - 조성 : ('09 까지) 9개소 → ('10) 8개소 → ('11) 3개소 → ('12) 1개소
 - 효율개선 : ('13) 4개소
- ※ 목재펠릿 13만톤/년 생산능력 확보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주택용 2,000대, 주민편의시설용 100대, 산업용 20대, 지역단위 집중난방용 1대, 국가·공공용 2대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6개소

4. 관련 사업 내용

가. 목재펠릿 사용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일반 국민, 목재펠릿 제조업체
 - 사업 규모(사업량) : 목재펠릿 보일러 2천대 보급,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6개소
 - 기준단가 : 주택용·주민편의시설용 보일러(4,700천원/대), 산업용 보일러(3억원/대), 지역단위집중난방시설(3억원/개소)
 - 지원조건 : 목재펠릿 보일러(국비 30~50%, 지방비 20~50%, 자부담 30~50%),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내용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지원
 - 법적근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이용증진 등)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계획)	11,955				11,955	5,225	9,960	27,140
2014(계획)	8,500				8,500	4,500	7,100	20,100
(증△감)	△3,455				△3,455	△725	△2,860	△7,04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대,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보일러 2,106 제조시설 6	5,205				4,752	4,213	14,170
서울	보일러 10	14				19	14	47
부산	보일러 2	4				4	1	9
대구	보일러 1	1				1	1	5
인천	보일러 16	23				30	23	75
광주	보일러 7	11				14	8	33
대전	보일러 48	69				91	66	226
울산	보일러 20	28				38	28	94
경기	보일러 290 제조시설 2	1,077				804	809	2,689
강원	보일러 183	261				345	254	860
충북	보일러 263 제조시설 2	998				717	761	2,476
충남	보일러 390	717				801	610	2,128
전북	보일러 119	186				233	141	559
전남	보일러 154 제조시설 1	447				318	392	1,158
경북	보일러 367	529				696	501	1,725
경남	보일러 158 제조시설 1	730				501	512	1,743
제주	보일러 28	42				54	35	132
세종	보일러 45	68				87	56	212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천대,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보일러 2 제조시설 6							
'13	보일러 2 제조시설 4	11,955				5,225	9,960	27,140
'14	보일러 2 제조시설 6	8,405				4,855	7,110	20,370
'15	보일러 2 제조시설 8	12,600				7,400	8,400	28,400
'16	보일러 2 제조시설 6	11,600				7,000	7,800	26,400
'17	보일러 2 제조시설 4	10,600				6,600	7,200	24,4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목재펠릿 소비 증가율(%)	85	86	170	216	50	(당해년도 목재펠릿 소비량-전년도 목재펠릿 소비량) /전년도 목재펠릿 소비량×100	국내 제조업체 목재펠릿 판매량 + 목재펠릿 수입량

<6-3-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난방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담당자	방문진(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58	이메일	munji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유리온실 등에 대한 지열난방 시스템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도모

○ '10년 시범사업 추진후 확대(1,200억원, 250ha)

* 지열난방 : 계절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지상과 온도가 일정한 지하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활용시스템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열 난방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1월)
 - 원예 28농가, 축산 4
-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4월, 12월)
 - 사업추진 상황 파악 및 축산분야 지열 확대 사전 현장 확인
- '13년 시설원예 분야 관계자 워크숍 개최(6월)
 - 지열 설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12년 지열 사업 신청 공고(12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열 난방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2월)
 - '14년 예산 36,120백만원
- 현장 모니터링 실시(상·하반기)
 - 사업추진 상황 파악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
- '15년 지열 사업 신청 공고(7~8월)
- '15년 지열사업 지침서 개정(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시설원예(원예작물), 축산(양돈, 계사)
- 사업 규모(사업량) : 43ha
- 지원금액 및 형태 : 36,12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천공 등 토목공사 및 히트펌프, 온실내 배관시설 지원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실적)			47,536			15,845	15,845	79,226
2014(계획)			36,120			12,040	12,040	60,200
(증△감)			△11,416			△3,805	△3,805	△19,026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120		12,040	12,040	60,200
부산				1,631		544	544	2,719
경기				1,396		466	466	2,328
강원				2,422		807	807	4,036
충북				2,395		798	798	3,991
충남				1,398		466	466	2,330
전북				4,656		1,552	1,552	7,760
전남				15,983		5,328	5,328	26,639
경북				2,878		959	959	4,796
경남				2,428		809	809	4,046
제주				933		311	311	1,555

○ 중기재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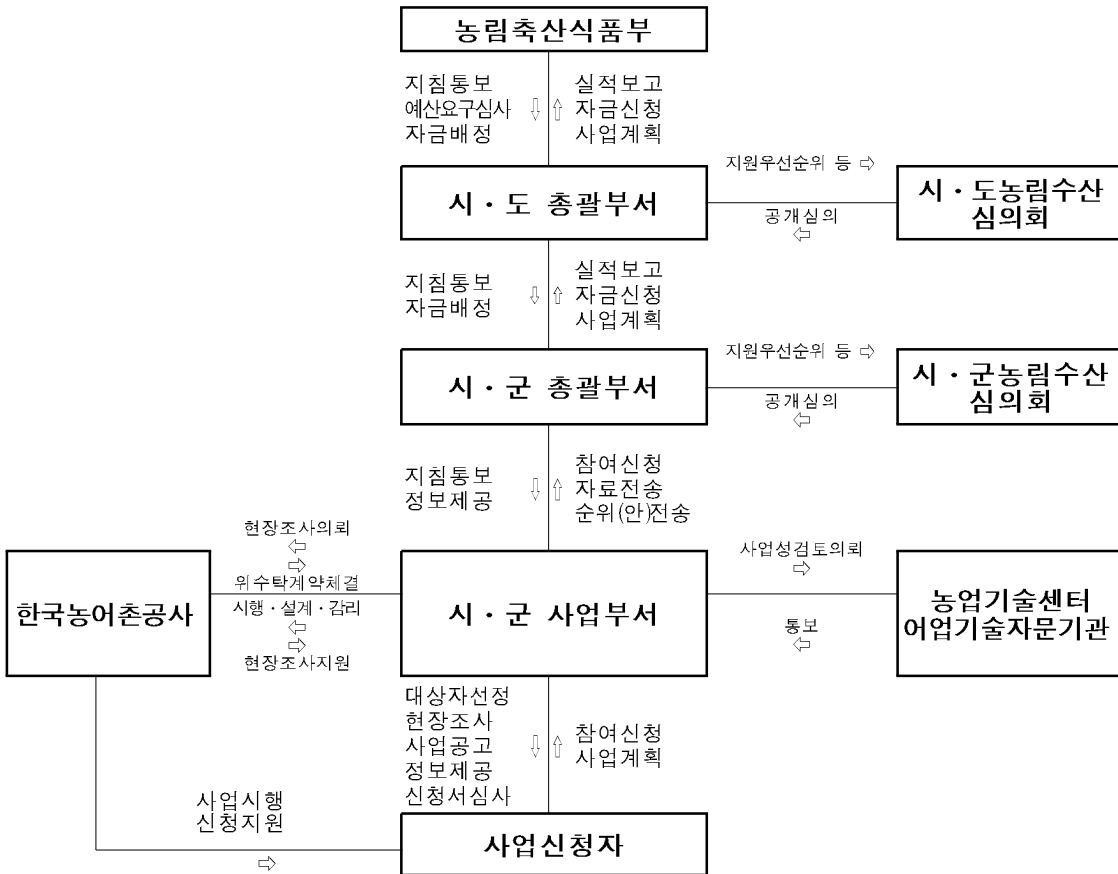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2			192,016		64,005	64,005	320,026
'13	100/105			47,536/ 50,077		15,845/ 16,692	15,845/ 16,692	79,226/ 83,461
'14	43			36,120		12,040	12,040	60,200
'15	43			36,120		12,040	12,040	60,200
'16	43			36,120		12,040	12,040	60,200
'17	43			36,120		12,040	12,040	60,2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사업 추진체계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 농가 유류사용 절감율 (%)	15	20	22	23	24	$\left[\frac{\text{전년도 유류사용량} - \text{금년도유류사용량}}{\text{전년도 유류사용량}} \right] \times 100$	보급대상 중 sample을 선정 하여 유류사용 량 조사

<6-3-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양식산업과	담당자	서밀가 주무관
전화번호	044-200-5636	이메일	smg133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유리온실 등에 대한 지열냉난방 시스템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도모(기본계획 p.64)

○ '10년 시범사업 추진후 확대(1,200억원, 250ha)

* 난방열량 단가(원/천kcal) : 지열 39.6(전기누진요금제 제외), 경유 191.7, LPG 229.3, 심야전력 72.5

* 지열냉난방 : 계절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지상과 온도가 일정한 지하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활용시스템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3년 에너지절감시설 사업대상자 선정(1월)
- 사업집행점검 및 현장점검(6월, 7월, 10월)
- 사업성과 및 집행을 제고를 위해 지자체간 예산 조정, 재배정(8월)
 - 사업포기건에 대한 추가수요조사 실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 에너지절감시설 사업대상자 선정(1월)
- '15년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수요조사(2월)
- 사업집행점검 및 현장점검(상반기 각 1회)
- 사업성과 및 집행을 제고를 위해 지자체간 예산 조정, 재배정(7월)
 - 사업포기건에 대한 추가수요조사 실시
- '15년 에너지절감시설 사업대상자 선정(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수산(양식어가)
- 사업 규모(사업량) : 전국
- 지원금액 및 형태 : '14년 15,071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지원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16,860		16,860	5,620	5,620	28,100
2014	-		15,071		15,071	5,024	5,024	25,119
(증△감)			△1,789		△1,789	△596	△596	△2,981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kW/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811/28.2			15,071		5,023.6	5,023.6	25,118.2
부 산				240		80	80	400
인 천				450		150	150	750
충 남				1,512		504	504	2,520
전 북				1,025		341.6	341.6	1,708.2
전 남				7,894		2,631	2,631	13,156
경 남				2,100		700	700	3,500
제 주				1,850		617	617	3,084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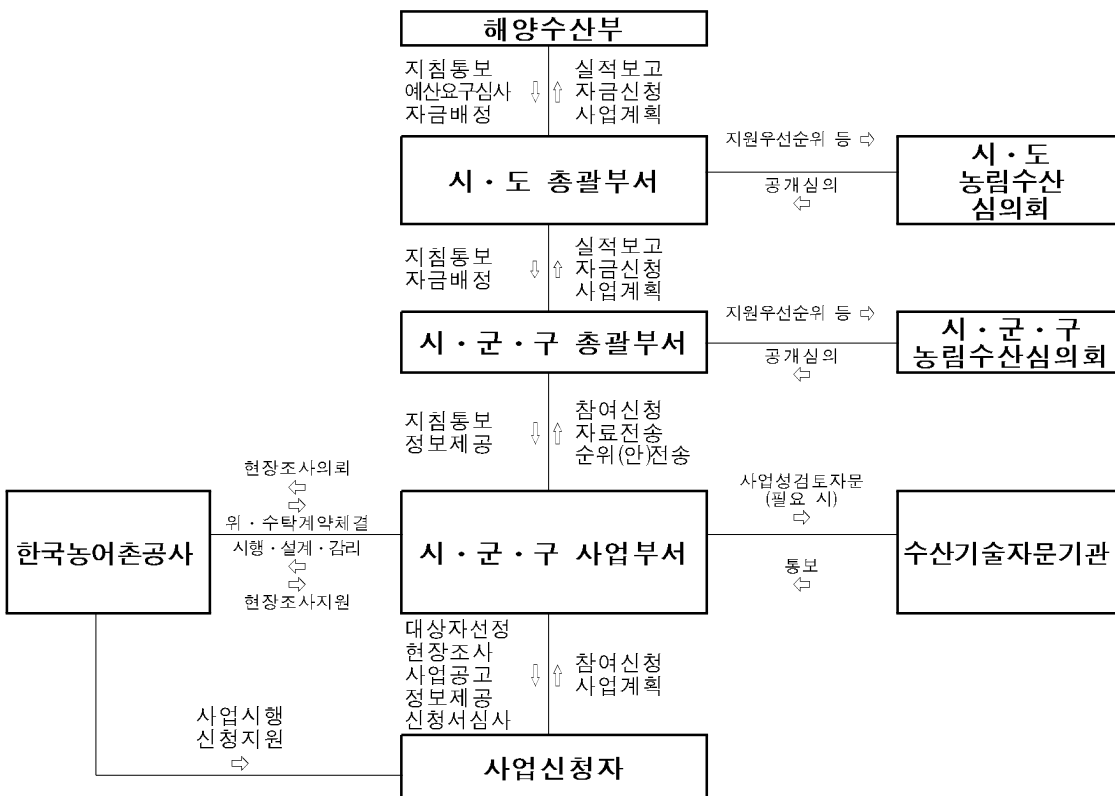
	사업규모 (실적계획)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6,636/ 16,860		5,545/ 5,620	5,545/ 5,620	27,726/ 28,100
'14				15,071		5,024	5,024	25,119
'15				17,000		5,667	5,667	28,334
'16				15,071		5,024	5,024	25,119
'17				17,000		5,667	5,667	28,334

* '13년 국비(실적) : 해양수산부 교부액('13.12말기준)

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지원(수산분야, 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사업 추진체계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 사업추진주체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상 농어가 유류사용 절감율(%)	15	20	22	23	24	$\left[\frac{\text{전년도 유류사용량} - \text{금년도 유류사용량}}{\text{전년도 유류사용량}} \right] \times 100$	보급대상 중 sample을 선정하여 유류사용량 조사

<6-3-1-3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환경부)>

담당부서	유역총량과	담당자	현세환(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022	이메일	wslwnxkd@korea.kr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김창우(주무관)
전화번호	044-201-7402	이메일	nymp7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확충(p.64)

- '13년까지 자원화 시설 76개소('09, 40개) 설치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
현재 85%인 자원화율을 90%로 제고
 -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
 - * 에너지화 시설 1개소 당 8만Kwh 생산(6백여 농가에서 한 달 동안 사용 가능)
- '13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17개소 확충 추진
 - 가축분뇨, 음식쓰레기, 음폐수,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가축분뇨 자원화 >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26개소(970톤/일) 등 공공처리시설 총 86개소(10,813톤/일) 설치·운영('13.12)
- 2013년 고창·군위·양산 등 6개소(435톤/일) 준공

구분	시설수 (용량)	세부내역
액비	20 (714)	세종 15, 화성1 70, 화성2 40, 여주2 80, 철원2 30, 보은 7, 진천 30, 천안 30, 홍성 8, 당진 60, 김제2 50, 장수 8, 해남2 30, 영천 10, 상주2 50, 김해2 60, 창원 10, 군위 20, 의성 30, 고창 6
퇴비	5 (126)	강화 30, 장수2 50, 합천 10, 고창 15, 당진 15
바이오	1 (130)	양산 130

- 중간처리수 액비화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 처리시설 운영 및 자원화 유도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20개소(4,688톤/일) 확충 추진(계속)
 - 음식물쓰레기 2,708톤/일, 음폐수 1,450톤/일, 가축분뇨 병합 530톤/일 등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추진현황 >

(단위 : 톤/일)

구 분	시설수	시설규모	세부내역
계	20	4,688	
완 공	7	1,388	동대문구 98톤(음식물), 속초 40톤(음식물) 대구 300톤(음식물), 진주 150톤(음폐수), 수도권 광역 500톤(음폐수), 광주 300톤(음폐수), 수도권 자동차연료화(10m ³ /분)
시운전중	4	710	고양 260톤(음식물), 김해 100톤(음폐수), 울산 150톤(병합), 청주 200톤(음폐수)
입찰추진	4	960	대전 400톤(음식물 200, 음폐수 200), 충주 80톤(음식물), 전주 300톤(음식물), 제주 180톤(음식물)
기 타	5	1,630	수도권 광역 1,000톤(음식물), 충남 신도청 50톤(음식물), 경북 신도청 120톤(병합), 구리 200톤(음식물), 영천 260톤(병합)

- 음식물쓰레기·음폐수 및 가축분뇨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관리방안 및 인허가 의제 처리기준 마련 등(12.6 폐기물관리법 개정 완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가축분뇨 자원화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
 -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단위농협이 설치·운영) : 2개소 240톤/일
 -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설치(환경공단이 기술지원) : 4개소 520톤/일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8개소, 256억원)
 - '14년에 4개소(710톤/일) 준공 추진
- '바이오가스 기술포럼'을 통한 지자체 기술지원 및 민간업계 사업 촉진
 - 시설설치 및 운영 상황,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시범운영 성과, 산업계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방안 논의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가축분뇨 자원화 등 공공처리시설 설치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설치예정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가동중인 공공처리시설 중 개선·증설사업
- 사업 규모(사업량) : 91년부터~, 87개시설(10,813톤/일) 설치 운영
- 지원금액 및 형태 : '13년까지 10,860억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시·군 80%, 광역시 60%(군 지역은 80%),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70%
- 지원내용 : 국고보조
- 법적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4조

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음식물쓰레기·음폐수 및 가축분뇨 병합(혼합) 처리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지자체 시설사업
- 사업 규모(사업량) : 4,688톤/일(계속사업 20개소, '13년 : 8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3년까지 125,965백만원,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병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70%)
- 지원내용 : 국고보조, 제도개선, 기술지원 등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6조(국고보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 가축분뇨 자원화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01,430			25,358		126,788
2014			99,877			24,969		124,846
(증△감)			△1,553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3,040			38,027		61,067
2014			25,578			40,886		66,464
(증△감)			2,538			2,859		5,397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가축분뇨 자원화 >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	0	0	99,877	0	0	24,970	124,847
강원	4			16708			4,177	20,885
경기	6			7745			1,936	9,681
충북	2			7174			1,794	8,968
충남	5			24860			6,215	31,075
전북	7			18403			4,601	23,004
전남	1			3867			967	4,834
경북	6			19133			4,783	23,916
경남	2			1187			297	1,484
제주	1			800			200	1,0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7	0	0	571,307	0	142,827	0	714,134
'13	33			101,430/1 19,469		25,358/ 29,867		126,788/ 149,336
'14	34			99,877		24,969		124,846
'15	36			119,163		29,791		148,954
'16	36			120,000		30,000		150,000
'17	38			130,837		32,709		163,546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25,578		40,886		66,464
충북	1			907		2116		3,023
전북	2			4,313		10,064		14,377
대전	1			5,614		13,099		18,713
경기	1			1,670		3,897		5,567
경북	2			10,368		5,396		15,764
제주	1			2,706		6,314		9,02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2	0	0	227,885	0	348,190	0	576,075
'13	12			23,490		39,079		62,569
'14	8			25,578		40,886		66,464
'15	13			56,962		85,443		142,405
'16	10			56,418		84,627		141,045
'17	9			65,437		98,155		163,592

5. 성과목표

○ 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수질오염물질(BOD) 삭감량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가축분뇨 오염물질 삭감량 (BOD, 톤일)	105,5	107.8	112,7	113,8	115.0	삭감부하량=유입부 하량-배출부하량	내부보고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완공 용량 개소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완공 수	-	-	2	4	4	'14년에 완공한 시설 수 집계	지자체 보고자료

<6-3-1-4. 가축분뇨처리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방역관리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75	이메일	bullsvet@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확충

- '13년까지 자원화 시설 76개소('09, 40개) 설치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로 현재 85%인 자원화율을 90%로 제고
 -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
 - * 에너지화시설 1개소 당 8만Kwh 생산(6백여 농가에서 한 달 동안 사용 가능)
- '13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17개소 확충 추진
 - 가축분뇨, 음식쓰레기, 음폐수,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공동자원화(누계) : ('10)56개소 → ('11)68 → ('12)88 → ('13)98
 - 액비유통센터(누계) : ('10)121개소 → ('11)147 → ('12)162 → ('13)162
 - 액비저장조(누계) : ('10)6,524기 → ('11)7,508 → ('12)8,408 → ('13)9,208
 - 에너지화(누계) : ('10) 3개소 → ('11) 2 → ('12) 1 → ('13) 8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3월)
-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추진상황 점검(4월)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5~6월)
- (추진성과) 가축분뇨 자원화율 : ('11) 87.6 → ('12) 88.7 → ('13) 89.2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등을 위한 자원화시설 확대 및 유통기반 구축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13) 98개소 → ('14) 113
 - 액비유통센터(누계) : ('13) 177개소 → ('14) 192
 - 액비저장조(누계) : ('13) 9,208기 → ('14) 9,908
 - 녹색성장 대비 에너지화시설(누계) : ('13) 8개소 → ('14) 11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계획 수립(3월)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지원계획 수립·시행(4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10월)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유통센터) 평가·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퇴·액비 품질 향상 및 경종농가 신뢰 구축

4. 관련 사업 내용

가. 가축분뇨처리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돼지 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등
 - 사업규모 및 지원형태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합 계		155,102	96,938	45,417	51,521	45,660	10,770
· 개별시설	561천㎡	55,574	44,459	11,115	33,344	11,115	-
· 공동자원화(퇴액비)	15개소	39,000	27,300	15,600	11,700	11,700	-
· 공동자원화(에너지)	3개소	17,500	8,750	5,250	3,500	5,250	3,500
· 정착촌구조개선	33천㎡	1,386	970	693	277	416	-
· 액비저장조	700기	11,900	2,380	2,380	-	5,950	3,570
· 액비유통센터	25개소	5,000	1,500	1,500	-	2,500	1,000
· 액비살포비	65,235ha	13,048	6,524	6,524	-	6,524	-
· 액비성분분석기	15개	360	180	180	-	180	-
· 액비부숙도판정기	15개	450	225	225	-	225	-
· 자원화조직체관리평가	-	150	150	150	-	-	-
·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	15개소	9,000	4,500	1,800	2,700	1,800	2,700
· 광특계정(제주도)		1,734	713	713		846	175

- 지원조건 :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4%)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30	30 20	- 20	
·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 액비저장조	20	50	-	30	
·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 액비살포비	50	50	-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 자원화조직체관리평가	100	-	-	-	
·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	20	20	30	30	6년(3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 3%

- 지원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 하는 등 적정처리를 위한 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 법적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자체·축산업자의 책무)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669	-	85,274	86,943	47,665	12,046	146,654
2014		713		96,938	97,651	46,506	10,945	155,102
(증△감)		△956	-	11,664	10,708	△1,159	△1,101	8,448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 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농 특	균 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713	-	96,938	46,506	10,945	155,102
세종		-	-	-	265	119	20	404
인천		-	-	-	351	165	51	567
광주		-	-	-	50	13	0	63
울산		-	-	-	176	166	51	393
대구		-	-	-	160	40	0	200
부산		-	-	-	0	0	0	0
대전		-	-	-	90	23	0	113
경기		-	-	-	13,889	5,351	1,413	20,653
강원		-	-	-	8,305	3,497	546	12,348
충북		-	-	-	6,949	2,912	501	10,362
충남		-	-	-	17,804	7,788	961	26,553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군특	기타회계	기금등			
전북		-	-	-	10,330	5,710	1,122	17,162
전남		-	-	-	8,566	4,897	1,102	14,565
경북		-	-	-	10,942	4,174	851	15,967
경남		-	-	-	8,854	4,297	813	13,964
제주		-	713	-	5,175	2,793	174	8,855
유보		-	-	-	5,032	4,561	3,340	12,93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6,012	6,984	-	-	219,571	43,976	676,543
'13		85,274	1,669	-	-	47,665	12,046	146,654
'14		96,938	713	-	-	46,506	10,945	155,102
'15		74,600	1,534	-	-	41,800	6,995	124,929
'16		74,600	1,534	-	-	41,800	6,995	124,929
'17		74,600	1,534	-	-	41,800	6,995	124,929

나. 축산분뇨처리시설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 ⇒ 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식품부) ⇒ 시·군에 예산
 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가축
 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시공업체 선정·착공(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 보조금 집행

5. 성과목표

○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06년 82%를 기준으로 '14년 90%를 목표로 연 1%씩
 증가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가축분뇨 자원화율(%)	86.6	87.6	88.7	89.2	89.5	(가축분뇨 자원화 물량 /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 100	퇴비판매량, 액비 이용량 등(농식품 부), 가축분뇨 해양 투기물량(국토 부), 공공처리물 량(환경부)

<6-3-1-5. ①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안형근 연구관
전화번호	044-201-2457	이메일	hgah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기본계획 p.65)

- 바이오에너지 추출에 적합한 갈대·억새 등 비식용 농작물의 품종개발 및 유희지를 활용한 시험재배로 상용화 토대 마련

* ('13년) 기초기술 개발 → ('16년) 응용기술 개발 → ('18년) 상용화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5,920백만 원)

- '13년 계속사업 추진(5,620백만 원)

- 사업목표 :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친환경기술 연구 추진
 - * 농생명산업기술개발(8과제) 3,850백만 원, 첨단생산기술개발(2과제) 1,770백만 원
- 바이오매스 생산용 신품종 개발, 바이오매스 생산용 주요 효소 생합성 기작 조절,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13년 신규사업 추진(300백만 원)

- 사업목표 :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배양 기술 연구
 - * 농생명산업기술개발(1과제) 300백만 원
-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우수한 미세조류 발굴 및 고밀도 연속 순환 배양 방식 최적화 기술 개발 등 추진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목표 : 바이오매스 생산용 신품종 발굴 및 환경정화용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확립

○ 사업내용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계속, 신규과제 추진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14.2월, 4월

- 선정평가 : '14.4월, 6월

- 사업대상자 선정, 협약 : '14.6월, 8월

○ 주요 추진과제(안) : 저급 농축산 용수를 영양염료로 활용하는 친환경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개발, 고오일 함유 바이오매스 생산용 신제품 개발, 고품질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효소 생합성 조절 기술 개발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사업 내용 :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산·학·연 연구팀으로 구성된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6,920백만원(15개 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과제당 10억원 이내, 출연

- 지원조건 :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 지원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5,920	-	-	-	5,920	-	1,787	7,707
2014	6,920	-	-	-	6,920	-	2,200	9,120
(증△감)	1,000	-	-	-	1,000	-	413	1,41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경기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인천	-	-	-	-	-	-	-	-

* 지자체 보조사업이 아닌 우수연구자(대학·연구소·기업 등) 지원사업으로 해당 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2/13	5,920/5,620	-	-	-	-	1,787/1,837	7,707 / 7,457
'14	15	6,920	-	-	-	-	1,730	8,650
'15	17	6,920	-	-	-	-	1,730	8,650
'16	17	6,920	-	-	-	-	1,730	8,650
'17	17	6,920	-	-	-	-	1,730	8,650

- 1) 국비의 경우, 세부사업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15년 이후부터는 동일 예산을 책정
- 2) 자부담의 경우 정부출연금(국비)의 25%(중소기업 부담금)을 적용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특허출원건수	2	2	2	2	2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상향	연구성과활용 결과보고서
특허출원건수	7	7	7	7	7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상향	연구성과활용 결과보고서

<6-3-1-5. ②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주두만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536	이메일	redjoo5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기본계획 p.65)
 - 다시마, 모자반 등 비식용 해조류 대량 양식장 조성(20년까지 50 만ha) 등을 통한 에너지화 기반 구축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갈조류 유래 발전용 바이오오일 시제품 개발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품질 최적화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품질기준 마련 착수(계속)
 - 가스터빈 및 디젤엔진의 해외품질기준 만족(수분함량, 밀도, pH, 발열량 등), 세계최초 갈조류 바이오연료 상용화 제품 연구수행
- 갈조류의 주요 성분 알긴산을 생화학적으로 바이오에탄올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최초 신규효소 개발 및 메카니즘 규명(계속)
 - 갈조류의 난분해성 알긴산은 기존의 육상 미생물에 의해서는 발효 및 대사가 원활히 되지 않아, 신규 개발효소인 Alg7D으로 알긴산 올리고당을 만들고 이어서 Alg17C로 단당류를 제조함
- 알지네이트의 바이오파이너리용 가수분해 공정 구축(계속)
- 해조류의 활용을 위한 통합공정 설계(계속)
- 일관공정 부산물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연구(계속)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수송용 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세계최초 갈조류 유래 가솔린 첨가제 개발
- 갈조류의 주요 성분 알긴산(비발효성당)의 생물학적 당화 기술 개발
- 바이오유기산 분리/정제 기술 개발
- 알지네이트 이용 바이오소재화 기술 개발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해조류 바이오매스 통합 활용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및 통합활용 연구 1식
 - 지원금액 및 형태 : 출연금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원
 - 법적근거 :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20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 관련산업 : 갯녹음 발생지역 바다숲 조성 사업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13			800		800			800
2014			800		800			800
(증△감)			0		0			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양식장.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인천								

○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에너지화수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9,600				9,600
'13	45%			800				800
'14				800				800
'15	60%			3,000				3,000
'16				2,500				2,500
'17	≥60%			2,500				2,500

* 사업규모의 수치는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일관공정 에너지화 수율(%)

나. 해조류 바이오매스 통합활용기반 구축)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사업협약체결(해수부) ⇒ 주연구기관지정 ⇒사업비출연 ⇒ 사업비 정산(기술진흥원→해수부)

5. 성과목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특허출원지수		10	8	10.8	1.0	(국제특허 등록건수 × 0.4) + (국제특허 출원건수 × 0.3) + (국내특허 등록건수 × 0.2) + (국내특허 출원건수 × 0.1)	NTIS에 성과정보등록이 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함. 또한 특허의 경우는 특허청 특허 검색
학술논문발표지수		8	12	15	17.0	(SCI 논문 게재 기여율 × Impact Factor 반영) + (KCI 논문 게재 기여율 × Impact Factor 반영)	NTIS에 성과정보등록이 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함. 또한 논문의 경우는 NSDL 검색
제품화 지수					1	시제품 제품화 건수 × 1.0	시제품 건수

* '12년까지 특허출원지수 및 논문 발표건수, 13년 이후는 지수로 측정산식 변경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환경부)>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이철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7401	이메일	fehgap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적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기본계획 p.65)
 - 소규모 마을(40~50호)을 대상으로 바이오매스·풍력·태양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로 리모델링
 - '12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20년까지 전국적으로 600여개 조성
 - 친환경·저에너지형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0-'12년 시범사업 추진(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사 중)
 - 기본 및 실시설계(7.9~9.28), 공사착공('12.10-)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운영(4회)
- '13년 본 사업 사업대상지 선정('13.2, 강원 홍천) 및 기본·실시설계 연구용역 추진('13.7~'14.3)
-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12.4~1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 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추진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4. 관련 사업 내용

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 에너지화를 통해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2,080억원, 전국 40개소 지원(개소당 52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환특)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52억원 지원(1년차 : 2억원, 2-3년차 : 각 25억원)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보조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40		140	140		280
2014			1,410		1,410	1,410		2,820
(증△감)			1,270		1,270	1,270		2,54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			1,410		1,410		2,820
강원	1			1,210		1,210		2,420
미정	2			200		200		4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350		25,350		50,700
'13	1			100		100		200
'14	3			1,450		1,450		2,900
'15	7			4,150		4,150		8,300
'16	11			8,000		8,000		16,000
'17	13			11,650		11,650		23,300

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장
- 추진방식 : 공모
- 사업신청 : 매년 말 환경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사업계획 공모(환경부)→사업신청(지자체) → 사업평가 및 선정(환경부)→국고 지원(환경부)→사업시행(지자체)→집행실태 파악 및 기술지원, 정산 등(환경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녹색마을 조성개소	1			1	2		선정문서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산림청)>

담당부서	산림휴양문화과	담당자	김주미(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124	이메일	kjm1028@forest.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적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기본계획 p.65)
 - 소규모 마을(40~50호)을 대상으로 바이오매스·풍력·태양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로 리모델링
 - '12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20년까지 전국적으로 600여개 조성
 - 친환경·저에너지형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산림탄소순환마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 1리 및 2리('09.11.16)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느릅마을('10.11.24)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지침시달('10.5.4, '11.2.25)
- 산림탄소순환마을(봉화군) 조성 완료('12.12.10)
- 산림탄소순환마을(화천군) 조성 완료('13.12.31)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후운영·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및 지침 작성

4. 관련 사업 내용

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산촌
 - 사업 규모(사업량) : 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50억원 이내,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시설, 목재를 활용한 주택 신축·리모델링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주택 개선사업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293				1,293	750	510	2,553
2014								
(증△감)	△1,293				△1,293	△750	△510	△2,55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해	당	없	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	1,293				776	517	
'14		해	당	없	음			
'15		해	당	없	음			
'16		해	당	없	음			
'17		해	당	없	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개소)	-	-	1	1	-	조성공사 준공여부	완료보고

<6-3-2.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에너지개발부	담당자	임문희 차장
전화번호	031-420-3330	이메일	imhee@ekr.or.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기본계획 p.65)

- 농업용 저수지의 관개용수 및 잉여수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소수력발전과 공사소유 유희부지에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지원
- '17년까지 발전소 83개소 54,481kW(연간 12만MWh 전기 생산)건립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발전소 47개소 20,807kW 건설 완료

구분	개소수 (지구)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	사업비	예상수익
합계	47	20,807	58,289	87,133	9,480
소수력	25	14,205	48,156	43,308	4,340
태양광	22	6,602	10,133	43,825	5,140

※ 세부내역 : 덧붙임 1참조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발전소 12개소 10,654kW 추진 중(성과목표 : 준공 8개소 7,464kW)

구분	에너지원 별	개소수 (지구)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	사업비 (백만원)	예상수익
합계		12	10,654	19,061	13,500	3,913
준공지구	소계	8	7,464	13,643	10,254	2,709
	소수력	6	1,464	4,790	2,544	766
	태양광	1	3,000	3,627	5,360	1,081
	풍력	1	3,000	5,226	2,350	862
계속지구	소계	4	3,190	5,418	3,246	1,204
	소수력	3	1,190	2,790	3,146	610
	태양광	-	-	-	-	-
	풍력	1	2,000	2,628	100	594

※ '14년 사업비는 투자계획 자료이며, 지구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내역 : 덧붙임 2참조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83개소 54,481kW 건설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출자금) + 자체자금
- 지원조건 : 국고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소수력, 태양광, 풍력)발전소 건설비 지원
-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자본금 및 출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장려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5,000				3,200	18,200
2014			13,500					13,500
(증△감)			△1,500				△3,200	△4,700

* 국비 감액 지원으로 전체적인 투자비 감소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개소 10,654kW			13,500				13,500
경기	1개소 3,000kW			5,360				5,360
강원	1개소 465kW			338				338
충북	1개소 350kW			1,215				1,215
충남	1개소 2,000kW			100				100
전북	4지구 4,049kW			4,358				4,358
전남	2개소 330kW			833				833
경북	2개소 460kW			1,296				1,296

* '14년 사업비는 투자계획 자료이며 지구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덧붙임 3 참조)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kW)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49/34,887			15,000/69,000			3,200/3,700	18,200/72,700
'13	4,149/2,115			15,000/15,000			3,200/3,700	18,200/18,700
'14	10,654			13,500				13,500
'15	5,690			13,500				13,500
'16	6,188			13,500				13,500
'17	10,240			13,500				13,500

-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 '14년 이후는 계획
- * 사업규모는 준공 및 건설지구를 포함한 발전규모(kW) 임

5. 성과목표

- 2014년 성과목표를 누적 준공규모('14년 7,464kW 포함)로 함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준공규모(kW)	13,427	15,197	18,007	20,807	28,271	누적 준공규모(kW) 합산	준공서류

[덧붙임 1]

□ '13년까지 준공지구 현황

구 분	개소수 (지구)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	사업비 (백만원)	예상수익
합 계	47	20,807	58,289	87,133	9,480
소수력	25	14,205	48,156	43,308	4,340
태양광	22	6,602	10,133	43,825	5,140

※ 자료기준 : 발전규모<정산>, 예상발전량<이사회>, 사업비<정산>

○ 소수력

착공 년도	준공 년도	지역분 부	지사	시설명	발전규 모 (kW)	예상발전 량 (MWh)	사업비 (백만원)	예상 수익	경제성 (B/C)	비고
합 계				25지구	14,205	48,156	43,308	4,340		
2003.12	2005.05	전북	남원	동화	1,000	4,119	2,095	304	1.54	
2004.06	2007.12	경남	하동남해	하동	825	2,829	2,627	208	1.37	
2006.06	2007.04	충북	전천	백곡	430	2,329	1,904	172	2.20	
2004.11	2006.09	전남	담양	담양	1,274	3,292	2,913	173	1.75	
2006.11	2008.12	전북	전주완주임실	경천	440	2,662	1,822	196	1.99	
2007.12	2009.05	전북	정읍	정우	2,000	3,210	549	234	1.91	
2006.12	2008.12	경남	진주산청	율현	560	1,765	2,020	130	1.75	
2008.01	2010.03	충남	논산	탑정	320	1,895	1,439	138	1.19	
2007.12	2010.04	충남	보령	청천	490	1,810	1,449	132	1.14	
2010.03	2010.12	전북	무진장	용림	600	1,915	1,292	160	1.25	
2009.11	2010.12	전북	전주완주임실	구이	360	1,630	1,341	136	1.24	
2009.10	2010.12	전북	정읍	삿갓보	400	1,915	1,267	160	1.37	
2009.11	2011.07	경북	영주봉화	물야	410	1,557	1,296	130	1.24	
2010.12	2012.03	강원	강릉	오봉	530	1,600	1,219	131	1.00	
2010.12	2012.03	충남	예산	예당	480	2,421	1,781	199	1.03	
2010.12	2012.05	충남	아산	궁평	180	963	1,101	79	1.00	
2010.10	2012.05	전북	전주완주임실	동상	590	2,008	1,570	165	1.02	
2011.12	2013.12	강원	홍천춘천	북창보	430	2,475	4,032	390	1.14	
2011.12	2013.12	전북	순창	낙덕	60	293	552	47	1.05	
2011.12	2013.07	전북	정읍	정우1	75	434	634	68	1.14	
2011.12	2013.09	전남	담양	광주호	240	736	1,152	116	1.10	
2012.12	2013.12	경북	영주봉화	금계	280	1,007	1,195	161	1.33	
2011.09	2013.12	전남	장성	장성	1,392	2,972	4,660	211	-	독높이기
2010.03	2013.06	경남	거창함양	가북	650	1,366	2,445	484	1.59	독높이기
2012.06	2013.06	경북	상주	오태	189	953	953	16	-	독높이기

○ 태양광

착공 년도	준공 년도	지역 본부	지사	시설명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	사업비 (백만원)	예상 수익	경제성 (B/C)
합 계				22지구	6,601.68	10,133	43,825	5,140	
2008.06	2008.10	강원	홍천춘천	횡성	157.50	527	1,510	144	1.22
2008.06	2008.10	전남	영암	영암1	1,491.60	2,259	11,671	1,391	1.35
2008.06	2008.10	전남	진도	진도	994.40	1,506	8,155	927	1.27
2008.06	2008.10	경남	하동남해	하동	193.60	301	1,809	185	1.16
2009.05	2009.08	충북	괴산	괴산	522.00	783	3,888	418	1.21
2008.06	2009.06	전남	영암	영암2	1,491.60	2,259	10,289	1,152	1.35
2012.08	2012.12	경기	김포	가현	99.12	131	311	59	1.36
2012.08	2012.12	충북	청원	서촌	99.00	131	317	59	1.36
2012.08	2012.12	충북	청원	신대	99.00	131	317	59	1.36
2012.09	2012.12	충남	부여	청포	65.40	131	247	39	1.36
2012.09	2012.12	충남	부여	칠산3	52.32	131	198	31	1.36
2012.07	2012.12	전북	동진	청하	98.80	131	401	59	1.36
2012.07	2012.12	전북	익산	황등양수장	46.80	131	379	50	1.36
				익산지사	23.40				1.20
				금강농조	14.56				1.36
2012.07	2012.12	전북	부안	청호	29.90	45	147	17	1.36
2012.08	2012.10	전남	나주	신홍	99.75	131	306	59	1.36
2012.08	2012.11	경북	구미김천	태촌	98.58	131	354	59	1.15
2012.08	2012.12	경남	의령	무전2	91.35	131	356	54	1.33
2013.11	2013.12	충남	공주	계룡	300.0	394	1,130	117	1.37
2013.07	2013.11	전북	부안	계화	70.2	88	257	34	1.22
2013.09	2013.11	금강	금강사업단	서포	53.0	101	207	25	1.22
2013.10	2013.12	경남	밀양	덕곡	199.8	280	693	101	
2013.10	2013.12	전남	장성	달성	210.0	280	883	101	

[덧붙임 2]

□ '14년 추진지구 현황

구 분	개소수 (지구)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	사업비 (백만원)	예상수익
합 계	12	10,654	19,061	13,500	3,913
소수력	9	2,654	7,580	5,690	1,376
태양광	1	3,000	3,627	5,360	1,081
풍 력	2	5,000	7,854	2,450	1,456

※ 준공 : 8지구, 계속 : 4지구

○ 소수력

착공 년도	준공 년도	지역 본부	지사	시설명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	사업비 (백만원)	예상 수익	비고	
합 계					9지구	2,654	7,580	5,690	1,376	
2012.12	2014.05	강원	철원	잠곡	465	925	338	148	준공	
2012.12	2014.05	전북	고창	고수	99	301	47	49	준공	
2012.12	2014.05	전남	구례	구만	170	943	375	151	준공	
2012.12	2014.05	전남	순천여수광양	백운	160	634	458	101	준공	
2012.12	2014.05	경북	문경	문경	220	763	498	121	준공	
2012.12	2014.05	전북	금강사업단	서포	350	1,224	828	196	준공	
2014.01	2015.05	충북	음성	맹동	350	869	1,215	190	계속	
2014.01	2015.05	전북	남원	동화1	600	1,266	1,133	277	계속	
2014.01	2015.05	경북	영주	단산	240	655	798	143	계속	

○ 태양광

착공 년도	준공 년도	지역본부	지사	시설명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	사업비 (백만원)	예상 수익	비고	
합 계					1지구	3,000	3,627	5,360	1,081	
2013.11	2014.06	경기	화안사업단	화성	3,000	3,627	5,360	1,081	준공	

○ 풍력

착공 년도	준공 년도	지역 본부	지사	시설명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	사업비 (백만원)	예상 수익	비고	
합 계					2지구	5,000	7,854	2,450	1,456	
2013.06	2014.12	본사	첨단기술 사업처	가력	3,000	5,226	2,350	862	준공	
2014. 10	2015.12	“	“	홍성	2,000	2,628	100	594	계속 (예타중)	

[덧붙임 3]

□ '14년 시도별 세부 배분내역(안)

시도별	지사	에너지원 별	준공 년도	시설명	발전규모 (kW)	예상발전량 (MWh)	사업비 (백만원)	예상 수익	비 고
합 계				12지구	10,654	19,061	13,500	3,913	
경기	화안사업단	태양광	2014.06	화성	3,000	3,627	5,360	1,081	준공
강원	철원	소수력	2014.05	잠곡	465	925	338	148	준공
충북	음성	소수력	2015.05	맹동	350	869	1,215	190	계속
충남	천수만사업단	풍력	2015.12	홍성	2,000	2,628	100	594	계속
소계				4지구	4,049	8,017	4,358	1,384	
전북	고창	소수력	2014.05	고수	99	301	47	49	준공
	금강사업단	소수력	2014.05	서포	350	1,224	828	196	준공
	본사	풍력	2014.12	가력	3,000	5,226	2,350	862	준공
	남원	소수력	2015.05	동화1	600	1,266	1,133	277	계속
소계				2지구	330	1,577	833	252	
전남	구례	소수력	2014.05	구만	170	943	375	151	준공
	순천여수광양	소수력	2014.05	백운	160	634	458	101	준공
소계				2지구	460	1,418	1,296	264	
경북	문경	소수력	2014.05	문경	220	763	498	121	준공
	영주	소수력	2015.05	단산	240	655	798	143	계속

※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상기 내역에 없는 불갑, 죽전지구는 사용전검사 지구로 '14년 준공예정

7

지역역량 강화

7. 지역역량 강화

7-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1) 개관

□ '14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후계농업인력이 정예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3~12월)
 -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신설, 경영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제, 법률, 부동산, 노무 등 심화 과정 개설
- 농어촌 지역리더, 사무장, 농어촌여성리더, 관광전문가,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 주체에 대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1개 과정에 2,88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행계획 수립('14.2) 및 교육실시('14.3~12)
-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 제도의 지자체 이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상반기)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24,900				24,900			24,900
역량 강화 교육품질 제고						120	13	133
합계	24,900	0	0	0	24,900	120	13	25,033

<7-1-1.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경영인력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안치홍 사무관 송현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5 044-201-1592	이메일	chahn@korea.kr songhjo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기본계획 p.68)

□ 주민에 대한 현장 방문교육 강화

- 사업 준비단계부터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해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 및 참여의식 제고

* 주민역량강화 교육 계획(누계) : ('05~09) 26천명 → ('14까지) 6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가. 농업인 교육훈련

- 농업교육의 현장수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모분야, 교육대상 확대 등 공모 사업 방식 개선
 - 새 정부 농업정책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공모 실시(77개과정, 10,529명)
 - * 공모분야(5개) : 창업·경영, 유통·마케팅, 농촌개발·거버넌스, 농식품가공, 친환경농업
 - 기초교육 위주의 양적교육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중장기 심화·고급 교육으로 교육방식 정착(40시간 이상 과정 63.6%)
 - FTA 대응 등 농정현안 및 중장기 인력수요를 고려한 분야별 기획공모교육 실시(15개 기관, 17개 과정, 3,601명 수료)
- 정예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농업경영인 및 신규·예비후계농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1,330명)
- 농업계 고교 및 대학의 농업분야 교육 강화를 위해서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유형화하여 운영·지원
 - 농고 : 기초 경영교육 및 현장실습교육(WPL)과 연계한 실습교육

- 농대 : 직업탐색 프로그램, 실습중심교육, 선진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농촌 결혼이민 여성에게 실습위주의 기초·전문 농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 지원(기초농업교육 884, 1:1 맞춤형농업교육 722)
-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의 내실화
 - 교육생 교육전·후 영농역량변화율 교육전 대비 11.97% 향상
 - 현장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으로 재학률 93.43% 유지(1,891명)
- 대표실습장 및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13년 91개 실습장 지정 및 운영(4,181명 교육)

나. 인적역량 강화

- 농어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주도할 인적역량강화를 위해 전년도 교육내용을 개편하여 인적역량강화 시행계획 수립('13.1월, 총 12개과정, 4,230명에 대해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 실시(3~12월)
 - (교육계획) 12개 과정 4,230명 → (실적) 12개 과정 4,523명
- 교육생 역량수준에 맞는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시행으로 지속적인 교육생 증가
-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등 농어촌 전문자격제도 운영
- 교육을 통한 농촌체험마을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화교육으로 사업성과 제고
- 성과관리 교육시스템 운영을 통한 객관화된 교육성과 도출

3. 2014년도 추진 계획

가.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 미래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계학교 교육지원 개편(2~12월)
 - '13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액 지원
 - 농고교사, 농대 취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 교육 강화

- 후계농업인력이 정예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3~12월)
 -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신설, 경영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제, 법률, 부동산, 노무 등 심화 과정 개설
- 농업마이스터대학을 경영·기술분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품목 전공을 농산업 및 지자체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선(2~12월)
- 농정목표에 부합하고 현장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공모교육의 조기 공모를 실시하고, 농정정책 및 현안과 부합하는 기획과제 공모 확대(1월~12월)
- 농업·농촌교육의 성과 도출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성공요인 및 성과 조사·분석 강화(2~12월)

나. 인적역량 강화

- 총 11개 과정, 2,880명(추후 변경 가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행계획 수립('13.2) 및 교육실시(3~12)
 - 개별경영체 양성과정(관광농원, 농어촌민박 경영과정) 보강 및 신규개설
 - 마을경영체 양성과정(농어촌마을리더, 사무장양성, 마을활성화사업) 보강 및 2개과정 통합운영(농어촌여성리더, 체험마을동기화)
 - 관광전문가 양성과정(피실리테이터, 관광전문가) 보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고, 농대, 품목·농업인 단체, 민간교육기관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24,926백만원(지자체·민간보조, 농특)

- 지원조건 : 지자체(국고 50~100%, 지방비 0~40%, 자부담 0~30%), 민간(국고 50~70%, 자부담 30~50%, 정액)
- 지원내용 :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농고·농대생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및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인프라 구축비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조~제23조 및 제2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8조, 자연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2 및 제3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5,126				25,126			25,126
2014	24,926				24,926			24,926
(증△감)	△200				△200			△20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3,560	132,217						132,217
'13	37,560/ 30,000	25,126/ 25,126						25,126
'14	34,000	24,926						24,926
'15	34,000	26,316						26,316
'16	34,000	27,134						27,134
'17	34,000	28,715						28,715

나. 주민역량강화(도농교류활성화 인적역량강화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도농교류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9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농특)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리더, 사무장,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 개발 주체에 대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법적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900				900			900
2014								
(증△감)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도농교류활성화에 포함						
'14								
'15								
'16								
'17								

다. 마을 사무장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체험마을 및 농촌종합개발 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803개소 중 '14년 45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3,240백만원(월 120만원, 지자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농어촌체험관광을 주도한 체험마을 사무장 인력 지원
- 법적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800				2,800	2,800		5,600
2014	3,240				3,240	3,240		6,480
(증△감)	440				440	440		88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계	451	3,240				3,240		6,480
인천	3	22				22		43
대전	3	20				20		40
울산	4	31				31		61
세종	3	23				23		46
경기	45	329				329		658
강원	82	588				588		1,176
충북	30	211				211		421
충남	63	445				444		889
전북	46	332				332		664
전남	48	349				348		697
경북	52	368				368		736
경남	61	443				443		886
제주	11	79				78		15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389	2,800				2,800		5,600
'14	450	3,240				3,240		3,240
'15	483	3,472				3,472		6,944
'16	517	3,717				3,717		7,434
'17	517	3,717				3,717		7,43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교육전후 역량향상 율(%)	-	7	16.7	15.1	15.0	{(교육후 역량 교육전 역량) / 교육 전 역 량} × 100 * 전문농업인및예비농업 인대상장기농업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농고농대 교육과정)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장기교육생 (농업마이스터대 학과정, 농고농대 교육과정) 교육 전후 역량을 진단 하여 측정
주민역량강화교육 인원	3,525	3,767	4,006	4,530	15,000	역량강화 교육 수료 자 인원 산출	내부자료
핵심리더 양성(명)	735	1,015	2,000	2,500	3,000	리더 교육 수료자 인원 산출	내부자료
체험마을 사무장 확대(명)	350	350	350	389	450	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인원	행정자료

<7-1-2. 역량강화 교육품질 제고(지방자치단체)>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역량강화교육 품질 제고(기본계획 p.68)

도농교류·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교육과정' 인증 활성화

-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우수 교육소프트웨어 개발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인증을 통해 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를 양성하는 우수 민간교육기관 육성

교육쿠폰제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과정 운영

- 대학과 지자체 교육원 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 12건

· 체험지도사 10건, 마을해설가 2건

* 인증기관 : (주)지역아카데미 4, (주)지역활성화센터 1,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1,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2, 대구대학교 동아시아 관광연구소 3, 제주관광대학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3년부터 인증기관이 농식품부에서 시·도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추진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 ('13)	개소수 ('14)	'13 예산	'14 예산
합 계				-	133
강원	도농교류 교육과정 운영	80명	100명	-	130
전북	도시민의 농업·농작물에 대한 전반적 이론 교육	60명	60명	-	3

4.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인증건수	8	8	11			인증건수	내부자료

7-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총괄계획가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지구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권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 총괄계획가 선정 : 농어촌계획 및 개발 분야 전문가로써 모집공고 및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선정하고, 시장군수가 위촉
- 권역단위 종합정비계획 용역발주 이전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운영
- 총괄계획가 모집공고 및 선정·위촉(3월)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								

< 7-2-1-1. 지역개발 컨설팅기관 인증제 도입(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경두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2	이메일	doo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지역개발 우수 컨설팅 기관 인증제 도입 추진(기본계획 p.69)

- 컨설팅 품질제고 및 수요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컨설팅업체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
 - 사업 실적, 전문가 확보수준, 주민 만족도, 보유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
 - 농어촌공사 또는 컨설팅 관련기관협회가 인증토록 하는 방안 검토
 - '10년 중 평가시스템을 개발, '11년부터 적용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09년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농어촌공사 사내 전문교육과정 개설
- '10년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한국농어촌공사) 민간자격 등록
- '12년 자격시험 민간부분으로 확대운영(기존 공사직원 대상)
- '13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교육부 자격정책 심의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 공인(1월) 및 공고
- 기존 자격취득자 공인자격으로 전환(4~11월)
 - 기존 자격취득자에 대한 자격전환 방안 마련(4월) 및 전환시험 실시(10월)
- 자격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마련(12월)
 - 인력육성,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교재개발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개발 컨설팅기관 인증제 도입

- 기본방향
 -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자격제도 확립을 통하여 농어촌개발 분야로 전문화된 인력 양성과 컨설팅기관의 역량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
 - (공공) 자격취득자 농어촌개발업무 담당 및 주민지원 방안 유도
 - (민간) 컨설팅업체의 역량제고와 우수 인재의 농어촌지역개발 분야 참여 유도
- 운영방안
 - 『농어촌개발컨설팅』 자격 공인을 통하여 타 국가 자격과 동일하게 시험 영역 등 공개로 스스로 준비, 민간을 중심으로 전문성 향상
 - 농어촌개발 저변인력 확대와 전문직업 산업군으로 육성
 - 자격에 대한 홍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취득 희망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교육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 해당없음
 - '12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컨설팅 자격취득자 확보(누계)	56	75	114	165	200	'14년 농어촌개발컨설팅 자격증 취득자	한국농어촌공사 자격시험 결과 보고

<7-2-2-1. 지역개발 총괄계획가 제도 활용(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기환(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촌지역개발 총괄계획가 제도 활용(기본계획 p.69)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09.6월 관련법 개정 및 12월 시행)
 - 지역개발 관련 교수·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 중장기 지역개발 방향 수립 및 마을정비계획 등 총괄·조정 역할 수행
 - 지자체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10)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달성을 위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기재(추진 일시, 진행상황(계속, 완료) 등)
 - 총괄계획가 제도 확대 운영방안 계획 마련(1월)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참여 시·군 수요조사(1월)
 - 2012년 시범지역 총괄계획가 간담회 개최(1월)
 - 2013년 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계획가 공개모집(1~2월)
 - 2013년 총괄계획가 심사선정 방안 통보(2월)
 - 2013년 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계획가 선발(2월)
 - 총괄계획가, 추진위원장 등 합동 워크숍 개최(3월)
 - 2013년도 총괄계획가 제2차 합동워크숍 개최(10월)
 - 2013년 지역개발분야 농촌개발시험연구(총괄계획가) 최종보고회 개최(12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총괄계획가 지침개정 및 교육일정 수립(2월)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지구 선정 및 확정시달(3월)
- 총괄계획가 모집공고 및 선정·위촉(3월)
- 총괄계획가 워크숍 개최(10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개발사업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적용

- 기본방향
 - 총괄계획가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지구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권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 시범사업지구 선정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정
 - 총괄계획가의 선정 : 농어촌 계획 및 개발분야의 전문가로써 모집공고 및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선정하고, 시장군수가 위촉
- 운영방안
 - 권역단위 종합정비계획 용역발주 이전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때까지 운영
 - 총괄계획가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
 -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보수기준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지원사업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사전검토수당, 회의수당, 및 교통비 등 활동내역에 근거하여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 해당없음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지구시행율 (지구수)	-	-	7	8	9	시범지구시행수/시범지구목표수×100	사업추진보고서

7-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계획수립,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
 - 농어촌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정도를 각종 점검 및 평가 시 반영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신규사업성 검토 지표로 활용(4월)
-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의 연중 운영
 -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자체, 언론, 대학, 지방 연구소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 운영
- 농어촌 체험마을 및 정주지원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웰촌포털 (www.welchon.com) 운영 기능 확충
 - 웰촌포털 기능강화(농촌체험관광 성향 및 수요 분석, 콘텐츠 재배열 및 발굴)
 - 농촌체험관광 정보의 허브(HUB) 역할(다음포털(홈페이지) 및 SK 플래닛(모바일) 등 민간 정보 공유, 관광농원·농촌민박 등 정보수집·개방)
 - 웰촌포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충(테마별·연령별 정보제공, 여행 테마 및 농어촌스토리 지속 보강, 이색체험 등 동영상·유튜브 등 서비스)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비예산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60							60
농어촌 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합계	60							60

<7-3-1-1. 지역발전협의회 구성(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기환(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6	이메일	volunteer3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기본계획 p.70)

□ 시·군별로 마을대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마을리더 모임 등 지역의 자율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지역별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형성 유도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계획수립, 모니터링, 주민 역량 강화교육 지원 등을 통해 상향식 지역개발의 기초 조직화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읍면발전협의회, 마을권역발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신규사업 신청 및 기본 계획 등 작성협의
 - '13년 신규사업 : 읍면소재지종합정비 80건,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85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심사 추진시 평가 항목에 반영
 - '14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평가지표 에 반영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추진위원회, 읍면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성 검토 지표로 활용(4월)
 - 상향식 사업계획 수립 노력 평가
 -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여부 평가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운영방향 :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의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지역 내의 전문가, 지역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 7-3-2-1.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강창엽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1555	이메일	cushionmind@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유도 (기본계획 p.70)

□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가 전국단위 협의체로 발전하도록 ‘(가칭) 농어촌 지역개발 네트워크’ 설립 지원

- 전국단위의 포럼·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정보교환, 지역간 연계 사업 모색기회 제공
- 네트워크조직 역량 축적 후 교육과정 인증 권한 부여방안 검토

* 예)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도농교류 등) 및 교육기관(체험지도사 등) 인증 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총12회 개최(분기별 1회)
 - 매회 약 60~100명 참석하여 지역정책, 자원 등 농어촌지역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고 포럼 결과집 발간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주요 논의 아젠다 등 농어촌지역정책포럼 2014년 운영계획 수립(2월)
 - 새정부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 제시를 위해 개편방안 마련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운영(연중)
 -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자체, 언론, 대학, 지방 연구소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 운영

4.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포럼 참여자(명)	-	200	250	300	350	매회 포럼 참석자의 합계	내부자료

<7-3-3-1.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사업과	담당자	송현주
전화번호	044-201-1592	이메일	songhjo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농어촌 개발 포털사이트 확충(기본계획 p.70)

- 농촌마을 정보제공, 도농교류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www.welchon.com)를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로 운영
 - 지역개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교육과정, 마을정보 등을 종합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웰촌포털 콘텐츠 개발 및 모바일시스템 기능 강화(1~12월)
 - 농촌체험에 대한 체험/자연/전통문화/웰빙 등 분야별 마을 테마 분류 및 콘텐츠 배치로 메인화면 재구성, 정보 서비스 체계 개선
 - * 테마 분류에 의한 마을 소개 및 농촌체험을 중심으로 정보서비스 체계 개선
 - 정보의 유통구조(Web ⇒ Mobile) 변화에 따른 모바일 시스템 기능 강화
 - * 농촌체험마을 중점 계절, 성향, 세대 등 테마를 주제로 대표 체험마을 메인 노출
 - * 모바일 후기작성을 위한 로그인 및 숙박시설 등 예약 기능 도입
 - 농촌체험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채널 운영
 - * 농촌체험관광을 중심으로 네이버 블로그 및 다음 카페 운영
- 농촌체험관광 정보의 허브(HUB)사이트 역할 제고(1~12월)
 - 농촌체험관광 정보 확산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부문 연계
 - * 다음포털 체험학습 및 SK플래닛 등 대형 민간 콘텐츠사와의 정보 연계 및 공유 확산(다음포털 >> 체험학습 >> 지역체험, SK플래닛 모바일 >> T-map, Pickat >> 농촌체험마을)
 - * 정부 3.0 공공기관 정보개방 과제 중 농촌체험관광 DB 개방

- 웰촌포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충(1~12월)
 - 체험마을 중심 농촌관광여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행 전문가 운영 및 전담인력 운영
 - * 여행작가 4명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테마로 한 여행기 제공(코너 : 테마여행)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영상 제작 및 보급 (6~12월)
 - * 여름휴가 페스티벌 및 농촌체험학습 참여 마을 대상으로 홍보 영상 제작 및 보급(40개 마을)
 - 웰촌포털시스템 개선 및 체험관광 성향 조사(상·하반기)를 위한 외부 만족도 조사로 지속적 시스템 개선·반영
 - 농촌체험관광을 주제로 네이버 등 대형포털 배너 및 키워드 검색 광고 연중 실시로 대국민 검색정보 강화(1~12월)
- 웰촌포털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1~12월)
 - DB, 솔루션 등 S/W, 서버, 장비 등 H/W 유지관리·보수 등
 - 최적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전용회선 사용 및 농촌체험관광 SNS 운영 등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고객 분류에 따른 성향 분석 및 대국민 농촌관광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한 웰촌포털 기능개선(3~12월)
 - 학생, 주부, 직장인 등 고객 분류에 따른 농촌체험관광 성향(Trend) 및 수요(Need) 분석
 - 타겟 분류에 의한 정보제공 콘텐츠 재배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채널 개편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의 다양한 콘텐츠 요소 발굴 및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인식제고(사시사촌, 四時四寸)로 언제, 어디서나 농촌의 즐길거리(체험), 볼거리(자연환경), 먹거리(음식)의 정보 수요 요구에 응대
- 농촌체험관광 정보의 허브(HUB) 역할 강화(1~12월)
 - 다음포털(홈페이지) 및 SK 플래닛(모바일) 등 민간 정보 공유 노력 확대
 - 농촌체험마을을 기본으로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개방을 통한 민간부문 매쉬업 강화
 - * 매쉬업(Mashup) : 각종 데이터와 콘텐츠 등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웹 서비스를 창조함

- 농촌체험관광의 대국민 수요 충족을 위한 오픈 캐스트 등 운영
 - 블로그 및 카페 확대 운영, 농촌체험관광 정기 온라인 구독을 위한 오픈 캐스트 운영

* 오픈캐스트(OpenCast) : 네이버포털 이용자 누구나 관심 정보를 찾아 정기 구독 등 특별한 주제를 공유하는 서비스. 농촌체험관광을 주제로 운영 예정

○ **웰촌포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충(2~12월)**

- 다양한 소재 발굴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콘텐츠 운영
 - 계절, 축제, 농촌 캠핑 등 일시적인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테마를 주제로 신속한 정보 제공
 - 체험여행(30-40대), 전원생활(50대 이상) 등 연령별 관심 콘텐츠 분류에 의한 차별화된 정보 서비스 운영
- 전문화된 외부공급자 그룹 확대 운영 및 농촌체험 영상 서비스 실시
 - 여행작가(농촌마을, 캠핑), 주부 및 여행전문 파워블로거, 웰촌그리미(부서 자체 여행 안내)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여행테마 및 농어촌스토리 지속 보강
- 학습과 연계 또는 이색체험에 대한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등 서비스 실시

○ **웰촌포털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2~12월)**

- DB, 솔루션 등 S/W, 서버, 장비 등 H/W 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사용 등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시민, 농어촌주민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보조(농특)
- 지원조건 : 민간보조(국고100%)
- 지원내용 : 농어촌 체험마을 및 정주지원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웰촌포털 기능개선, 유지·보수, 콘텐츠 확충, 방문활성화 확대 등
- 법적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878				878			878
2014	878				878			878
(증△감)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해당없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도농교류활성화에 포함						
'14								
'15								
'16								
'1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포털이용자 만족도 (%)	신규	83.1	84	85	86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지 작성 및 설문 *(전반적인 만족도 기여도)	설문조사기관 자료 확인

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1) 개관

□ '14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촌 활력 증진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신청 시·군중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 3년간 5~6억원 이내에서 국비 및 지방비 지원(40개 시군)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2개소, 40억원), 귀농인 및 농촌후계자 체험관(1개소, 10억원), 귀농귀촌 교육, 창업박람회('14.6월, 서울무역전시장) 등 지원
-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활동 및 사업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
 - 농어촌 의료봉사활동 지원
- 농촌 재능기부 : 공모사업(12개 시·군)추진, 스마일재능뱅크 운영관리 및 재능기부 홍보사업 등
- 현장활동가 육성 등 주민 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 '14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9개소) 운영계획 수립('14.2) 및 평가('14.12)
 - '14년 색깔있는 마을(500개소) 추가선정('14.3)

□ 예산 내역

<2014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15,900				15,900	13,000		28,900
귀어귀촌활성화지원			1,000		1,000			1,000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비예산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	3,733				3,733	1,622		5,355
합계	19,633		1,000		20,633	14,622		35,255

<741-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경영인력과	담당자	안종락(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8	이메일	a525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기본계획 p.71)

- 농어촌 이주 의향 형성, 이주 준비와 실행, 정착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농·귀촌 유도
 - 시·군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귀농·귀촌종합센터(농협)」와 연계·협력
 - *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수 : ('01) 880가구 → ('05) 1,240 → ('10) 4,067 → ('11) 10,503
 - * 시·군 전담기구 설치·운영 : ('09) 10개 시·군 → ('10~'13) 35 → ('14이후) 40
- 귀농·귀촌 도시민이 전문지식을 활용,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맞춤형 귀농귀촌교육 추진(1,925명)
 - 귀농귀촌 교육 공모·선정('13.3월) 및 교육 운영(4월~11월)
- 2013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추진(35개 시군)
 - 2013년 신규 시군 공모·선정('13.3월)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추진(2개소)
 - 지방비 확보, 기본계획 수립 추진('14년 준공 예정)
-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개최('13.10월, 서울무역전시장)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상정('13.6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계류(11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귀농귀촌 정보 One-stop 제공(연중)
-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관계자 협의회 개최('14.1월)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지침 개정·통보('14.2월)
- 귀농귀촌 교육 공모과정 운영('14.2월~)
 - 교육기관 담당자 워크숍('14.3월)
-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개최('14.6월, 서울무역전시장)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4.6월)
- 귀농귀촌 교육 공모과정 평가('14.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귀농귀촌 희망자
 - 사업 규모(사업량) : 귀농귀촌교육 2,400명, 박람회 개최 1회,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40개 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개소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15,940백만원
 -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민간경상보조(70~100%)
 - 지원내용 : 귀농귀촌교육, 박람회,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 등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5,190				15,190	12,500		27,690
2014	15,940				15,940	13,000		28,940
(증△감)	750				750	500		1,25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00				13,000		13,000
강원	4개소	4,300				4,300		8,600
충북	4개소	400				400		800
충남	4개소	1,300				1,300		2,600
전북	9개소	900				900		1,800
전남	10개소	4,900				4,900		9,800
경북	7개소	700				700		1,400
경남	4개소	400				400		800
제주	1개소	100				100		2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3,130				57,500		130,630
'13	37/38	14,190 /15,190				11,500 /12,500		27,690
'14	43개소 등	15,940				13,000		28,940
'15	40개소 등	10,500				8,000		18,500
'16	61개소 등	13,700				10,000		23,700
'17	62개소 등	17,800				14,000		31,8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귀농귀촌가구 증가율(%)	129.2	74.2	262.1	126	126	[('12년 귀농귀촌 가구 수-최근 5년 평균 귀 농귀촌 가구수)/최근 5 년 평균 귀농·귀촌 가 구수] × 100]	농식품부 귀농 귀촌실태조사 및 귀농귀촌인 통계

* 전년수준으로 목표치 조성

<74-1-2.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담당자	이명준(사무관)
전화번호	044-200-5463	이메일	lmj10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74. 도시민 및 귀어인력 등 활용 강화(기본계획 p.71)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어·귀촌 유도
 - 연안 시·군에 “귀어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귀어·귀촌종합센터(국립수산물연구원)」와 연계·협력
- 귀어·귀촌자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맞춤형 귀어·귀촌교육 추진(명)
 - 귀어·귀촌 교육 수요조사('13. 3월) 및 교육 실시(4월~11월)
- 귀농귀촌창업박람회 참가('13.10월, 서울무역전시장)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상정('13.6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계류(11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한 귀어·귀촌 정보 One-stop 제공(연중)
- 귀어·귀촌 교육 실시('14. 6월~)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4.6월)
- 귀어·귀촌 활성화지원사업 관계자 협의회 개최('14. 하반기)

4. 관련 사업 내용

가.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사업 내용

- 운영시기 : 2014년도 6월
- 설치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운영방법 : 전문상담가 등 상근인력 배치 및 현장 기술지원 병행
- 주요업무 : 귀어·귀촌가구 대상으로 종합정보 제공 및 양식기술 교육 등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	-	-	-	-	-
2014	1,000	-	-	-	1,000	-	-	1,000
(증△감)	-	-	-	-	-	-	-	-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	-	-	-	-	-	-	-
'14	1개소	1,000	-	-	-	-	-	1,000
'15	1개소	1,050	-	-	-	-	-	1,050
'16	1개소	1,075	-	-	-	-	-	1,075
'17	1개소	1,100	-	-	-	-	-	1,100

5. 성과목표

- 현재 성과지표를 작성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성과목표를 작성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65	40	68	103	134		

※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은 받은 귀어·귀촌인 통계

<742-1 :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담당자	유재중
전화번호	044-201-1590	이메일	yujj86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도농간 취업 및 인력교류 추진('11~'14) (기본계획 p.71)

□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10)

-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는 은퇴교사, 예술가, 기술자 등 도시민·단체를 농어촌 마을·단체와 연결·중개

□ 중개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희망도시민에 대하여 일정기간 연수후 체험·교류를 추진토록 유도

- 취업·봉사분야 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활용모델 발굴·보급
- * 지자체 농업엑스포 등 행사지원, 체험지도, 환경·경관·문화보전활동 등

□ 1사1촌 운동과 더불어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내고향돕기' 운동 전개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사1촌 운동 및 농촌사랑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함
 - 1사1촌 자매결연 참여 증가('12 : 9,627개소 → '13 : 10,446개소)
- 농촌사랑봉사활동신청자(1,519명) 현황(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농촌사랑봉사활동 실적 현황
 - 일손돕기 : 부산 50회 등 전국적으로 129회 3,097
 - 의료활동(마사회특별적립금) : 제주 30회 등 전국적으로 97회, 17,919명 진료, 농촌취약계층 환아지원 9명

- 농어촌 학습도우미방 운영(마사회특별적립금) : 강원, 경남 등 농촌지역 8개 마을 대상으로 32명의 자원봉사자가 초·중학생 233명 학습지도
- 1사1촌 자매결연 10,446개소로 확대
-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활동 및 사업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
 -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을 통한 도시민교육 추진
 - 농촌사랑 의료지원 및 학습도우미방 운영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활동 및 사업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
 - 농어촌 의료봉사활동 지원

<7-4-2.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정석 사무관 이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18 044-201-1562	이메일	leejs@korea.kr yiji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등 활용강화

(2) 도농간 취업 및 인력교류 추진('11~'14) (기본계획 p.71)

□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10)

-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는 은퇴교사, 예술가, 기술자 등 도시민·단체를 농어촌 마을·단체와 연결·중개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촌 활력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동 본격 전개('11.6~)
 -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설명회 등 추진
 -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스마일 재능뱅크와 재능기부팀 운영
 - * 개인, 기업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을 농촌 활력창출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 및 수요자를 온라인상에서 관리하고 지원
 - 농촌 현장포럼 및 마을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 마련('11.10)
 - * 현장포럼 및 마을협의체 운영기준, 구성내용, 추진방향 등
 - 색깔마을 육성 및 농어촌 현장포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활동가 양성('11~'12)
 - * '11년 300명, '12년 671명(중급과정 수료자 60명), 고급과정 개발완료
 - * 시·군 기술센터 및 농어촌공사 직원 등 농어촌마을 업무관련자
 - 색깔 있는 마을 육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운동 연계방안 마련('11.12)
 - * '15년까지 5,000개의 색깔 있는 마을 발굴·육성 목표
 - * '12년은 40개 관련사업(2조원)을 연계
 - 색깔있는 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12.11)
 - * 색깔마을 유형의 다양화, 주민주도 색깔마을 조성, 관련사업 연계방안

-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시상식 개최
 - * 1회(11.12, 700명): 총82점 시상(대통령 12, 국무총리 11, 장관 59), 시상금 678백만원
 - * 2회(12.12, 500명): 총95점 시상(대통령 12, 국무총리 11, 장관 72), 시상금 470백만원
 - * 3회(12.12, 500명): 총98점 시상(대통령 12, 국무총리 11, 장관 75), 시상금 500백만원
- 색깔있는 마을 선정 세부기준 마련, 관련사업 발굴 등 추진
- '색깔 있는 마을' 지원을 위한 마을협의체 및 현장포럼 활성화
 - 농어촌 현장포럼을 위한 자원·역량 진단표 개발
- 색깔마을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역량강화('12.4~11)
 - 37개 마을(105회, 3,282명) 대상 농어촌 현장포럼 시범운영('12.4~10)
 - 거점별 농어촌 활성화지원센터 2개소(강원대,공주대) 시범사업('12.5~12)
 - 핵심주체 6만5천명 선정, 교육체계 및 DB 구축('12.2~11)
- 색깔마을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대상마을 선정('13.4)
 - 색깔 있는 마을 '12년 1,506개포함 3,010개 선정
 - 생활만족형 마을, 고령자활용 사례집 제작·배포('13.2)
- 농촌재능나눔운동 선포식 개최('13.6)
 - 공동대표 : 장관, 중앙일보 대표이사, 금난새 예술감독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협의 P/G 농촌현장포럼 234개소 추진('13.3~12)
 - 농촌현장포럼 포스터 및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13.10)
 - 농촌현장포럼 성과 및 운영우수사례 등 홍보물 제작·배포('13.12)
-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인력인 현장활동가 1,093명 육성('13.3~11)
 -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등 수행
- 색깔마을 육성 광역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구축·운영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9개대학	협성대	강원대	충북대	공주대	경북대	경상대	전북대	목포대	제주대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선정('13.3) 및 운영 평가('13.12)
- 마을 발전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3.6~12)
 - 마을의 유형 및 발전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색깔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지침 보완('13.12)
- 색깔마을 만들기 수기집 등 색깔마을 홍보물 제작·배포('13.12)
- 농촌재능기부 및 홍보사업 추진 실적
 - 재능기부신청자 50천명, 재능요청마을 2,040개(연계 1,488개 마을)('13.12월말 기준)
 - 중앙일보 기획보도 44회, JTBC 등 매체홍보 58회 등 실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 색깔있는 마을(500개소) 추가선정('14.3)
- 농촌 재능기부 공모사업(12개 시·군) 추진
 - 지자체 농촌 재능기부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14.2)
 - 사업추진(3~11월), 모니터링 및 평가(4~12월)
- 농촌현장포럼 추진 ('14 350개소)
 - 대상마을 선정('14.2) 및 현장포럼 추진('14.2~12)
 - 모니터링 실시('14.6~11)
- 마을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실시('13.4~12)
 - 마을실태조사를 통하여 마을의 유형 및 발전단계 등 파악
- '14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14.2) 및 평가('14.12)

4. 관련 사업 내용

- 색깔마을 육성, 농촌 재능기부(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내역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촌마을, 재능기부 수요자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현장포럼(지자체) 350개, 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 농촌재능기부(지자체) 공모사업 12개 시·군
 -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 운영관리 및 재능기부 홍보사업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 3,733백만원(지자체보조 1,622, 민간보조 2,111)
 - 지원조건
 - 주민주도 마을·권역사업 준비지원 : 국고 50%, 지방비 50%
 - 스마일재능뱅크 운영관리, 재능기부 홍보 등 기타 : 국고 100%(민간보조)
 - 농촌 마을대상 : 국고 100%(민간보조)
 - 지원내용
 - 마을·권역사업의 사전준비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농촌 재능기부 사업 지원
 - 농촌 재능기부 참여 활성화 지원 및 홍보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전체)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963	-	-	-	2,963	1,076	-	4,039
2014	3,733	-	-	-	3,733	1,622	-	5,355
(증△감)	770	-	-	-	770	546	-	1,316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마을권역사업 사전준비지원(포럼,센터)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	1,622				1,622		2,344
경기	18	110.3				110.3		120.6
강원	36	170.6				170.6		241.2
충북	30	150.5				150.5		201
충남	55	239.3				239.3		368.6
전북	39	180.6				180.6		261.2
전남	55	239.3				239.3		368.6
경북	55	239.3				239.3		368.6
경남	54	235.9				235.9		361.8
제주	6	49.6				49.6		40.2
세종	2	6.7				6.7		13.4

○ 중기재정계획 (포럼, 센터, 재능기부)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34/234	3,098				1,076		4,174
'14	350/12	3,868				1,622		5,490
'15	386/12	4,105				1,742		5,847
'16	423/12	4,365				1,865		6,230
'17	461/12	4,494				1,994		6,488
'18	500/12	4,626				2,126		6,75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색깔있는 마을 선정(누계)	-	1,506	1,504	500	500	색깔있는 마을 선정 내역	지자체 색깔있는 마을 선정내역
현장포럼 활성화	-	-	37	234	350	현장포럼 운영 결과	지자체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 현황

* 색깔있는 마을은 익년도 3월에 선정

참고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1. 서울특별시

<2-3-1-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서울특별시)>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김지선
전화번호	02-2133-5397	이메일	2jidol@seoul.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2013년 추진 실적

- 27명 20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방향

-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 도모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학자금(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

4. 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규모 : 21명 21,536천원
- 지원범위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 손자녀, 동생이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 지원금액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시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단, 수업료의 경우 분가당 50만원 한도)
- 지원부담 : 시비70%, 구비30%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시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소계			
2013			-		-	37		37
2014			-		-	22		22
(증△감)			-		-	△15		△15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시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합계								
'13	35			-		37		22
'14	21			-		22		22
'15	21			-		22		22
'16	21			-		22		22
'17	21			-		22		22

5.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생수(사업비,백만원)	45(44)	35(37)	35(37)	35(37)	21(22)		

2. 부산광역시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수학습기획과	담당자	김희정
전화번호	051)860-0314	이메일	hjkim12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기숙사생 인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0,000천원
-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 지원 23,000천원
-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5,000천원(특별교부금)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기숙사생 인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0,000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장고
 - 사업 규모(사업량) : 1교 운영
 - 지원금액 및 형태 : 10,000천원, 학교운영비

- 지원조건 : 인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
- 지원내용 : 인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0천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5			43		68
2014						10		10
(증△감)			△25			△33		△58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부산	1					10		1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12	1			28		30		58
'13	1			25		43		68
'14	1					10		10
'15	1					10		10
'16	1					10		10
'17	1					10		1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정·육성 학교 수(교)	1	1	1	1	1	지정·육성 학교 수	내부자료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부산광역시)>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이동규
전화번호	051-888-4814	이메일	dalmaya@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원대상 : 357명
- 사업비 : 461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436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610,400천원
- 지원조건 : 전액 보조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

- 법적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소계			
2013			300		300	161		461
2014			300		300	310		610
(증△감)			-		-	149		149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합계								
부산	436			300		310		61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합계								
'13	473/357			300/300		261/161		461
'14	436			300		310		610
'15	350			240		250		490
'16	330			226		236		462
'17	300			206		214		42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생수	455	420	397	357	436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김윤경
전화번호	051)860-0718	이메일	ykadel@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통학버스 운영 지원(연중) : 28교 45대(강서지역 9교 19대, 기장지역 19교 26대)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통학버스 운영 지원(연중) : 28교 45대(강서지역 9교 19대, 기장지역 19교 26대)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원거리 통학학교 유치원생 및 초·중학교 학생
 - 사업규모 : 45대(28교)
 - 지원금액 : 1,316백만원
 - 지원내용 : 학교소유차량 운행경비(6대) 및 차량 임차료(39대)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학교자체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848	375	1,223
2014						941	375	1,316
(증△감)						93	0	9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교,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학교자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부산	28/45					941	375	1,31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교,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학교자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7/203					3,818	1,988	5,806
'12	15/23					147	488	635
'13	28/45					848	375	1,223
'14	28/45					941	375	1,316
'15	28/45					941	375	1,316
'16	24/45					941	375	1,316

※ 학교 자체 예산은 인근 공기업,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발전기금으로 운영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원학교수(교)	9	10	15	28	28	통학차량 지원학교수	내부자료

3. 대구광역시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보건과(노인건강팀)	담당자	최윤서
전화번호	053-668-3773	이메일	mind077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p> <p>□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방문대상자 등록관리, 직접방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건강인식 제고 및 취약계층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증진 및 개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방문등록관리가구 : 4,301가구
- 세부추진내용

일정	세부추진내용	진행상황
2013. 1 ~ 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명단 읍·면사무소에서 확보	완료
2013. 2	·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서 작성	완료
2013. 3 ~ 5	·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절 강화 타이치 운동교실 운영	완료
2013. 7 ~11월	· 낙상예방 세라밴드운동교실 운영	완료
2013. 1 ~ 12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스크리닝, 신규등록 ·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등록관리 및 건강서비스 제공 ·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계속
2013. 4 ~ 12	· 방문대상자 집중관리 등록 및 서비스 제공	완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방문등록관리가구 : 4,500가구
- 세부추진실적

일정	세부추진계획	비고
2014. 1 ~ 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명단 업·면사무소에서 확보	
2014. 2	· 2013년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 및 2014년 통합건강증진 사업(방문건강관리) 계획서 작성	
2014. 3 ~ 6	· 관절염, 고압, 당뇨 등 허약노인 낙상예방을 위한 세라 밴드 운동 교실 운영	
2014. 1 ~ 12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스크리닝, 신규등록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 및 건강서비스 제공 · 보건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4. 관련 사업 내용

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중 건강위
험군, 질환군
 - 사업 규모
 - ▶ 방문간호사 5명
 - ▶ 방문등록관리가구수 : 4,500가구
 - 서비스 내용
 - ▶ 취약계층 건강실태 조사 및 주기별 방문건강관리
 - ▶ 대상자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등
 -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92	92	92		184
2014				92	92	92		184
(증△감)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달성군					92	92		184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4,301				92	92		184
'14	4,500				92	92		184
'15	4,500				92	92		184
'16	4,500				92	92		184
'17	4,500				92	92		184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방문등록관리가구	3,184 가구	3,929 가구	4,301 가구	4,500 가구	4,500 가구	취약계층 중 방문 등록관리 가구 수	보건소 지역보 건의료정보시 스템 자동집계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과정운영과	담당자	김현우
전화번호	053-231-0211	이메일	hyunwoo@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포산고 교과부 지정 기숙형고교 모델학교 운영('09.4.~'11.12.)
- 포산고 전국 기숙형고교 벤치마킹을 위한 상설 전시설명회장 운영('09.5~)
- 포산고 대구시교육청 지정 기숙형고교 정책 연구학교 운영('10.3.~'12.2.)
- 기숙형고교 포산고 기숙사 증축(288명 정원, '10.12.)
-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 포산고('10년~ '12년), 다사고('11년~'12년)
- 다사고 대구시교육청 지정 기숙형고교 연구학교 운영('11.3.~'13.2.)
- 포산고, 다사고 : 기숙형고교 교육활동운영비 지원('11년, '12년)
- 포산고, 다사고 :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1.2., '12.3.)
- 기숙형고교 다사고 기숙사 신축(200명 정원, '11.8.)
- 학력증진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12.3.~'13.2.)
- 기숙형고교 운영성과평가 및 컨설팅('11.10~12, '12.12.~'13.1.)
 - 2011년 기숙형고교 운영성과평가 : 포산고 최우수학교(A등급) 선정, 인센티브 3,000만원 교과부에서 지원

- 2012년 기숙형고교 운영성과평가 : 포산고 최우수학교(A등급) 선정, 인센티브 3,000만원 교과부에서 지원
- 2012년 기숙형고교 운영성과평가 : 다사고 우수학교(B등급) 선정, 인센티브 2,500만원 교과부에서 지원
- 기숙사생 대상 진로·인성·학력 프로그램 운영('13.3.~12.)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기숙형고교 교육력 제고
 - 학교별 내실있는 진로·인성·학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포산고, 다사고
 - 사업 규모(사업량) : 2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800백만원(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기숙사 운영비 및 기숙사생 대상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 법적근거 :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안)(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2012.10.4.)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800		800
2014						800		800
(증△감)						0		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2					800/800		800/800
'14	2/2					800/800		800/800
'15	2/2					800/800		800/800
'16								
'17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 교육 만족도(%)	51.8	58.36	65	70	75	기숙사생 대상 설문조사	내부자료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상민
전화번호	053-235-0183	이메일	hotmin042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 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 47개교
- 사업기간 : 2013. 3. 1. ~ 12. 31.
- 소요예산 : 224,000천원(교당 400~600만원 지원)
- 추진내용 : 학교폭력예방, 부모역할, 인성 및 생활지도, 자기주도학습 등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 47개교
- 사업기간 : 2014. 3. 1. ~ 12. 31.
- 소요예산 : 155,700천원(교당 270~430만원 지원)
- 추진내용 : 학교폭력예방, 부모역할, 인성 및 생활지도, 자기주도학습 등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47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55,700천원(지방비)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학교폭력예방, 부모역할, 인성 및 생활지도, 자기주도학습 등의 주제로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운영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29조, 제30조, 대구교육방향과 공약이행을 위한 전략과제(Ⅲ-26.평생학습교실운영강화), 2013 교육감지정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계획 알림(평생체육보건과-1827, 2013.3.7.)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24		224
2014						155		155
(증△감)						△69		△69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달성군	47개교					155		155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7개교							
'13	47/47					224		224
'14	47/47					155		155
'15	47/47					155		155
'16	47/47					155		155
'17	47/47					155		15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교평생학습관 지정학교 수	15	16	47	47	47	지정학교 수 / 지정계획 학교 수	대구시교육청 사업운영계획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구광역시)>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담당자	한상훈
전화번호	053-803-3445	이메일	daniel020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원대상 : 383명
- 사업비 : 439천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379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488,000천원
- 지원조건 : 전액 보조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

- 법적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소계			
2013						439		439
2014			146		146	341		487
(증△감)			△99		△99	△210		△309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합계								
대구	379			146		341		48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합계	1,899			829		1,915		1,899
'13	383			245		551		796
'14	379			146		341		487
'15	379			146		341		487
'16	379			146		341		487
'17	379			146		341		48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생수				383	379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달성교육지원청)>

담당부서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노영주
전화번호	053-235-0141	이메일	nyju@edunavi.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직영통학차량 운영교에 차량운영비 11,336천원 지원
(도림초, 논공초)
- 임차통학차량 운영교에 차량임차료 297,073천원 지원
(현풍초, 구지초, 유가초, 용계초, 가창초, 금포초, 동곡초, 하빈초, 반송초)
- 방학 중 및 학기중 토요일 방과후학교 차량 임차료 95,659천원 지원
(유가초, 용계초, 가창초, 금포초, 동곡초, 구지초)

3. 2014년도 추진 계획

- 2013년도 수준으로 학기 중 339,704천원 지원 계획임
- 방학 및 학기 중 토요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102,000천원 지원 계획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버스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대구현풍초등학교, 대구유가초등학교, 대구구지초등학교,
대구하빈초등학교, 대구용계초등학교, 대구가창초등학교,
대구도림초등학교, 대구논공초등학교, 대구금포초등학교,
대구동곡초등학교, 대구반송초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1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100% 442백만원
- 지원내용 :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에게 무료 통학버스 지원
- 법적근거 :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05		405
2014						442		442
(증△감)						37		37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1교/11교					405		
'14	11교/11교					442		
'15	11교/11교					452		
'16	11교/11교					462		
'17	11교/11교					472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무료통학버스 지원 학교수	8교	10교	10교	11교	11교	(통학버스관련예산지원 학교수)/(통학버스 운영 학교수)	해당학교 예산서, 해당학교 차량 등록부

4. 인천광역시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김순심
전화번호	032-440-2713	이메일	jw100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의료시설 및 자원이 없는 도서지역에 대한 병원선 이동진료 실시
- 8,418명 내과, 치과, 순회진료 실시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병원선 이동진료 실시 : 7,000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병원선 운영 도서지역 이동진료)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옹진군 4개면 11개 도서
- 사업 규모(사업량) :
 - 출항횟수 및 진료일수 : 45회 / 120일
 - 목표인원 : 실인원 7,000명 / 연인원 40,0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650,000천원(국비 200,000천원, 시비 450,000)
- 지원조건 : 병원선운영비 350,000천원, 수리비 300,000천원
- 지원내용 : 무의도서 도서 주민에게 내과, 치과, 한방 무료진료
- 법적근거 : 옹진군병원선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관리 운영(보건복지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00					500		600
2014	200					450		650
(증△감)	100					△50		5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00	300				2300		2600
'13	45회/ 7000명	100				500		600
'14	"	200				450		650
'15	"	-				450		450
'16	"	-				450		450
'17	"	-				450		45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내과,한방과,치과 순회진료인원			7,818	8,418	7,000	진료인원	웅진군보건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인천시교육청)>

담당부서	책임교육과	담당자	김수정 장학사
전화번호	032-420-8129	이메일	yuri1800@lc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p> <p>□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p>*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p> <p>*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여부 검토</p>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기숙형고 지정

학교명	설립별	교육부 지정	운영 시작	기숙사 연면적(m ²)	기숙사 규모	
					수용실	정원
강 화 고	공립	2008	2012	8,196.59	130실	428명
강화여고	공립	2008	2012	8,183.59	107실	428명
삼 량 고	사립	2009	2012	3,810.24	33실	150명

- '13년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영역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	
	프로그램 수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수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수	참여학생 수
진로	7	1,221	12	1,666	3	324
인성	10	974	21	4,531	6	394
학력	11	751	7	1,299	3	217
소계	28	2,946	40	7,496	12	935

3. 2014년 운영 계획

- 운영비 교부: 총 1,350,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3교, 35,000천원)
 - 기숙사 운영비(3교, 1,315,000천원)
- 기숙형고 운영 현황 점검: 상, 하반기 2회
- 기숙형고 학교장 및 업무담당부장 워크숍: '15. 1월

-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555		1,555
2014						1,350		1,350
(증△감)						△205		

- '14년 학교별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91명					1,350		1,350
강화고	622명					567		567
강화여고	587명					567		567
삼량고	282명					216		216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강화군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담당자	강혜원
전화번호	930-4114	이메일	riverhw@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강화</p> <p>□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주민 - 사업규모(사업량) : 11기관(학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자체 확보 - 지원조건 : 학교 자체 예산 반영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999. 3 제1회 농업대학 학사운영 실시
- 1999.11.20 강화군조례 『제1613호로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 제정
- 2004.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현재)
- 2006. 3 농업대학원 제1회 학사운영 실시 (관광농업과, 벤처농업과)
- 2007. 농업대학 운영 최우수상 수상
- 2013.12 농업인교육 전국 최우수기관상 수상(농촌진흥청)
- 2013.12 졸업생 누계 농업대학 1,348명, 대학원 391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업대학 신입생 선발 및 입학식 ----- 3월 / 270명
- 기초 및 전문이론 및 실습현장교육 ----- 40주
- 농업대학 동문체육대회 ----- 1회 700명
- 농업대학 및 대학원 해외연수 ----- 각 1회 총50명
- 졸업식 ----- 12월 201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대학 및 대학원 총 3개학과
- 운영기간 : 1~12월
- 사업주체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주관 : 강화군
 - 실시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운영학과
 - 대학 : 환경원예과 80명, 향토자원개발과 44명
 - 대학원 : 농업CEO과 77명
- 법적근거 : 강화군조례 제1613호(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0		30	90	20	140
2014			30		30	97	20	147
(증△감)			-		-	108	-	105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90명, 3개학과	실적/계획		30/30		92/92	20	142
'14	190명, 3개학과			30		97	20	147
'15	190명, 3개학과			30		97	20	147
'16	190명, 3개학과			30		97	20	147
'17	190명, 3개학과			30		97	20	147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대학 및 대학원 총 3개학과
- 운영기간 : 1~12월
- 사업주체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주관 : 강화군
 - 실시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 운영학과
 - 대학 : 환경원예과 80명, 향토자원개발과 44명
 - 대학원 : 농업CEO과 77명
- 법적근거 : 강화군조례 제1613호(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졸업인원/계획인원)*10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졸업율	94	86	94	91		(졸업인원/계획인원)*100	공문

<2-3-1-1.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장세환
전화번호	032-440-4363	이메일	sifox6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원대상 : 407명
- 사업비 : 416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548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607,403천원
- 지원조건 : 전액 보조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농어촌지역 교육 여건개선), 제61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소계			
2013			60		60	687		747
2014			49		49	558		607
(증△감)			△18		△18	△19		△19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합계								
인천	548			49		558		60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합계								
'13	619			60		687		747
'14	548			49		558		607
'15	548			49		558		607
'16	548			49		558		607
'17	548			49		558		60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생수	555	500	498	407	548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담당부서	교육기획관실 (급식지원팀)	담당자	조미경
전화번호	032-440-2177	이메일	mk21happy@korea.kr

1.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2. 2013년말까지 추진실적

- 지원대상 : 535개교 263,711명
- 지원내용 :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의 구입비 차액 지원
- 지원품목 : 친환경 쌀, 한우, 계란
- 총사업비 : 61억원(시 29억원, 군·구 25억원, 학부모 7억원)
- 재원분담 : 초등(시 55%, 군·구 45%), 그외(시 40%, 군·구 35%, 학부모 25%)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무상급식 기관별 재원분담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 친환경 우수농산물 중학교 학부모 부담금 면제로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 우수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차액기준 단가 정액 산정
-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운영

4. 2014년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580개교(시설) 263,423명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중 신청한 학교
- 지원품목 : 친환경 쌀, 한우, 계란
- 지원내용 :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의 구입비 차액 지원
- 총사업비 : 5,523백만원(시 2,920, 군·구 2,407, 학부모 196)
- 재원분담 : 초·중(시 55%, 군·구 45%), 그외(시 40%, 군·구 35%, 학부모 25%)

○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54	7	61
2014						53	2	55
(증△감)						△1	△5	△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비 고
	'10	'11	'12	'13	'14		
인원(명)	249,981	256,427	250,751	263,711	263,423	지원대상 학생수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담당부서	강화교육지원청	담당자	박은아
전화번호	032) 930-7719	이메일	imp0205@ic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강화관내 유·초·중학교 21개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유류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 27백만원('13.1월~2월)
- 비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지원 : 5백만원('13.1월~2월)
- 초등학교 승차지도원 인건비 지원 : 96백만원('13.3월~12월)
-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 829백만원('13.3월~12월)
 - 유,초등학교 임차버스의 경우 임차료에 승차지도원 인건비 포함
- 노후차량교체비 지원 : 82백만원('13.3월~12월)
- 유류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 135백만원('13.3월~12월)
- 비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지원 : 25백만원('13.3월~12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강화관내 유·초·중학교 23개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 유류비 및 관리비 지원 : 165백만원
- 노후차량 교체비 지원 : 90백만원
- 임차료지원 : 859백만원
- 비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지원 : 35백만원
- 초등학교 승차지도원 인건비 지원 : 122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특성상 넓은 학군에 불편한 대중교통, 통학로, 안전 시설 등을 고려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선정
- 사업 규모(사업량) : 유·초·중학교 23개교(유2교, 초 18교, 중 3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271백만원
- 지원조건 : 지방비 100%(교육비특별회계)
 통학방법이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넓은 통학구역에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과 인도 및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학교
- 지원내용 : 노후차량교체비, 통학버스 임차료, 통학버스 기본운영비, 승차지도원 인건비, 비정규직 운전원 인건비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271		1,271
2014						1,310 (계획)		1,310 (계획)
(증△감)						39		39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030		7,030
'13						1,271		1,271
'14						1,310		1,310
'15						1,405		1,405
'16						1,522		1,522
'17						1,522		1,522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통학버스운영비지원	94	94	100	100	100	지원액/학교별신청액	내부자료
노후차량교체지원율	80	80	100	100	100	교체수/내용연수경과차량수	내부자료

5. 광주광역시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담당부서	미래인재교육과	담당자	황정숙
전화번호	062-380-4284	이메일	0823hjs@hanmail.net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강화

□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주민
- 사업규모(사업량) : 11기관(학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자체 확보
- 지원조건 : 학교 자체 예산 반영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평생교육운영 : 11기관(학교) 30명, 6.6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평생교육운영 : 11기관(학교), 35명, 7.0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주민
 - 사업 운영기간 : 2014.1.1. ~ 2014.12.31.(1년간)
 - 사업규모(사업량) : 11기관
 - 지원금액 및 형태 : 자체 확보
 - 지원조건 : 학교 자체 예산 반영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 공공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6.6	
2014							7	
(증△감)	-				-		0.4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0/55						6.6	6.6
'13	30/11						6.6	6.6
'14	35/11						7.0	7.0
'15	40/11						7.5	7.5
'16	45/11						8.0	8.0
'17	50/11						8.5	8.5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17		
농어촌지역 평생 교육활성화	30	35	40	45	50	참여인원/농어인인구	-평생교육운영 연간실적자료

※ 측정산식 교체요구 : 참여 공공시설/농어촌소재 공공시설(학교)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담당자	이종균
전화번호	062-613-3965	이메일	tlgo7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현황('13) : 154명/195백만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규모 : 773명, 889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 고교생 학자금 지속 추진(연중)
- 지원규모 : 191명, 269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교생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191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준농어촌포함)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	-	-	195	-	195
2014	-	-	-	-	-	269	-	269
(증△감)	-	-	-	-	-	△74	-	△7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1	-	-	-	-	269	-	269
동구	3	-	-	-	-	4	-	4
서구	10	-	-	-	-	14	-	14
남구	45	-	-	-	-	61	-	61
북구	33	-	-	-	-	45	-	45
광산구	100	-	-	-	-	145	-	145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96	-	-	-	-	1,341		1,341
'13	205	-	-	-	-	265		265
'14	191	-	-	-	-	269		269
'15	200	-	-	-	-	269		269
'16	200	-	-	-	-	269		269
'17	200	-	-	-	-	269		269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계획대비 지원율	90	90	90	75	90	집행실적 ÷ 집행계획 ×100	광주광역시 자료

<2-3-2-2. 학교 급식비 지원>

담당부서	체육복지건강과	담당자	남광수
전화번호	062-380-4393	이메일	princen@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 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광주광역시 전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14교(초 11, 중 3) 1,793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광주광역시 전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지속적 실시

4.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14교(초 11, 중 3)
 - 지원금액 및 형태 : 1,914백만원, 급식비지원
 -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24	1,069	1,793
2014						827	1,087	1,914
(증△감)						103	18	121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0/70					4,332	5,720	10,052
'13	14/14					724	1,069	1,793
'14	14/14					827	1,087	1,914
'15	14/14					877	1,138	2,015
'16	14/14					927	1,188	2,115
'17	14/14					977	1,238	2,215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급식비지원	.	.	.	1,793	1,914	급식비 지원 학교수	내부자료

5. 울산광역시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부서	보건과 (방문건강팀)	담당자	이미아
전화번호	229-8504	이메일	miaya7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 지자체에서 내과, 한방과, 치과 등 치료 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말함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추진상황

구분	추진업무명 (프로그램명)	시행년도	경로당수	인원	비고
울주군 보건소	한방순회진료	2011년	5개소	314명	
		2012년	5개소	128명	
		2013년	30개소	1,820명	사업방향 변경으로 순회진료 확대

○ 자체평가

- 합동평가 기준 변경으로 기존 사업에 투입 예정이었던 자원을 한방순회진료로 변경하여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목 적
 -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한방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의 폭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기간 : 2014년 1월 ~ 12월
- 목표 : 경로당 등 29개소 1,200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한방순회진료

- 사업내용
 - 기 간 : 2014. 1 ~ 12월
 - 대 상 : 관내 경로당, 복지관의 만성질환자
 - 내 용
 - 침 시술,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
 - 한방관련 건강 상담
 - 한의학적 건강관리법 교육
 - 한방 건강정보 책자 배부 등
 - 인 력 : 한방공중보건 의사 2명, 담당자 2명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 9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7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군비)	기 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	-	-	-	-	0.3	1	1.3
2013	-	-	-	-	-	5.5	-	5.5
2014	-	-	-	-	-	6	-	6
(증△감)						0.5	-	0.5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울주군 보건소	1,200명, 29개소	-	-	-	-	6	-	6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실적/계획)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8	1	22.8
'11	314명/300명					4	-	4
'12	128명/400명					0.3	1	1.3
'13	1,820명/400명					5.5		5.5
'14	1,200명					6		6
'15	1,200명					6		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실적/ 계획)	'12 (실적/ 계획)	'13 (실적/ 계획)	'14		
한방순회진 료인원(명)	314명/300명 (104.7%)	128명/400명 (32%)	1,820명/400명 (455%)	1,200명	실제 진료인 원 수	내부자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과정운영과	담당자	권기희 주무관
전화번호	052-210-5465	이메일	33chance@use.go.kr

1.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기숙형고교('10) 운영학교 1교 운영
- 기숙형고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교, 54,000천원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기숙형고교('10) 운영학교 1교 운영
- 기숙형고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교, 24,000천원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울주군 1교 기숙형고교(남창고)
 - 사업 규모(사업량) : 1교, 24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24,000천원(1교), 자체예산
 - 지원조건 : 학생 1인당 100천원 지원(1교, 총 240명)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54	54
2014							24	24
(증△감)							△30	△3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교육청자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40명, 1교						24	24
울주군	240명, 1교						24	24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교육청자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	150
'13	1교						54	54
'14	1교						24	24
'15	1교						24	24
'16	1교						24	24
'17	1교						24	2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사 운영비 지원	89	98	104	54	24	기숙형고교 1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내부자료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	손혜영
전화번호	052-210-5574	이메일	hyeyoung@us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강화(기본계획 p.27)

□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주민
- 사업규모(사업량) : 53기관(학교+도서관)
- 지원금액 및 형태 : 92백만원, 자체 확보
- 지원조건 : 도서관 및 학교 자체 예산 반영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평생교육운영 : 64기관(학교+도서관), 39,528명, 243백만원
- 학교 평생교육 운영 : 7학급 이상 학교 1강좌 운영추진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평생교육운영 : 53기관(학교+도서관), 16,530명, 92백만원
- 학교 평생교육 운영 : 7학급 이상 학교 1강좌 운영추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주민
 - 사업 운영기간 : 2014.1.1. ~ 2014.12.31.(1년간)
 - 사업규모(사업량) : 53기관(학교+도서관=75기관의 70%)
 - 지원금액 및 형태 : 90백만원, 자체 확보
 - 지원조건 : 도서관 및 학교 자체 예산 반영
 -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 공공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24	119	
2014						106		
(증△감)	-				-	△18	△119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6/265					578	119	697
'13	64/53					124	119	243
'14	53/53					106		106
'15	53/53					116		116
'16	53/53					116		116
'17	53/53					116		11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지역 평생 교육활성화	30	32	34	82.5	37	참여인원/농어인인구	-평생교육운영 연간실적자료 -2010년 통계자료 참고

※ 측정산식 교체요구 : 참여 공공시설/농어촌소재 공공시설(학교+도서관)

<2-1-6-1. 울산시교육복지정책 및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울산시교육청)>

담당부서	재정과	담당자	한미화
전화번호	210-5882	이메일	han3204@us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기본계획 p27)</p> <p><input type="checkbox"/>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p> <p>○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p>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없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위원수 : 17명
- 임기 : 2012. 5. 1 ~ 2014. 4. 30 (2년, 연임가능)
- 기능
 -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복지 및 농산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 회의개최 : 사안발생시
- 예산액 : 1,100천원(수당 등)

4. 관련 사업 내용 : 해당없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회의개최수	0	0	0	0	1	회의 개최수	내부자료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울산광역시)>

담당부서	농축산과(농정팀)	담당자	정연태 주무관
전화번호	052-229-2925	이메일	boston2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현황('09) : 81,705명/801억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 '90년부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87명, 526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 고교생 학자금 지속 추진(연중)
- 지원규모 : 301명, 409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교생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301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준농어촌포함)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	-	-	-	-	526	-	526
2014	-	-	-	-	-	409	-	409
(증△감)	-	-	-	-	-	△192	-	△117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1	-	-	-	-	409	-	409
중구	2	-	-	-	-	3	-	3
남구	0	-	-	-	-	-	-	-
동구	4	-	-	-	-	5	-	5
북구	15	-	-	-	-	20	-	20
울주군	280	-	-	-	-	381	-	381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91	-	-	-	-	2,162	-	2,162
'13	387/387	-	-	-	-	526/526	-	526/526
'14	301	-	-	-	-	409	-	409
'15	301	-	-	-	-	409	-	409
'16	301	-	-	-	-	409	-	409
'17	301	-	-	-	-	409	-	409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계획대비 지원율	90	90	90	100	90	집행실적 ÷ 집행계획 ×100	울산광역시 자료

<2-3-2-2. 학교 급식비 지원(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	이은영
전화번호	210-5595	이메일	dmsdudl@us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 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울주군 전 초등학교 및 면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 39교, 6,015백만원
- 농어촌지역 등 급식비 일부 지원
 - 17교, 1,242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울주군 전 초등학교 및 면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 39교, 6,814백만원
- 농어촌지역 등 급식비 일부 지원
 - 17교, 1,179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울주군 전 초·중·고
 - 사업 규모(사업량) : 56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7,993백만원, 급식비지원

- 지원내용 : 울주군 전 초등학교 및 면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그 외 학교는 식품비 일부 지원
-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9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257		7,257
2014						7,993		7,993
(증△감)						736		736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0/280					39,550		39,550
'13	56/56					7,257		7,257
'14	56/56					7,993		7,993
'15	56/56					8,000		8,000
'16	56/56					8,100		8,100
'17	56/56					8,200		8,2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급식비지원	.	.	.	56	56	급식비 지원 학교수	내부자료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확대(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	재정과	담당자	조희정
전화번호	052-210-5875	이메일	rainbi97@us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확대 지원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통학차량 교체
 - 두서초 : 1대, 82,840천원
- 통학차량 구입
 - 두동초 : 2대, 180,000천원
 - 울산행복학교 : 4대, 560,000천원
- 통학차량 운영비(유류비, 수리비, 안전요원 인건비 등) 지원
 - 두서초 등 10개교(149,819천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추진 일정 : 2014. 1월 ~ 12월
-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 학교수 : 9개교
 - 운영비 내용 : 유류비, 수리비, 안전요원 인건비
 - 지원액 : 385,075천원
- 통합학교 통학비 지원
 - 학교수 : 2개교
 - 지원액 : 13,925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 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지원 대상 : 노후 차량 교체 및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사업량) : 통학차량 지원학교 12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2012(380,000천원),2013(710,000천원),2014(399,000천원)
- 지원조건 : 농어촌 통폐합학교 및 특수학교 통학 차량 지원
- 지원내용 : 노후차량 교체비, 차량 신규 구입비
통학차량운영비(유류비, 수리비, 안전요원 인건비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710		710
2014						399		399
(증△감)	-				-	△311	-	△311

※ 13년도는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차량 신규 구입비 포함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59					1,746		1,746
'13	12/11					710		710
'14	12/12					399		399
'15	12/12					399		399
'16	12/12					399		399
'17	12/12					399		399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학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	9	9	10	12	12	농어촌통학버스 지원 학교 수	내부자료

6. 경기도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경기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담당자	행정7급 노희정
전화번호	031-8008-4414	이메일	hjroh@gg.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 기능 제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기간(2차) : 2010. 1월 ~ 2013. 12월
- 사업량 : 12개소(누계/용인, 이천, 여주)
- 사업비 : 1,308백만원(도비 260, 시군비 916, 자담 132)
- 사업내용
 -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자녀 보육, 방과후교실 운영,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도·농 교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에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을 지원
- 추진 현황
 - 2005년 지방이양 후, 도내 4개소 여성농업인센터에 매년 436백만원 지원
 - 2010년 김포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포기(인근 보육시설 증가로 인한 경영난)로 3개소 여성농업인센터에 매년 327백만원 지원
 - 2013년 여성농업인센터 내 임의사업 및 필수사업 구분 폐지

연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분권세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2개소	1,308		260	916	132	
2010	3개소	327		65	229	33	사업축소(김포 포기)
2011	3개소	327		65	229	33	
2012	3개소	327		65	229	33	
2013	3개소	327		65	229	33	임의사업, 필수사업 폐지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량 : 3개소(용인, 이천, 여주)
- 사업비 : 273백만원(도비 9%, 시군비 81%, 자담 1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인건비, 경상운영비, 부정기 사업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 규모(사업량) : 3개소(용인, 이천, 여주)
 - 지원금액 및 형태 : 273백만원(도비 9%, 시군비 81%, 자담 10%)
 - 지원조건(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자 신청자격)
 - 신규사업자
 - ☞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유시설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시설, 기타 여성농업인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
 - 계속사업자 : 기존센터운영 사업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단체)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인건비, 경상운영비, 부정기 사업비)
 - 법적근거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와 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94	33	327
2014						246	27	273
(증△감)						△ 48	△6	△54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					246	27	273
용인	1					50	5	55
이천	1					98	11	109
여주	1					98	11	109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3/3					294	33	327
'14	3/3					246	27	273
'15	3/3					246	27	273
'16	3/3					246	27	273
'17	3/3					246	27	273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3	3	3	3	3	운영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개소수	예산편성 및 정산자료

<2-3-1-1.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경기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담당자	행정7급 노희정
전화번호	031-8008-4414	이메일	hjroh@gg.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0)

(1)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및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기간(2차) : 2010. 1월 ~ 2013. 12월
- 사업량 : 22,170명(31개 시군)
- 사업비 : 25,679백만원(도비 8,704, 시군비 17,975)
- 사업내용 : 농업인에게 고교생자녀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추진현황
 - 2005년 지방이양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도비 30%, 시비 70% 사업비 구성
 - 2011년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조건 강화(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인 자)

연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분권세	도비	시군비	
계	22,170명	25,679		8,704	17,975	
2010	7,830명	8,166		3,450	5,716	도30%, 시군70%
2011	5,815명	7,440		2,232	5,208	제한조건 마련
2012	4,628명	5,484		1,645	3,839	
2013	3,897명	4,589		1,377	3,212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량 : 4,111명(31개 시군)
- 사업비 : 4,158백만원(도비 20%, 시군비 80%)
- 지원내용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교생자녀를 가진 농업인
- 사업 규모('14년) : 4,111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4,158백만원(도비 20%, 시군비 80%)
- 지원조건 : 농촌에 거주하고, 고교생자녀를 가진 전업적 농업인으로, 연간 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일 것
- 지원내용 : 고교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180		4,180
2014						4,158		4,158
(증△감)						△ 431		△ 431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3,897					4,589		4,589
'14	4,111					4,158		4,158
'15	4,111					4,158		4,158
'16	4,111					4,158		4,158
'17	4,111					4,158		4,158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11					4,158		
수원시	20					28		
성남시	17					24		
부천시	1					1		
용인시	190					191		
안산시	35					35		
안양시	1					1		
평택시	250					252		
시흥시	19					26		
화성시	290					292		
광명시	1					1		
군포시	2					3		
광주시	131					134		
김포시	176					177		
이천시	452					455		
안성시	218					222		
오산시	3					4		
하남시	35					35		
의왕시	11					18		
여주시	460					439		
양평군	395					398		
과천시	14					19		
고양시	107					108		
남양주시	185					186		
의정부시	4					6		
파주시	233					235		
구리시	1					1		
양주시	172					173		
포천시	340					343		
동두천시	18					19		
가평군	150					151		
연천군	180					18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7,830	5,815	4,628	3,897	4,111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인수(연평균)	예산편성 및 정산자료

< 2-3-2-2. 자영농고 급식비 지원(경기도)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담당자	행정7급 노희정
전화번호	031-8008-4414	이메일	hjroh@gg.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0-31)

(2) 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자영농고 급식비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젊고 우수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기간(2차) : 2010. 1월 ~ 2013. 12월
- 사업량 : 1개 학교(450명)
- 사업비 : 2,554백만원(분권세 68, 도비 1,180 교육청 1,047 자담 259)
- 사업내용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재학생 급식비 지원
- 추진현황
 - 2005년 지방이양하여, 여주자영농고 재학생에 대해 급식비(1일 3식) 지원

연도	사업량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비고
		계	분권세	도비	교육청	자담	
계	1,350명	2,554	68	1,180	1,047	259	
2010	420명	491	14	232	147	98	1식 지원단가 1,900원
2011	450명	667	18	316	300	33	1식 지원단가 1,900원
2012	450명	667	18	316	300	33	1식 지원단가 2,300원
2013	450명	729	18	316	300	95	1식 지원단가 2,700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량 : 1개 학교(450명)
- 사업비 : 907백만원(분권세 2.5% 도비 43.7%, 교육청 50% 자담 3.8%)
- 지원내용 : 여주자영농고 재학생에 대해 급식비(1일 3식) 지원
 - 1식 지원단가 : 3,200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소(450명, 여주자영농고 현재 정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907백만원(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지원내용 : 여주자영농고 재학생에 대해 급식비(1일 3식) 지원
- 법적근거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경비의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10	170	880
2014						873	34	907
(증△감)						239	△61	178

- '14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					873	34	907
경기	1					873	34	90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					634	95	729
'14	1					873	34	907
'15	1					873	34	907
'16	1					873	34	907
'17	1					873	34	90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개소수	1	1	1	1	1	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개소수	예산편성 및 정산자료

7. 강원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강원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홍인숙
전화번호	033-249-2674	이메일	dolpariho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도내 산부인과 없는 군 지역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임신부 산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임신부 건강보호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2. 2013년 말까지 추진 실적

- 찾아가는 산부인과 추진계획 수립 : '13. 1월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3. 12월
- 임신부 산전관리 진료 실적 : 1,925건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찾아가는 산부인과 추진계획 수립 : '14. 1월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4. 12월
- 찾아가는 산부인과 모니터링 : 4회
- 검진일정 : 5개군 대상으로 월2~3회 순회 검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5개군 임신부(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사업 규모(사업량) : 2,300건
 - 위탁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 검진반 : 5~6명(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
 - 사업내용 : 임신부(산전진찰, 뇨·혈액검사, 태아기형아·초음파 검사 등)
 - 예 산 : 410백만원(도비 123, 시군비 287)
 -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10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10		410
2014						410		410
(증△감)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00					410		410
정선군	460					82		82
양구군	460					82		82
인제군	460					82		82
고성군	460					82		82
양양군	460					82		82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125					2,050		2,050
'13	1,925					410		410
'14	2,300					410		410
'15	2,300					410		410
'16	2,300					410		410
'17	2,300					410		41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인원	558	2,440	2,222	1,925	2,300	진료인원/계획인원*100	진료실적(월보)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강원도)>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당자	이미아 주무관
전화번호	033)249-2612	이메일	leeyun3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2개소/218백만원 * 그동안 추진실적('02~'13) : 3개소 / 3,356백만원
- 여성농업인의 교육·문화활동, 고충상담 및 복지활동 추진으로 삶의 질 개선
- 농어촌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으로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완화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 취미교실 운영, 교양강좌, 여성농업인 동아리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를 여성농업인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활용
 - 지역연계 단체활동, 전통문화 보존계승, 도·농 교류사업 추진
 -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 이주여성·귀농여성 맞춤형 교육 및 모임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며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영유아보육시설 및 방과후 아동학습 지도시설을 확보한자.

- 사업량 : 2개소(황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양구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 사업비 : 220백만원(도비 33, 시군비 165, 자부담 22)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분권교부세 포함) 75%,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기타 제잡비 등 지원
- 법적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동법 시행령 및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86	32	218
2014						198	22	220
(증△감)						12	△10	2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2					186	32	218
'14	2					198	22	220
'15	3					297	33	330
'16	3					297	33	330
'17	4					396	44	44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11월)	'14(목표)		
고충상담	282	240	291	279	300	상담인원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실적보고서
영유아보육	5,071	4,447	6,882	5,074	6,900	어린이집 운영인원	
방과후 학습지도	8,074	8,192	6,380	5,329	6,500	방과후 학습지도 인원	
문화프로그램운영	8,295	5,355	8,971	8,068	9,000	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강원교육청)>

담당부서	책임교육과	담당자	강대현 주무관
전화번호	033-258-5432	이메일	kangdh@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1단계('08) 지정학교 11교 운영
- 2단계('09) 지정학교 7교 추가운영
- Nie 활용교육 지원(18교, 90,198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8교, 1,200,000천원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Nie 활용교육 지원(18교, 90,198 천원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8교, 1,200,000천원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11개군, 기숙형고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8교, 1,98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기숙사 운영비는 학교에 계상
 - 지원조건 : 기숙사 정원×12개월×10만원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 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및 급식비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420	3,420
2014							4,293	4,293
(증△감)							873	87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80명, 18교						4,293	4,293
홍천군	330명, 3교						709	709
횡성군	268명, 2교						619	619
영월군	144명, 1교						310	310
평창군	120명, 1교						258	258
정선군	108명, 1교						232	232
철원군	354명, 3교						760	760
화천군	72명, 1교						155	155
양구군	200명, 2교						429	429
인제군	174명, 2교						370	370
고성군	104명, 1교						223	223
양양군	106명, 1교						228	228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592	20,592
'13	18교/18교						3,420	3,420
'14	18교						4,293	4,293
'15	18교						4,293	4,293
'16	18교						4,293	4,293
'17	18교						4,293	4,293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사 운영비 지원	37,845	2,150	3,009	3,420	4,293	기숙형고교 18교 운영비 지원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진흥과	담당자	김요안 주무관 안선희 주무관
전화번호	033-258-5532	이메일	yoan6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완료)
 -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 22개관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완료)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 279개교
 - 지원액 : 3,518,197천원(교당 12,62천원)
 - 배치시기 : 2013년 3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 22개관
 - 운영기간 : 2014년 1월~12월
 - 대상 : 유아·학생·학부모

-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 279개교
 - 지원액 : 4,311,911천원(교당 15,454천원)
 - 2014년 4월중 배치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강원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22개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76		476
2014						403		403
(증△감)						△73		△7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403		403
춘천시	2					42		42
원주시	2					42		42
강릉시	2					42		42
동해시	1					16		16
속초시	3					58		58
태백시	1					16		16
삼척시	1					26		26
홍천군	1					16		16
횡성군	1					16		16
영월군	1					16		16
평창군	1					16		16
정선군	1					16		16
철원군	1					16		16
화천군	1					16		16
양구군	1					16		16
인제군	1					16		16
고성군	1					16		16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88		2,088
'13	22/22					476		476
'14	22					403		403
'15	22					403		403
'16	22					403		403
'17	22					403		403

나.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지원 노력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지원 : 279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4,311,911천원(교육비특별회계)
-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518		3,518
2014						4,312		4,312
(증△감)						794		79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9					4,312		4,312
춘천시	42					630		630
원주시	47					705		705
강릉시	34					510		510
동해시	16					240		240
속초시	19					285		285
태백시	12					180		180
삼척시	13					195		195
홍천군	13					195		195
횡성군	8					120		120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영월군	9					135		135
평창군	14					210		210
정선군	12					180		180
철원군	12					180		180
화천군	5					75		75
양구군	7					105		105
인제군	9					135		135
고성군	7					105		105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766		20,766
'13	279/279					3,518		3,518
'14	279					4,312		4,312
'15	279					4,312		4,312
'16	279					4,312		4,312
'17	279					4,312		4,31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2	22	22	22	22	평생학습관 수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361	355	284	279	279	배치 학교 수	

6.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 학생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학교도서관 개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강원도교육청)〉

담당부서	책임교육과	담당자	오문석 주무관
전화번호	033-258-5433	이메일	oms83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기본계획 p27)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발전협의회 운영(4개 지역교육청)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4개 지역교육청)
-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위원회(협의회) 운영(7개 지역교육청)
- 2013년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교육경비보조금 포함) 현황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외 480개 사업(17개 지역교육청, 70,924,921천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교육발전협의회 운영(5개 지역교육청)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4개 지역교육청)
-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위원회(협의회) 운영(8개 지역교육청)

4. 관련 사업 내용

가.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 사업 내용
 - 사업주체 : 17개 지역교육청
 - 사업규모 : 연 1회 이상
 - 사업내용 :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추진근거 : 강원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규칙,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비	광특 예	기타회계 산	기금등 사	소계 업			
2013								
2014								
(증△감)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청)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							
춘천시	1							
원주시	1							
강릉시	1							
속초양양	1							
동해시	1							
태백시	1							
삼척시	1							
홍천군	1							
횡성군	1							
영월군	1							
평창군	1							
정선군	1							
철원군	1							
화천군	1							
양구군	1							
인제군	1							
고성군	1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5청/17청							
'14	17청							
'15	17청							
'16	17청							
'17	17청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	17	17	14	15	17	각 지역교육청 연 회 이상 협의회 개최 여부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강원도)>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당자	이미아 주무관
전화번호	033-249-2612	이메일	leeyun3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현황(~13) : 111,065명/604억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도시에 비해 상대적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자녀에 대해 학자금 지원
- 도내 18개시군 3,900명에 3,133백만원 지원(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도내 18개 시군 3,500명(2,800백만원)지원 계획
 - 추진계획 :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정(2월), 학자금 교부(매분기)

4. 관련 사업 내용

□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업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3,5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2,800,000천원(일반회계-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85%[분권포함]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133(계획)		3,133
2014						2,800(계획)		2,800
(증△감)						△33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강원	3,500명					2,800		2,8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3,900/3,900					3,133/3,133		
'14	3,500					2,800		
'15	3,500					2,800		
'16	3,500					2,800		
'17	3,500					2,8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자금지원학생수	4,885/ 5,183	4,028/ 4,000	3,609/ 5,000	3,900	3,500	(학자금지원학생수계 획 학생수)×100	정산결과보고서

<2-3-2-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강원도)>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당자	이미아 주무관
전화번호	033-249-2612	이메일	leeyun3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도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연간 195일 급식비 지원 : 1인당(1일) 기숙사생 7,800원(3식), 비합숙생 2,600원(1식)

* '지금까지 추진실적('83~'13) : 7,770명 / 4,463백만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자영농과생의 교육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
- 도내 3개 학교 290명(기숙 120명, 비기숙 170명) 268백만원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미래 농업인력인 자영농과생의 교육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
- 농업인 후계세대 육성 및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 정착 유도
 - 도내 3개학교(춘천농공고, 홍천농고, 주천고) 290명(합숙120, 비합숙170) 268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확정(2월), 보조금 진출(도→ 교육청→학교) 4월, 9월

4. 관련 사업 내용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업계고교 자영농과생(춘천농공고, 홍천농고, 주천고)
- 사업 규모(사업량) : 290명(합숙 120, 비합숙 170)
- 지원금액 및 형태 : 268,000천원(일반회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50%[분권포함], 교육청 50%

- 지원내용 : 연간 195일 급식비 지원
- 법적근거 : 대통령지시사항('84.11.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2005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도에서 직접 추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34	134	268
2014						134	134	268
(증△감)						-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강원	290명					134	134	268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교육청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90/290					134	134	268
'14	290					134	134	268
'15	290					134	134	268
'16	290					134	134	268
'17	290					134	134	268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급식비지원학생수	342/370	370/370	329/370	290	290	(급식비지원학생수/계획 학생수)×100	정산결과보고서

<2324 통·폐합학교 통학차량을 활용한 고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귀가 지원(강원도)>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	남철주무관
전화번호	033-258-5455	이메일	namcheol@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고등학생 방과후(야간) 차량 지원
 - 대상 : 원주 부른고 외 17교
 - 집행액 : 290,716천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고등학생 방과후(야간) 차량 지원
 - 대상 : 원주 부른고 외 17교
 - 집행액 : 330,321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통·폐합학교 통학차량 활용도 제고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방과 후 교육활동 후 밤 10시 이후부터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일찍 끊겨 귀가 수단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고등학교 18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330,321천원(자부담)
 - 지원조건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에 지원한 통학차량을 방과후 교육활동에 활용 가능한 고등학교
 - 지원내용 : 일용직 운전원 인건비, 4대 보험, 유류비 지원
 - 추진근거 : 연도별 고등학교 방과후(야간) 차량지원 계획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91	291
2014							331	331
(증△감)							40	40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교						331	331
원주시	1교						13	13
속초양양	1교						49	49
삼척시	3교						40	40
홍천군	2교						48	48
횡성군	1교						17	17
영월군	1교						16	16
평창군	1교						2	2
정선군	1교						13	13
철원군	1교						12	12
화천군	1교						7	7
인제군	4교						101	101
고성군	1교						13	13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0교						1,615	1,615
'13	18교						291	291
'14	18교						331	331
'15	18교						331	331
'16	18교						331	331
'17	18교						331	33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차량지원학교수	17교	15교	18교	18교	18교	(지원학교수/계획 학교수)×100	연도별 자원계획서 및 지원내역

6. 기대효과

- 야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방과후(야간) 교육활동 후 교통 편의 제공으로 교육여건 개선
- 통·폐합학교 지원차량 활용도 제고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증가 및 교육 효과 증대

<7-1-2. 역량강화 교육품질 제고(강원도청)>

담당부서	농업경영(팀)	담당자	김동식 주무관
전화번호	033-249-2706	이메일	kingfarmer@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역량강화교육 품질 제고(기본계획 p.68)

□ 도농교류·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교육과정' 인증 활성화

-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우수 교육소프트웨어 개발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인증을 통해 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를 양성하는 우수 민간교육기관 육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도농교류 교육과정 운영('12~'13) : 167명, 288,750천원
 - (2012) 농어촌체험지도사 45명, 농어촌마을해설가 42명 / 109백만원
 - (2013) 농어촌체험지도사 51명, 농어촌마을해설가 29명 / 104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도농교류 교육과정 운영('14) : 100명, 130,000천원
 - 교육기간 : '14. 8. 18 ~ 9. 30(과정별 기간중 90시간 집합교육)
 - 교육장소 : 농어촌체험지도사 - 횡성 사재산마을(안흥면 상안2리)
농어촌마을해설가 - 횡성 산채마을(둔내면 삼교1리)
 - 교육기관 : (주)지역활성화센터 - 강원도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기관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역량강화 교육품질 제고(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양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 사업 규모(사업량) : 1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30,000천원(도비 39,000, 시군비 78,000, 자부담 13,000)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문 체험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
 - 법적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94	10	104
2014						117	13	130
(증△감)						23	3	26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7	13	130
강원	100					117	13	13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62	58	624
'13	80/100					94	10	104
'14	100/100					117	12	130
'15	100/100					117	12	130
'16	100/100					117	12	130
'17	100/100					117	12	130

나.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교육기관 선정) ↔ 시군(교육생 선발 및 보조금 교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교육수료 인원			87%	80%		교육수료 인원 / 목표인원	교육결과 및 정산내역

8. 충청북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충청북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정인영
전화번호	220-3122 220-3123	이메일	kala7020@korea.kr mento92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사업 강화 : 년 69천가구, 2,680백만원
 - 방문보건관리사 125명 확보, 보건소별 방문보건팀 운영
- 취약지역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대상지역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군(괴산군, 단양군)
 - 충주의료원에 산부인과팀 구성, 정기 이동진료 서비스 실시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방문건강관리 추진실적(계속)
 -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계층 : 74,535가구 등록관리 / 273천회
 - 사업담당자 교육 :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 125명
 - 중증장애인 및 이동 가능 장애인 대상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계속)
 - 산부인과 없는 군 : 2개 군(괴산군, 단양군)
 - 진료실적 : 783명(실인원 117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중점관리 추진
 -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계층 : 69,000가구 등록관리 / 280천회
 - 사업담당자 교육 :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125명
 - 중증장애인 및 이동 가능 장애인 대상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2개 군(괴산군, 단양군)

○ 추진일정

주요업무	'10	5개년('10~'14) 계획					비고
		'10	'11	'12	'13	'14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	계속 사업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	

4. 관련 사업 내용

가.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내의 주민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등 건강위험군 등
- 중점 관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세대, 장애인, 거동불편자, 결혼이민자, 그 외 만성질환자 등
- 사업규모(사업량) : 13개소 / 방문건강관리사 125명
- 사업비 : 2,680천원(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 집계 및 분석·평가
- 보건소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기술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취약계층, 노인정 등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제공
- 중증장애인 및 이동 가능 장애인 대상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제공
- 암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취약계층 암 예방관리
- 방문건강관리사 전문 인력 확보 : 125명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554	1,554	1,554		3,108
2014				1,340	1,340	1,340		2,680
(증△감)				△214	△214	△214		△428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개소				1,340	1,340		2,680
도					-	-		-
청주	2개소				200	200		400
충주	1개소				123	123		246
제천	1개소				116	116		232
청원	1개소				164	164		328
보은	1개소				94	94		188
옥천	1개소				129	129		258
영동	1개소				58	58		116
증평	1개소				56	56		112
진천	1개소				101	101		202
괴산	1개소				98	98		196
음성	1개소				108	108		216
단양	1개소				93	93		18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905	6,904		13,809
'13	13개소				1,545	1,544		3,089
'14	13개소				1,340	1,340		2,680
'15	13개소				1,340	1,340		2,680
'16	13개소				1,340	1,340		2,680
'17	13개소				1,340	1,340		2,680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12개 시·군)
- 사업시행 절차 : 지출한도액 통보(보건복지부)→사업계획서 제출(도, 시군)
→ 국고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검토(보건복지부) →
사업 추진(도, 시·군)

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 및 가임여성
- 사업량 : 2개군(괴산군, 단양군)
- 사업비 : 48,000천원(도비 100%)
- 운영방법 : 충청북도 중주의료원(위탁운영)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팀 구성·추진
 - 진료횟수 : 월 4회(군별 월 2회 방문)
 - 산전 진찰 횟수 : 1인 총 14회 정도
 - 주요 검사항목 : 산전기본검사(13종), 선택검사(10종), 정기검사(2종)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80		80
2014						48		48
(증△감)						△32		△32

- '14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개소					48		48
도						48		48

○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2개군)

추진주체		역할
도	보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 - 정기적 점검 및 관리
관할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임신부 현황 파악, 보건소 등록 관리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 장소제공 협조 · 개인별 진료일정 관리 및 안내 - 유소견자 통보 시 즉시 전문병원 연계 조치 - 사업 시행, 홍보 및 사후관리 - 기타 진료에 필요한 사항 협조 - 관내 임신부 현황 파악 및 실적보고 - 임신부 진료일정 관리 및 안내 - 사업시행 및 지역주민 홍보
충주의료원	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 및 협약서에 의한 사업추진 - 진료일정 보건소 통보 및 사후관리 안내 - 유소견자 관리 : 보건소 통보 및 협력병원 연계 - 산전 진찰완료 후 분만 시 병원연계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시행 및 홍보 - 성교육 및 낙태예방 홍보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방문등록관리가구수	65,000	66,000	67,000	68,000	69,000	사업실적	보건복지부 실적보고 자료
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	3개군	2개군	2개군	2개군	2개군	충주의료원 실적보고	실적보고자료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충청북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김유리
전화번호	220-3523	이메일	quctwls081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 개소수 : 3개소
- 사업비 : 420백만원(개소당 140백만원) → 도비 63백만원 시군비 315백만원 지담 42백만원
 - 고충상담(년/건) : 1월~12월(633건, 계속)
 - 영유아 보육활동(명/일평균) : 1월~12월(60명, 계속)
 - 방과 후 학습지도(명/일평균) : 1월~12월(35명, 계속)
 - 교육 및 문화 활동(년) : 1월~12월(14,721명, 계속)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 개소수 : 3개소
- 사업비 : 435백만원(개소당 145백만원) → 도비 66백만원 시군비 326백만원 지담 44백만원
 - 고충상담실 운영(년/건) : 1월~12월(620명)
 - 영유아 보육활동(명/일평균) : 1월~12월(47명)
 - 방과 후 학습지도(명/일평균) : 1월~12월(32명)
 - 교육 및 문화 활동(년) : 1월~12월(8,550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내 여성농어업인 센터
- 사업 규모(사업량) : 3개소(청주·청원·영동 여성농어업인센터)
- 지원금액 및 형태 : 435백만원(개소당 145백만원)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75%(분권 50% 포함), 자담 10%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사업비
-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78	42	420
2014						392	43	435
(증△감)						14	1	15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							
청주	1					130	15	145
청원	1					130	15	145
영동	1					130	15	145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3/3					378/378	42/42	420/420
'14	3					392	43	435
'15	3					392	43	435
'16	3					392	43	435
'17	3					392	43	435

나.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3개 시장·군수(청주, 청원, 영동)

5. 성과목표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345	390	420	420	435	개소당 사업비	시·군 (내부자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충청북도교육청)>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담당자	최시선
전화번호	043)290-2146	이메일	musim21@cb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여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운영현황) 13개 시도 150교 운영 : 충북 13교
- (예산지원) 시설비 총 5,551억원 등 운영비 지원
- 연구학교 40개교, 모델학교 25개교 운영('09~'12년)
- 성과 평가 및 현장 컨설팅 실시
 - 전체 기숙형고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현장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 ('12 성과평가) 우수학교 65교 선정, 인센티브 1,475백만원 지원
 - ※ 충북 : A등급 1교, B등급 3교, C등급 2교 총 75백만원 지원
- 기숙형고교의 운영성과 분석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
 - 운영성과 분석 : 150교(충북 13교)
 - 맞춤형 현장 컨설팅 : 최근 3년간 컨설팅 미실시교
 - ※ 충북 : 괴산고, 옥천고, 진천고, 청원고, 영동고, 단양고 총 6교
 - 연구용역 : 전북대 박세훈 교수팀
 - 기간 : 2014년 1~2월
- 예산 지원(2013년) : 13교, 1,229,600천원
 - 기본운영비 13교 851,60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378,000천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기숙사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내고장 지역 인재 육성
-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방향, 학교여건 분석 및 특성화 운영 전략 등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2008년 이후 계속
- 사업 주체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 사업 대상 : 단양고 등 충북 13교
- 추진 내용
 - 2014. 1월, 기숙사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지원

구 분	지원 내역(천원)	금액(백만원)	재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	-교당 3500만원*13교 -학생 1인당 200천원	852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운영비 : 378,000천원 (기숙사 학생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378	자체
계		1,230	

- 기숙형고교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지도
-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에 따른 우수학교로 선정
 - 전국 기숙형고교 150교 대상 현장 컨설팅 후 우수학교 선정
 - 우수교 현황(2012년)

등 급	학교수	학교명	비고
A등급	1교	제천여고	
B등급	3교	청원고, 음성고, 충주여고	
C등급	2교	형석고, 충원고	
소 계	6교		

- 업무담당자 마인드제고를 위한 연수
 - 2013.전국 기숙형고교 학교장 및 시도 담당자 워크숍 1회
- 기숙형고교 발전 유공 장관 표창
 - 충북 1명 : 청원고 기숙형고교 업무 담당자(교사 어성중)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0년 이후 기숙사 운영비 지속적 지원
- 기숙형고교 프로그램 관리 및 기숙사 시설의 체계적 관리 추진
- 기숙사 업무전담 교사(사감) 승진 가산점 부여 : 월 0.015점
-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권고

<'14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14	13(운영비)					1,230		1,230

4. 추진실적

<'13년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특교)	기금등			
'13	13교 (운영비)					852		1,230
	13교 (프로그램)					378		

5. 성과목표 달성도

- '1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운영	기숙사 생활	만족도	%	83	86	104
	기숙사 충원율	입사 학생수	명	1,983	1,937	97.7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충청북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윤명희
전화번호	043-220-2145	이메일	shineymh@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기본계획 p.22)

□ 농어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확산, 도농교류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지역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 연구용역('09.12)을 토대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회사 모델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육성방안 마련('10)

4-2. 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3) 농어촌 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 및 다각화(p.47)

□ 체험·휴양사업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도농교류형 '농어촌공동체 회사'로 발전토록 유도

- 농가 레스토랑, 체험학교, 마을문화공방 등 소규모 경영모델 발굴·육성

* 농업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도농교류형 농어촌공동체회사 100개소 발굴

2. 2013년 말까지 추진 실적

- 2012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완료)

- 기간 : 2012. 4 ~ 11월(8개월)

- 총사업비 : 145백만원

- 주관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정낙형)

- 사업내용 : 4개 분야 35개 프로그램 공모 선정 추진(145백만원)

분야별	건수	지원현황(천원)	비고
고용복지	11	45,000	• 시군별 1개 이상 배분 • 1건당 300~500만원 지원 • 9월까지 9개 프로그램 완료
소외계층	11	45,000	
자기계발	9	35,000	
장애인	4	20,000	

- 2012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추진
 - 기 간 : '12. 6 ~ 12월 / 총사업비 : 150백만원(국비 120, 도비 30)
 - 주 관 : 충북평생교육진흥원(원장 정낙형)
 - 사업내용 : 3개 분야 13개 프로그램 공모 선정 추진(90백만원)

프로그램별	건수	지원액(천원)	비 고
합 계	13	90,000	• 시군별 1개 이상 배분 • 건당 250~750만원 지원 • 9 ~ 12월 프로그램 운영
주민학습 공동체 운영	4	30,000	
전통문화체험 전문가 양성	6	37,500	
소외계층 경제교육 전문가 양성	3	22,500	

*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 교과부 주관 시도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지원

- 2013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공모사업)
 - 사업비 : 110백만원 / 공고 및 접수 : '13. 2. 13 ~ 2. 22
 - 선정결과 : 총 21개 프로그램(성인문해 8, 직업능력 13)

분야별	건수	지원현황(천원)	비 고
합 계	21	110,000	* 프로그램별 2,000~10,000천원 지원
성인문해	8	35,600	
직업능력	13	74,400	

- 컨설팅 : '13. 2. 27 ~ 2. 28 / 제주
-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13. 3. 26 / 11개 시군 / 1.1억원

- 2013 평생교육 실천역량강화사업(교육부 공모사업)
 - 사업기간 : '13. 9 ~ 12월(약 4개월) ※ 공고일 : '13. 8. 30
 - 사 업 비 : 315,000천원(국 300,000, 도 15,000)
 - 공모분야 : 5개 분야
 - 공고기간 : '13. 8. 30 ~ 9. 13
 - 접수결과 : 총 31개 프로그램 ※ 심 사 : '13. 9. 16
 - 선정결과 : 총 26개 프로그램 ※ 컨설팅 : '13. 9. 24

구 분	접수	선정	지원액(천원)	비 고
계	31건	26건	315,000	
행복학습센터(주민자치회) 역량강화	10건	10건	109,000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코칭	1건	1건	40,000	
세대통합 함께하는 인력양성 프로젝트	2건	2건	41,000	
1060 행복누리 프로젝트	1건	1건	10,000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강사 양성과정	17건	12건	115,00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충북건설을 위한 평생교육 과제 발굴·추진
- '14년도 예산 확보액 : 306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통한 참여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도내 시군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 기관 등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 단체
 - 사업규모(사업량) : 306백만원(진흥원 운영비 186, 사업비 120)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군 평생교육기관 단체 대상 공모사업 추진
 - 지원조건 : 도비, 자부담
 - 지원내용 : 기관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후 성과평가 및 정산
 - 법적근거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	-	-	-	-	300	-	300
2014	-	-	-	-	-	306	-	306
(증△감)	-	-	-	-	-	6	-	6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6		306
충북	12개 시군					306		306

※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의 공모에 참가하는 시군에 한해 사업비 지원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06		1,806
'13	12개 시군					300		300
'14	12개 시군					306		306
'15	11개 시군					400		400
'16	11개 시군					400		400
'17	11개 시군					400		4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평생교육 프로그램	-	17	24	47	47	프로그램 지원수	공모사업 추진실적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담당자	김현경
전화번호	043) 290-2897	이메일	qjenddl@cb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기본계획 p27)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 협의회 개최 : 2013. 3. 14. 11:00
 - 안건 : 2013.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종합 계획(안)의 1건 심의
 - 참석자수 : 10명(전체 11명, 당연직 5명, 위촉위원 6명)
-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교육청협의회 구성·운영
 - 10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청주 제외)

3. 2014년도 추진 계획

- 2014년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정기회 운영(연 2회)
 - 상반기 : 2014년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종합 계획 및 지원사업 계획 심의
 - 하반기 : 2013년 선정 사업 추진학교 실적 평가
-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재구성
 - 대상 : 외부 및 위촉위원 6명
 - 임기 : 2014. 5. 14. ~ 2016. 5. 13.(2년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사업 내용
 - 교육여건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재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김유리
전화번호	220-3523	이메일	quctwls081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현황 : 4,000명/40억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
- 전액 도비·시군비으로 매년 고교생 약 3,000명을 대상으로 30억원 수준 지원
 - ※ 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속 지원
 - 지원 규모 : 3,193명, 3,396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 확인 절차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이 경우, 지원 신청은 반드시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이 아닌 나머지 1인(농어업인)이 신청하여야 함.

- 사업 규모(사업량) : 3,193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3,396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분권교부세 44% 포함),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472		2,472
2014						3,396		3,396
(증△감)						△924		△924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93					3,396		3,396
청주	55					70		70
충주	390					391		391
제천	200					200		200
청원	400					584		584
보은	320					320		320
옥천	300					301		301
영동	330					330		330
증평	90					90		90
진천	200					200		200
괴산	308					309		309
음성	480					481		481
단양	120					120		12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536/4,000					1,912/4,028		1,912/4,028
'14	3,193					3,396		3,396
'15	3,000					3,006		3,006
'16	3,000					3,006		3,006
'17	3,000					3,006		3,006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12개 시장·군수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계획대비 지원율(%)	4,987	3,844	3,031	2,536	3,193	집행실적 ÷ 집행계획 =100	시군 (내부자료)

<2-3-2-2.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김유리
전화번호	220-3523	이메일	qudwls0812@korea.kr

[자영 보은농고 급식비 지원]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촌 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보은자영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 ('13) 8.0% → ('14) 20%
- 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급식단가 확대 : ('10) 1,500원 → ('11) 1,700원 → ('12) 1,900원 → ('13) 1,900원 → ('14) 2,450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어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정착 유도
- 도비·교육청·자담으로 매년 자영농과생 280명을 대상으로 2.7억원 수준 지원
 - ※ 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80% 수준을 지원하여 핵심농어업인 후계 세대 육성
 - 지원규모 : 280명, 272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내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28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272백만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50%(분권교부세 23% 포함), 교육청 30%, 자담 20%

- 지원내용 : 자영농고 재학생 급식비의 80%지원
- 법적근거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제12조(경비지원)
 - 대통령지시사항('84.11.3)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06(계획)	106	212
2014						136	136	272
(증△감)						30	30	6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0					136	136	272
보은지역고	280					136	136	272

※ 자부담 : 교육청 지원 30%(82백만원) 포함된 금액임.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80/280					106/106	106/106	212/212
'14	280					136	136	272
'15	280					136	136	272
'16	280					136	136	272
'17	280					136	136	272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충청북도교육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계획대비 지원율(%)	280	280	280	280	280	집행실적 ÷ 집행계획 =100	교육청 (내부자료)

<2-3-2-4.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충청북도교육청)>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담당자	유여중
전화번호	043)290-2898	이메일	yough@cbe.go.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1)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 직영차량 교체, 직영차량 운영비 및 임차비 지원, 승하차실무원 인건비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노후 직영차량 교체 8대
- 직영차량 운영 118대, 임차차량 임차 118대
- 승하차실무원 인건비 118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노후 직영차량 교체 6대
- 직영차량 운영 108대, 임차차량 임차 140대
- 승하차실무원 인건비 108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노후 직영차량 교체 6대, 직영차량 운영 108대, 임차차량 임차 140대, 승하차실무원 인건비 108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교회계전출금 6,318백만원, 승하차실무원 인건비 별도 지원
- 지원조건 : 통·폐합 학교 및 통학불편 학교

- 지원내용 : 노후 직영차량 교체, 직영차량 운영, 임차차량 임차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5,814		5,814
2014						6,318		6,318
(증△감)						504		504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4					6,318		6,318
청주	5					176		176
충주	30					856		856
제천	21					343		343
청원	41					1,390		1,390
보은	25					377		377
옥천	17					491		491
영동	26					502		502
진천	17					465		465
증평	2					52		52
괴산	27					720		720
음성	26					782		782
단양	17					164		164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44/239					5,814		5,814
'14	249					6,318		6,318
'15	249					6,508		6,508
'16	249					6,703		6,703
'17	249					6,903		6,903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면이하 지역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87.8	99.2	100	100	100	면이하 지역 통학차량 지원 초등학교 수 ÷ 면이하 지역 초등학교수	교육통계

9. 충청남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충청남도)>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박종규
전화번호	041-635-4302	이메일	bak452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지역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방문인력 141명)
 - 등록관리 97,145가구에 대하여 방문서비스 제공
- 병원선 도서주민 운항일수(진료일수) 및 진료실적
 - 운항일수 : 186일(진료일수 : 187일)
 - 진료실적 : 235,271명(내과 227,689, 한방 7,205, 치과 377)

3. 2014년도 추진계획

-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체 등록관리(9만 가구)
 - 농어촌지역 및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속 제공
- 의료취약지역 도서 주민을 위한 병원선 활용 이동진료 지속 추진
 - 진료기간 : 2014년 1월~12월
 - 진료일수 : 180일 이상
 - 매월 15일 이상 진료를 원칙으로 운영
(3주진료, 1주 선박정비 및 진료준비)
 - 도서별 진료는 매월 1회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며 300인 이상 3개 도서
(원산도, 삼시도, 외연도)는 진료횟수 확대(월2~4회실시)

4. 관련 사업 내용

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 위험군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 90,000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3,038백만원/ 국고보조·도비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도비보조』 도비 20%, 시군비 80%
- 지원내용 : 농어촌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생활습관 실천 및 건강위험요인관리, 산후건강관리, 허약노인건강관리, 북한이탈주민건강관리, 독거노인건강관리,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계절별 폭염 및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지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430	1,430	1,647		3,077
2014				1,410	1,410	1,628		3,038
(증△감)				△20	△20	△19		△39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사업규모 (가구수)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0,000				1,410	1,628		3,038
천안	15,316				240	270		510
공주	7,660				120	135		255
보령	7,660				120	135		255
아산	8,936				140	155		295
서산	5,745				90	105		195
논산	6,383				100	115		215
계룡	3,192				50	56		106
당진	9,575				150	166		316
금산	3,830				60	74		134
부여	3,192				50	64		114
서천	3,192				50	64		114
청양	1,915				30	36		66
홍성	4,468				70	84		154
예산	5,106				80	95		175
태안	3,830				60	74		134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가구수)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0,000				7,070	8,159		15,229
'13	90,000				1,430	1,647		3,077
'14	90,000				1,410	1,628		3,038
'15	90,000				1,410	1,628		3,038
'16	90,000				1,410	1,628		3,038
'17	90,000				1,410	1,628		3,038

나. 병원선 도서주민 진료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의료취약지역인 28개 도서주민
- 사업 규모(사업량) : 6개 시군 4,151명(남 2,083, 여 2,068)

- 사업비 및 형태 : 664백만원(국고보조, 순도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국비 3/2, 지방비(도비) 1/3, 『자체』 도비 100%
- 지원내용 : 의료 취약계층인 도서지역주민 진료와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관절질환) 및 거동불편 주민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하여 3차 의료기관과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진 진료 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 충청남도병원선운영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지방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00				100	564		664
2014	97				97	567		664
(증△감)	△3				△3	3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진료인원)	지방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94,400	488				2,832		3,320
'13	218,300	100				564		664
'14	218,600	97				567		664
'15	218,900	97				567		664
'16	219,200	97				567		664
'17	219,400	97				567		664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등록관리가구수	104,792	113,758	97,145	90,000	90,000	방문서비스 등록관리 가구수	내부자료
년간진료실적(명)	196,753	218,229	235,271	218,600	218,900	병원선 내원 진료환자	내부자료

※ 연도별 등록관리 가구수 목표치가 감소하는 것은 사업지침 상 방문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가구수 산출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충청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김애화
전화번호	041-635-2513	이메일	dogh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 선정('13.1월)
 - 4개소(서천1, 홍성1, 예산2)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13.2월)
 - 4개소 / 총사업비 130백만원 중 도비 66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추진상황 현지점검('13.10월)
 -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예산 집행 현황,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 선정('14.1월)
 - 도 선정심의회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년도 사업계획, 자격 및 시설조건 등을 평가, 80점 이상 득점자를 지원자로 확정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14.1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추진상황 현지점검('14. 4월 · 10월)
 -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예산 집행 현황,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규모(사업량) : 4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520백만원(개소당 130백만원)
- 지원조건 : 도비 13.5%, 시군비 74.5%, 자부담 12%
- 지원내용 : 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일부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시장·군수)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08	112	520
2014						408	112	520
(증△감)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					408.2	111.8	520
서천	1					114.4	15.6	130
홍성	1					114.4	15.6	130
예산	2					179.4	80.6	26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					2,272/312	428/48	2,700/360
'12	3/3					312/312	48/48	360/360
'13	4					408	112	520
'14	4					408	112	520
'15	5					572	78	650
'16	5					572	78	65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지원개소수 (개소수)	3	3	4	4	5	여성농업인센터수 대비 지원센터수	내부자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충청남도)>

담당부서	학교정책과(학교정책팀)	담당자	송귀원
전화번호	041-640-7112	이메일	zcar2073@cnoe.or.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08년 충남교육청 기숙형 고교 8교 선정 및 기숙사 건립
[교과부 특교금 22,489,500천원 + 교육청 자체 예산 1,200,000천원 지원]
- 2009년 충남교육청 기숙형 고교 9교 선정 및 기숙사 건립
[교과부 특교금 10,886,400천원 + 교육청 자체 예산 12,543,780천원 지원]
- ➔ 2012년말 현재, 충남 기숙형 고교 16교 기숙사 건립 : 완료
- ➔ 2012년 9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립으로 세종고등학교 분리됨.
- 2010년 기숙형고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8교 [교육청 자체 예산 1,350,006천원]
- 2011년 기숙형고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17교 [교과부 특교금 335,000천원]
- 2011년 기숙형고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17교 [교육청 자체 예산 2,053,445천원]
- 2010 ~ 2012년 기숙형고교 연구학교 및 모델학교 운영 : 완료
- 2012년 기숙형고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16교 [교과부 특교금 516,000천원]
- 2012년 기숙형고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16교 [교육청 자체 예산 2,003,404천원]
- 기숙형고교 담당자 연수 실시 [교장, 교감 행정실장, 업무담당자 등]

- 기숙형고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해당 시·군에 기숙사비 지원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2013년말 현재, 12개 해당 시·군 중 3개 기관 (태안군, 아산시, 청양군)
 조례 제정 : 계속
- 2013년 기숙형고교 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 1교
- 2013년 기숙형고교 기숙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16교
 ➔ 교육청 자체 예산[교육청 자체 예산2,503,090천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기숙형고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숙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나머지 9개 해당 시·군에 기숙사비 지원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목적사업비가 아닌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
- 기숙형고교 목적에 맞는 운영(기숙사운영, 프로그램운영) 컨설팅 실시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숙형 고교 운영교
 - 사업 규모(사업량) : 고등학교 [16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보통교부금(학교별 차등 지급)
 - 지원조건
 - ▶ 기숙사 학생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
 - ▶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기숙형 고교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 만들기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
 - 법적근거 : 2013학년도 [기숙형고교] 관련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알림[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재정과-1087(2013.2.21.)]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503		2,503
2014						2,503		2,503
(증△감)						0		0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충청남도)>

담당부서	평생교육행정과 (평생교육담당)	담당자	조 권 호
전화번호	041-640-8211	이메일	jgh@cnoe.or.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평생교육의 장으로 학교 개방
 - 초등학교 422교, 중학교 189교, 고등학교 114교, 특수학교 6교
- 평생학습기관 지원·협력 체제 구축
 -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운영 : 충청남도평생교육원
 - 권역별 지역 평생학습관 운영 : 3권역 14지역 19개 기관
-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시설 이용 우수 프로그램 운영 : 30개 기관
 - 초등학교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개 기관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 173명(일반단원 145명, 명예단원 28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충청남도평생교육원
 - 학습자 수강신청 통합 운영 :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cnall.or.kr)
 - 권역별 대표 평생학습관 중심의 협의체 구성·운영 : 3권역 체제 구축
- 도서관 이용자 고품격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 도서무인대출 자동화시스템(RFID) 운영
 - 공공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 당진도서관 이전 리모델링 등 5개관
 -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시간 연장 운영 : 6개관
-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문해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22개 기관·단체
 - 창의성 함양 학력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교도서관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 관련 사업 내용

가. 학교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 대상 : 학교 및 공공도서관
 - 사업 규모(사업량) : 22개 기관(학교 3, 공공도서관 15, 평생학습관 4)
 - 지원금액 및 형태 : 418백만원
 - 지원조건 :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 지원내용
 - 성인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운영 : 22개 기관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야간 프로그램 운영 : 6개 기관
 -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 15개 기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79		479
2014						418		418
(증△감)						△61		△61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해 당	없 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51/479		
'13						479/479		
'14						418		
'15						418		
'16						418		
'17						418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력인정 문자 해득 교육 운영		6	16	20	22	프로그램 운영 기관수	공문/도교육청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3	4	6	6	6	개관시간 연장 운영 기관수	공문/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16	16	16	15	15	자료 확충 지원 기관수	공문/도교육청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충청남도)>

담당부서	기획관(정책기획팀)	담당자	신 묘 철
전화번호	041-640-6627	이메일	smccam@cnoe.or.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기본계획 p27)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역교육발전지원단 구성 :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총 526명

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인원	36	32	40	50	35	55	30	40	32	24	44	44	34	30	526

- 구성기준

- 학계, 교육관계 종사자
- 도의원, 기초의원
- 운영위원 협의회, 학부모 단체
- 각종 봉사단체 인사 : 노인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 전우회, 장애인 단체, 자율방범대, 새마을 단체 등
- 기타 교육관련 인사 및 단체

- 지역교육발전지원단 협의회 : 총 38회

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계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개최 횟수	1	2	3	2	1	3	2	3	1	1	5	2	7	5	38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14		14			14
2013			7		7			7
(증△감)			-7		-7			-7

- '13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			7			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23/28			21/28			21/28	
'12	497/14			14/14			14/14	
'13	526/14			7/14			7/14	
'14				0			0	
'15				0			0	
'16				0			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 시·군별 교육발전협의회 연간 3회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협의회개최	-	44/15	52/14	38/14	38/14	횟수/시군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충청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김애화
전화번호	041-635-2513	이메일	doghk@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90년부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13년 추진실적 : 22,800명 6,176백만원 지원(지방비 10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2,700명 6,077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규모(사업량) : 22,7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6,176		6,176
2014						6,077		6,077
(증△감)						△99		△99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700					6,077	0	6,077
천안시	1,500					395		395
공주시	2,200					570		570
보령시	1,630					425		425
아산시	1,600					420		420
서산시	1,550					405		405
논산시	1,790					495		495
계룡시	70					17		17
당진시	1,950					530		530
금산군	1,500					395		395
부여군	2,100					560		560
서천군	1,200					305		305
청양군	700					225		225
홍성군	1,710					470		470
예산군	1,800					515		515
태안군	1,400					350		35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0,100					32,507		32,507
'12	29,200					8,100		8,100
'13	22,800					6,176		6,176
'14	22,700					6,077		6,077
'15	22,700					6,077		6,077
'16	22,700					6,077		6,07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지원학생수 (명)	13,119	29,200	22,800	22,700	22,700	사업량(명) 대비 지원실적	내부자료

<2-3-2-2. 자영농수산과생 급식비(충청남도)>

담당부서	수산과	담당자	유재영
전화번호	041-635-4132	이메일	yoo3924@korea.kr

1. 지원배경

- 어촌에 정착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수산인력 양성
 - 젊은이들이 어촌을 떠나는 현실에서 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어촌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어촌후계인력 양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충남해양과학고교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 '13년 추진실적 : 75명 / 55백만원 지원 (분권 50%, 자담 5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원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	분권교부세	자부담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77명	55,000 (100%)	27,500 (50%)	27,500 (50%)	※ 자부담 : 충청남도교육청

- 사업시행요령
 - 지원 대상 :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
 - 급식비 단가
 - 기숙 학생 : 1일/ 3식/ 3,510원/ 1인
 - 비기숙 학생 : 1일/ 1식/ 1,170원/ 1인
- 추진체계
 - 사업주관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자금지원 대상 :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자영수산과 재학생

- 사업시행 : 사업주관기관은 자영수산과 신학기 개학 후 1개월 이내에
본 사업의 연간 보조금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집행 절차

- 보조금 지급신청(해당 학교 → 충청남도교육청)
- 보조금 교부신청(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
- 보조금 교부결정(충청남도 → 충청남도교육청)
- 보조금 정산(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분권교부	기금	소계			
2013			27.5				27.5	55
2014			27.5				27.5	55
(증△감)			0				0	0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분권교부	기금등			
합계	385			137.5			137.5	275
'12	77			27.5			27.5	55
'13	77			27.5			27.5	55
'14	77			27.5			27.5	55
'15	77			27.5			27.5	55
'16	77			27.5			27.5	5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지원학생수 (명)	71	70	75	77	77	사업량(명) 대비 지원실적	내부자료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충남)>

담당부서	총무과(총무팀)	담당자	임문희
전화번호	041-640-8012	이메일	lmh@cnoe.or.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무료 통학버스 지원 현황(유치원, 초·중학교)
 - 관용차량 : 127대, 1,692백만원
 - 임차차량 : 304대, 11,046백만원(유치원 돌봄차량 지원액 포함)
 - 인접교 공동활용 지원 : 126대, 236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통학버스 431대(관용 127대, 임차 304대) 12,647백만원 지원
- 통학차량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안) 추진 : 2014년말까지
 - 차량 재배치, 공동활용, 임차전환, 자유학기제 지원 등
- 통학차량 안전요원 운영 상황 파악('14.8월) 및 운영결과 평가('14.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산어촌 통학버스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읍지역 이하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순으로 연차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관용127대, 임차 304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 관용차량 : 차량운영비, 노후차량 교체비, 공동활용경비 등 지원
 - 임차차량 : 연간 임차비 1대당 26~44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학구내에 통학여건이 열악하여 학생 등하교가 어려운 학교
- 지원내용 : 원거리 통학 학생수를 고려한 차량 규격에 적합한 예산 지원
- 법적근거 : 자체계획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2,974		12,974
2014						12,647		12,647
(증△감)						△327		△32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73					63,070		63,070
'13	431/431					12,974		12,974
'14	412					12,647		12,647
'15	410					12,483		12,483
'16	410					12,483		12,483
'17	410					12,483		12,483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339/339	341/341	340/340	431/431	412	연초 계획 물량 대비 연말 추진 물량 비교	예산편성 및 결산자료

10. 전라북도

<1-2-24.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전라북도)>

담당부서	건강안전과 (건강생활팀)	담당자	안춘원
전화번호	063-280-2447	이메일	ancw@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 대상으로 지역담당제를 통한 가족중심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22개시군, 방문전담인력 205명 투입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진 섬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보장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순회진료 서비스 제공
- 11개시군, 184개 도서주민 15,310명에 대해 연 6회 방문진료 실시

3)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 헬기에 전문의 등 의료진이 탑승하여 도서지역 응급환자 신속한 현장 처치 및 환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취약가구 120,081가구 145,200명관리(전담인력 126명)
- 추진기간 : 연중
- 진행상황 : 계속
- 예산액 : 3,312백만원(기금 50%, 지방비 5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 내용
 - 사업규모(사업량) : 취약가구 120,000가구
 - 사업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37,000가구

-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34,000가구
- 3순위 : 다문화가정, 빈곤아동 지역아동센터, 미인가시설 12,000가구
- 4순위 : 보건소 내 타부서 및 관련 기관, 지역사회 기관에서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한 대상자 37,000가구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장애인, 허약노인, 임신·출산여성, 영유아 등 건강관리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 허약노인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낙상 등의 건강문제 관리

○ 추진기간 : 연중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1				1,546	1,546	1,632		3,178
2012				1,585	1,585	1,670		3,255
2013				1,585	1,585	1,670		3,255
2014				1,656	1,656	1,656		3,312
(증△감)				71	71	△14		5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개 시군				8,028	8,284		16,312
'11	14개 시군				1,546	1,632		3,178
'12	14개 시군				1,585	1,670		3,255
'13	14개 시군				1,585	1,670		3,255
'14	14개 시군				1,656	1,656		3,312
'15	14개 시군				1,656	1,656		3,312

4.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투입 전담인력수	125명	127명	128명	127명	124명	전담인력수	보건복지부 보고서식
방문간호사 대비 집중관리가구수	65	70	40	20	20	집중관리가구 /방문간호사	
방문인력 대비 취약계층방문횟수	1,672	1,680	1,800	1,650	1,600	방문횟수/방문인력	

※ '13년도 복지부 지침에 의거 집중관리 가구 수 변경(전담인력 1인당 40가구 → 20가구)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전라북도)>

담당부서	유통가공과	담당자	정용철
전화번호	063-280-4154	이메일	jyc061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계획 통보 : '13. 1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계획 홍보 : '13. 2월~12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13. 상반기, 하반기
- '14년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대상자 선정 : '13. 10월
- 8개 센터 선정 : 기존 8개소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 2개소(신축 2)
- '13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정산 : '14. 1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계획 통보 : '13. 12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14. 상반기, 하반기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
- '15년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대상자 선정 : '14. 10월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결정
- 여성농업인센터(8개소)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실시 : 3~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 해당없음

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자격·시설·인력을 갖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센터
- 사업규모(사업량) : 8개소 지원(개소당 130백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1,040백만원(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9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 지원(인건비, 행사추진비, 관리비 등)

○ 예 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936	104	1,040
2014						936	104	1,040
(증△감)						-	-	-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8					936	104	1,040
남원	2					230	25	255
진안	1					117	13	130
임실	1					117	13	130
순창	1					117	13	130
고창	1					121	14	135
부안	2					234	26	26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8/8					4,872/1,872	538/208	5,410/2,080
'13	8/8					936/936	104/104	1,040/1,040
'14	8/8					936/936	104/104	1,040/1,040
'15	8/8					1,000/	110/	1,110/
'16	8/8					1,000/	110	1,110/
'17	8/8					1,000/	110/	1,11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율	100	100	100	100	100	(운영비 지원센터수 ÷ 도내 센터수) × 100	내부자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과(학생배치)	담당자	백승미
전화번호	239-3590	이메일	smbsm121@jbedu.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08년 : 기숙형 고교 선정(군지역 공립고-한별고 등 8교)
- 2009년 : 기숙형 고교 선정(도·농복합시지역 공·사립고-정읍고 등 5교)
- 2010년 ~ 2011년
 -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 지원 : '08년 선정학교(한별고 등 8교)
 -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신축 : '09년 선정학교(정읍고 등 5교)
- 2012년
 -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 지원
 - '08년 선정학교(한별고 등 8교) , '09년 선정학교(정읍고 등 5교)
 - 일반고교 기숙사 운영 지원 : 40교
- 2013년
 - 기숙형 고교 기숙사 운영 지원
 - '08년 선정학교(한별고 등 8교) , '09년 선정학교(정읍고 등 5교)
 - 일반고교 기숙사 운영 지원 : 41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2014년 기숙형 고교 기숙사 및 일반고교 기숙사 운영비 학교 교부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교육부 선정 기숙형 고교
- 사업 규모(사업량) : 한별고 등 13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652,640천원
- 지원내용 : 기숙사 사감인건비 및 기본운영비(공공요금), 프로그램운영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653		1,653
2014						1,653		1,653
(증△감)						0		0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교					1,653		1,653
정읍	2교					302		302
남원	2교					234		234
김제	1교					118		118
완주	1교					124		124
진안	1교					87		87
무주	1교					116		116
장수	1교					107		107
임실	1교					104		104
순창	1교					138		138
고창	1교					171		171
부안	1교					152		152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265		8,265
'13	13교/13교					1,653/1,653		1,653/1,653
'14	13교					1,653		1,653
'15	13교					1,653		1,653
'16	13교					1,653		1,653
'17	13교					1,653		1,653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일반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도농복합시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중 기숙사 보유교 41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안성고 등 41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973,440천원
- 지원내용 : 기숙사 기본운영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41		741
2014						973		973
(증△감)						232		232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교					973		973
익산	4교					107		107
정읍	10교					238		238
남원	4교					73		73
김제	5교					92		92
완주	1교					38		38
진안	1교					32		32
무주	3교					48		48
장수	3교					80		80
순창	2교					29		29
고창	5교					179		179
부안	3교					57		5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865		4,865
'13	41교/41교					973/973		973/973
'14	42교					973		973
'15	42교					973		973
'16	42교					973		973
'17	42교					973		973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지원	-	-	96.4	98	98	기숙형고 기숙사 입사율	내부자료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인성건강과(평생교육) 교육혁신과(방과후학교)	담당자	이태성 박성환
전화번호	063-239-3386 063-239-3337	이메일	ntomas@jbedu.kr basic68@jbedu.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p>(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p> <p><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p><input type="checkbox"/>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p><input type="checkbox"/>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p>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가.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사업명 :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
- 사업량 : 7개기관
- 사업비 : 145백만원

나.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 개방

- 사업명 : 농어촌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운영
- 사업량 : 학교마을도서관 33개
- 사업비 : 506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가.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
 -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지역배분 자료로 산정 : 2013년 12월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해당기관에서 연중 실시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중간평가 : 2014년 7~8월중
 - 성과평가 및 운영현황 보고서 제출 : 2014년 12월

나.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 개방

- 농어촌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운영
 - 지역주민들에게 도서 대출, 독서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중간평가 및 운영현황 보고서 제출 : 연 4회

4. 관련 사업 내용

가.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 대상 : 완주공공도서관, 진안공공도서관, 무주공공도서관, 장수공공도서관, 임실공공도서관, 순창공공도서관, 고창공공도서관 총 7개
 - 사업 규모
 - 20,000천원×5기관=100,000천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 25,000천원×2기관=50,000천원(완주, 고창)
 - 연중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따른 강사비 및 재료비 등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교육비특별회계(자체예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기관 당 지원하되, 2013년까지 진행했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성과 분석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함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45		145
2014						150		150
(증△감)						5		5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					150		150
완주	1					25		25
진안	1					20		20
무주	1					20		20
장수	1					20		20
임실	1					20		20
순창	1					20		20
고창	1					25		25

나. 농어촌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주민
- 사업규모(사업량) : 학교마을도서관 34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402,600천원), 교육비특별회계(81,600천원)
- 지원조건 : 지자체(운영비, 인건비)와 교육비특별회계(인건비) 100%
- 지원내용 :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 및 인건비
- 법적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03	103	506
2014						403	82	485
(증△감)							△21	△21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					403	82	485
군산	5					61	12	73
익산	4					37	10	47
정읍	6					73	15	88
남원	3					37	7	44
김제	1					12	2	14
완주	3					37	7	44
진안	2					24	5	29
무주	3					37	7	44
장수	3					37	7	44
고창	2					24	5	29
부안	2					24	5	29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9					875	263	1,138
'13	33/33					403	103	506
'14	34					403	82	485
'15	34						82	82
'16	34						82	82
'17	34						82	82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액(백만원)	84	112	140	140	150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비	내부자료
학교도서관 개방운 영 예산액(백만원)		55	69	84	82	학교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원 경비	내부자료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정책공보담당관	담당자	오세현 주무관
전화번호	063-239-3652	이메일	shoh53@jbedu.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기본계획 p27)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1회 2013.5.16)
-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농어촌 학교 에듀케어 육성 지원 등 농어촌 관련 교육사업 실무협의회(2013.5.6.)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교육발전협의회 규칙 정비
- 농어촌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연 1회)

4. 관련 사업 내용

가.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 사업 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 사업규모 : 연 1회 이상
 - 사업내용
 -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사항
 -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비	광특 예	기타회계 산	기금등 사	소계 업			
2013								
2014								
(증△감)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청)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비	광특 예	기타회계 산	기금등 사			
전북						업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개소/개소		비	예	산	사	업	
'14	1개소			"				
'15	1개소			"				
'16	1개소			"				
'17	1개소			"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	0회	0회	1회	1회	1회	교육청에서 연 회 이상 협의회 개최 여부	

<2-3-1-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전라북도)>

담당부서	유통가공과	담당자	주무관 전소현
전화번호	063-280-4154	이메일	mylife200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13) : 164,749명/1,277억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도시에 비해 상대적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자녀에 대해 학자금 지원
- 도내 14개시군 4,945명에 5,325백만원 지원(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도내 14개 시군 4,902명(5,392백만원)지원 계획
 - 추진계획 :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정(2월), 학자금 교부(매분기)

4. 관련 사업 내용

□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4,902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5,324,827천원(일반회계-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25%, 시군비 75%[분권포함]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5,324		5,324
2014						5,392		5,392
(증△감)						68		68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전북	4,902명					5,392		5,392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4,945					5,329		5,329
'14	4,902					5,325		5,325
'15	4,902					5,325		5,325
'16	4,902					5,325		5,325
'17	4,902					5,325		5,325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자금지원학생수	8,364/ 8,364	6,709/ 6,709	5,504/ 5,504	4,945/ 4,945	4,902	(학자금지원학생수계 획 학생수)×100	정산결과보고서

<2-3-2-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전라북도)>

담당부서	유통가공과	담당자	주무관 전소현
전화번호	063-280-4154	이메일	mylife200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도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연간 200일 급식비 지원 : 1인당(1일) 기숙사생 7,200원(3식), 비합숙생 2,400원(1식)

* '지금까지 추진실적('83~'13) : 4,692명 / 3,834백만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자영농과생의 교육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
- 도내 1개 학교 429명(기숙 200명, 비기숙 229명) 360백만원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미래 농업인력인 자영농과생의 교육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
- 농업인 후계세대 육성 및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정착 유도
 - 도내 1개학교(김제자영고) 429명(합숙200, 비합숙229) 360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확정(2월), 보조금 전출(도→ 교육청→학교) 분기별

4. 관련 사업 내용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업계고교 자영농과생(김제자영고)
- 사업 규모(사업량) : 429명(합숙 200, 비합숙 229)
- 지원금액 및 형태 : 359,520천원(일반회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지원조건 : 도비 50%[분권포함], 교육청 50%
- 지원내용 : 연간 200일 급식비 지원

- 법적근거 : 대통령지시사항('84.11.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2005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도에서 직접 추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41	140	281
2014						180	180	360
(증△감)						39	40	79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전북	429명					180	180	36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교육청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419/419					141	140	281
'14	429					180	180	360
'15	429					180	180	360
'16	429					180	180	360
'17	429					180	180	36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급식비지원학생수	351/351	409/409	418/418	431/419	429	(급식비지원학생수/계획 학생수)×100	정산결과보고서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전라북도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	최성룡
전화번호	063-239-3596	이메일	jlovecsy@jbedu.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 기회 제공(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소규모 통폐합학교 통학차량지원(1987년)
- 통학차량 통합관리 지침시달(2006년) : 승차정원 범위 내에서 통학버스 미지원 교 인근학생 공동이용 및 학생교육활동 지원
-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로 통학차량 지원 확대(2009년)
- 도시 농촌동 지역 초등학교까지 지원(12교, 12대) 확대(2012년)
- 2013년도 추진실적
 - 농어촌 읍·면지역 통학버스 지원 : 250교(유 21원, 초 224교, 중 5교)
 - 통학차량 장시간(40분 초과) 탑승노선 개선 : 통학 전세버스 18대 지원
 - 통학택시 38교 51대 지원
 - 도서지역(군산, 부안) 학생 하숙비 39명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지역 무료 통학 지원
 - 지원기간 : 2014. 1. ~ 2014. 12.
 - 대 상 : 농어촌 읍·면지역 및 도시 농촌동 공립 유·초·중
 - 지원내용 : 직영버스 215대, 전세버스 208대, 안전도우미 210명, 통학차량 교체 20대, 통학택시 지원 51대, 하숙비 35명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 통학편의 제공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한 통·폐합학교, 통학여건이 불편한 읍·면·농촌동지역 초등학교 및 공립유치원
- 사업규모(사업량)
 - 통학버스 지원 : 315교, 423대(직영 215대, 전세 208대)
 - 노후차량 교체 : 20대
 -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 210명[1인당 1년 인건비 8,168천원('13년 대비 6.3% 인상)]
 - 통학택시 지원 : 40교, 51대
 - 하숙비 : 도서 지역(군산, 부안) 학생 35명
- 지원금액 : 15,483천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3,420		13,420
2014						15,483		15,483
(증△감)						2,063		2,063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23대					15,484		15,484
전주	23대					852		852
군산	33대					1,426		1,426
익산	41대					1,661		1,661

	사업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정읍	46대					1,597		1,597
남원	34대					1,384		1,384
김제	46대					2,003		2,003
완주	38대					1,482		1,482
진안	25대					936		936
무주	18대					509		509
장수	13대					360		360
임실	26대					659		659
순창	22대					693		693
고창	30대					862		862
부안	28대					1,060		1,06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1,497		81,497
'13	399대/39개					13,420/13,168		13,420/13,168
'14	423대					15,483		15,483
'15	433대					16,594		16,594
'16	442대					17,500		17,500
'17	450대					18,500		18,5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무료통학지원비	9,830	9,131	10,962	13,420	15,483	무료통학지원 예산확보액	내부자료

<7-1-2. 역량강화 교육품질 제고(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농식품인력개발원	담당자	황현정
전화번호	063-290-6402	이메일	hjung3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역량강화교육 품질 제고(기본계획 p.68)

도농교류·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교육과정' 인증 활성화

-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우수 교육소프트웨어 개발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인증을 통해 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를 양성하는 우수 민간교육기관 육성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업·농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 농장 및 기타 각종 체험·관광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모색
-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기본 이해 및 농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교육
 - 교육대상 : 도내 농업인 및 도시민
 - 교육인원 : 60명
 - 교육내용 : 교육체험농장에 대한 이해, 교육농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 등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도내 농업인들에게 6차 산업의 활성화를 계기로 체험교육농장의 필요성 및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 마련
- 농한기를 이용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농가 및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4. 관련 사업 내용

가. 교육체험 활성화 교육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도내 농업인
 - 교육인원 : 2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 직접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교육체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		3
2014						3		3
(증△감)						-		-

나. 도시농업활성화 교육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도내 농업인
- 교육인원 : 40명
- 지원 금액 및 형태 :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 직접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도시민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기본 이해 및 기초 작물의 재배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		1
2014						1		1
(증△감)						-		-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교육체험활성화	-	20	20	20	20	교육수료실적	교육수료실적
도시농업활성화	-	-	-	40	40	"	"

11. 전라남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전라남도)>

담당부서	보건한방과	담당자	김경화
전화번호	061-286-6053	이메일	eco3456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 대상으로 지역담당제를 통한 가족중심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22개시군, 방문전담인력 205명 투입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진 섬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보장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순회진료 서비스 제공
- 11개시군, 184개 도서주민 15,310명에 대해 연 6회 방문진료 실시

3)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 헬기에 전문의 등 의료진이 탑승하여 도서지역 응급환자 신속한 현장 처치 및 환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취약가구 적정관리 목표율 : 50%

- 2013. 12월말 실적 : 51%(목표대비 102%)

※ 산출기초 = { 등록관리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 건강보험하위 20% 가구수) } × 100

- 실적 산출내용 : { 126,868가구 / (51,926가구 + 196,833가구) } × 100

- 22개 시군 보건소 등록가구 : 126,868가구

- 방문취약가구수('13년 12월말 기준/보건복지부통계자료활용 : 248,759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 51,926가구
 - 건강보험하위20% 가구수 : 196,833가구

▣ 섬주민 순회진료 및 상비약품 등 지원

- 11개시군, 184개 도서 연간 6회 21,532명 진료
- 응급환자 발생 대비 상비약품 150개도서 286상자(10종) 지원

▣ 응급환자 후송체계가 취약한 도서 등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 2013년 전용헬기 1대 운항 응급환자 203회 후송

3. 2014년도 추진 계획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참여 유관기관 지정('14년 1월)
- 사업대상자 발굴('14년 2월초)
- 대상자 등록 및 군분류('14년 2월부터 연중)
- 군별 집중적 의료서비스 제공, 현장모니터링 실시('14년 2월말 ~ 12월)
- 대상자 평가 및 군별 재분류('14년 12월말)

【무의도서주민 순회진료】

- 병원선 2척 이용 : 전남511호(여수권), 전남512호(목포권)
 - 11개시군, 159개도서, 14,449명, 연 6회
 - 지원인력 : 31명(내과2, 한의사2, 치과의사2, 간호사5, 의료기사5, 선원진 등15)
- 사업기간 : 2014. 1월~12월(연간 216일 운항, 180일 진료)
- 진료계획 : 14,449명 (의과 7,658, 한방과 5,058, 치과 1,733, 각종검진 2,589)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 시군 인계점 확대 및 지속적 발굴 : 1 ~ 12월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부처별 헬기 공동 활용 : 10대
 - 응급헬기 1대, 소방 2대, 해경 3대, 산림청 4대
- 지역주민 및 의료기관에 응급헬기 운영 지속 홍보

4. 관련 사업 내용

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대상 : 의료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115천가구(50%)
 - 취약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
- 사업규모 : 56억원, 22개 보건지소 지원
- 지원조건 : 기금 50% 도비 1% 시군비 49%
- 지원내용 : 가정방문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205명), 전담인력 및 담당공무원 교육비 지원(250명)
- 사업내용 : 건강사정 및 진단, 방문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영양상담, 암환자 호스피스 간호 등
- 예산(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에 포함)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753	2,753	2,753		5,506
2014				2,800	2,800	2,800		5,600
(증△감)				47	47	47		94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규모 (가구)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5,000				2,800	2,800		5,600
도	-				13	13		26
목포시	8,090				142	142		284
여수시	8,050				164	164		328
순천시	7,990				175	175		350
나주시	6,150				125	125		250
광양시	5,290				153	153		306
담양군	5,210				143	143		286
곡성군	3,340				90	90		180
구례군	2,370				60	60		120
고흥군	6,680				108	108		216
보성군	6,070				116	116		232
화순군	5,880				133	133		266
장흥군	4,290				73	73		146
강진군	3,890				85	85		170
해남군	7,530				144	144		288
영암군	5,890				135	135		270
무안군	4,470				128	128		256
함평군	5,230				214	214		428
영광군	4,190				115	115		230
장성군	4,790				124	124		248
완도군	2,590				111	111		222
진도군	2,140				96	96		192
신안군	4,870				153	153		306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75천가구				13,900	13,900		27,800
'13	115천가구				2,700	2,700		5,400
'14	115천가구				2,800	2,800		5,600
'15	115천가구				2,800	2,800		5,600
'16	115천가구				2,800	2,800		5,600
'17	115천가구				2,800	2,800		5,600

나. 섬주민 순회진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선 순회진료】

- 사업대상 : 11개시군, 159개도서, 14,449명
- 사업기간 : 2014. 1월~12월(연간 216일 운항, 180일 진료)
- 추진방법 : 병원선을 이용한 도서주민 순회진료 연 6회
- 진료반 : 병원선 2척 - 전남511호(여수권), 전남512호(목포권)
 - 지원인력 : 31명(내과2, 한의사2, 치과의사2, 간호사5, 의료기사5, 선원진 등15)
- 진료계획 :14,449명 (의과 7,658, 한방과 5,058, 치과 1,733, 각종검진 2,589)

【상비의약품 지원】

- 무의도서주민 상비의약품 지원
- 사업 지원대상 : 11개시군, 150개도서
- 추진기간 : 2014. 5월~8월(4개월)
- 사업량 : 286상자
- 지원금액 : 20백만원 (도비 100%)
 - 지원기준 : 도서 인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마을이장 등 책임하에 관리
- 지원내용 : 해열진통제 등 10개 품목이 들어 있는 의약품상자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73						1,974	2,447
2014	473						1,920	2,393
(증△감)	0						△54	△54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449	473				1,920		2,393
도	14,449	473				1,920		2,393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1천명	2,365				9,654		12,019
'13	15천명	473				1,974		2,447
'14	14천명	473				1,920		2,393
'15	14천명	473				1,920		2,393
'16	14천명	473				1,920		2,393
'17	14천명	473				1,920		2,393

※ 무의도서 순회진료사업 국비지원 3.5억 예상/도서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업량 감소

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항공의료사업단
- 사업 규모(사업량) : 1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30억원 (기금 70%, 도비 30%)
- 지원내용 : 취약지역 응급환자 현장 처치 및 신속한 이송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100	2,100	900		3,000
2014				2,100	2,100	900		3,000
(증△감)				0	0	0		0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대				2,100	900		3,000
도	1대				2,100	900		3,0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대				10,500	4,500		15,000
'13	1대/1대				2,100/2,100	900/900		3,000/3,000
'14	1대				2,100	900		3,000
'15	1대				2,100	900		3,000
'16	1대				2,100	900		3,000
'17	1대				2,100	900		3,0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취약가구 적정 등록관리율	44	48	50	51	52	보건소통합정보시 스템 통계자료	보건복지부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율 97%	117%	127%	139%	139%	100%	(실적/목표)×100	내부자료
환자이송 실적	100%	100%	100%	100%	100%	실적/목표량×100	병원 이송실적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전라남도)>

담당부서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당자	문 연 안
전화번호	061-286-6244	이메일	moonya0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시행계획 p390)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량 : 4개소(나주, 고흥, 무안, 장성)
 - 사업비 : 520백만원(도비 78, 시군비 364, 자담 78)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70%, 자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종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관리비 등
- 아동돌보미사업 지원
 - 대 상 : 고흥여성농업인센터(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58)
 - 사업비 : 7,500천원(농어촌희망재단)
 - 사업내용 : 아동 프로그램 2종 진행 및 공부방 환경개선비품(의자)지원
- 이주여성참여 프로그램 지원
 - 대 상 : 고흥군 이주여성(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58)
 - 사업비 : 6,900천원(농어촌희망재단)
 - 사업내용 : 글로벌마마파파 등 이주여성 참여 프로그램 진행(7개월)
- 마을주민 공동참여사업 지원
 - 대 상 : 고흥군 두원면 신흥마을

- 사업비 : 16,000천원(농어촌희망재단) *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주민 공동참여 들기름 채유 설비 구입비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대상자 선정(4개소) : 1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보조금 도비 교부결정(78백만원) : 1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상황 현지 지도점검(2회) : 5월, 8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도비 송금(78백만원) : 매분기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량 : 4개소(나주, 고흥, 무안, 장성)
- 사업비 : 520백만원(도비 78, 시군비 364, 자담 78)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70%, 자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종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관리비 등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 활동, 고충상담, 도농교류 사업 등
- 법적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42	78	520
2014						442	78	520
(증△감)						0	0	0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개소					442	78	520
나주	1개소					110.5	19.5	130
고흥	1개소					110.5	19.5	130
무안	1개소					110.5	19.5	130
징상	1개소					110.5	19.5	13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개소							
'13	4개소/4개소					442/442	78/78	520/520
'14	4개소					442	78	520
'15	4개소					442	78	520
'16	4개소					442	78	520
'17	4개소					442	78	52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프로그램 운영	4개분야 20천명	4개분야 22천명	4개분야 26천명	4개분야 28천명	4개분야 30천명	운영 프로그램 수 및 이용인원	내부자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전라남도교육청)>

담당부서	교육과정과	담당자	장학사 박성욱
전화번호	061-260-0314	이메일	propsw@korea.kr

1. 기본계획 주요 내용

기숙형고교 운영 내실화

□ 23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 기숙사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1차 지원금 지원 후 2학기 2차 지원금을 분할 지원으로 집행의 효율화
- 지자체로부터 기숙사 운영 지원비 유치 노력

2. 2013년말 추진 실적

- 1단계('08) 지정학교 16교 운영
- 2단계('09) 지정학교 7교 추가 운영
- 기숙사비 지원(23교, 2,090,701천원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3교, 257,599천원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기숙사비 지원(23교, 2,348,300천원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3교, 714,000천원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 사업규모 : 20개군 기숙형 고교 23교, 4,433명, 총 2,350백만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기숙사 운영비는 학교 예산에 편성
 - 지원조건 : 기숙사 정원×10개월×3만원
 - 사회적배려대상자(기숙사정원 10%) 기숙사비(식비포함) 전액지원: 170천원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 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및 급식비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350	2,350
2014							3,062	3,062
(증△감)							712	712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교, 503명						3,062	3,062
강진군	1교, 200명						127	127
고흥군	1교, 196명						125	125
곡성군	1교, 216명						137	137
광양군	1교, 176명						116	116
구례군	1교, 152명						104	104
나주군	1교, 208명						115	115
담양군	1교, 184명						118	118
무안군	1교, 136명						96	96
보성군	2교, 410명						244	244
신안군	1교, 172명						113	113
여수시	1교, 204명						130	130
영광군	2교, 684명						390	390
영암군	1교, 192명						122	122
완도군	1교 160명						92	92
장성군	1교, 152명						104	104
장흥군	1교, 244명						149	149
진도군	1교, 148명						101	101
함평군	1교, 72명						65	65
해남군	1교, 328명						174	174
화순군	2교, 796명						440	44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690	14,690
'13	23교/23교						2,350	2,350
'14	23교						3,062	3,062
'15	23교						3,078	3,078
'16	23교						3,100	3,100
'17	23교						3,100	3,1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사 운영비 지원	2,283	997	829	2,350	3,062	기숙형고교 23교 운영비 지원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담당부서	행정과(평생교육팀)	담당자	조정희
전화번호	061-260-0877	이메일	iamjung@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시행계획 p127)

□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운영실적 : 21관 450개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 21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1,523개 강좌, 398,712명 참여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성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등 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비활동적인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농어촌 고령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업인, 비문해인, 장애인, 고령인, 다문화가정
 - 사업규모(사업량) : 평생학습관 21개관
 - 지원금액 및 형태 : 평생학습관 자체예산
 - 지원내용 : 평생학습관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제28조의2, 평생교육법 21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314		2,314
2014						3,123		3,123
(증)						809		809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평생학습관 21관					15,160		15,097
'13	평생학습관 21관					2,314		2,314
'14	평생학습관 21관					3,123		3,123
'15	평생학습관 21관					3,220		3,220
'16	평생학습관 21관					3,220		3,220
'17	평생학습관 21관					3,220		3,22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 소외 계층 프로그램 운영	80%	84%	84%	100%	100%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관수/ 평생학습관수(21관)	분기별 실적 조사

<2-1-6-1. 시·군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정책기획관(교육청)	담당자	박윤경
전화번호	061-260-0296	이메일	yun72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미래위원회 설치·활성화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미래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교육청 관할 구역의 교육발전 방안과 미래의 교육시책 수립 및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

2. 2010~2013년 추진 실적

-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규정 정비(22청)
-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위원 구성 : 22청, 2회(20명 내외)
-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교육지원청별 연 2~5회 실시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미래위원회 연찬회 : 연합 연찬회 3회(본청+지역)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전남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공감 형성을 위한 연찬회 : 1회
-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수시 (안전 발생 시)

4. 관련 사업 내용

가.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 사업 규모(사업량) : 22개 교육교육청 (1청당 1개 교육미래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조건 :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의거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지급
 - 지원내용 : 교육미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수당, 여비, 기타운영비 등)

- 법적근거 : 전라남도교육미래위원회 규칙 제14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65	65
2014							80	80
(증△감)							15	15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개 지역청						80.15	80.15
목포	1청						4.4	4.4
여수	1청						3.8	3.8
순천	1청						4	4
나주	1청						4	4
광양	1청						2.69	2.69
담양	1청						2.8	2.8
곡성	1청						3.28	3.28
구례	1청						3.96	3.96
고흥	1청						6.02	6.02
보성	1청						4.54	4.54
화순	1청						3.9	3.9
장흥	1청						3.6	3.6
강진	1청						3.16	3.16
해남	1청						3.6	3.6
영암	1청						3.6	3.6
무안	1청						2	2
함평	1청						4	4
영광	1청						3.48	3.48
장성	1청						3.6	3.6
완도	1청						4.2	4.2
진도	1청						2.72	2.72
신안	1청						2.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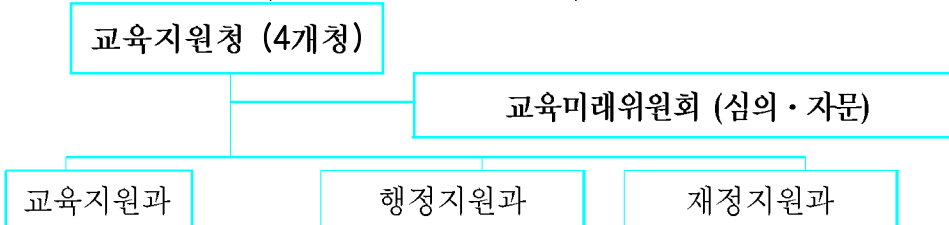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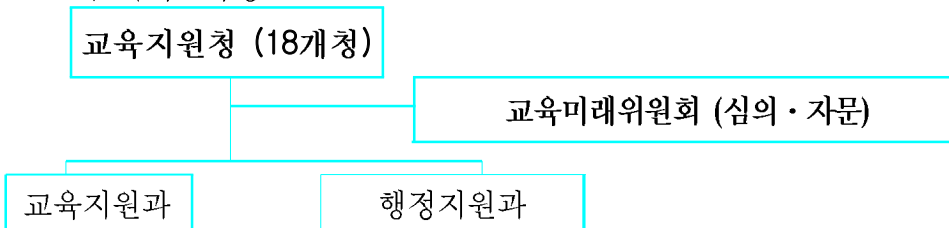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청/22청						385	385
'13	22청/22청						65	65
'14	22청/22청						80	80
'15	22청/22청						80	80
'16	22청/22청						80	80
'17	22청/22청						80	80

나. (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 사업 추진주체 :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미래위원회
- 사업 추진체계
 - 4개 지역교육청 (목포, 여수, 순천, 광양)



- 18개 지역교육청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회의 개최율	24회 (109%)	64회 (291%)	62회 (282%)	49회 (223%)	44회 (200%)	(회의개최수/교육청수) *100	교육지원청별 연간 회의 개최 현황 파악
교육미래위원회 구성율	22청 (100%)	22청 (100%)	22청 (100%)	22청 (100%)	22청 (100%)	(위원회 구성 교육청수/ 지역교육청수)*100	교육지원청별 교육미래위원회 구성 현황 파악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도)	담당자	신양효
전화번호	061-286-6226	이메일	syh22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2. 2010~2013년 추진 실적

- 사업 추진실태 일제조사 : 5~6월
 - 점검결과 : 부당수급자 보조금 환수(7명, 6백만원)
- 지원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인원(명)	12,733	11,862	10,716	12,000
지원액(백만원)	11,316	10,214	8,514	11,400

3.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량 : 12,000명
- 사업비 : 11,400백만원(도 2,508, 시군 8,892)
 - 지원비율 : 도비 22%, 시군비 78%
- 지원방법 :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학교 계좌에 입금

4. 관련 사업 내용

가.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직접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22개시군 12,000명
- 지원조건 :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의거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지급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전액)
- 법적근거 :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규모 (명)	도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지부담포함)	합계
2013	6,657	1,421	5,037		6458
2014	12,000	2,508	8,892		11,400
(증△감)	증5,343	1,087	3,855		4,942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명)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도 비 (22%)	시군비 (78%)	
합 계	12,000	11,400,000	2,508,000	8,892,000	
목포시	30	28,500	6,270	22,230	
여수시	700	665,000	146,300	518,700	
순천시	540	513,000	112,860	400,140	
나주시	750	712,500	156,750	555,750	
광양시	280	266,000	58,520	207,480	
담양군	490	465,500	102,410	363,090	
곡성군	400	380,000	83,600	296,400	
구례군	210	199,500	43,890	155,610	
고흥군	800	760,000	167,200	592,800	
보성군	550	522,500	114,950	407,550	
화순군	480	456,000	100,320	355,680	
장흥군	500	475,000	104,500	370,500	
강진군	370	351,500	77,330	274,170	
해남군	980	931,000	204,820	726,180	
영암군	750	712,500	156,750	555,750	
무안군	1,040	988,000	217,360	770,640	
함평군	480	456,000	100,320	355,680	
영광군	470	446,500	98,230	348,270	
장성군	490	465,500	102,410	363,090	
완도군	480	456,000	100,320	355,680	
진도군	480	456,000	100,320	355,680	
신안군	730	693,500	152,570	540,93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도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22개시군	11,453	40,605		52,058
'13	6,657	1,421	5,037		6,458
'14	12,000	2,508	8,892		11,400
'15	12,000	2,508	8,892		11,400

나. 사업추진체계

- 사업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 추진체계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읍·면·동장	————→ (이장경유)	—→1.31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학교장	—→2.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읍·면·동장	┌──	—→2.15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보호자(2.20)				
○ 1/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 군수→도지사		—→	—→2.20—	—→2.24
○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3.15←	←3. 5—	←2.29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5.31		
○ 1/4분기 집행실적 및 2/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 군수→도지사		┌──→	—→5.21—	—→5.25
○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1. 6.15←	←6. 5—	←5.31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8.31		
○ 2/4분기 집행실적 및 3/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 군수→도지사		—→	—→8.20—	—→8.25
○ 3/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2. 9.14←	←9. 5—	←8.31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11.30		
○ 3/4분기 집행실적 및 4/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 군수→도지사		┌──→	—→11.19—	—→11.25
○ 4/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읍·면·동장		3. 12.14←	←12.5—	←11.30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	—→12.24		
○ 4/4분기 집행실적 제출	읍·면·동장→시장· 군수→도지사		—→	-익년1.5→	→익년1.10
○ 학자금 정산 보고	읍·면·동장→시장· 군수→도지사		—→	-익년1.15→	→익년1.25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 지 사		-익년1.10←	←익년1.5←	←12.29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업인학자금 지원	12,733명 (96%)	11,862명 (84%)	10,716명 (76%)	6,657명 (55%)	12,000명 (100%)	당해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농어촌지역거주 하는농업인자녀

<2-3-2-2.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도)	담당자	신양효
전화번호	061-286-6226	이메일	syh22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 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0~2013년 추진 실적

- 10년 사업량/사업비 : 402/255백만원
- 11년 사업량/사업비 : 272/256백만원
- 12년 사업량/사업비 : 374/297백만원
- 13년 사업량/사업비 : 168/153백만원

※ '13년부터 강진군을 포함한 군지역 이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중식) 확대되므로 비 기숙사 학생은 제외

3. 2014년도 추진 계획

- 14년 사업량/사업비 : 219/223백만원
- 2014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자금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재학생 중 기숙사 생활자
- 사업규모(사업량) : 1개소(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 지원조건 :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 농과생
- 지원내용 : 자영농과 재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1식당 2,680원)

○ 법적근거 : 대통령지시사항('84.11.3)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2013	103	103	0	206
2014	112	111	0	223
(증△감)	증9	9	0	18

- '14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도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1	112	111		223
강진	1	112	111	0	223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도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1	551	547		1,098
'13	1	103	103	0	206
'14	1	112	111	0	223
'15	1	112	111	0	223

나. 사업시행 절차

- 도에서 도비(50%)를 교육청 배정 → 교육청에서는 분담금(50%)을 합하여 해당 학교에 배정 집행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사생 급식 신청	420 (95%)	436 (63%)	447 (84%)	213 (79%)	219 (100%)	기숙사생인원×급식× 일수	기숙사 신청인원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담당부서	총무과(교육청)	담당자	우범석
전화번호	061-260-0693	이메일	umum111@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11	'12	'13	계
	재원별					
노후차량 교체	사업량		48대	45대	19대	112대
	사업비		3,573	2,996	1,667	8,236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사업량		303명	297명	305명	905명
	사업비		1,060	1,216	1,248	3,524
사업비 계			4,633	4,212	2,915	11,76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통학차량 교체 : 22대, 1,754백만원
-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 303명, 1,240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노후차량 교체 : 최단운행 기준연한(7~8년)을 경과한 차량 중에서 최단주행거리 12만 km이상 차량 대상
 -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 통학버스 운영학교 대상 희망학교 전체(유,초)

- 사업 규모(사업량)
 - 노후차량 교체 : 22대
 -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 303명
- 지원내용 :
 - 노후차량 교체 : 운전원 정원이 있는 학교 중 교체 기준에 도달한 대상 차량 전체 지원
 - 통학버스안전도우미 지원 : 학교당 주당 1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별 통학 시간 및 인력 채용여건을 고려하여 신청교 전체 지원(1인당 지원액 연간 4,095천원)
- 법적근거 : 「전라남도립학교 차량관리 운영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및 운전자 의무)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2,915		2,915
2014						2,994		2,994
(증△감)						79		79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노후차량 교체	100	100	100	100	100	교체차량/교체대상차량 *100	예산편성자료
통학버스안전 도우미지원	100	100	100	100	100	지원인원/지원요구인원 *100	예산편성자료

12. 경상북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박승권, 손승민
전화번호	053)950-2416 053-950-2966	이메일	psk999@korea.kr sonwind7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오·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으로 찾아가서 보살피는 고품격 감동 의료서비스를 통한 도민 섬김정신 실현
- 방문건강관리 및 위생교육을 통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및 적극적 건강생활 실천 유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가.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 검진인원 : 8,896명
 - 독거노인 1,865, 장애인 1,217, 다문화가정 214, 복지시설 453, 외국인근로자 27, 기초수급자 등 5,120
- 검진항목 : 24,835건
 - 기초검진 8,896, 엑스선 7,442, 초음파 366, 심전도 848, 안저검사 368, 골밀도 3,715, 혈액검사 2,133, 소변검사 1,067

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등록관리가구수 : 96,742가구
-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 493,727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
- 사업비 : 5,530백만원(국비 2,585, 도비 1,136, 시군비 1,809)

- 사업대상 : 오·백지 및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
- 주요내용 :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방문건강관리
- 추진일정
 - 사업추진 지침 통보 : '14. 1월 중
 - 예산 교부 : '14. 2월
 -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14. 1월 ~ 12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족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8,0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3개 의료원 주관 검진차량 이용한 이동 무료검진
 - 지원조건 : 오백지 및 의료취약계층
 - 지원내용 : 초음파, X-선촬영, 골밀도·심전도·이화학적 검사 등
 - 법적근거 : 공공보건의료사업
 - 주요장비 : 검진차량 3, 승합차 3, 의료장비 15종, 비품 등 6종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60		360
2014						360		360
(증△감)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					2,070		2,070
'13	3					360		360
'14	3					360		360
'15	3					450		450
'16	3					450		450
'17	3					450		450

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5,170백만원(23개 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조건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내용 : 보건소 방문전담인력(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방문 건강관리케어
 - 건강문제 기초조사 : 가구조사, 건강면접조사 등
 - 결과에 따른 생애주기별, 질환별 건강관리서비스
 - ※ 고혈압, 당뇨, 암, 영양상담, 재활서비스, 방문간호,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585	2,585	2,585		5,170
2014				2585	2,585	2,585		5,170
(증△감)				-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115				12,925	12,925		25,850
'13	23/23				2,585	2,585		5,170
'14	0/23				2,585	2,585		5,170
'15	0/23				2,585	2,585		5,170
'16	0/23				2,585	2,585		5,170
'17	0/23				2,585	2,585		5,17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	-	3,506	8,896	8,000	검진인원	실적보고 자료
방문서비스제공	590,000	600,000	610,000	493,727	500,000	방문서비스 횟수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1-3-3-7.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경상북도)>

담당부서	경상북도청 농업정책과	담당자	윤수정
전화번호	053-950-3708	이메일	ysjid@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가.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 해당없음
- 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계속)
 - 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선정 : 2012. 12. 6
 -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 2013. 1. 30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3. 1. 30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점검 : 2013. 7월, 12월(2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가.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 해당없음
- 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선정 : 2013. 12. 6
 -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 2014. 1. 14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4. 1월
 - 업무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 2014. 4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점검 : 2014. 7월, 12월(2회)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 해당사항 없음

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규모 : 2개소(안동,영양)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113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70%, 자부담 15%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92	34	226
2014						192	34	226
(증△감)						-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					192	34	226
안동	1					96	17	113
영양	1					96	17	113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0					192/960	34/170	226/1,130
'13	2/2					192/192	34/34	226/226
'14	0/2					0/192	0/34	0/226
'15	0/2					0/192	0/34	0/226
'16	0/2					0/192	0/34	0/226
'17	0/2					0/192	0/34	0/226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이용조사만족도(%)						설문조사	우편, 메일
여성농업인센터수 (개소수)						센터증가수	내부자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경상북도교육청)>

담당부서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김형만
전화번호	053-603-3703	이메일	khm5305@gyo6.net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기숙사 운영비 지원
 - 기숙사 운영비 : 11억7,837만원(교당 평균 4,713만원)
 - ※ 기숙사 운영비에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숙사 지원비 1억7,050만원 포함됨
 - 2013년 자치단체 총 대응투자액: 14개 자치단체, 12억5,080만원 지원
- 기숙형고 프로그램비 지원
 - 총 25개교, 7억4,000만원 지원(정원기준 차등 지원: 교당2,600만원~3,200만원)
- 기숙사 비품구입비 지원
 - 기숙사 비품구입비 : 11억8,800만원(교당 평균 4,752만원)
- 기숙사 시설유지보수비 지원
 - 기숙사 시설유지보수비 : 18억5,000만원(교당 평균 7,400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기숙형고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숙사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등)를 지원함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기숙사비 안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에 대해 학교장의 자율성을 부여함
- 공동체 의식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확대로 기숙형고교 중기 계획에 따라 기숙사대수선비, 비품교체비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사업 내용(※ 기숙형고 추가선정 없음 - 2008~2009년 지정 관련임)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및 도농복합도시에 소재하는 일반계 공·사립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기숙형고교 25개교(2008년 13교, 2009년 12교 지정)
 - 2009~2013년 지원금액 및 형태
 - 시설비 : 723억7,082만원
 - 프로그램지원비 : 23억6,100만원
 - 기숙형고 기숙사운영비(비품구입비, 유지보수비 포함) 및 저소득층자녀기숙사비 : 113억8,100만원
 - 기숙형고 지정조건
 - 기숙형고교로 지속가능한 적정 규모의 학교(학생 수의 적정성, 중장기 학생변동 추이 등)
 - 지역내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이 필요한 지, 충분한 기숙사 시설 보유 여부
 - 사립의 경우 지자체 및 법인의 시설비 대응투자 이행조건이 있을 것
 - 지원내용 : 기숙형고 기숙사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956		4,956
2014						1,108		1,108
(증△감)						-3,848		-3,848

- * 2014년 본예산 편성액이며, 2014년 1회추경 후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 * 기숙형고 육성 관련-보통교부금(지방비) 108억 중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됨
- * 2014년 본예산이 전년대비 3,848백원 감된 사유 : 비품구입비 및 시설유지보수비는 기숙형고교 중기(3년) 계획에 따라 지원하며, 매년 예산편성이 어려움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					1108.2		1108.2
경주	1					22		22
김천	2					45.3		45.3
구미	2					61.7		61.7
영주	2					46.8		46.8
영천	2					51.5		51.5
문경	2					90.4		90.4
상주	1					72.1		72.1
군위	1					58.2		58.2
의성	2					117.9		117.9
청송	1					26.1		26.1
영양	1					31.4		31.4
영덕	1					44.8		44.8
청도	1					29.6		29.6
성주	1					77		77
칠곡	1					70.9		70.9
예천	1					64.9		64.9
봉화	1					61.8		61.8
울진	2					135.8		135.8

※ 구미 선산고는 통폐합(2014.3.1.)에 따라 기숙사운영비 재원은 통폐합지원금으로 충당함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388		9,388
'13	25/25					4,956/4,956		4,956/4,956
'14	25					1,108		1,108
'15	25					1,108		1,108
'16	25					1,108		1,108
'17	25					1,108		1,108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나. 기숙형고 기숙사운영비 및 저소득층자녀 기숙사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기숙형고 25개교 학교장
- 지원기준: 자치단체 대응투자여부와 관계없이 교당 기본운영비 지원
- '14년 지원액 : 총 11억828만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 기숙사 학생 충원율			80%	81%	82%	금년도기숙사학생총원율/전년도기숙사학생총원율	기숙형고 통계자료 활용 (매년4.1.기준)

* 2013년도 경북교육청 KPI성과지표 인용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인재양성과	담당자	김영란, 유경진
전화번호	053-950-3705 053-950-3717	이메일	dudfks@koreakr ykj081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성인문해교육(기초한글교육) 지원 : 14개소 150백만원
-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실시
 - 운영실적 : 24회 8,380명
 - 소요예산 : 110백만원
- 지역인재육성사업
 - 11개 사업, 261백만원
-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 사업
 - 7개 시군, 400명, 138백만원
- 평생학습마을 지정
 - 12개 사업, 3,640명, 240백만원

-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관람객 210천명, 380백만원
-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학지도교육 개최
 - 5회, 2,435명, 40백만원
-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지원
 - 1,365명, 32백만원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운영
 - 도비 300백만원(국비 434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성인문해교육(기초한글교육)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 16개소 160백만원
-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실시
 - 운영계획 : 23회 7,000명
 - 소요예산 : 96백만원
-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 20개 읍면동, 400백만원
-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예상인원 250천명, 380백만원
-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지원
 - 1,365명, 30백만원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도비 400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성인문해교육(기초한글교육)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비문해자 및 소외계층
 - 사업 규모(사업량) : 16개 사업

- 지원금액 및 형태 : 160백만원
- 지원조건 : 공모 신청에 의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
- 지원내용 :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등 지원(개소당 최고 20백만원)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경상북도 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60		160
2014						160		160
(증△감)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					160		160
경북	16개소					160		160

나.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실시

○ 사업 내용

- 교육계획 : 23개 시군, 23회, 7,000명
- 운영방법 : 찾아가는 실생활 위주의 맞춤형 교육
- 사업비 : 96백만원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10		110
2014						96		96
(증△감)						△14		△1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					96		96
경북	23개소					96		96

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정·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20개 읍면동(신규 11, 기지정 9)

※ 마을당 3년간 매년 10백만원(도비) 지원

- 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전문강사 초빙강연(평생학습 이해,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
- 마을공동체 형성사업(노인, 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현안 해결사업(환경오염, 마을역사, 사회통합 방안 등)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60		260
2014						400		400
(증△감)						140		14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					400		400
경북	20개소					400		400

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사업 내용

- 개최시기/ 장소 : 2014. 9.26~28(3일간)/ 칠곡군
- 사업비 : 380백만원
- 사업내용
 - 개·폐막식 공식행사, 축하공연 등 이벤트 행사
 - 평생교육기관·단체별, 지역별 다양한 홍보·체험부스 운영, 작품전시회, 동아리 발표회 등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80		380
2014						380		380
(증△감)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80		380
경북	250,000명					380		380

다.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지원

○ 사업 내용

- 인 원 : 1,365명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내용
 - 경상북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통합워크숍
 - 경상북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한마음화합대회
 - 경상북도 어르신골든벨 대회 등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2		32
2014						30		30
(증△감)						△2		△2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		30
경북	1,365명					30		30

다.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사업 내용

- 지정기간 : 2013.6.27.~2015.6.26.(2년간)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평생교육관련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 교강사 및 관계자 통합연수 및 역량
 -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8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00		300
2014						400		400
(증△감)						100		1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0		400
경북						400		400

<2-1-6-1.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담당자	김현욱
전화번호	053-603-3677	이메일	khw021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위해 시·군 단위에 교육행정 협의회 구성·운영

- 지자체, 교육청, 주민,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과 교육환경 개선과의 연계방안,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및 관련 예산 지원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개최(23개 시·군, 23회)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예산 지원(23개청, 74백만원)
- 지역교육협력 활성화 컨설팅(지역교육청 및 시·군청 방문) 실시(21회)
- 교육협력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2013.09.26, 114명, 더케이경주호텔)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개최·운영 지원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컨설팅 실시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관련 예산 지원
- 교육청-시·군청 교육협력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하반기)
 - 교육협력 우수사례 교류 및 교육 협력 관련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하여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의 장 마련

4. 관련 사업 내용

가. 시·군 교육행정협의회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교육청
- 사업 규모(사업량) : 23개청
- 지원금액 및 형태 : 74백만원 예산 배정
- 지원조건 : 지역교육청 시·군별 차등 지원
- 법적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4		74
2014						74		74
(증△감)						0		0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회,개청)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23					74		74
포항	1/1					3.9		3.9
경주	1/1					3.9		3.9
김천	1/1					3.9		3.9
안동	1/1					3.9		3.9
구미	1/1					3.9		3.9
영주	1/1					3.9		3.9
영천	1/1					3.9		3.9
상주	1/1					3.9		3.9
문경	1/1					3.9		3.9
경산	1/1					3.9		3.9
군위	1/1					2.7		2.7
의성	1/1					2.7		2.7
청송	1/1					2.7		2.7
영양	1/1					2.7		2.7
영덕	1/1					2.7		2.7
청도	1/1					2.7		2.7
고령	1/1					2.7		2.7
성주	2/1					2.7		2.7
칠곡	1/1					2.7		2.7
예천	1/1					2.7		2.7
봉화	0/1					2.7		2.7
울진	1/1					2.7		2.7
울릉	1/1					2.7		2.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회,개청)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5/115					370		370
'13	23/23					74		74
'14	23/23					74		74
'15	23/23					74		74
'16	23/23					74		74
'17	23/23					74		74

나. 지역 교육협력 활성화 컨설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교육청 및 시·군청
- 사업 규모(사업량) : 23개청
- 컨설팅 운영 및 역할 : 교육협력 업무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지원과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 수렴
- 법적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다. 교육청 - 시·군청 교육협력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

○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도청, 시·군청
- 사업 규모(사업량) :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150명
- 개최 시기 : 2014. 9월
- 지원 내용 : 교육전문가 초청 교육협력 관련 특강, 지역별 교육협력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23	23	23	23	23	지역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여부	실적보고자료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경상북도)>

담당부서	경상북도청 농업정책과	담당자	황 경 욱
전화번호	053-950-2613	이메일	dreamh112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현황('09) : 81,705명/801억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05~'13)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학생수	15,178	14,860	14,500	14,852	14,852	10,187	9,600	10,752	7,012
사업비	12,429	12,051	12,548	13,367	13,367	9,576	9,002	10,177	6,619

※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추진 중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 시행지침 시달 : '14.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교부 : '14. 2월
- 분기별 실적보고(시군 → 도) : '14. 3 ~12월(매분기 말)
- 사업비 정산 : '15. 1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농어업인
 - 사 업 량 : 8,276명
 - 사 업 비 : 7,812백만원(도비 1,641, 시군비 6,171)

- 부담비율 : 도비 21%, 시군비 79%
- 지원내용 : 당해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6,619		6,619
2014						7,812		7,812
(증△감)						증1,193		증1,193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276					7,812		7,812
포항	540					509		509
경주	510					481		481
김천	530					500		500
안동	466					440		440
구미	310					293		293
영주	420					397		397
영천	420					397		397
상주	730					689		689
문경	350					330		330
경산	430					405		405
군위	210					198		198
의성	440					416		416
청송	210					198		198
영양	130					123		123
영덕	210					198		198
청도	370					349		349
고령	250					236		236
성주	650					614		614
칠곡	340					321		321
예천	360					340		340
봉화	290					274		274
울진	70					66		66
울릉	40					38		38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012/42,676					6,619/40,285		6,619/40,285
'13	7,012/11,000					6,619/10,384		6,619/10,384
'14	8,276					7,812		7,812
'15	8,000					7,552		7,552
'16	7,800					7,363		7,363
'17	7,600					7,174		7,174

* 농어촌지역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및 예산액 감액 편성

나. 기타 학자금 지원사업 : 해당사항 없음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업인 삶의질 (교육비경감 만족도 조사)	70%	75%	78%	80%	82%	표본추출을 통한 면 접조사	우편, 메일 등

<2-3-2.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경상북도)>

담당부서	경상북도청 농업정책과 수산물진흥과	담당자	황경욱
전화번호	053-950-2613 053-950-2676	이메일	dreamh1124@korea.kr jisc66@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기본계획 p30)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어촌 초·중·고생 급식비 지속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 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09~'13)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사업량	315	315	315	315	315
사업비	301	301	301	301	297

※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추진 중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 시행지침 시달(도 → 교육청) : '14.1월초
- 보조금신청(교육청 →도) : '14.1월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교부 : '14.2월
- 사업비 정산 : '15.1월

4. 관련 사업 내용

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영농과생

* 자영농과 → 식량자원과학과, 원예자원과학과, 축산자원과학과 3개 학년

* 급식일수 → 연간 230일 이내, 학년별 75명 정도

* 1일 지원기준 → 4,200원/인

- 사업량 : 225명
- 사업비 : 217백만원(도비 109, 교육청 65, 자부담 43)
- 부담비율 : 도비 50%, 교육청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의 80% 수준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나.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영수산과생

* 대상 → 자영수산과 3개 학년

* 급식일수 → 연간 254일 이내, 학년별 30명 정도

* 1일 지원기준 → 3,500원/인

- 사업량 : 90명
- 사업비 : 80백만원(도비 10, 교육청 30, 자부담 40)
- 부담비율 : 도비 12%, 교육청 38%,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의 50% 수준 지원
- 법적근거 : 수산계락교 육성방안('86, 교육인적자원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19	178	297
2014						119	178	297
(증△감)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5					119	178	297
교육청	315					119	178	297

* 교육기관(도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지원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5/1,215					119/555	178/610	297/1,165
'13	315/315					119/119	178/178	297/297
'14	315					119	178	297
'15	315					119	178	297
'16	315					119	178	297
'17	315					119	178	297

나. 자영농고 실습장 지원

○ 사업량 :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안동)

○ 사업비 : 1,000백만원(전액국비)

*연도별 사업비 : ('12년) 500백만원, ('13년) 300백만원, ('14년)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영농고 실습 및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확충, 장비보완 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자영농수산과생 농촌지역 정착률	15%	17%	19%	20%	21%	정착학생수/졸업학생수 *100	우편, 메일 등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경상북도교육청)>

담당부서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김형만
전화번호	053-603-3703	이메일	khm5305@gyo6.net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농어촌 지역 유아 및 학생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총 17,728,674천원)

-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253개교) : 2,593,400천원
-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26개교) : 1,098,177천원
- 노후차량 교체비 지원(5개교, 6대) : 475,380천원
- 공립병설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453개원) : 9,407,000천원
-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인건비 지원(409명) : 4,056,677천원
- 기간제 운전원 인건비 지원(5명) : 98,040천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농어촌 지역 유아 및 학생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총 18,548,726천원)

-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253개교) : 2,546,400천원
-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56개교) : 2,584,064천원
- 노후차량 교체비 지원(8개교, 8대) : 298,200천원
- 공립병설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398개원) : 8,881,448천원
-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인건비 지원(400명) : 3,983,710천원
- 기간제 운전원 인건비 지원(13명) : 254,904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 지역 유아 및 학생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671교(유398교, 초247교, 중17교, 고6교, 특3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8,548,726천원
- 지원조건 : 농어촌 지역 공립유치원(전체) 및 초·중·고·특(통폐합학교)
- 지원내용(2014년)
 - 초·중·고 : 통학차량 운영비(2,546,400천원), 임차비(2,584,064천원), 노후차량 교체비(298,200천원), 안전도우미 인건비(3,983,710천원), 기간제 운전원 인건비(254,904천원)
 - 공립유치원 : 통학차량 운영비(8,881,448천원)
 - 교육부 인재정책실 유아교육과 주관으로 전국 공립유치원 시·도 담당자 회의를 거쳐 공립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연중 사용할 차량 운영비를 2013년 3월부터 일괄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7,729		17,729
2014						18,549		18,549
(증△감)						820		820

* 2014년 본예산 편성액이며, 2014.1회추경 후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71					18,549		18,549
포항	75					1,808		1,808
경주	49					1,646		1,646
김천	37					1,053		1,053
안동	53					1,304		1,304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구미	33					1,247		1,247
영주	29					711		711
영천	34					916		916
상주	51					1,440		1,440
문경	28					783		783
경산	20					809		809
군위	16					292		292
의성	35					871		871
청송	17					468		468
영양	18					516		516
영덕	23					604		604
천도	25					557		557
고령	14					390		390
성주	21					437		437
칠곡	20					565		565
예천	22					600		600
봉화	20					708		708
울진	26					735		735
울릉	5					89		89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1,925		
'13	724/724					17,729/17,729		
'14	671					18,549		
'15	671					18,549		
'16	671					18,549		
'17	671					18,549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을	100	100	100	100	100	지원학교/신청학교	예산서

13. 경상남도

<1-2-2-4.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강화(경상남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자	노혜영
전화번호	055-211-6833	이메일	rhy1222@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 ※ 지자체에서 내과, 한방과, 치과 등 치료·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말함

2. 2013년말 까지 추진 실적

- '07. 11~12월, 『찾아가는 산부인과』 계획수립, 예산확보(987백만원)
- '08. 1~3월, 이동 진료용 버스 구입, 전문인력 6명 확보, 장비 8종 구입
- '08. 3월, 협약서 체결 (도, 인구보건복지협회 도지회)
- '08. 3. 27, 『찾아가는 산부인과』 발대식 개최
- '08. 3. 28 ~ 10개 군지역 순회진료 실시(월 1~2회)
 - ※ 6개군 + 함안, 창녕, 남해, 거창
- '09. 3. ~ '12. 4. : 6개 군지역으로 조정 순회진료 (월 2~3회)
- '12. 5. ~ 현재 : 5개 군지역으로 조정 순회진료 (월 2~3회)
 - 가임여성 건강검진 추가 확대
- '14. 1 :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재 협약 체결
 - 위탁운영자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 진료실적
 - 2008 : 146회 3,193명 진료, 1일 평균 22명(다문화가정 624 전체 20%)
 - 2009 : 157회 3,126명 진료, 1일 평균 20명(다문화가정 753, 전체 24%)

- 2010 : 146회 3,019명 진료, 1일 평균 21명(다문화가정 854, 전체 28%)
- 2011 : 148회 2,583명 진료, 1일 평균 18명(다문화가정 639, 전체 25%)
- 2012 : 150회 2,491명 진료, 1일 평균 17명(다문화가정 491, 전체 20%)
- 2013 : 152회 2,200명 진료, 1일 평균 15명(다문화가정 379, 전체 17%)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업지역 : 5개군(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 대상인원 : 1,100명 정도(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의 임신부 및 가임여성)
- 진료횟수 : 150회(지역별 30회). 지역별 월 2~3회정도

4. 관련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모자보건법 제3조
- 사업대상 : 5개군(다문화가족 포함)
- 대상인원 : 2,200명 정도(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의 임신부 및 가임여성)
- 주요 사업내용
 - 산전 진찰 횟수 : 1인 총 13회차
 - 주요 검사내용 : 산전기본검사(5종), 초음파 검사, 태아기형아검사, 가임여성 임신전 건강검진 등
- 추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 이동 산전 진찰반 구성 운영 : 5명(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80		480
2014						360		360
(증△감)						△120		△12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200	실적/계획				480		480
'14	2,200	실적/계획				360		360
'15	2,200	실적/계획				400		400
'16	2,200	실적/계획				400		400
'17	2,200	실적/계획				400		400

5. 성과목표

(단위 : 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진료인원 (연인원)	3,019	2,583	2,500	2,200	2,200	(진료인원수/계획인원수) *100	별도취합/내부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경상남도)>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강지숙
전화번호	211-4992	이메일	jskang63@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선 운영으로 일반진료 및 노약자 방문진료 등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관리 수준 향상
- 만성 질환자 매년 정기적 관찰관리를 통한 주민 편의제공 등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도모

2. 2013년 추진실적

- 진료기간 : 1~12월 실시(진료일수 165일), 지역별 월 1회 정기적 순회 진료
- 진료대상 : 의료취약 도서지역 7개시군, 41개도서 49개마을(주민 수 2,849명)
- 진료부분 : 내과, 만성병 관리(고혈압, 당뇨병), 한방진료, 노약자 등 방문진료, 피부질환 구강관리 등
- 진료실적 : 118천명(연인원 기준)
 - 고혈압 86,761명, 당뇨병 6,491명, 한방 792명, 방문진료 5,114명, 치과 214명
내과 17,025명, 피부과 807명 기타 272명
 - 고혈압 및 당뇨질환자에 대한 매월 30일분 약 처방 등으로 연간 정기적 지속 관찰 관리
 - 연령별 진료현황 : 40세미만 201명(1.73%), 40세~64세 2,182명(18.72%), 65세이상 9,271명(79.55%)

3. 2014년 추진 계획

- 진료기간 : 2014. 1월~12월, 도서별 매월 1회 정기 순회 진료
- 진료대상 : 7개시군, 41개도서(주민수 2,932명), 계획 연115천명
- 진료분야 : 일반진료 및 한방, 치과, 방문진료, 만성질환자 관리 등
- 소요예산 : 641백만원(의약품 구입비 70백만원, 병원선 운영비 574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 진료대상 :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 없는
의료취약 도서 41개도서 50개마을
(창원시 5, 통영시 30, 사천시 3, 거제시 5, 고성군 2, 남해군 3, 하동군 1)
- 진료인원 계획 : 연인원 115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641백만원(국비 67, 도비 574)
- 지원내용 : 일반진료, 한방, 방문진료, 치과, 만성질환자 지속관리 및
월 1회 정기 순회진료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전액 도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27	-	-	-	-	604	-	731
2014	67	-	-	-	-	574	-	641
(증△감)	△60	-	-	-	-	△30	-	△9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명)	국비				지방비 (전액도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계 (도자체 시행)	41개소, (2,932명)	67	-	-	-	574	-	641

○ 중기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601	274	-	-	-	3,116	-	3,390
'11	2,996	-	-	-	-	654	-	654
'12	2,892	-	-	-	-	664	-	664
'13	2,849	127	-	-	-	604	-	731
'14	2,932	67	-	-	-	574	-	641
'15	2,932	80	-	-	-	620	-	700

5. 성과목표

(단위 : 천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15		
진료실적(연인원)	125	126	120	115	110	(진료인원수/ 계획인원수)*100	자체 진료실적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경상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번호	055-211-3625	이메일	hs2879@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7개소 870백만원(도비 130.5, 시군비 652.5, 자부담 87)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상황 점검 : 2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7개소 870백만원(도비 130.5, 시군비 652.5, 자부담 87)
- 사업계획 제출 및 대상자 확정 : '14. 1월
- 상반기 운영상황 점검 실시 : '14. 7월

4. 관련 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량 : 7개소(창원, 진주, 사천, 함안, 고성, 거창, 합천)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 사업비 등)
- 지원조건 : 지방비 90%, 자부담 10%
- 법적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및 제1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783	87	870
2014						783	87	870
(증△감)	-				-	-	-	-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3,915	435	4,350
'13	7개소/7개소					783/783	87/87	870/870
'14	7개소					783	87	870
'15	7개소					783	87	870
'16	7개소					783	87	870
'17	7개소					783	87	87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지원 센터수	6	7	7	7	7	운영비 지원 센터 수	내부자료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자	박홍범
전화번호	268-1163	이메일	hong9866@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20개) : '10년 운영 10개교, '11년 운영 10개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어촌 기숙형고 운영
 - 기숙형고(20교) : 2010년 10교, 2011년 10교(국정과제-전국 150교)
 -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22교) : 2011년(교육감 공약사업)
- 기숙형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2009년 : 10개교 기숙사 건립비 및 비품비 360억원(국고 250억, 자체 110억)
 - 2010년 : 신규 기숙형고 10교 기숙사 건립비 및 비품비 387억원(국고 193억, 자체 194억), 기존 기숙형고 10개교 기숙사 운영비 12억원
 - 2011년 : 20개교 기숙형고 21.96억원,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22교 6.43억원
 - 2012년 : 20개교 기숙형고 26.82억원,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22교 7.27억원

- 2013년 : 20개교 기숙형고 25.06억원,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22교 7.86억원
- 2014년 : 20개교 기숙형고 22.19억원, 농어촌 기숙사 운영학교 22교 8.72억원

○ 기숙형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 지원

- 기숙사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 연 2회
- 기숙형고 운영성과 평가 및 컨설팅 : 연 1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요금, 사감보조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
- 낙후된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숙사 운영비 지원
- 연 5회 단위학교 방문 기숙형고 운영협의회 운영을 통한 현장 컨설팅 강화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숙형고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20개교(공립13, 사립7)
 - 지원금액 및 형태 : 2,219,152천원(교육비특별회계,지방비)
 - 지원조건 : 운영 일수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 사감보조 인건비, 사회적배려대상자 급식비, 공공요금(일부 보조)
 - 추진근거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정부 시책)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2,506		2,506
2014						2,219		2,219
(감)						287		28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동일학교)					12,075		12,075
'13	20					2,506/2,506		2,506/2,506
'14	20					2,219		2,219
'15	20					2,400		2,400
'16	20					2,450		2,450
'17	20					2,500		2,500

나. 농어촌 기숙사운영 학교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기숙사운영 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22개교(공립5, 사립17)
- 지원금액 및 형태 : 872,000천원(교육비특별회계,지방비)
- 지원조건 : 운영 일수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
- 지원내용 :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 급식비, 공공요금(일부 보조)
- 추진근거 : 교육감 공약사업('신개념 기숙형학교 운영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86		786
2014						872		872
(증)						86		86

○ 증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동일학교)					4,292		4,292
'13	22					786/786		786/786
'14	22					872		872
'15	22					875		875
'16	22					878		878
'17	22					881		88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설치 학교수	10	20	20	20	20	설치학교 수	내부자료
만족도(%)	60	65	70	70	70	(만족학생입사생*100%	설문조사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	과학직업과 (평생교육팀) 초등교육과 (초등정학팀)	담당자	강선미, 정은영 최말숙
전화번호	268-1235	이메일	ksm9850@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평생학습도시 지정 경남 지자체 18개중 9개 지정)
- * 농어촌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5.4억('14)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농어촌 지역에 계층별·특화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 경남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계층·단계별 프로그램운영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사업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2013.평생교육추진계획 수립: 과학직업교육과-1465(2013.2.4)
-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306개, 5,445명 수료, 210,000천원
- 소외계층관련 프로그램공모: 45개 프로그램 107,000천원
- 경남평생교육정보센터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11,000천원
 - 다문화프로그램 등 11개, 95회, 2007명 참여
- 학력인정 문자해독프로그램 운영(도서관 2개관, 학교1개교): 55,600천원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활용한 소외계층 교육봉사: 34개 기관 (60,000천원)

- '13년도 평생학습도시-창녕군 포함 9개 시·군: 40,000천원
- 2013년도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지원
 - 지원기간: 2013. 3. - 2013. 12.
 - 지원금액: 50,000천원(단위학교당 5,000천원)
 - 선정학교: 초8개교, 중2개교
 - 진행상황: 완료
- 2013년도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지원
 - 지원기간: 2013. 4. - 2013. 12.
 - 지원금액: 60,000천원(단위학교당 6,000천원)
 - 선정학교: 초8개교, 중2개교
 - 진행상황: 완료

3. 2014년도 추진 계획

- 2014.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 2014. 1월중
- 21개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168,000천원
-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공모: 6개 프로그램 30,000천원
-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모: 프로그램 21개, 100,000천원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35개 프로그램(80,000천원)
- 학력인정 문자해독교실 운영: 115,400천원, 운영계획수립 (2014.1월), 운영기관 선정(공공도서관 3개관, 초등학교 4개교, 지자체 1)
- 2014년도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지원
 - 지원기간: 2014. 3. - 2014. 12.
 - 지원금액: 50,000천원(단위학교당 5,000천원)
 - 선정학교: 초8개교, 중2개교

4. 관련 사업 내용

가.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

- 사업 내용
 - 대상: 경남도민
 - 규모(사업량): 소외계층프로그램 63개, 다문화프로그램 6개, 특화프로그램 21개, 지역아동센터 방학프로그램 16개, 성인문해프로그램 8개 운영 등

- 지원금액 및 형태: 공모형태로 실시/지방비(513,000천원), 국비(30,000천원)
- 지원조건: 신청서 심사 후 선정
- 지원내용: 프로그램 강사료, 일반운영비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교·특)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2013			40		40	554	594
2014			30		30	513	543
(증△감)			0		△10	△41	△51

- '13년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교·특)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		4.5
경남	9					4.5		4.5
..				아래빈칸				
..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프로그램수)	국비				지방비 (교·특)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6		2,775		2,911
'11	104			39		564		603
'12	114			40		531		571
'13	114			27		567		594
'14	114			30		513		543
'15	115			예정불가		600		600

나.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교과부 선정 평생학습도시 9개 시·군
- 사업규모(사업량): 미정
- 지원금액 및 형태: 지방비(교특)
- 지원내용: 조성사업을 공고, 선정하여 지원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 중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 '13년 추진, '14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4.0		4.0
2014						4.5		4.5
(증△감)						0.5		0.5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백만원)

	사업규모 (기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					4.5		4.5
경남	9					4.5		4.5
..								
..								

○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규모 (기관)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
'11	8					40		40
'12	8					40		40
'13	8					40		40
'14	9					45		45
'15	미정					미정		미정

다.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자체 선정
- 사업규모(사업량): 20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지방비(교·특)
- 지원조건: 지방비 100%
- 지원내용: 조성사업을 공고, 선정하여 지원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 중단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 '13년 추진, '14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교·특)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110		110
2014						50		50
(증△감)						△60		△6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

(단위: 백만원)

	사업규모 (개교)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50		50
경남	10					50		50
..				아래빈칸				0
..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5		555
'11	12					85		85
'12	20					110		110
'13	20					110		110
'14	10					50		50
'15	10					50		5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프로그램 운영실적	66	67	69	70	71	수료인원수 /등록인원수 *100	별도취합/내부
지원기관수	1.7	1.9	2.1	2.4	2.5	지원기관(학교)수/대상기관 수*100	별도취합/내부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학교설립추진단	담당자	정혜선
전화번호	055-268-1437	이메일	hyesunj@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어린이통학버스 탑승보조원 인건비 지급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사업규모

초등학교(201교 330대), 중학교(22교 26대)

○ 통학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초	중	합계
차량운영비	1,720,380	183,112	1,903,492
차량구입비	2,204,475	90,258	2,294,733
용역비	3,165,340	178,000	3,343,340
통학편의 확대운영	369,231	32,455	401,686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1,725,423		1,725,423
합계	9,184,849	483,825	9,668,674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통학버스 통합관리 운영 확대

-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 정원의 범위 내에서
타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편의운영 확대 추진

- 통학버스 통합관리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비의 30% 추가 지원

-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지원
 - 학교별 1일 5시간 범위 내의 인건비 지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통학버스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구 학생 및 농산어촌지역 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초등학교(195교 323대), 중학교(22교 26대)
 - 지원금액 및 형태

(단위:천원)

구분	초	중	합계
차량운영비	1,703,167	179,493	1,882,660
차량구입비	1,502,200	152,440	1,654,640
용역비	3,409,390	178,000	3,587,390
통학편의 확대운영	369,082	32,795	401,877
어린이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	1,656,720		1,656,720
통학비	283,258	127,974	411,232
하숙비	103,000	19,000	122,000
합계	9,026,817	689,702	9,716,519

- 지원조건 :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 및 통학차량 보유학교 인근 학교
- 지원내용 :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구 학생의 통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통합관리 실시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천원)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9,668,674		9,668,674
2014						9,716,519		9,716,519
(증△감)						47,845		47,845

- '14년 시군별 배분내역(안)

	사업규모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9					9,716,519		
창원	15					256,818		
진주	32					772,759		
통영	11					343,201		
사천	19					472,717		
김해	5					163,741		
밀양	21					502,392		
거제	16					575,708		
양산	2					70,112		
의령	19					517,141		
합안	12					288,197		
창녕	26					627,566		
고성	25					1,053,679		
남해	23					465,277		
하동	25					860,775		
산청	32					791,076		
함양	18					714,786		
거창	24					667,748		
합천	24					572,826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대)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8,572		48,572
'13	356					9,668		9,668
'14	349					9,716		9,716
'15	349					9,718		9,718
'16	350					9,720		9,720
'17	352					9,750		9,750

나. 통학비 및 하숙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폐지학구 학생 중 통학차량 이용이 비효율적인 경우 통학비(버스비, 택시비, 도선비 등) 또는 하숙비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초등학교(통학비 : 155명, 하숙비 : 28명)
중학교(통학비 : 169명, 하숙비 : 4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실비 지급

(단위:천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통학비	하숙비	통학비	하숙비	
금액	283,258	103,000	127,974	19,000	533,232

- 지원조건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구 학생
- 지원내용 :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구 학생의 통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통학비, 하숙비 등을 지원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통폐합학교 통학버스(비) 지원비율	100%	100%	100%	100%	100%	통학버스(비) 지원학교/통폐합학교수	경상남도립 학교 설치조례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경상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진우근
전화번호	055-211-3614	이메일	woo424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기본계획 p30)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현황('09) : 81,705명/801억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90년부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전액 시·군비로 매년 6,000여명에게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속 지원(연중)
 - 지원규모 : 7,532명 6,107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7,532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조건 : 시·군비 100%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4,691		4,691
2014						6,107		6,107
(증△감)						증 1,416		증 1,416

- '14년 시·군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지방비		사업규모 (명,개소)	지방비
합계	7,532	6,108			
창원시	1,480	443	합안군	230	230
진주시	450	540	창녕군	350	350
통영시	185	160	고성군	285	285
사천시	290	350	남해군	600	482
김해시	210	250	하동군	600	467
밀양시	600	531	산청군	385	360
거제시	150	230	함양군	375	300
양산시	80	90	거창군	552	375
의령군	350	314	합천군	360	35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379					29,581		29,581
'13	6,972/6,347					6,982/5,174		6,982/5,174
'14	7,532					6,107		6,107
'15	7,500					6,100		6,100
'16	7,500					6,100		6,100
'17	7,500					6,100		6,10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원인원/목표인원) *10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군 행정자료
	'10	'11	'12	'13	'14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84.1	75.0	91.0	93.0		

<2-3-2-2.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경상남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진우근
전화번호	055-211-3614	이메일	woo4245@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기본계획 p30)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농업인에 대한 부담경감과 젊고 유능한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86년 ~)
 - 전약 지방비로 매년 자영농과생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3억원 수준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젊고 유능한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지속 지원(연중)
 - 지원규모 : 255명 292백만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경남자영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영농과생
 - 사업 규모(사업량) : 255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급식비 지원, 보조
 - 지원조건 : 도비(분권교부세 포함) 50%, 교육청 50%
 - 시행주체 : 경상남도교육청
 - 지원내용 : 경남자영고등학교 재학생 급식비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30		
2014						292		
(증△감)						△38		

- 감소사유는 기숙사생(조·석식 인원) 감소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40					1,492		1,492
'13	235/235					330/330		330/330
'14	255					292		292
'15	250					290		290
'16	250					290		290
'17	250					290		29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원인원/목표인원) *10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행정(정산)자료
	'10	'11	'12	'13	'14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	100	100	100	100	100		

14. 제주특별자치도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강미애
전화번호	064-710-2932	이메일	kmaas@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보건소를 이용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2. 2013년 말까지 추진 실적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추진계획 수립 : '13. 1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 '13. 2월 ~ 12월
- 진료인원 : 25,000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찾아가는 산부인과 추진계획 수립 : '14. 1월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4. 12월
- 찾아가는 산부인과 모니터링 : 4회
- 검진일정 : 5개군 대상으로 월2~3회 순회 검진

4.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행정시(지역 보건소)
- 대상자 : 25,000명
- 검진반 : 2~3명(보건소장 및 간호사 등)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검진 등
- 예산 : 1,305백만원(국비 653, 도비 652)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국비(백만원)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3				653	653	652		1,305
2014				530	530	637		1,167
(증△감)								

○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7,000				2,773	3,200		5,973
'13	25,000				653	652		1,305
'14	18,000				530	637		1,167
'15	18,000				530	637		1,167
'16	18,000				530	637		1,167
'17	18,000				530	637		1,16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222	25,000/2 3,042	18,000/ 18,000	진료인원/계획인원*100	진료실적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자	오 용 화
전화번호	064-710-3053	이메일	yhoh6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영·유아 복지지원 확대 및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기본계획 p21)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제활동 역량제고 지원

- 시설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센터 개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제고
- 도시 기업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
- 창업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기법 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계속) : 8개소 · 929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계속) : 8개소 · 870백만원
《도 추진》
- 1월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지침 시달
- 4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분기별)
《행정시 추진》
- 1월 : 사업계획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2월 ~ 12월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
- 익년 1월 : 정산보고(여성농업인센터→행정시→도

4. 관련 사업 내용

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사업지원대상 : 여성농업인센터 8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870백만원(분권교부세 316 지방비 554)
- 지원조건 : 분권교부세 36% 지방비 64%
-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 농어업·농촌의 체험과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사업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790	139	929
2014						870	-	870
(증△감)						10	△100	△6.4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870	-	870
제주특별자치도	8					870	-	87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8/8					790/790	139/139	929/929
'14	8/8					870	-	870
'15	9/9					979	-	979
'16	9/9					979	-	979
'17	9/9					979	-	979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여성농업인센터 계획 대비 설치 비율	6/6	6/6	7/7	8/8	8/8	운영지원 센터 실적 (추진실적/설치계획)	내부자료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자	오용화
전화번호	064-710-3053	이메일	yhoh6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자녀에 대해 학자금 지원
- 도내 2개 행정시 2,350명에 2,387백만원 지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에 대한 고교생 학자금을 통해 농어업인의 영농활동 보장
- 젊은 귀농·귀촌인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도내 2개 행정시 2,800명(3,340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정(3월), 학자금 교부(매분기)

4. 사업 내용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2,8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3,340백만원(일반회계-장학금 및 학자금)
- 지원조건 : 분권 30%, 도비 70%

- 지원내용 :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002	1,002	2,338		3,340
2014				1,002	1,002	2,338		3,340
(증△감)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00				1,002	2,338		3,340
제주	2,800				1,002	2,338		3,34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00				5,010	11,690		16,700
'13	2,800				1,002	2,338		3,340
'14	2,800				1,002	2,338		3,340
'15	2,800				1,002	2,338		3,340
'16	2,800				1,002	2,338		3,340
'17	2,800				1,002	2,338		3,34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학자금지원학생수	3,500/ 3,494	3,500/ 3,495	3,000/ 3,495	2,800/ 2,350	2,800	(학자금지원학생수 계 획 학생수)×100	정산결과보고서

<2-3-2-2.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자	오용화
전화번호	064-710-3053	이메일	yhoh6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기본계획 p30)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활용 권장
 - * 전남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09 소요예산 :595억원)
- 자영농고·수산고 급식비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09년 지원인원 : 808천명, 지원 예상 : 992억원(분권교부세)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 도내 1개 학교 207명·148백만원 지원
 - 분권 37, 도비 37, 교육청 부담 44, 자부담 30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미래 농업인력인 자영농과생의 교육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
- 농업인 후계세대 육성 및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정착 유도
 -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확정(3월), 보조금 지출(도→ 교육청→학교)

4. 사업 내용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자영생명과생(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29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48백만원(일반회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지원조건 : 분권 25% 도비 25%, 교육청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연간 190일 급식비 지원

- 법적근거 : 대통령지시사항('84.11.3)/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1985년 2월)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7	37	37	73	147
2014				37	37	37	73	147
(증△감)						-	-	-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7명				37	37	73	147
강원	207명				37	37	73	147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교육청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35				185	185	365	735
'13	207				37	37	73	147
'14	207				37	37	73	147
'15	207				37	37	73	147
'16	207				37	37	73	147
'17	207				37	37	73	147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급식비지원학생수	209/209	220/212	212/211	207/185	207	(급식비지원학생수 계획 학생수)×100	정산결과보고서

<2-3-2-4.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자	오 용 화
전화번호	064-710-3153	이메일	yhoh68@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504명농어촌학교 10개교
- * 농어촌학교 : 세화고, 애월고, 한림고, 함덕고,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성산고, 대정고, 대정여고, 표선고
- 지원금액 : 111백만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계속) 4,800명 · 700백만원
《도 추진》
- 1월 :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지침 시달
《도 교육청 추진》
- 2월 : 보조금 교부신청(학교별 배정, 사업추진상황 감독)
- 3월 ~ 익년 2월 : 사업추진 및 정산

4. 관련 사업 내용

가.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학교 통학 고등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4,8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700백만원(지방비 700)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지원내용 : 도내 농어업인 자녀 중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10개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에 대한 통학 교통비 지원
- *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

- 도보 통학 및 무료 통학버스 이용 학생
- 전출로 인해 학적이 변경된 학생 및 학교 기술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2013. 5. 15, 조례 제1036호)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350		350
2014						700	-	700
(증△감)						200		200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제주특별자치도	4,800					700	-	700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2,400/504					350/111	-	350/111
'14	4,800					700	-	700
'15	4,800					700	-	700
'16	4,800					700	-	700
'17	4,800					700	-	700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어촌지역 통학학생수/지원 학생수	-	-		504/2,400	4,800/4,800	지원실적/지원계획	내부자료

15. 세종특별자치시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세종시보건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변향순
전화번호	044-301-2124	이메일	hrja111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p18)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낙도지역에는 병원선을 이용한 이동진료 제공

* 경남, 전남, 인천, 충남 섬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병원선 운영 중

※ 지자체에서 내과, 한방과, 치과 등 치료 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말함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9988빠튼튼 운동교실 운영

- 기간 : 1. 30. ~ 3. 15, 7. 31. ~ 9. 13.

- 방법 : 주2회 7주간 운영

- 대상 : 경로당 주민

- 장소 : 장군면 대교1리, 전동면 석곡리, 부강면 부강 1, 2리, 연동면 예양리

- 내용 :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 강화 및 스트레칭 등

- 실적 : 24회/441명

- 건강한저염 실버밥상교실운영

- 기간 : 3. 20. ~ 4. 11, 7. 3. ~ 7. 26.

- 장소 : 장군면 대교1리, 연동면 내판2리, 한솔동 1단지, 연동면 예양1리

- 대상 : 경로당 주민

- 내용 : 싱겁게 요리하기 실습을 통한 건강하게 먹는 식습관 형성

- 실적 : 16회/288명

-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 기간 : 1. 1. ~ 12. 31.(연중)

- 장소 : 관내 지역담당 경로당
-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 내용 : 혈압, 혈당 체크 등 만성질환관리 및 구강, 영양, 운동 등 교육
- 실적 : 2,274회/34,075명
-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
 - 기간 : 1. 1. ~ 12. 31.(연중)
 - 대상 : 관내 산모 및 신생아 가구
 - 내용
 - 1차방문 : 신생아 목욕법 교육 및 산모 신생아 간호관리
 - 2차방문 : 베이비 마사지 및 산후부종관리 등 운동관리
 - 3차방문 : 산모식단관리 등 영양관리
 - 4차방문 : 올바른 잇솔질 교육 등 구강관리
 - 실적 : 20가구/106회
- 기타 의료취약계층 관리
 - 기간 : 1. 1. ~ 12. 31.(연중)
 - 장소 : 관내 지역담당제 전지역
 - 대상 : 의료 취약계층
 - 내용 :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등
 - 실적
 - 가정방문 : 4,717명
 - 지역사회연계서비스 : 2,759건
 - 이가 튼튼한 오복마을 가꾸기(구강관리) : 20회/375명

3. 2014년도 추진 계획

- 9988 뼈튼튼 교실운영
 - 일정 : 상하반기 농한기
 - 대상 : 선정된 경로당 4개소의 경로당 이용 허약 어르신
 - 방법 : 주2회 7주간 운영
 - 내용 : 낙상예방을 위한 관절강화 운동 및 스트레칭 등 건강체조
 - 계획 : 28회/420명

- 건강한저염 실버밥상 교실 운영
 - 일정 : 상하반기 농한기
 - 대상 : 선정된 경로당 4개소의 경로당 이용 허약 어르신
 - 내용 : 6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실습을 통한 어르신 영양교육
 - 방법 : 주2회 5주간 운영
 - 계획 : 20회/300명
- 건강한 이(爾), 우리마을 으뜸 이(爾)운영
 - 일정 : 상하반기 농한기
 - 대상 : 선정된 경로당 2개소의 경로당 이용 허약 어르신
 - 내용 : 칫솔질, 불소용액양치 실시 및 올바른 의치 관리 교육 등
 - 방법 : 주2회 7주간 운영
 - 계획 : 28회/420명
-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한울타리 마당
 - 일정 : 상하반기 농한기
 - 대상 : 선정된 경로당 2개소의 경로당 이용 허약 어르신
 - 내용 : 노래부르기, 색칠하기, 종이접기 등의 활동을 이용한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대사증후군 관리 교육
 - 방법 : 주2회 6주간 운영
 - 계획 : 12회/150명
-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 기간 : 1. 1. ~ 12. 31. (연중)
 -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 내용 : 혈압, 혈당 등 만성질환 체크 및 관리, 구강, 영양, 운동 교육 등
 - 계획 : 2,100회/20,000명 이상

4. 관련 사업 내용

가.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의 건강위험군 또는 질환군

- 사업 규모(사업량) : 3,100가구의 3,500명의 가구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265백만원(기금 98백만원, 시비 165백만원)
- 지원조건 : 건강취약계층의 관내 주민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
- 지원내용 : 보건소 내 간호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직접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등 실시로 건강증진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97	97	113		210
2014				98	98	165		263
(증△감)				△1	△1	△52		△53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0				98	165		263
세종	3,500				98	165		263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3,500	-/-			97	113		210
'14	3,500	-/-			98	165		263
'15	3,550	-/-			99	165		264
'16	3,550	-/-			100	168		268
'17	3,570	-/-			101	170		271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전문인력방문횟수	-	1,933	1,462	1,500	1,550	방문횟수	보건기관통합 정보시스템
9988빠튼튼운동교 실운영	-	-	-	24	28	운영횟수	결과보고서
건강한저염실범밥 상교실운영	-	-	-	16	20	운영횟수	결과보고서
건강한이, 우리마 을 으뜸이 운영	-	-	-	-	28	운영횟수	결과보고서
찾아가는 건강지 킴이한울타리마당	-	-	-	-	12	운영횟수	결과보고서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세종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한 경 희
전화번호	044-300-3143	이메일	matilda@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4) 기숙형 학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본계획 p26)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 지원
- 기숙사내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기숙형 고교현황(150개) : '08년 82개교(공립), '09년 68개교(공·사립)

* 지원금액 : ('08) 3,173억원, ('10) 2,720억원, ('11이후) 정책연구 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관련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등
- 지원실적
 - 관내 기숙형 고교현황 : 세종고등학교
 - 지원내용 : 기숙형 고교 운영비(급식비) 120,000천원
- 그 외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 대상학교 : 조치원여자고등학교
 - 지원내용 : 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공공요금, 시설보수) 50,000천원.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주말프로그램 운영지원 15,000천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세종고 기숙형고교 운영비 지원 : 168,000천원
 - 급식비 116,000천원,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52,000천원
- 조치원여고 목련학사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숙사 운영, 인재프로그램) : 87,000천원

4. 관련 사업 내용

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농촌 기숙형고교 교육경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세종고등학교(농촌소재 기숙형학교 지정)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교(기숙사생 전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168,000천원 / 지방비100%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 운영비(급식비,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 법적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20		120
2014						168		168
(증△감)						48		48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98		798
'13	1개소					120		120
'14	1					168		168
'15	1					170		170
'16	1					170		170
'17	1					170		170

나. 목련학사 프로그램 운영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조치원여자고등학교(기숙사)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교(기숙사생 포함 학생전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87,000천원 / 지방비100%
- 지원내용 : 기숙사 운영비(공공요금, 사감실 리모델링, 시설보수) 일부지원, 인재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창의체험활동) 지원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12						65		65
2013						87		87
(증△감)						22		22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5		415
'13	1개소					65		65
'14	1					87		87
'15	1					87		87
'16	1					88		88
'17	1					88		88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기숙형고교 급식비지원액			110	120	116		사업계획서
기숙형고교 기숙사운영지원 프로그램 수			2	2	2		사업계획서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세종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	담당자	박송미
전화번호	044) 300-3142	이메일	ssong7807@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5)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 (기본계획 p27)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도시 지정 76개 지자체 중 군지역은 13개

* 진안군은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 경제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시 중

□ 농어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고령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 제고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8.8억('09)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특성화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창의·독창적인 우수 프로그램 공모 (7개 프로그램/15,000천원)
- 평생학습 기반 구축 지원
 -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지원 (6개 기관/24,000천원)
 -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 (2개 학교/20,000천원)
-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세종시사이버평생학습관(22,400천원) : 무료 동영상 강의 수록
 - 온라인 평생학습센터 : 각 기관의 평생학습 정보 공유

3. 2014년도 추진 계획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지역 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및 개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시민 욕구에 충족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 2014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추진 : '14. 2월

○ 세종시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

- (주요내용) 외국어, 자격증, 컴퓨터, 취업/자기계발, 창업, 재테크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운영

- 홈페이지 프로그램 재구축 운영 : '14. 8월

○ 비정규 야간학교(등불, 석탑) 운영

- (수업운영) 주 5일 / 1일 3시간 (19:00~21:00, 야간학습)

- (수업내용)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대비 및 문자해독 등

○ '14년 주5일 수업제 토요일프로그램 활성화 지속 추진

4. 관련 사업 내용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13. 4 ~ 11월

- 사 업 비 : 39,000천원(시비)

- 주요내용 : 통기타, 호신술, 베이커리, 공예, 민화 등

※ 2013년 프로그램 선정공모 추진 : 2013. 3월

나. 세종시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

- 기 간 : 2013. 8 ~ 2014. 7월

- 사 업 비 : 22,000천원(시비)

- 주요내용 : 외국어, 자격증, 컴퓨터, 취업/자기계발, 창업, 재테크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운영

※ 홈페이지 프로그램 재구축 운영 : 2014. 8월

다. 비정규 야간학교(등불, 석탑) 운영

- 기 간 : 2013. 1 ~ 12월

- 사 업 비 : 20,000천원

- 수업운영 : 주 5일 / 1일 3시간 (19:00 ~ 21:00, 야간학습)

- 수업내용 :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대비 및 문자해독 등

라. 기 타

- '13년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활성화 지속 추진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81		81
2014						81		81
(증△감)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	1,270/15					81		81
'14	1,500/17					81		81
'15	1,750/18					100		100
'16	2,000/20					120		120
'17	2,500/25					150		150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균 참여율	-	-	75	80	85	프로그램별 참여자수	출석부 등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세종시)>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담당자	담당 전병선
전화번호	044-300-4311	이메일	jbs0474@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용자 확대 (기본계획 p3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도시에 비해 상대적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자녀에 대해 학자금 지원
- 1990년부터 관내 농어업인 자녀 37,026명, 9,802백만원 지원

3. 2014년도 추진 계획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관내 농어업인자녀 1,000명(372백만원)지원 계획
 - 추진계획 :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정(2월), 학자금 지권(학교별)

4. 관련 사업 내용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1,0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372,178천원(장학금 및 학자금)
- 지원조건 : 시비 100%(분권 56%)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75		175
2014						372		372
(증△감)						△197		△197

- 14년 시도별 배분내역(안)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세종	1,000명					372		372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683					1,663		1,663
'13	683					175		175
'14	1,000					372		372
'15	1,000					372		372
'16	1,000					372		372
'17	1,000					372		372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학자금지원학생수 계 획 학생수)×100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산결과보고서
	'10	'11	'12	'13	'14		
학자금지원학생수	1,687/ 1,700	847/ 900	870/ 900	683/ 1,000	1,000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세종시교육청)>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학교지원팀)	담당자	이창희(주무관)
전화번호	044-320-1012	이메일	adtime@korea.kr

1.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본계획 p31)

(2)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추진

2. 2013년말까지 추진 실적

- 지원실적
 - 노후차량 교체 : 5대(427백만원)
 - 차량(관용+임차) 지원 : 32대(824백만원)
 -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 16교(54백만원)
- 지원내용 : 노후차량 교체비, 임차차량 운영비, 관용차량 운영비, 공동활용경비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 지원기간 : 2013. 1. 1 ~ 2013. 12. 31

3. 2014년도 추진 계획

- 지원 계획 : 차량(관용13대+임차12대) 총 25대, 안전도우미 수당 16개교
- 지원 시기 : 2014. 12월까지 지원 예정

4. 관련 사업 내용

가. 무료학교버스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읍·면단위 학교 중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학구

- 읍·면단위 학교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어도 학생 등하교 시간과 맞지 않아 시내버스 통학이 사실상 곤란한 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통학버스 25대,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16개교
- 지원금액
 - 차량(관용+임차) 지원 : 32대(824백만원)
 -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 16교(54백만원)
- 지원조건 : 없음
- 지원내용 : 통학(관용+임차)차량 운영비, 공동활용경비,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 법적근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

○ 예산

-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3						1,305		1,305
2014						581		581
(증△감)						△724		△724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5					3,363		3,363
'13	32/29	실적/계획				1,305		1,305
'14	25					581		581
'15	27					606		606
'16	27					606		606
'17	27					606		606

* '13년은 실적규모·금액/계획규모·금액을, '14년 이후는 계획을 작성

5.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14		
농산어촌 학교버스 운영			22	29	25	지원 운행대수	추진실적